

연구 2006-23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 2006-23

2006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여유진	이봉주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서봉균, 오지현, 유현상, 송치호	강상경, 안상훈, 구인회, 김태성, 백학영, 정소희, 윤민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머 리 말

한 나라의 통계지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위상이 높아지고 특히 1995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에 걸맞는 통계생산의 체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조사의 엄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상황의 급변은 사회조사, 그 중에서도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된 데 비해,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실업의 증가, 가구소비의 위축과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지표들은 개별가구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가구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패널데이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가구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미비한 상태이다. 2006년 『한국복지패널』의 출범과 이번 기초보고서의 발간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조사통계사(史)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사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기존에 본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컨소시엄’이 구성됨으로써,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은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단일패널로서 국내 최대규모의 패널을 구축하였다.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표는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가구원의 경제활동,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수급욕구, 여가 및 일상생활, 사회적 자본과 가치관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분석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올해 1차년도 조사 결과만으로는 다양한 역동성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몇 년 내에 『한국복지패널』이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로서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 조사연구는 본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김미곤 연구위원과 여유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손창균 부연구위원, 김계연, 김문길 선임연구원, 오지현, 서봉균 연구원이 조사연구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 하에 김태성 교수, 강상경 교수, 안상훈 교수, 구인회 교수 그리고 백학영, 정소희, 윤민석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널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한국갤럽에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신욱 연구위원과 노대명 연구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복지패널』이 국가 통계와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도 더불어 기대한다.

2007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제 1 부 조 사 개 요	65
제1장 서 론	67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67
제2절 조사개요	70
제3절 조사 및 분석의 한계	71
제2장 표본추출 개요	73
제1절 표본의 규모	73
제2절 표본추출틀 및 추출방법	78
제3절 조사완료 가구수 및 가구원수	88
제4절 추정방법	89
제5절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91
제3장 조사 내용	96
제1절 조사표의 구성	96
제2절 조사문항	98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118
제1절 현지조사방법	118
제2절 조사자료처리	120

제 II 부 가구 및 가구원 특성	121
제5장 가구 특성	123
제1절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123
제2절 가구구성원의 개인사	130
제6장 경제활동	150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150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153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164
제4절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 수급실태 및 욕구	171
제7장 가구경제	185
제1절 소득	185
제2절 지출	192
제3절 재산 및 부채	200
제8장 주거	217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217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226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231
제9장 건강 및 의료	244
제1절 건강상태	244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245

제10장 가족	250
제1절 가족관계 및 가족지원체계	250
제2절 가족문제	254
제11장 생활시간·만족 및 복지의식	267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시간	267
제2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269
제3절 가구구성원의 복지의식	275
제 III 부 복지욕구 및 수급실태	279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281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281
제2절 건강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290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295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297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300
제13장 공공부조	305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305
제2절 수급 및 탈피	308
제3절 2005년 이전 기초보장 실태	311
제4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313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314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314
제2절 노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335
제3절 장애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352
제4절 아동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377
제 IV 부 아동부가조사 결과	401
제15장 아동 부가조사	403
제1절 응답자 특성	403
제2절 학교생활	406
제3절 생각과 행동	410
제4절 비행	413
제5절 학대	424
제6절 생활 및 서비스 이용	426
참고문헌	440
[부 록] 조사표(가구용, 가구원용, 아동용)	445

표 목 차

〈표 2-1-1〉 복지패널 조사의 개요	73
〈표 2-1-2〉 시도별 모집단 규모(90%)	74
〈표 2-1-3〉 모집단 조사구 규모 (90%)(동부, 읍면부별)	75
〈표 2-1-4〉 지역별 조사구유형별 동읍면부별 가구 수 분포(90%)	76
〈표 2-1-5〉 지역별 거처유형별 가구수 분포(90%)	77
〈표 2-2-1〉 지역별 표본조사구 분포	78
〈표 2-2-2〉 지역별 표본 가구 수	79
〈표 2-2-3〉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80
〈표 2-2-4〉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위한 지역별 조사구수와 가구분포현황	81
〈표 2-2-5〉 지역별 표본가구수와 1단계 가중치 분포	83
〈표 2-2-6〉 지역별 패널가구와 가중치의 기술통계값	85
〈표 2-2-7〉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가구가중치의 기술통계값	86
〈표 2-2-8〉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와 통계청 인구센서스 가구 수의 비교	87
〈표 2-2-9〉 동부와 읍면부 가중 가구수와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의 비교	87
〈표 2-3-1〉 지역별 조사현황	88
〈표 3-1-1〉 1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98
〈표 3-2-1〉 1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99
〈표 3-2-2〉 조사 주제별 구성	100
〈표 3-2-3〉 가구용 조사표 주요항목	102
〈표 3-2-4〉 가구원용 조사표 주요항목	111
〈표 3-2-5〉 아동용 부가조사표 주요항목	116
〈표 5-1-1〉 가구형태	123
〈표 5-1-2〉 가구규모	124
〈표 5-1-3〉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6

〈표 5-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9
〈표 5-2- 1〉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 - 아버지	130
〈표 5-2- 2〉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 - 어머니	131
〈표 5-2- 3〉	가구주 부모의 주된 직업 - 아버지	132
〈표 5-2- 4〉	가구주 부모의 주된 직업 - 어머니	133
〈표 5-2- 5〉	가구주 아동기(만 0~17세) 주로 성장한 곳	134
〈표 5-2- 6〉	가구주 아동기(만 0~17세)의 경제적 생활상태	134
〈표 5-2- 7〉	가구주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경험 여부	135
〈표 5-2- 8〉	가구주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 고용형태	135
〈표 5-2- 9〉	가구주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	136
〈표 5-2-10〉	가구주의 주된 직업기술	137
〈표 5-2-11〉	가구주의 아동기 경험	138
〈표 5-2-12〉	가구주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 여부 및 도움된 정도	139
〈표 5-2-13〉	가구원 부모의 교육수준 - 아버지	140
〈표 5-2-14〉	가구원 부모의 교육수준 - 어머니	141
〈표 5-2-15〉	가구원 부모의 주된 직업 - 아버지	142
〈표 5-2-16〉	가구원 부모의 주된 직업 - 어머니	143
〈표 5-2-17〉	가구원의 아동기(만 0~17세) 주로 성장한 곳	144
〈표 5-2-18〉	가구원의 아동기(만 0~17세)의 경제적 생활상태	144
〈표 5-2-19〉	가구원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경험 여부(최소 한 번 이상)	145
〈표 5-2-20〉	가구원의 첫 직장 고용형태	145
〈표 5-2-21〉	가구원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	146
〈표 5-2-22〉	가구원의 주된 직업기술	147
〈표 5-2-23〉	가구원의 아동기 경험	148
〈표 5-2-24〉	가구원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여부 및 도움된 정도	149
〈표 6-1- 1〉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및 근로무능력사유	150
〈표 6-1- 2〉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151
〈표 6-1- 3〉	가구원의 근로능력정도 및 근로무능력사유	152

〈표 6-1- 4〉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152
〈표 6-2- 1〉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형태	153
〈표 6-2- 2〉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154
〈표 6-2- 3〉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155
〈표 6-2- 4〉	가구주의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둔 경험여부 및 기간	156
〈표 6-2- 5〉	가구주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및 구체적 이유	157
〈표 6-2- 6〉	가구주의 근속년수	158
〈표 6-2- 7〉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주당평균근로시간	158
〈표 6-2- 8〉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형태	159
〈표 6-2- 9〉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160
〈표 6-2-10〉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161
〈표 6-2-11〉	가구원의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둔 경험여부 및 기간	161
〈표 6-2-12〉	가구원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및 구체적 이유	162
〈표 6-2-13〉	가구원의 근속년수	163
〈표 6-2-14〉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163
〈표 6-3- 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164
〈표 6-3- 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165
〈표 6-3- 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165
〈표 6-3- 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166
〈표 6-3- 5〉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여부	167
〈표 6-3- 6〉	가구주의 희망소득	167
〈표 6-3- 7〉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168
〈표 6-3- 8〉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168
〈표 6-3- 9〉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169
〈표 6-3-10〉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170
〈표 6-3-11〉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여부	170
〈표 6-3-12〉	가구원의 희망소득	171
〈표 6-4- 1〉	구직알선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172

〈표 6-4- 2〉	구직알선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2
〈표 6-4- 3〉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72
〈표 6-4- 4〉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3
〈표 6-4- 5〉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3
〈표 6-4- 6〉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73
〈표 6-4- 7〉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4
〈표 6-4- 8〉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4
〈표 6-4- 9〉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74
〈표 6-4-10〉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5
〈표 6-4-11〉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5
〈표 6-4-12〉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75
〈표 6-4-13〉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6
〈표 6-4-14〉	창업지원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6
〈표 6-4-15〉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6
〈표 6-4-16〉	자활공동체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7
〈표 6-4-17〉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7
〈표 6-4-18〉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7
〈표 6-4-1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대한 만족도	178
〈표 6-4-20〉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8
〈표 6-4-2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8
〈표 6-4-22〉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79
〈표 6-4-23〉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79
〈표 6-4-24〉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79
〈표 6-4-25〉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80
〈표 6-4-26〉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80
〈표 6-4-27〉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81
〈표 6-4-28〉	재활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81
〈표 6-4-29〉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81

〈표 6-4-30〉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182
〈표 6-4-31〉	지역봉사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182
〈표 6-4-32〉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82
〈표 6-4-33〉	참여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84
〈표 7-1- 1〉	가구의 경상소득	185
〈표 7-1- 2〉	가구의 경상소득의 분포	186
〈표 7-1- 3〉	가구의 근로소득 유무	186
〈표 7-1- 4〉	가구의 근로소득	187
〈표 7-1- 5〉	가구의 근로소득의 분포	188
〈표 7-1- 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189
〈표 7-1- 7〉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190
〈표 7-1- 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191
〈표 7-2- 1〉	총가계지출	193
〈표 7-2- 2〉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194
〈표 7-2- 3〉	총생활비	195
〈표 7-2- 4〉	총생활비 구성	196
〈표 7-2- 5〉	지출항목별 생활비	198
〈표 7-2- 6〉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지출구성	199
〈표 7-3- 1〉	총재산액	200
〈표 7-3- 2〉	총재산액 분포	201
〈표 7-3- 3〉	순재산액	201
〈표 7-3- 4〉	순재산액 분포	202
〈표 7-3- 5〉	소유부동산 유무	202
〈표 7-3- 6〉	소유부동산의 형태	203
〈표 7-3- 7〉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203
〈표 7-3- 8〉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분포	204
〈표 7-3- 9〉	점유부동산 유무	204
〈표 7-3-10〉	점유부동산의 형태	205

〈표 7-3-11〉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205
〈표 7-3-12〉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분포	206
〈표 7-3-13〉	금융자산 유무	206
〈표 7-3-14〉	금융자산의 형태	207
〈표 7-3-15〉	총 금융자산	207
〈표 7-3-16〉	총 금융자산 분포	208
〈표 7-3-17〉	농기계 유무	208
〈표 7-3-18〉	농기계의 소유형태	209
〈표 7-3-19〉	총 농기계 가격	209
〈표 7-3-20〉	총 농기계의 가격 분포	210
〈표 7-3-21〉	농축산물 유무	210
〈표 7-3-22〉	소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종류	211
〈표 7-3-23〉	총 농축산물 가격	211
〈표 7-3-24〉	총 농축산물의 가격 분포	212
〈표 7-3-25〉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유무	212
〈표 7-3-26〉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의 형태	213
〈표 7-3-27〉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가격	213
〈표 7-3-28〉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의 가격 분포	214
〈표 7-3-29〉	부채유무	214
〈표 7-3-30〉	부채의 형태	215
〈표 7-3-31〉	총 부채액	215
〈표 7-3-32〉	총 부채액 분포	216
〈표 7-3-33〉	연평균 이자상환금	216
〈표 7-3-34〉	연평균 이자상환금의 기술통계량	216
〈표 8-1- 1〉	주택의 유형	217
〈표 8-1- 2〉	주거 위치	218
〈표 8-1- 3〉	주거 점유형태	218
〈표 8-1- 4〉	방의 수	219

〈표 8-1- 5〉 주택의 연건평	219
〈표 8-1- 6〉 상·하수도 사용형태	220
〈표 8-1- 7〉 부엌의 사용형태	220
〈표 8-1- 8〉 화장실의 사용형태	221
〈표 8-1- 9〉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221
〈표 8-1-10〉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222
〈표 8-1-11〉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223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223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224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224
〈표 8-1-15〉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225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225
〈표 8-1-17〉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226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226
〈표 8-2- 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227
〈표 8-2- 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227
〈표 8-2- 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228
〈표 8-2- 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228
〈표 8-2- 5〉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229
〈표 8-2- 6〉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229
〈표 8-2- 7〉 의료기관 이용의 편리성 여부	230
〈표 8-2- 8〉 교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230
〈표 8-2- 9〉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여부	231
〈표 8-2-10〉 자연환경 이용의 편리성 여부	231
〈표 8-3- 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32
〈표 8-3- 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232
〈표 8-3- 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233
〈표 8-3- 4〉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233

〈표 8-3- 5〉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234
〈표 8-3- 6〉 총 이자액의 기술통계량	234
〈표 8-3- 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235
〈표 8-3- 8〉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 정도	235
〈표 8-3- 9〉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236
〈표 8-3-10〉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36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 정도	237
〈표 8-3-12〉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237
〈표 8-3-13〉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38
〈표 8-3-14〉 전세자금(융자)지원의 필요성 정도	238
〈표 8-3-15〉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239
〈표 8-3-16〉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39
〈표 8-3-17〉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필요성 정도	240
〈표 8-3-18〉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240
〈표 8-3-19〉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41
〈표 8-3-2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필요성 정도	241
〈표 8-3-21〉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242
〈표 8-3-22〉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242
〈표 8-3-23〉 (돈이 없어서)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243
〈표 8-3-24〉 (돈이 없어서)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243
〈표 9-1- 1〉 건강상태	244
〈표 9-1- 2〉 주요병명	245
〈표 9-2- 1〉 건강검진횟수	246
〈표 9-2- 2〉 외래진료횟수	246
〈표 9-2- 3〉 입원횟수	247
〈표 9-2- 4〉 입원일 수	247
〈표 9-2- 5〉 병원에 입원한 이유	248
〈표 9-2- 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248

〈표 9-2- 7〉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249
〈표 10-1- 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250
〈표 10-1- 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250
〈표 10-1- 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251
〈표 10-1- 4〉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전체)	252
〈표 10-1- 5〉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저소득가구)	253
〈표 10-1- 6〉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일반가구)	254
〈표 10-2- 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255
〈표 10-2- 2〉 가족갈등 대처방법	256
〈표 10-2- 3〉 가족갈등(전체)	256
〈표 10-2- 4〉 흡연량	257
〈표 10-2- 5〉 평균음주 회수	258
〈표 10-2- 6〉 평균 음주량	258
〈표 10-2- 7〉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여부	259
〈표 10-2- 8〉 음주에 대한 인식	260
〈표 10-2- 9〉 우울에 대한 인식	260
〈표 10-2-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261
〈표 10-2-11〉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262
〈표 10-2-12〉 소득별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262
〈표 10-2-13〉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263
〈표 10-2-14〉 소득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264
〈표 10-2-15〉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264
〈표 10-2-16〉 소득별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265
〈표 10-2-17〉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265
〈표 10-2-18〉 소득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266
〈표 11-1- 1〉 평일(평균) 활동시간	267
〈표 11-1- 2〉 토요일 활동시간	268
〈표 11-1- 3〉 일요일 활동시간	268

〈표 11-2- 1〉 인터넷 사용여부	269
〈표 11-2- 2〉 노동환경 유해여부	269
〈표 11-2- 3〉 경제적 생활수준	270
〈표 11-2- 4〉 5년 후 예상되는 경제적 생활수준	271
〈표 11-2- 5〉 건강에 대한 만족도	271
〈표 11-2- 6〉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272
〈표 11-2- 7〉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272
〈표 11-2- 8〉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273
〈표 11-2- 9〉 직업에 대한 만족도	273
〈표 11-2-10〉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274
〈표 11-2-1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274
〈표 11-2-12〉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75
〈표 11-3- 1〉 미래 사회상에 대한 의식	275
〈표 11-3- 2〉 사람에 대한 신뢰성	276
〈표 11-3- 3〉 타인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줄 의향	276
〈표 11-3- 4〉 지역사회 내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정도	277
〈표 11-3- 5〉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277
〈표 11-3- 6〉 연간 기부액수	278
〈표 11-3- 7〉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278
〈표 12-1- 1〉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 실태	282
〈표 12-1- 2〉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282
〈표 12-1- 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283
〈표 12-1- 4〉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284
〈표 12-1- 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284
〈표 12-1- 6〉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285
〈표 12-1- 7〉 공적연금 수급 실태	286
〈표 12-1- 8〉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286
〈표 12-1- 9〉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287

〈표 12-1-10〉	국민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288
〈표 12-1-11〉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8
〈표 12-1-12〉	보훈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288
〈표 12-1-13〉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289
〈표 12-1-14〉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289
〈표 12-1-15〉	특수직역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290
〈표 12-1-16〉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90
〈표 12-2- 1〉	건강보험 가입 실태	291
〈표 12-2- 2〉	건강보험료 납부 실태	291
〈표 12-2- 3〉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292
〈표 12-2- 4〉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293
〈표 12-2- 5〉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293
〈표 12-2- 6〉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	294
〈표 12-2- 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시 문제점	294
〈표 12-3- 1〉	고용보험 가입 실태	295
〈표 12-3- 2〉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여부	296
〈표 12-3- 3〉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	296
〈표 12-3- 4〉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	297
〈표 12-3- 5〉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297
〈표 12-4- 1〉	산재보험 가입 실태	298
〈표 12-4- 2〉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수급여부	298
〈표 12-4- 3〉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	299
〈표 12-4- 4〉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	300
〈표 12-4- 5〉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액	300
〈표 12-5- 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301
〈표 12-5- 2〉	개인연금 가입 실태	301
〈표 12-5- 3〉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 수급여부	302
〈표 12-5- 4〉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302

〈표 12-5- 5〉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종류별 연간 수급액	302
〈표 12-5- 6〉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303
〈표 12-5- 7〉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수	303
〈표 12-5- 8〉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액	304
〈표 13-1-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305
〈표 13-1-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306
〈표 13-1- 3〉 수급 선정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306
〈표 13-1- 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307
〈표 13-1- 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308
〈표 13-2- 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308
〈표 13-2-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이유	309
〈표 13-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309
〈표 13-2-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310
〈표 13-2-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가장 주된 사유	310
〈표 13-2-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311
〈표 13-3- 1〉 2005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급여수급 경험여부 및 총 수급기간	312
〈표 13-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희망여부	313
〈표 13-4- 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수급여부(2005년 12월 31일 기준)	313
〈표 14-1- 1〉 생계비 지원 필요성 정도	314
〈표 14-1- 2〉 생계비 지원 이용 경험	315
〈표 14-1- 3〉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315
〈표 14-1- 4〉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16
〈표 14-1- 5〉 의료비 지원 필요성 정도	317
〈표 14-1- 6〉 의료비 지원 이용 경험	317
〈표 14-1- 7〉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318
〈표 14-1- 8〉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18
〈표 14-1- 9〉 물품 지원 필요성 정도	319
〈표 14-1-10〉 물품 지원 이용 경험	319

〈표 14-1-11〉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320
〈표 14-1-12〉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21
〈표 14-1-13〉	가정봉사서비스 필요성 정도	321
〈표 14-1-14〉	가정봉사서비스 이용 경험	322
〈표 14-1-15〉	가정봉사서비스 이용만족도	322
〈표 14-1-16〉	가정봉사서비스 제공기관	323
〈표 14-1-17〉	식사배달 서비스 필요성 정도	323
〈표 14-1-18〉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324
〈표 14-1-19〉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324
〈표 14-1-20〉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325
〈표 14-1-21〉	주택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	325
〈표 14-1-22〉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326
〈표 14-1-23〉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326
〈표 14-1-24〉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327
〈표 14-1-25〉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27
〈표 14-1-26〉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28
〈표 14-1-2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28
〈표 14-1-28〉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29
〈표 14-1-29〉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329
〈표 14-1-30〉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330
〈표 14-1-31〉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330
〈표 14-1-32〉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331
〈표 14-1-33〉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331
〈표 14-1-34〉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332
〈표 14-1-35〉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333
〈표 14-1-36〉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필요성 정도	333
〈표 14-1-3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334
〈표 14-1-3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334

〈표 14-1-3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335
〈표 14-2- 1〉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	336
〈표 14-2- 2〉	경로연금 급여 필요성 정도	336
〈표 14-2- 3〉	경로연금 급여 이용 경험	337
〈표 14-2- 4〉	경로연금 급여 이용만족도	337
〈표 14-2- 5〉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338
〈표 14-2- 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38
〈표 14-2- 7〉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39
〈표 14-2- 8〉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39
〈표 14-2- 9〉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40
〈표 14-2-1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	340
〈표 14-2-11〉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341
〈표 14-2-12〉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341
〈표 14-2-13〉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42
〈표 14-2-14〉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42
〈표 14-2-15〉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43
〈표 14-2-16〉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43
〈표 14-2-17〉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필요성 정도	344
〈표 14-2-18〉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344
〈표 14-2-19〉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345
〈표 14-2-20〉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345
〈표 14-2-21〉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필요성 정도	346
〈표 14-2-22〉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346
〈표 14-2-23〉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만족도	347
〈표 14-2-24〉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제공기관	347
〈표 14-2-25〉	노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필요성 정도	348
〈표 14-2-26〉	노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348
〈표 14-2-27〉	노인 교통수단 지원 필요성 정도	349

〈표 14-2-28〉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 경험	349
〈표 14-2-29〉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만족도	350
〈표 14-2-30〉 노인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50
〈표 14-2-31〉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필요성 정도	351
〈표 14-2-32〉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351
〈표 14-2-33〉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필요성 정도	352
〈표 14-3- 1〉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와 어려움	353
〈표 14-3- 2〉 장애수당 필요성 정도	354
〈표 14-3- 3〉 장애수당 이용 경험	355
〈표 14-3- 4〉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355
〈표 14-3- 5〉 장애수당 서비스 제공기관	356
〈표 14-3- 6〉 장애아동부양수당 필요성 정도	356
〈표 14-3- 7〉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357
〈표 14-3- 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필요성 정도	357
〈표 14-3- 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용 경험	358
〈표 14-3-10〉 장애인 공공시설 내 자판기, 생활편의용품 지원 필요성 정도	358
〈표 14-3-1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필요성 정도	359
〈표 14-3-1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360
〈표 14-3-1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360
〈표 14-3-1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61
〈표 14-3-15〉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361
〈표 14-3-16〉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362
〈표 14-3-17〉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만족도	362
〈표 14-3-18〉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363
〈표 14-3-19〉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63
〈표 14-3-20〉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64
〈표 14-3-21〉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필요성 정도	365
〈표 14-3-22〉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365

〈표 14-3-23〉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필요성 정도	366
〈표 14-3-24〉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 경험	366
〈표 14-3-25〉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367
〈표 14-3-26〉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368
〈표 14-3-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 필요성 정도	368
〈표 14-3-28〉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69
〈표 14-3-29〉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70
〈표 14-3-30〉 장애인 사회복귀훈련·사회적응훈련·자립생활훈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 ..	370
〈표 14-3-31〉 장애인 사회복귀훈련·사회적응훈련·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이용 경험 ..	371
〈표 14-3-32〉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필요성 정도	372
〈표 14-3-33〉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 경험	372
〈표 14-3-34〉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만족도	373
〈표 14-3-35〉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73
〈표 14-3-36〉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74
〈표 14-3-37〉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필요성 정도	375
〈표 14-3-38〉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 경험	375
〈표 14-3-39〉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만족도	376
〈표 14-3-40〉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76
〈표 14-4 1〉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377
〈표 14-4 2〉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 정도	378
〈표 14-4 3〉 어린이집 이용 경험	378
〈표 14-4 4〉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379
〈표 14-4 5〉 어린이집 서비스 제공기관	379
〈표 14-4 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필요성 정도	380
〈표 14-4 7〉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380
〈표 14-4 8〉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만족도	381
〈표 14-4 9〉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381
〈표 14-4-10〉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382

〈표 14-4-11〉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382
〈표 14-4-12〉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383
〈표 14-4-13〉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용 경험	383
〈표 14-4-14〉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384
〈표 14-4-15〉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385
〈표 14-4-16〉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385
〈표 14-4-17〉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386
〈표 14-4-18〉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386
〈표 14-4-19〉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학교급식)	387
〈표 14-4-20〉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387
〈표 14-4-21〉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388
〈표 14-4-22〉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388
〈표 14-4-23〉	학비지원 필요성 정도	389
〈표 14-4-24〉	학비지원 이용 경험	389
〈표 14-4-25〉	학비지원 이용만족도	390
〈표 14-4-26〉	학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90
〈표 14-4-27〉	예체능 교실 필요성 정도	391
〈표 14-4-28〉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391
〈표 14-4-29〉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	392
〈표 14-4-30〉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392
〈표 14-4-31〉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393
〈표 14-4-32〉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393
〈표 14-4-33〉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394
〈표 14-4-34〉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94
〈표 14-4-35〉	출생당시 체중정도	395
〈표 14-4-36〉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395
〈표 14-4-37〉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396
〈표 14-4-38〉	사교육·보육기관 이용하지 않는 이유	397

〈표 14-4-39〉 사교육·보육 이용기관	398
〈표 14-4-40〉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399
〈표 14-4-41〉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400
〈표 14-4-42〉 사교육비·보육비의 경제적 부담	400
〈표 15-1- 1〉 응답자 특성	403
〈표 15-1- 2〉 건강상태	404
〈표 15-1- 3〉 키	404
〈표 15-1- 4〉 몸무게	405
〈표 15-1- 5〉 가구특성	405
〈표 15-2- 1〉 전학경험	406
〈표 15-2- 2〉 1년간 전학 횟수(전학 경험 있는 사람만)	406
〈표 15-2- 3〉 학교생활	407
〈표 15-2- 4〉 학업성적(전체)	407
〈표 15-2- 5〉 학업성적(국어)	408
〈표 15-2- 6〉 학업성적(수학)	408
〈표 15-2- 7〉 학업성적(영어)	409
〈표 15-2- 8〉 친구관계	409
〈표 15-3- 1〉 자아존중감	410
〈표 15-3- 2〉 아동의 우울/불안 경험	410
〈표 15-3- 3〉 아동의 주의집중	411
〈표 15-3- 4〉 아동의 위축	411
〈표 15-3- 5〉 아동의 비행	412
〈표 15-3- 6〉 아동의 공격성	412
〈표 15-4- 1〉 1년간 음주경험	413
〈표 15-4- 2〉 1년간 흡연 경험	414
〈표 15-4- 3〉 훔치기	414
〈표 15-4- 4〉 구타경험	415
〈표 15-4- 5〉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뺏뜯기)	416

〈표 15-4- 6〉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	416
〈표 15-4- 7〉 가출경험	417
〈표 15-4- 8〉 무단결석	417
〈표 15-4- 9〉 폭력씨클(집단) 가입 경험	418
〈표 15-4-10〉 패싸움 경험	419
〈표 15-4-11〉 성추행 피해 경험 I	419
〈표 15-4-12〉 성추행 피해 경험 II	420
〈표 15-4-13〉 놀림이나 조롱 경험	421
〈표 15-4-14〉 따돌림이나 왕따 경험	421
〈표 15-4-15〉 비방이나 헐뜯음 경험	422
〈표 15-4-16〉 협박이나 위협 경험	423
〈표 15-4-17〉 돈을 빼앗긴 경험	423
〈표 15-4-18〉 폭행 경험	424
〈표 15-5- 1〉 신체적 학대	425
〈표 15-5- 2〉 정서 학대	425
〈표 15-5- 3〉 방임	426
〈표 15-6- 1〉 1일 TV 시청시간	426
〈표 15-6- 2〉 1일 인터넷 사용시간	427
〈표 15-6- 3〉 의논상대	428
〈표 15-6- 4〉 고민이나 문제 상담	428
〈표 15-6- 5〉 고민이나 문제 상담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29
〈표 15-6- 6〉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429
〈표 15-6- 7〉 학습지도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0
〈표 15-6- 8〉 가사도우미 방문	430
〈표 15-6- 9〉 가사도우미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1
〈표 15-6-10〉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431
〈표 15-6-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2
〈표 15-6-12〉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432

〈표 15-6-13〉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3
〈표 15-6-14〉 견학, 문화체험 등(당일 활동)	433
〈표 15-6-15〉 견학, 문화체험 등의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4
〈표 15-6-16〉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434
〈표 15-6-1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435
〈표 15-6-18〉 방과 후 보호자	436
〈표 15-6-19〉 방과 후 시간 활용(보호자 없는 아동만 해당)	436
〈표 15-6-20〉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보호자 없는 아동만 해당)	437
〈표 15-6-2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438
〈표 15-6-22〉 아르바이트 종류	438
〈표 15-6-23〉 주된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	439

그림 목 차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 컨소시엄	69
[그림 2-1-1] 지역별 가중치 분포	86
[그림 2-2-1] 비표본오차의 유형	94
[그림 3-1-1] 조사의 단계	96
[그림 3-1-2] 조사표의 구성	97
[그림 3-2-1] 가구용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101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참여상태 영역 논리도	106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및 퇴직금제 영역 논리도	106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109
[그림 3-2-5]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흐름	110
[그림 3-2-6] 가구원용조사표 A.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113
[그림 3-2-7]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114

Abstract

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Descriptive Report

National policies including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with changes of people's economic situation, consumption, a sense of values, poverty and actual conditions of distribution etc. flexibly.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ross-sectional data survey to analyze changes like these.(im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age effect and cohort effec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allowing for this limit. KWPS includes 7,000 sample size of households, and comprises three questionnaires which are for households, individuals over the age of fifteen belonging to households, and special topics(supplements). Respondents to special topic 2006 was children. KWPS samples consist of two parts, which are 3,500 households under 60% of median income and 3,500 households over 60% of that.

First wave survey was conducted after examining thoroughly sampling methods, sample size, questionnaire, survey and sample management of panel survey at home and abroad for this study. We have plan to publish the result of this survey through three kinds of report. One is descriptive report about actual condition of samples, another is in-depth analysis report, and the other is learned book centering around papers in KWPS conference. This report corresponds to the first.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 economic conditions, circumstances, employment, social security, insurance, and welfare needs of households. Particularly, the general inform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of households are very analogous to the results of other cross-sectional data surveys lik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함.
-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WPS)’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을 통합하여 예산 비효율성, 목적 비효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조사개요

- 표본규모는 7,00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실사는 갤럽(Gallup)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5년 1월~12월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함.
-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함.

제3절 조사 및 분석의 한계

- 전년도 기준 조사를 연말에 실시하였으므로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패널 구축 첫해에 조사표 개발-실사-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으며 3개 패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더욱 지체됨.
 - 2007년에 실시되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회상의 문제와 종합소득세가 신고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5월에 조사할 계획임.
-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 체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체계적인 에러 체크(error checking) 시간의 부족으로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 할 문항들이 있음
 - 패널 자료는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년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

제2장 표본추출 개요

제1절 표본의 규모

□ 표본설계

-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위한 조사임.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함.
- 전체적인 표본추출과정은 2중추출(double sampling 또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이며, 모집단에 관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해 최종생계비 계층조사 완료가구 약 24,700여 가구로부터 약 7,072가구를 2단계에 걸쳐 추출함.
- 1단계 표본자료인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함.

제2절 표본추출틀 및 추출방법

□ 1단계 표본추출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 등을 사용하여 총 96개 층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함.

□ 2단계 표본추출

-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함.
- 이때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음.

□ 패널가중치

- W_{bh} 를 패널가중치라 하면, 가중치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구별로 일정규모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구별 추출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중치 (W_{1ij}^*)를 고려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W_{st})를 고려해야하며, 마지막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W_{bst})를 고려함으로 최종적인 패널가구의 가중치를 부여함.
- 1차년도 패널 가중치는 가구가중치, 가구원 가중치, 부가조사인 아동가구원 가중치를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부여함.

제3절 조사완료 가구수 및 가구원수

□ 조사완료가구수 및 가구원수

- 총 446개 표본조사구의 총 7,000가구(일반가구: 3,500가구, 저소득가구:3,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가구 수는 7,072가구임.
- 가구의 총 조사 대상 가구원수는 14,469명이며, 아동용 부가조사의 응답대상이었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수는 총 758명임.

제4절 추정방법

□ 모평균의 추정

$$\widehat{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 \dots}$$

여기서, $W \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는 전체 표본가구에 주어지는 가중치들의 합임.

□ 분산추정식

$$\widehat{V}(\widehat{Y}) = \frac{\left(\sum_{h=1}^L \frac{k_h}{k_h - 1} \sum_{i=1}^{k_h} W_{hi} e_{hi} - \frac{1}{k_h} \sum_{s=1}^{k_h} W_{hs} e_{hs} \right)^2}{\sum_{h=1}^L \sum_{i=1}^{k_h} W_{hi}}$$

여기서 $e_{hi} = \bar{y}_{hi} - \bar{y} \dots$, $e_{hs} = \bar{y}_{hs} - \bar{y} \dots$ 이며, $\bar{y}_{hi} = \frac{\sum_{j=1}^{n_{hi}} W_{hij} y_{hij}}{\sum_{j=1}^{n_{hi}} W_{hij}}$ 인 가중 표본

평균이며, $\bar{y} \dots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로서 전체 표본가구의 가중평균임.

□ 표본오차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제5절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 횡단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 또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별할 수 있음.
-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 오차라 함.

□ 표본오차

-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임.
- 표본오차의 측정은 대체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함.

□ 비표본오차의 관리

- 패널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비표본 오차로서는 패널가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에서 탈락하는 탈락오차 또는 마모오차(attrition error)임.
-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의 형태가 각각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작업이 필수적임.
- 횡단면적 관점에서는 해당 연도의 조사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단위무응답형태로서 무응답가구에 대한 조정 작업이 가능하며, 또한 가구와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이사나 분가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무응답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을 조정하거나 또는 대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패널가구의 대표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패널가구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는 마모오차(attrition bias)는 특정 차수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패널마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다양한 형태의 패널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널가구에 대한 조사 참여를 유도해야 함.

제3장 조사 내용

제1절 조사표의 구성

- 판별조사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본표본 추출을 실시했고, 본조사는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아동부가조사표 3종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음.

제2절 조사문항

-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 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회보험, 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사,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동용 조사표는 아동 가구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제1절 현지조사방법

□ 조사준비

- 본 조사는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수집된 487개 조사구 2만5천 가구 중 7,000가구의 패널가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사 대상 가구에 본 패널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기간의 근접성으로 인한 대상가구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사협조를 제고함.
- 조사원은 한국갤럽이 보유한 면접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

고,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실사연구원 10명, 조사원 13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 18명 등 총 165명임.

- 조사원 교육은 1차 전체 조사원의 집합교육 - 2차 지방 실사단위별 방문교육 - 3차 실사연구원에 의한 개별보수교육 - 4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지도원에 의한 현장교육 - 5차 집합 보수교육의 5단계로 이루짐.

□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함.
-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면접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동안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음.

제2절 조사자료처리

-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슈퍼바이저와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함.
-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음.
-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진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4명의 연구원에 의해 약 1개월간 에러체킹 작업을 실시하였음.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SPSS, SAS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제5장 가구특성

제1절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사항

□ 가구 규모

-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는 4인가구(28.6%), 2인가구(23.3%), 3인가구(21.3%), 1인가구(17.1%) 순임. 저소득가구는 2인가구(35.3%), 1인가구(32.1%), 3인가구(15.0%) 순이며, 일반가구는 4인가구(34.4%), 3인가구(23.5%), 2인가구(19.1%) 순임.

□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남성가구주 가구는 전체 가구 81.8%, 저소득가구 61.9%, 일반가구 88.6%임.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주가 25.3%, 30대 가구주가 24.5% 순이나 저소득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가장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장애를 가진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전체 8.2%, 저소득가구 15.5%, 일반가구 5.7%로 나타남. 또한 전체 가구주의 31%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전체 가구주의 72.8%가 유배우 상태이며,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의 비중이 28.9%, 일반가구에서는 미혼의 비중이 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1.0%, 여성이 69.0%로 여성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20대 미만이 41.0%로 가장 높고, 30대(15.4%), 20대(14.6%) 순임. 소득계층별 연령분포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19.8%)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비율은 3.5%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장애가구원 비율(7.4%)이 일반가구(2.7%)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남. 만성질환 가구원도 일반가구(12.4%)에 비해 저소득가구(31.9%)에서 출현율이 훨씬 더 높음.

제2절 가구구성원의 개인사

□ 가구주의 개인사

- 가구주 부모의 학력은 초졸과 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저소득 가구주 부모의 학력이 일반가구 가구주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가구주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55.5%)이 농촌에서 자랐으며, 42.3%는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남.
- 과반수 이상(51.3%)이 첫 일자리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했으며, 저소득 가구주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31.1%), 일반가구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59.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최근 일자리로는 정규직 임금근로(40.7%)와 자영업(24.8%)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저소득 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36.8%)와 자영업자(35.1%)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가구원의 개인사

- 가구원 아버지는 초졸자(25.3%)와 고졸자(20.9%)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초졸자(31.7%)와 무학(30.4%)이 많았음. 가구원 부모의 직업은 가구주 부모와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가구주 부모보다 낮음.
- 가구원이 아동기에 주로 성장한 곳 역시 농촌(44.9%)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 가구원이 일반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원의 약 1/3 정도(30.6%)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응답함.
- 가구원의 첫 직장은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임금근로(44.4%)가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급가족 종사자(29.8%)가 많았음. 최근 일자리로도 정규직(33.2%)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첫 일자리의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28.3%)의 비율이 높았음.

제6장 경제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근로가능 가구주는 저소득층 가구가 55.4%, 일반 가구는 90% 이상으로 나타남.
 -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저소득층은 65.1%, 일반 가구는 87.7%가 근로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취업비율은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46.5%, 일반가구에서는 86.6%로 나타남.
 - 가구원의 경우 저소득가구나 일반 가구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 일반 가구의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66.0%가 정규직인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13.4%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구주는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31.6%)와 단순노무종사자(30.1%) 비율이, 일반층 가구주는 사무종사자(18.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취업실태를 보면 근속기간의 전체 평균은 10.5년, 1년간 평균 근로기간은 11.1개월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14.8년, 1년간 평균 근로기간은 9.8개월, 일반가구는 평균 근속기간 9.7년, 1년간 평균 근로기간 11.3개월로 나타남.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 미취업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11.6%,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19.0%로 일반 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남.
-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약 14.0개월 정도로 나타남.

제4절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 수급실태 및 욕구

- 전반적으로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 비율이 낮았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7장 가구경제

제1절 소득

□ 경상소득

- 전체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31,689천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26,400천원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살펴 볼 때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8,547천원,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은 39,569천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에, 저소득층은 20,000천원 미만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근로소득

- 일반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78.8%인 반면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36.1%로 일반가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저소득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8,275천원, 사업소득은 4,484천원, 농림축어업소득은 3,047천원, 부업소득은 1,858천원으로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음.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가구의 경우에 소득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들이 하위 카테고리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음.

□ 근로소득 외 소득

- 전체가구와 일반가구에서는 각각의 소득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서는 현금민간보조금(58.6%)과 기타 정부보조금(71.7%)이 있는 가구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이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득이 3,533천원으로 일반가구의 2,778천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재산소득은 500천원 미만(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은 3,000천원 이상(47.0%), 민간보험소득은 1,000에서 1,500천원 미만(29.4%), 현금민간보조금소득은 3,000천원 이상(40.4%), 현물민간보조금소득은 500천원 미만(4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은 1,500에서 2,000천원 미만(19.8%), 기타정부보조금은 500천원 미만(58.9%)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제2절 지출

□ 추가계지출

- 전체가구의 추가계지출은 월평균 2,248천원이고 저소득가구는 969천원, 일반가구는 2,68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 추가계지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50만원~100만원이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가구는 300만원 이상이 33.8%, 200만원~300만원이 30.7%로 나타났음.

□ 총생활비

- 월세, 자가소비액, 이자를 제외한 월평균 총생활비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817천원,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6천원,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이 59천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2,414천원,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44천원,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 80천원으로 나타났음.
- 총생활비 구성비율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92.6%,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이 6.7%이며, 일반가구는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 94.9%, 지원받

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은 3.4%로 나타났다.

□ 항목별 생활비

-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료품비가 303천원으로 31.3%, 보건의료비가 82천원으로 8.5%, 이차지출이 31천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식료품비가 624천원으로 23.3%, 사회보장분담금이 166천원으로 6.2%, 세금이 136천원으로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재산 및 부채

□ 가구의 재산

- 가구의 총재산액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부동산)에 주택가격(자가인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을 합산한 값으로 구성됨. 한편, 순재산액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됨.
- 총재산액은 전체가구 평균이 181,843천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순재산액은 전체가구 평균이 156,891천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전체가구의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되며, 소유부동산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23.0%, 저소득가구 19.9%, 일반가구 24.0%임. 소유부동산의 형태는 소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23.0%)에서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가장 많음. 소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소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23.0%)에서 평균은 229,201 천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점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기타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등이 포함되며, 점유부동산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13.5%, 저소득가구 4.6%, 일반가구 16.5%임. 점유부동산의 형태는 점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13.5%)에서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을 점유한 가구가 가장 많음. 점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점유부동

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13.5%)에서 평균은 60,161 천원이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이 포함됨.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80.8%, 저소득가구 58.7%, 일반가구 88.3%임. 금융자산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예금의 형태가 가장 많음.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은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80.8%)에서 평균은 27,385 천원이며, 전체가구와 일반가구는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고, 저소득가구는 250만원 미만에서 38.9%로 높게 나타남.
- 농기계에는 동력 탈곡기, 경운기, 콤파인 등이 포함됨.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5.5%, 저소득가구 9.6%, 일반가구 4.1%임. 농기계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농기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5%)에서 경운기를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음. 총 농기계의 가격은 농기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5%)에서 평균은 4,720천원이며, 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에는 소, 돼지, 닭, 재고농산물 등이 포함됨.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3.3%, 저소득가구 6.3%, 일반가구 2.3%임. 농축산물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농축산물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3.3%)에서 기타 농축산물을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음. 총 농축산물의 가격은 농축산물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3.3%)에서 평균은 24,926천원이며, 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기타 동산·부동산에는 자동차, 회원권이나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이 포함됨.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63.1%, 저소득가구 중 28.0%, 일반가구 75.1%임. 기타 동산·부동산의 소유형태를 보면, 기타 동산·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63.1%)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음.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기타 동산·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63.1%)에서 평균은 8,144천원이며, 2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가구의 부채

-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됨.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51.8%, 저소득가구 41.0%, 일반가구 55.5%임. 가구부채의 형태를 보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1.8%)에서 금융기관대출이 가장 많음. 총 부채액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1.8%)에서 평균은 48,586천원이며,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연평균 이자상환금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1.8%)에서 평균은 1,780천원이며, 전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상환금 없음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제8장 주거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 주택시설

- 주택유형의 경우, 전체가구(35.9%)와 일반가구(42.8%)는 일반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38.3%)는 일반단독주택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주거위치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상이 높게 나타남. 주거 점유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51.2%)와 일반가구(55.7%)의 경우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가구(47.7%)의 경우 2개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주택의 연건평을 살펴보면, 전체가구(36.8%)와 일반가구(38.1%)의 경우 20평 이상 30평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고, 저소득가구(43.5%)의 경우 10평 이상 20평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하수도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부엌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입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화장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수세식이 높은 비중을 보임. 목욕시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난방시설 사용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스보일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가격

- 주택가격에 관련하여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주택의 임대보증금, 주택의 월세금으로 나누어 조사함. 특히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점유형태가 전세, 보증부월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또한 주택의 월세금은 주택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 사글세인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함.
- 자가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6.4%)에서 평균 146,063천원이며, 전체가구(28.5%)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저소득가구(35.4%)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일반가구(30.7%)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9.1%)에서 평균 48,957천원이며,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전세금을 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7%)에서 평균 11,738천원이며, 전체적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월세금은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5%)에서 평균 199천원이며, 전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 주택 구조·성능

- 주택의 경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료의 양호성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응답(예)이 높게 나타남.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러한 설비가 있다는 응답(예)이 높게 나타남. 또한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정성 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활환경

-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에 대해 전체가구(52.7%)와 저소득가구(64.3%)의 경우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의 경우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51.3%)의 경우 편리하다는 응답(예)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복지관련 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 그리고 자연환경 이용의 편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예)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주거비 부담

- 주택의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에 관해 1순위로 자기돈(77.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61.2%)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비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전체 평균금액은 21,77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원금상환액은 전체 평균금액이 2,150천원으로 나타남. 총 이자액의 경우, 전체 평균금액이 1,440천원으로 나타남. 대출상환액의 연체횟수는 전체적으로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주거복지 관련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에 대해 필요성, 이용경험 여부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에 관하여 조사함.
- 주거복지 관련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각각의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각각의 주거복지 관련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주거관련 생활여건

- 주거관련 생활여건과 관련하여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

한,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이 9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9장 건강 및 의료

제1절 건강상태

- 이번 복지패널 1차 조사에서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의 비율이 약 39.9%로 나타나 일반가구 가구원의 10.6%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 가구 가구원과 일반가구 가구원 모두에서 주요 병명으로는 고혈압, 저혈압, 관절, 요통, 당뇨 등이 높은 비율로 조사됨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 가구원들은 2005년 1년 동안 건강검진을 평균 0.21회, 외래진료는 17.86회, 입원은 0.19회, 평균입원일수는 4.10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 가구원들의 건강검진 0.26회, 외래진료 7.88회, 입원 0.09회, 평균입원일수 1.44일과 비교할 때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두에서 높게 조사됨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 가구원들은 지역 내 병·의원(62.9%), 종합·대학병원(13.0%), 보건소(2.9%)의 순서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가구의 가구원들은 지역 내 병의원(63.1%), 종합·대학병원(7.4%), 한방 병·의원(1.1%)의 순서로 이용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들에 비하여 한방 병·의원을 조금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10장 가족

제1절 가족관계 및 가족지원체계

□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3가지 항목을 조사함.
- 분석결과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전체 가구 47.8%, 저소득가구 25.5%, 일반가구 53.7%임.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부모와의 왕래정도는 1년에 평균적으로 전체가구 34.8회, 저소득가구 35.6회, 일반가구 34.7회임. 또한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는 1년 평균으로 전체가구 93.0회, 저소득가구 76.1회, 일반가구 95.1회임.

□ 가족지원체계

- 가족지원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 유무, 지원제공자수, 지원종류, 지원의 도움정도 4가지 항목을 분석함.
- 분석결과 지원 유무는 전체적으로 가족(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모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전체가구 59.3%, 저소득가구 65.9%, 일반가구 57.6%). 1년 평균 지원제공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성당·절 등의 신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가 가장 많음(전체가구 4.7명, 저소득가구 4.6명, 일반가구 4.7명). 지원종류는 물질적 지원의 경우 주로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로부터 받았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음. 지원의 도움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가족문제

□ 가족문제

- 가구구성원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35.2%)이나, 가구원의 건강(19.9%)

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갈등 대처방법

- 가족갈등 대처방법에서는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들끼리 폭력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을 살펴볼 때,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 가족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약 75%의 가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흡연량을 살펴 볼 경우 일반 가구의 흡연량이 저소득가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평균음주 회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46.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 1회 이하(30.8%), 주 2~3회(15.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음주회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음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주가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소득 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가구원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게 나왔으며, 부부간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과 행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성별로 나눠서 조사한 결과 모욕적인 이야기와 악의적인 이야기에 대한 부부간의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응답률이 적어서 무의미하게 나왔음. 그리고 발생 빈도면에서 볼 때 저소득 가구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일반가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11장 생활시간·만족 및 복지의식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시간

□ 생활시간

- 생활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된 취업활동 등 6가지 활동에 할애하는 평균시간을 조사함.
- 분석결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주된 취업활동,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높음.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집안일이나 자녀 이외의 가족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교육과 훈련,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음.

제2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 생활실태

- 생활실태는 가구구성원의 인터넷 사용여부, 노동환경 유해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함.
- 분석결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가구 56.8%, 저소득가구 24.0%, 일반가구 65.5%임. 노동환경이 유해여부는 노동환경이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이 46.0%로 그렇다(6.5%)보다 높음. 그리고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가구 60.9%, 일반가구 68.4%로 가장 높으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난하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음. 5년후 예상되는 경제적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보통수준의 생활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음.

□ 생활만족

- 생활만족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인 생활상태 8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으나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불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저소득가구는 전체 항목 중 가족의 수입에 대한 불만족이 65.7%로 가장 높음.

제3절 가구구성원의 복지인식

□ 복지인식

- 복지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미래 사회상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신뢰성, 타인의 위급상황시 도움을 줄 의향, 지역사회 내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정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여부, 연간기부액수, 연간자원봉사활동횟수 7가지 항목을 조사함.
- 분석결과 미래 사회상은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이 보통이고, 복지수준이 보통인 사회에 대한 응답이 3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금부담이 대체로 높고, 복지수준이 대체로 높은 사회 28.9%로 나타남.
- 사람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음. 타인의 위급상황시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 지역사회 내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그럴 의향이 없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음. 그리고 연간기부액수는 전체가구 399천원, 저소득가구 221천원, 일반가구 416천원이고, 연간자원봉사활동횟수는 각각 13.5회, 21.6회, 12.7회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연간기부액수는 적지만 연간자원봉사활동횟수는 많음.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 공적연금 가입실태

- 비해당을 제외한 가입실태를 보면 국민연금(95%), 공무원연금(4.0%) 등의 순이었으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가입 비중이 높았음.
-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일반가구(73.1%)가 저소득가구(46.5%)보다 높고, 지역가입자 비중은 반대의 양상을 보임.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함.

□ 공적연금 수급실태

-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저소득가구(9.9%)가 일반가구(5.6%)보다 높게 나타났음.
-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반가구(61.0%)보다 저소득가구(87.8%)에서 더 많았고, 일반가구는 특수지역연금 수급자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음.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뒤를 잇고 있음.
- 국민연금 연금액은 저소득 1,840천원, 일반 2,176천원이고 일시금은 저소득 80천원, 일반 3,478천원으로 나타났음.
- 특수지역연금 연금액은 저소득 10,712천원, 일반 19,923천원으로 나타났음.

제2절 건강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건강보험 가입률은 일반(98.4%)이 저소득(80.0%)보다 높고, 저소득층의 미가입자의 대부분(91.9%)은 의료급여(1,2종)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가구의 10.0%가, 일반가구의 5.5%가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납사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저소득 82.5%, 일반 74.3%).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고용보험 가입실태

- 고용보험 가입률(비해당자 제외)은 저소득가구가 29.2%, 일반가구가 66.9%로 저소

득가구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음.

□ 고용보험 수급실태

- 고용보험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저소득가구 0.6%, 일반가구 0.8%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일반가구는 실업급여(89.8%)와 모성보호급여(8.4%)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은 저소득가구 3,086천원, 일반가구 2,527천원임.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산재보험 가입실태

- 산재보험 가입률(비해당자 제외)은 저소득가구 29.3%, 일반가구 67.0%로 저소득가구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음.

□ 산재보험 수급실태

- 산재보험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저소득가구 0.2%, 일반가구 0.3%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장해급여-연금(82.7%)을 가장 많이 수급했고, 일반가구는 요양급여(36.5%), 휴업급여(20.6%) 등의 순으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재보험 연간 수급액은 (연금기준) 저소득가구 8,249천원, 일반가구 12,371천원임.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 적용 및 가입실태

- 퇴직금제 적용실태(비해당자 제외)는 저소득가구 20.6%, 일반가구 60.4%로 저소득가구의 적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 가입은 저소득가구 3.5%, 일반가구 16.9%로 나타났음.

□ 수급실태

- 퇴직금을 받은 가구는 저소득가구 0.8%, 일반가구 3.0%로 나타났고, 금액은 저소득가구 연간 5,542천원, 일반가구 연간 7,204천원으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을 수급한 가구는 저소득가구 0.1%, 일반가구 0.4%이며 수급액은 저소득가구 연간 1,169천원, 일반가구 연간 7,779천원으로 나타났음.

제13장 공공부조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9%가 신청한 경험이 있음. 신청경험자(n=202)의 급여 신청이유는 기본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서(73.4%), 의료급여를 받기 위하여(7.8%),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7.3%)임.

□ 신청탈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경험자는 급여 신청 후 탈락된 비율(56.2%)이 선정된 비율(38.4%)보다 높음. 수급자 신청탈락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음.
- 신청탈락 이후 가구 생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가장 높고,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임. 2순위 역시 각각 44.2%, 23.7%로 1순위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임.

제2절 수급 및 탈피

□ 수급기간 및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경험가구(n=430)의 수급기간은 12개월 동안 수급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79.5%로 가장 높음.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34.7%),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17.0%) 순으로 나타남.

□ 탈피 예상기간 및 탈피 후 지원필요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피 예상기간은 탈피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75.3%로 가장 높았고,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탈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1.6%에 불과함.
- 탈피 후 필요한 지원항목으로는 절반가량(47.5%)이 의료비 지원을,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0.7%로 나타남.
- 2005년 말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가구의 탈피사유로는 주로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30.3%)이며, 다음으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4%로 많음. 또한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으로는 의료비 지원(43.7%), 주거비 지원(24.2%) 순으로 나타남.

제3절 2005년 이전 기초보장 실태

□ 기초보장 실태

- 기초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급경험, 수급기간, 수급희망여부 3가지 항목을 조사함.
- 2005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은 전체가구 5.8%, 저소득가구 18.7%, 일반가구 1.4%임. 수급기간은 전체적으로 5년 이상 수급받고 있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5년 이상 수급받고 있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음.
- 수급희망여부는 전체적으로 현재 수급자가 아니며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3%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와 희망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각각 35.2%, 44.2%로 높게 나타남.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현재 수급자가 아니며 받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응답이 82.3%로 가장 높음.

제4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형태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를 받고 있는 가구(n=443) 중 51.3%가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30.6%임.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4.3%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2005년 1년간 가구의 생계비 지원, 의료비,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약물 상담서비스, 학대·가정폭력 상담서비스, 부모상담·부모교육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이용만족도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파악함.
- 가구의 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를 보면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3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품지원 서비스와 주택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에 대해서는 10~13% 가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각종 서비스 중에서 약물상담서비스와 학대·가정폭력 상담서비스는 필요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복지서비스 중에서 저소득 가구는 각종 서비스를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음.
- 서비스 이용경험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에서 이용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서비스들의 이용경험은 낮게 나타났고,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음.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이나 종교단체·시민단체를 통한 서비스도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저소득가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공공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제2절 노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전체 가구 중 27.6%인 1,948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주로 건강 문제와 생활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관련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경로연금과 의료비 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지원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노인무료급식 지원,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 가정간호 및 간병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가구가 대부분이었음.

제3절 장애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전체 가구 중 13.9%인 971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보호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22.5%, 장애가구원 보호로 인한 소득활동의 지장 15.4% 순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가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의 어려움(16.8%), 장애가구원의 취업 및 직업 활동의 어려움(16.8%)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장애수당외의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경험한 가구의 수도 매우 적었음.

제4절 아동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전체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 3,005가구(42.5%)를 대상으로 아동(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동(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육아의 어려움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저소득가구 65.3%와 일반가구 56.1%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아동상담·집단 프로그램, 장애아동 특별프로그램, 방과후 지도, 무료급식, 학비지원,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활동, 예체능 교실,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어린이집, 학비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비지원 등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는 저소득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활동이나 예체능 교실과 같은 아동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큰 차이 없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서비스에 이용경험은 보육료 지원, 무료급식, 어린이집,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가 5~10%로 다른 서비스 경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료 지원이나 무료급식, 학비지원은 저소득가구의 이용도가 더 높았음.
-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기관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사회복지관련기관, 학교 등으로 나타남.
- 2005년 1년간 아동이 이 있는 3,005가구를 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아동가구의 78.7%가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중 한명이라도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가구의 20.9%였으며, 저소득가구 38.5%가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가구의 17.7%에 비해 약 20%p 많은 비율임.
-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2,366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별로 최대 5개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의 사교육 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이용 기관수는 2.3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평균 1.7개, 일반가구는 평균 2.4개로 일반가구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 이용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3.7만원으로 저소득층 14.7만원, 일반가구 36.2만원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1만원으로, 저소득가구는 10.1만원, 일반가구는 21.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9.5만원으로 저소득층 4.6만원, 일반가구 10.2만원으로 나타남. 그리고 보육비를 지출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은 6.6만원이고 저소득가구는 3.2만원, 일반가구는 7.0만원으로 나타남.

제15장 아동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 조사대상가구에 포함된 초등학교 4, 5, 6학년(2006년 응답 시기 기준) 아동은 총 759명으로 확인되었고, 조사대상아동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37.6%, 5학년이 29.2%, 6학년이 33.1%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53.3%, 여자가 46.7%를 차지함.
 - 전체조사대상 759명 중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학교 미재학 등의 사유로 자기입식 조사에 응할 수 없는 9명이 제외되어 실제로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총 750명(일반가구 618명, 저소득가구 132명)으로 최종 확정됨.
- 조사대상아동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가구는 전체가구의 8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부모가구는 9.4%, 조손가구는 3.3%로 나타남.
 -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에서는 양부모가구의 비중이 57.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93.3%로 나타났고 또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 26.7%, 일반가구 5.7%였으며, 조손가구의 경우는 저소득가구 15.3%, 일반가구 0.8%로 나타남.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부모가구 비율이 크게 낮은 반면,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가족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건강상태를 물어본 결과 소득집단별 차이 없이 80% 이상의 아동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가구 아동들이 저소득가구 아동

들보다 평균적인 키와 몸무게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2절 학교생활

-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아동들이 저소득가구 아동들보다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영어성적에 있어 소득집단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제3절 생각과 행동

- K-CBCL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주의집중, 위축, 공격성, 비행 등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는 소득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이나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점수는 저소득가구 아동들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제4절 비행

- 음주, 흡연, 흡치기, 빙뜯기, 가출, 성인사이트 방문, 무단결석 등과 같은 세부적인 비행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행의 빈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놀림이나 조롱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45%정도가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따돌림이나 왕따의 경우도 전체 아동의 20% 가까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상당수의 아동들이 놀림이나 왕따와 같은 비물리적인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5절 학대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질문에서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6절 생활 및 서비스 이용

- 아동들의 생활 및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장기간 TV시청의 경우 저소득가구 아동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캠프, 가사도우미, 고민이나 문제 상담, 학습지도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의 경우 저소득가구 아동들이 일반가구 아동보다 약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방과 후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집에서 혼자 논다'고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학원에 간다'고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라 방과후 시간활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아동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 I 부

조사 개요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 조사배경

국가적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여 왔다. 20세기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부스와 라운트리 등의 노동자의 삶과 빈곤조사를 통한 ‘빈곤의 재발견’에 크게 힘입었다. 이후에도 조사연구는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횡단면 자료는 age effect와 cohort effect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닌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 및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정책관련 패널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심의 자활패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패널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문제, 빈곤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이 2005년부터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첫째, 유사한 조사대상에 분석목적만을 달리한 유사 패널의 난립으로 ‘예산 비효율성’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패널들은 예산제약으로 유효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 있는 패널 데

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목적 비효과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복지패널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간에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유사한 주제의 패널을 여러 개 운용함으로써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산절감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둘째,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원구원의 조사 및 연구 인프라와 서울대학교의 학술적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좀 더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 개의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유효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된 조사결과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WPS)’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예산 요구 시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지 않고, 동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통합된 한국복지패널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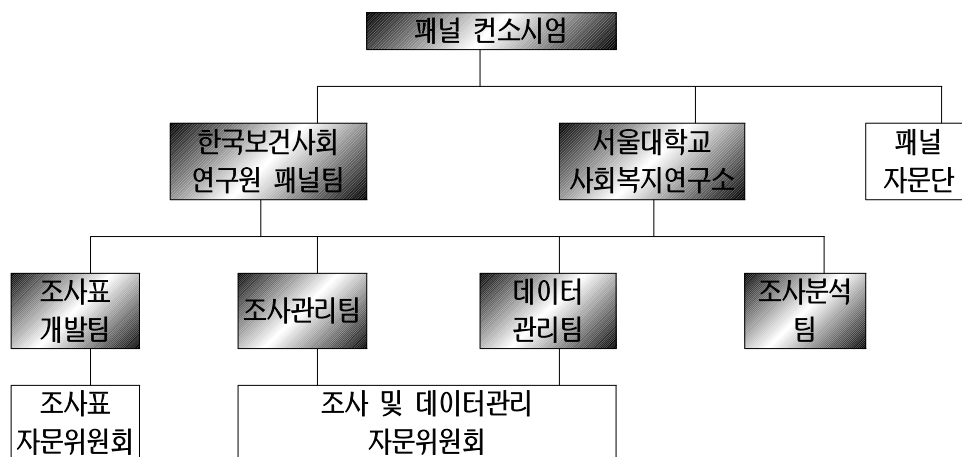
2. 조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출발한 한국복지패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

는 말이다. 그동안 복지관련 패널이 몇 개 있었지만, 표본수 부족,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자료의 공신력·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패널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기존 우리나라의 패널이 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서베이 기관에 조사 의뢰하되, 조사 기관에서 조사 진행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을 파견하여 조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 컨소시엄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학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표를 개발한다. 최근의 복지는 순수 복지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확대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개별가구의 능력, 다양한 복지지표, 개별가구의 능력과 복지시스템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한 후 조사표 개발을 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개발시 패널조사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결과는 매년 개최될 예정인 국내 학술대회에서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을 구축한다. 최근의 흐름은 국가간 제도의 수렴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간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관련 패널 조사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 문항들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제2절 조사개요

1. 표본추출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다. 횡단면 조사인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종단면 조사인 노동 패널의 경우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표본 추출은 제3장에서 소개되므로 여기서는 개요만 기술하고자 한다.

표본규모는 7,000가구^{주1)}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 표본 7,000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세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주2)}.

2. 조사표의 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조사표의 구성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조사표의 경우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개인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

주1) 목표 표본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조사결과 7,072가구가 조사완료되었다.

주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가조사 조사의 경우 아동, 장애인, 노인^{주3)}을 3년 단위로 조사할 계획이다. 즉, 아동의 경우 2006년과 2009년에 조사하고, 장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노인은 2008년, 2011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3. 조사기관 및 방법

한국복지패널의 실사는 갤럽(Gallup)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한 결과 8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갤럽이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면접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4.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제1차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조사의 기준시점은 2005년이다.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5년 1월~12월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현지조사의 시기가 늦은 것은 3개 패널(차상위 패널, 자활패널, 복지패널)의 통합작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조사표 개발 등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제3절 조사 및 분석의 한계

패널조사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2006년 초반부터 조사표를 개발하고, 준비를 하였지만 패널 구축 첫해에 조사표 개발-실사-

주3)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사항목은 가구조사에 있다.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3개 패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더욱 지체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사기간이 연말에 이루어졌다. 전년도 기준 조사를 연말에 실시하였으므로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년에 실시되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매년 5월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시점을 5월로 잡은 것은 회상의 문제와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달이라는 점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다.

시간의 부족은 체계적인 에러 체크(error checking) 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패널은 조사 자료는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년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 체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주4).

주4) 공개버전의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User Guide를 통해 에러체크가 완료된 자료와 집계된 수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제2장 표본추출 개요

제1절 표본의 규모

1. 표본설계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따라서 도시의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는 지향하는 정책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가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이들에 관한 다양한 복지 실태와 욕구 등에 관한 조사하였다.

〈표 2-1-1〉 복지패널 조사의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여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추출과정은 2중추출(double sampling 또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모집단에 관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해 약 24,700여가구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 부터 약 7,072가구를 2단계에 걸쳐 추출한 형태이다.

2. 모집단 분석

패널 조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 설계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를 위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모집단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별 표본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구별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90%자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 표본을 패널조사를 위한 보조정보로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목표 모집단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이며, 가중치 또한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2-1-2> 시도별 모집단 규모(90%)^{주1)}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237,682	14,260,103			
서울	49,440	3,005,559	강원	7,871	462,601
부산	18,165	1,074,589	충북	7,499	450,291
대구	12,128	738,953	충남	9,869	588,216
인천	12,713	737,976	전북	9,275	544,563
광주	6,793	416,208	전남	9,243	544,741
대전	7,268	434,710	경북	14,025	830,597
울산	5,053	308,537	경남	15,857	940,076
경기	49,803	3,021,932	제주	2,680	160,554

주: 1) 표본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확정치가 아님으로 2007년 1월 현재 통계청 발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1-2>로부터 전국 90% 모집단은 총 237,682개 조사구로 구성되고, 이중 서울과 광역시가 111,560개 조사구로서 전체의 약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지역이 126,122개 조사구로서 약5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사구 유형을 일반조

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구분할 경우 <표 2-1-3>과 같이 일반조사구가 141,954개 조사구로 59.7%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40.3%인 95,728개 조사구가 아파트조사구로 파악되었다.

<표 2-1-3> 모집단 조사구 규모 (90%)(동부, 읍면부별)^{주1)}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682	141,954	95,728	191,286	107,066	84,220	46,396	34,888	11,508
서울	49,440	32,243	17,197	49,440	32,243	17,197	-	-	-
부산	18,165	10,817	7,348	17,759	10,557	7,202	406	260	146
대구	12,128	7,070	5,058	11,413	6,723	4,690	715	347	368
인천	12,713	7,076	5,637	12,449	6,839	5,610	264	237	27
광주	6,793	2,982	3,811	6,793	2,982	3,811	-	-	-
대전	7,268	3,812	3,456	7,268	3,812	3,456	-	-	-
울산	5,053	2,698	2,355	4,248	2,281	1,967	805	417	388
경기	49,803	26,311	23,492	40,786	20,519	20,267	9,017	5,792	3,225
강원	7,871	4,852	3,019	4,790	2,405	2,385	3,081	2,447	634
충북	7,499	4,457	3,042	4,550	2,182	2,368	2,949	2,275	674
충남	9,869	6,504	3,365	3,498	1,629	1,869	6,371	4,875	1,496
전북	9,275	5,545	3,730	6,204	2,751	3,453	3,071	2,794	277
전남	9,243	6,301	2,942	4,001	1,818	2,183	5,242	4483	759
경북	14,025	9,529	4,496	6,980	3,846	3,134	7,045	5,683	1,362
경남	15,857	9,561	6,296	9,179	5,028	4,151	6,678	4,533	2,145
제주	2,680	2,196	484	1,928	1,451	477	752	745	7

주: 1) 지역별 총 조사구 수에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는 제외함.

지역적으로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광역시)지역의 읍면부 조사구의 경우 동지역 조사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표본조사구를 배분할 경우 거의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표본배분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추출률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지역의 경우 읍면부의 조사구 분포가 동부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해 일정규모의 표본조사구 배분이 가능한 것을 파악되었다. 참고로 섬(제주도 제외),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는 모집단조사구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표 2-1-4〉 지역별 조사구유형별 동읍면부별 가구 수 분포(90%)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14,260,103	8,378,179	5,881,924	11,567,849	6,360,644	5,207,205	2,692,254	2,017,535	674,719
서울	3,005,559	1,937,041	1,068,518	3,005,559	1,937,041	1,068,518	-	-	-
부산	1,074,589	623,668	450,921	1,052,411	610,218	442,193	22,178	13,450	8,728
대구	738,953	422,825	316,128	696,314	403,510	292,804	42,639	19,315	23,324
인천	737,976	399,023	338,953	722,054	384,745	337,309	15,922	14,278	1,644
광주	416,208	180,490	235,718	416,208	180,490	235,718	-	-	-
대전	434,710	224,936	209,774	434,710	224,936	209,774	-	-	-
울산	308,537	162,328	146,209	260,251	138,114	122,137	48,286	24,214	24,072
경기	3,021,932	1,547,053	1,474,879	2,505,031	1,225,549	1,279,482	516,901	321,504	195,397
강원	462,601	286,812	175,789	285,326	143,046	142,280	177,275	143,766	33,509
충북	450,291	267,315	182,976	279,771	134,390	145,381	170,520	132,925	37,595
충남	588,216	385,980	202,236	216,568	100,425	116,143	371,648	285,555	86,093
전북	544,563	317,258	227,305	369,987	158,310	211,677	174,576	158,948	15,628
전남	544,741	367,739	177,002	234,729	101,893	132,836	310,012	265,846	44,166
경북	830,597	558,120	272,477	419,252	226,562	192,690	411,345	331,558	79,787
경남	940,076	565,284	374,792	553,025	302,719	250,306	387,051	262,565	124,486
제주	160,554	132,307	28,247	116,653	88,696	27,957	43,901	43,611	290

주) 지역별 총 조사구 수에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는 제외함.

지역별 조사구 분포와 함께 지역별 가구수 분포와 동부, 읍면부의 가구분포를 파악한 결과는 〈표 2-1-4〉와 같다. 전국 총가구수는 14,260,103가구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지역이 전체의 21.07%인 3,005,559가구이고, 부산광역시가 7.53%, 대구광역시가 5.18%, 인천광역시 5.18%, 광주광역시가 2.92% 대전광역시 3.05%, 울산광역시 2.16%로 파악되어 가구규모별로 표본가구를 배분할 경우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적은규모의 표본가구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의 21.19%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가구수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5〉 지역별 거처유형별 가구수 분포(90%)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영업용	주택 외
전국	14,310,622	6,413,829	6,005,885	471,593	1,059,478	177,337	182,680
서울	3,005,559	1,314,120	1,102,872	127,632	374,347	26,058	60,530
부산	1,075,315	462,435	471,234	35,028	78,893	14,830	12,895
대구	738,953	358,796	322,970	6,479	39,152	10,376	1,180
인천	743,280	204,810	344,795	18,425	156,846	7,052	11,352
광주	416,208	165,629	235,537	4,725	3,163	4,698	2,456
대전	434,710	179,953	211,830	12,620	23,101	4,491	2,715
울산	308,537	126,086	153,049	7,003	15,618	5,317	1,464
경기	3,021,968	1,035,300	1,488,658	130,898	277,948	27,071	62,093
강원	462,601	252,184	178,717	17,511	3,200	9,199	1,790
충북	450,291	238,526	184,342	13,898	5,504	6,767	1,254
충남	589,406	338,739	204,079	19,486	15,371	8,912	2,819
전북	545,503	292,268	228,926	12,368	3,000	7,611	1,330
전남	581,943	372,056	179,327	10,683	4,492	10,359	5,026
경북	830,597	482,980	281,104	23,333	23,374	16,313	3,493
경남	944,054	490,809	386,318	22,122	20,210	14,667	9,928
제주	161,697	99,138	31,947	9,382	15,259	3,616	2,355

〈표 2-1-5〉와 같이 전국 가구를 거처유형별로 파악해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44.8%와 41.9%로 거처유형별로 가구수를 배분할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과 아파트가구에 표본가구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타 유형의 거처에 대한 추출률을 상향조정하여 일정규모의 거처유형이 표본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기반으로 패널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1차 판별자료의 성격을 지닌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조사구 분포는 지금까지의 모집단 분포를 지역별, 조사구별, 동·읍면별, 거처유형별, 가구규모별로 파악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층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표본가구가 추출될 수 있도록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제2절 표본추출틀 및 추출방법

1. 표본 추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2006.6.30~10.1)”의 표본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는 조사구별 가구 수, 조사구 형태, 주택형태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사구당 평균 60가구인 약 30,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5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광역시 및 도 지역), 조사구 유형별(일반, 아파트), 읍면동별, 주택형태별(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고, 추가로 읍면지역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17개 조사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하였다.

〈표 2-2-1〉 지역별 표본조사구 분포

시 도	계	일반	아파트	계	구	시	군	동	읍	면
서울	110	68	42	25	25	-	-	110	-	-
부산	43	29	14	15	14	-	1	41	2	-
대구	30	23	7	8	7	-	1	27	3	-
인천	30	22	8	8	7	-	1	27	1	2
광주	16	6	10	5	5	-	-	16	-	-
대전	17	8	9	5	5	-	-	17	-	-
울산	14	9	5	5	4	-	1	10	3	1
경기	91	59	32	25	17	16	2	72	4	15
강원	18	9	9	11	-	5	6	10	5	3
충북	16	11	5	8	-	2	6	8	3	5
충남	21	14	7	10	-	3	7	4	6	11
전북	21	16	5	8	2	2	4	13	3	5
전남	22	16	6	11	-	5	6	7	9	6
경북	30	23	7	17	-	7	10	11	4	15
경남	33	19	14	15	-	8	7	15	6	12
제주	5	3	2	3	-	2	1	4	1	-
전체	517	335	182	179	86	59	53	392	50	75

표본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30,573가구 중 단독주택 20,335(66.5%)가구와 아파트 10,083(32.9%)가수로 배분되었고,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면 동부 23,663가구(77.4%)

와 읍면부 6,865가구(22.6%)로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가구규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2-2-2〉 지역별 표본 가구 수

지 역	계			동 부			읍면 부		
	합계	단독 ^{주1)}	아파트	합계	단독	아파트	합계	단독	아파트
전 국	30,573	20,335	10,083	23,663	1,4450	9,213	6,865	5,885	980
서 울	6,438	4,623	1,815	6,438	4,623	1,815	-	-	-
부 산	2,602	1,686	916	2,495	1,632	863	107	54	53
대 구	1,585	949	636	1,426	850	576	159	99	60
인 천	1,722	1,004	718	1,560	842	718	162	162	-
광 주	8,15	424	391	815	424	391	-	-	-
대 전	8,22	491	331	822	491	331	-	-	-
울 산	8,66	528	338	866	528	338	-	-	-
경 기	5,268	2,950	2,318	4,073	2,085	1,988	1,195	865	330
강 원	1,091	908	183	559	376	183	532	532	-
충 북	1,061	708	308	452	285	167	564	423	141
충 남	1,335	995	230	375	178	197	960	817	143
전 북	1,301	987	314	758	510	248	543	477	66
전 남	1,327	914	413	706	293	413	621	621	-
경 북	1,932	1,414	518	910	452	458	1022	962	60
경 남	2,115	1,530	585	1,168	710	458	947	820	127
세 주	293	224	69	240	171	69	53	53	-

주: 1) 주택형태 “단독”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형태를 나타냄.

2. 표본추출방법

가. 1단계 표본추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27만여 개의 조사구중 90%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 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 등을 사용하여 총 96개 층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

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표본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능성 및 접근성과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제주도는 조사지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2단계 표본추출

1단계 표본자료인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2-3〉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패널가구 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표 2-2-4〉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위한 지역별 조사구수와 가구분포현황

지역	조사구수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합계	
	표본 조사구수	조사완료 조사구	일반 표본가구	조사완료 가구수	저소득 표본가구	조사완료 가구수	표본 가구수	조사완료 가구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패널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패널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해하는 것이다. 여타의 국내 패널조사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차 패널가구의 생성을 위해 가능한 조사당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구별 표본가구들을 계통 추출을 적용하여 조사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조사를 거절할 경우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일반소득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특정 조사구의 경우 일반가구가 배분되어 조사당시 거절에 따른 대체가구가 없을 경우 인근 조사구의 해당 소득 계층 가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계당시 7,000가구를 약간 상회하는 조사완료가구 수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표본배분가구수와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3 가중치 조정

가. 1단계 가중치

전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90% 모집단으로부터 각 지역별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으므로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와 표본조사구의 비율로서 PSU(Primary Sampling Unit)의 추출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가중치는 지역별 조사구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로 부여된 가중치이고, 하나의 조사구에 추출된 가구는 동일한 추출확률을 가지게 됨으로 PSU당 가구가중치로 사용된다. 즉,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에 적용한 1단계 가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조사구별 가구수 크기가 다르고,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당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 가구추출확률(selection probability):

$$\begin{aligned}
 p_{ij} &= (a \times p_i)(b_i \times p_{ij}) \frac{n_{ij}}{N_{ij}} \\
 &= \left(a \times \frac{N_i}{N} \right) \left(b_i \times \frac{N_{ij}}{N_i} \right) \\
 &= (ab_i) \times \frac{N_{ij}}{N}
 \end{aligned} \tag{1}$$

여기서 a 는 표본 PSU 수, b_i 는 i 번째 표본PUS 내의 표본 가구수이다. n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가구수이며, N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표본 SSU(Secondary Sampling Unit)내의 총가구수이다. p_i 는 i 번째 PSU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p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표본 SSU가 추출될 확률이다.

○ 2007년 최저생계비 가구가중치 :

$$W_{1ij} = constant \times (1/p_{ij}) \tag{2}$$

이와 함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이주나 조사거절로 인하여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 내에서 무응답 가구와 가장 유사한 가구로 대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한 현장 대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각 조사구당 추출확률(PSU)를 계

산하고,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로부터 조사구당 무응답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외조사구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친 후의 지역별 가중치의 분포를 구하면 <표 2-2-5> 와 같다.

<표 2-2-5> 지역별 표본가구수와 1단계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가구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울	5,433	687.89	125.95	330.92	1273.42
부산	2,135	633.25	125.04	308.03	963.85
대구	1,379	738.58	209.90	311.83	1324.27
인천	1,425	685.41	197.91	178.76	1031.35
광주	765	624.03	67.82	506.41	726.73
대전	816	668.18	67.39	551.39	792.65
울산	716	538.49	218.63	237.10	991.72
경기	4,276	910.10	215.97	521.11	1680.42
강원	754	708.52	324.51	373.84	1216.04
충북	713	756.04	301.12	391.73	1164.16
충남	1,020	762.09	606.53	255.65	2403.57
전북	1,020	693.34	349.38	267.25	1566.89
전남	969	698.31	119.63	519.54	935.94
경북	1,505	646.85	448.63	172.77	1630.08
경남	1,530	699.42	435.66	215.50	1696.13
제주	255	856.53	241.11	600.34	1282.91
계	24,711				

나. 2단계 가중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가중치인 W_{1ij} 와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복지패널조사를 위해 7000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추출확률과 조사가구에 대한 응답확률을 고려한 가중이다. 이를 W_{ph} 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다. 먼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지역별(16개시도)로 구분하였으므로 첫째, 조사구별로 일정규모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구별 추출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중치(W_{1ij}^*)를 고려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W_{st})를 고려해야하며, 마지막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W_{pst})를 고려함으로 최종적인 패널가

구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조사구별 추출가중치는 1단계 가중치 W_{1ij} 를 재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가구패널가중치 :

$$WH001 = W_{1ij}^* \times W_{st} \times W_{pst} \quad (3)$$

여기서 지역별, 조사구별 사후층화과정으로부터 W_{pst} 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가중치조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패널의 가구원에 대한 정의는 “패널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 대한 가구원 가중치는 9개월 이상 주거를 함께한 가구원 중 15세 이상 가구원” 으로서 1차 조사에서 부여된 가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가구조사에서 응답한 가구의 15세 이상(학생제외)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서 각 가구원의 응답확률이 가구응답확률과 동일함으로 가구가중치를 해당 가구원에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 가구원패널가중치 :

$$WP001_k = WH001 \quad (4)$$

여기서 $WP001_k$ 는 k 번째 조사대상가구의 응답 가구원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구원 가중치에 대한 사후 층화 가중치 조정은 이미 가구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원래의 패널 가구가중치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가구에 속한 4~6학년 초등학교 재학생을 조사한 부가조사로서 “아동조사”에 대한 가중치는 원 패널가구의 가중치를 조사대상 아동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조사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KWPS)의 특성상 저소득 가구가 과대표집 됨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아동수가 과대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아동 패널가중치 :

$$WC001_k = WH001 \quad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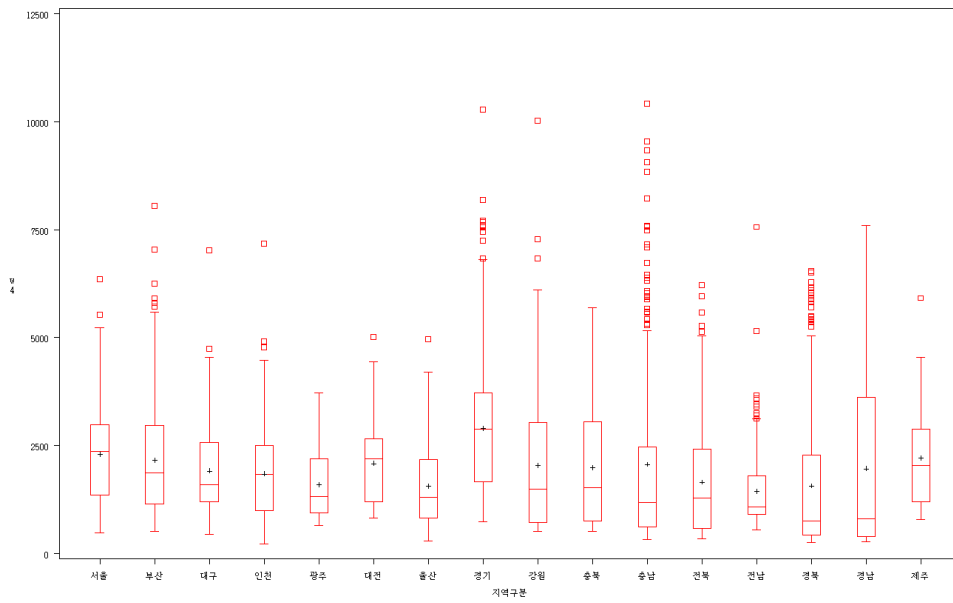
여기서 $WC001_k$ 는 k 번째 조사대상가구의 아동 가구원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표 2-2-6〉 지역별 패널가구와 가중치의 기술통계값

지 역	표본가구수	평 균	표준편차	Q1	중위수	Q3
서 울	1,335	2,298.3	965.1	1,362.7	2,369.4	2,984.6
부 산	528	2,154.9	1,156.7	1,157.0	1,868.8	2,971.3
대 구	422	1,913.2	966.4	1,201.6	1,590.2	2,578.9
인 천	437	1,844.1	1,054.1	1,005.8	1,841.8	2,508.9
광 주	244	1,599.8	744.2	947.7	1,321.1	2,197.7
대 전	208	2,086.0	873.1	1,208.2	2,199.1	2,666.5
울 산	203	1,561.8	959.5	820.8	1,304.0	2,185.6
경 기	1,132	2,900.8	1,394.0	1,663.8	2,882.5	3,725.9
강 원	236	2,036.6	1,602.6	732.0	1,501.7	3,042.9
충 북	220	1,990.7	1,342.0	755.7	1,532.1	3,052.4
충 남	321	2,065.1	2,064.4	628.0	1,186.6	2,478.3
전 북	347	1,652.9	1,249.8	589.6	1,289.3	2,412.0
전 남	377	1,439.1	809.1	919.7	1,084.6	1,800.5
경 북	493	1,567.6	1,592.1	431.6	749.3	2,281.5
경 남	488	1,962.7	1,973.7	400.7	809.5	3,620.6
제 주	81	2,209.9	1,071.5	1,196.1	2,034.9	2,879.4

〈표 2-2-6〉으로부터 지역별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량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대전, 전남지역의 가중치 분포가 타 지역에 비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원지역,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산포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충남지역은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역별 가중치의 산포를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에 대한 상자그림을 작성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지역별 가중치 분포



복지패널가구의 가중치 $WH001$ 의 기술통계량을 구한 결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가구수인 14,312,049 가구에 근접한 값인 14,851,426으로 계산되었고, 평균적으로 1가구가 약 2,100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가구가중치의 기술통계값

	표본가구수	합 계	평균	표준편차	Q1	중앙값	Q3
통계값	7,072	14,851,426	2,100.0	1,367.2	1,045.8	1,799.4	2,947.5

〈표 2-2-8〉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와 통계청 인구센서스 가구 수의 비교

지역	KWPS		인구주택총조사(90%)	
	가중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서울	3,068,223	20.7	3,005,559	21.0
부산	1,137,782	7.7	1,075,332	7.5
대구	807,372	5.4	738,953	5.2
인천	805,892	5.4	743,581	5.2
광주	390,342	2.6	416,208	2.9
대전	433,888	2.9	434,710	3.0
울산	317,044	2.1	308,537	2.2
경기	3,283,723	22.1	3,021,968	21.1
강원	480,627	3.2	462,601	3.2
충북	437,944	3.0	450,291	3.1
충남	662,889	4.5	589,435	4.1
전북	573,551	3.9	545,531	3.8
전남	542,548	3.7	582,815	4.1
경북	772,814	5.2	830,597	5.8
경남	957,788	6.5	944,113	6.6
제주	178,999	1.2	161,818	1.1
합계	14,851,426	100.00	14,312,049	100.0

전체적으로 복지패널가구의 1차년도 가중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와 비교하여 14,851,426가구로 약간 과대 가중된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별 가중치는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9〉 동부와 읍면부 가중 가구수와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의 비교

지역	복지패널			인구주택총조사(90%)	
	패널조사가구	가중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동부	4,923	11,995,463	80.8	11,567,849	81.1
읍면부	2,149	2,855,961	19.2	2,692,254	18.9
계	7,072	14,851,424	100.0	14,260,103	100.0

참고로 동부와 읍면부에 대한 가중치의 합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와 비교해보면 동부의 경우 가중치의 합이 전체의 80.8%이고, 상대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동부 가구수 비율이 80.2%로 패널가중치가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부의 경우 또한 패널가

중가구의 비율이 19.2%로서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의 비율 18.9%와 비교할 때 동부와는 대조적으로 약간 과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1차 표본추출시 읍면부 지역에 대한 추출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분석된다.

제3절 조사완료 가구수 및 가구원수

총 446개 표본조사구의 총 7,000가구(일반가구: 3,500가구, 저소득가구:3,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총 조사된 가구수는 총 7,072가구로 나타나 전체 표본의 101%가 완료된 결과를 보였다. 가구의 총 조사 대상 가구원수는 14,469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부가조사의 응답대상이었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수는 총 759명이었다. 각 지역별로 일반가구, 저소득가구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표 2-3-1>과 같다.

<표 2-3-1> 지역별 조사현황

(단위: 개, 가구, 명)

지역	표본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조사 완료 가구수		조사 완료 가구원수		조사완료 아동수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서울	93	811	506	886	449	2024	823	92	35
부산	33	254	272	277	251	651	439	33	20
대구	25	187	227	204	218	478	395	25	12
인천	28	228	193	247	190	559	356	39	19
광주	15	114	130	123	121	305	214	19	13
대전	14	118	89	132	76	298	137	16	5
울산	14	120	82	124	79	290	134	22	4
경기	76	644	471	706	426	1556	768	105	46
강원	14	102	131	118	118	264	203	16	7
충북	14	108	113	113	107	259	198	22	15
충남	20	153	168	161	160	375	287	23	10
전북	20	138	209	140	207	311	346	14	11
전남	19	104	273	109	268	255	454	21	28
경북	26	152	339	164	329	363	579	25	20
경남	30	229	254	240	248	558	418	28	9
제주	5	38	43	45	36	100	72	5	0
계	446	3,500	3,500	3,789	3,283	8,646	5,823	505	254

제4절 추정방법

200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로부터 시도별(16개)-주택유형별(5개)-동부/읍면부(2개)의 각 층 으로부터 조사구에 대한 추출확률과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층에 대한 추출확률, 최종적으로 응답한 가구의 응답확률로부터 계산된 패널 가중치는 식(3)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표본가구의 최종 가중치를 W_{hij} 라 하고,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에 대한 관찰치를 y_{hij} 라 하면 모평균 \bar{Y} 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추정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hat{\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 \dots} \quad (6)$$

여기서 $W \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는 전체 표본가구에 주어지는 가중치들의 합이며, 이값은 통상적으로 모집단의 크기(N)을 나타낸다.

모평균 \bar{Y} 의 추정량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추정된다.

$$\hat{V}(\hat{\bar{Y}}) = \frac{\left(\sum_{h=1}^L \frac{k_h}{k_h - 1} \sum_{i=1}^{k_h} W_{hi} e_{hi} - \frac{1}{k_h} \sum_{s=1}^{k_h} W_{hs} e_{hs} \right)^2}{\sum_{h=1}^L \sum_{i=1}^{k_h} W_{hi}} \quad (7)$$

여기서 $e_{hi} = \bar{y}_{hi} - \bar{y} \dots$, $e_{hs} = \bar{y}_{hs} - \bar{y} \dots$ 이며, $\bar{y}_{hi} = \frac{\sum_{j=1}^{n_{hi}} W_{hij} y_{hij}}{\sum_{j=1}^{n_{hi}} W_{hij}}$ 인 가중 표본

평균이다. $\bar{y} \dots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로서 전체 표본가구의 가중평균이다.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의 표본오차는 앞에서 계산된 분산 추정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quad (8)$$

표본설계 당시 층화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 통계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심특성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종가중치인 w_{hij} 에 대한 사후층화 가중치 조정하여 해당 특성에 대한 모평균을 식(6)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는 패널조사이므로 모집단구성의 특성이 매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을 가중치에 반영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W_{hij} 가 표본가구의 원 가중치(original weight)라 하고, 외부 자료로부터 조정된 가중치를 W_{hij}^* 라 하고, x_{hij} 를 관심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외부의 보조정보(변수)라 하면, 다음의 보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새로운 W_{hij}^* 를 구할 수 있다.

$$\sum_s W_{hij} x_{hij} = \sum_s x_{hij} \quad (9)$$

이때, 새로운 가중치 W_{hij}^* 는 다음을 최소로 한다.

$$G(W_{hij}, W_{hij}^*) = \frac{\sum_s (W_{hij} - W_{hij}^*)^2}{2W_{hij}} \quad (10)$$

이러한 가중치 조정과정으로부터 계산된 새로운 가중치 W_{hij}^* 는 다음과 같다.

$$W_{hij}^* = W_{hij} (1 + \sum_s x_{hij}' x_{hij}) (\sum_s W_{hij} x_{hij} x_{hij})^{-1} \quad (11)$$

식(11)은 외부의 보조정보로 x_{hij} 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로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대해 조정된 가중치가 된다.

제5절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1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

횡단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에서도 표본조사임으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별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이러한 오차의 측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표본오차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은 대체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표본오차의 산정공식은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며, 통상적으로 표본변동계수(CV)로 측정된다.

나. 비표본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지역별로 조사구내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함께 발생한다. 조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오차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들 모든 오차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다. 표본설계 시에는 추출방법에 따라 표본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표본오차는 측정 가능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비표본오차는 그렇지 않다. 표본오차와는 달리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어려워 사전에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조사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비표본 오차로서는 패널가구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패널에서 탈락하는 탈락오차 또는 마모오차(attrition error)이다.

1) 무응답오차

최근 들어서 조사 환경의 변화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가 생긴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하고, 조사에 응한 가구에서 일부 조사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한다. 가구 단위의 무응답은 무응답 가구를 다른 가구로 교체(substitution)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만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 준다. 표본에 결측이 생기더라도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주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된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의 형태가 각각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종단면적인 관점에서 조사차수가 증감함에 따라 패널가구로서 조사에 참여와 탈락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은 항목무응답의 형태로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우선 횡단면적 관점에서는 해당 연도의 조사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단위무응답형태로서 무응답가구에 대한 조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구와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이 사나 분가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을 조정하거나 또는 대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패널가구의 대표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널가구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는 마모오차(attrition bias)는 특정 차수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패널마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다양한 형태의 패널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널가구에 대한 조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응답오차

과거 조사에 의하면 일부 표본가구의 응답자들이 조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거나 표본가구에서 제공된 자료가 조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다른 경우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응답의 오류는 가구의 실제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설문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응답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거나 조사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응답자가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응답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응답을 요구해서 응답자들이 진실되게 응답하지 않고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오히려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이 더 커질 수 있다.

2. 패널조사에서의 무응답 유형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패널조사의 경우 일반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즉, 패널조사의 특성상, 동일가구의 동일가구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표본가구의 이사, 표본가구의 가구원의 사망, 또는 분가로 인한 가구원들의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1차년도에 응답한 가구가 2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거절로 인해 2차년도에 무응답 가구로 나타나게 되는 웨이브 무응답(wave nonresponse)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응답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무응답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특히 패널조사에서의 무응답은 일반 횡단면 조사에서의 무응답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응답률이 패널조사가 지속됨으로써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 패널조사에서의 비표본오차

일반적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패널조사에서 비표본오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하나는 비관측오차(nonobservation error)이고 다른 하나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이다. 비관측오차는 다시 무응답 오차와 비포함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무응답오차는 표본단위로부터 얻고자하는 정보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며, 비포함오차는 목표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를 갖

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다. 이와 더불어 측정오차는 응답오차와 처리오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답오차는 표본단위로부터 얻은 자료가 부정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이며, 처리오차는 데이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림 2-2-1] 비표본오차의 유형



특히 응답오차의 경우에는 설문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얻을 경우나, 기억오류(memory error), 학습효과로 인한 응답, 조사원 효과, 응답자의 응답을 잘못 기록할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또한 처리오차는 잘못된 에디팅, 코딩, 데이터편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나. 패널의 노후화에 따른 무응답

패널조사와 관련된 주된 관심사중 하나는 패널이 노후화됨으로서 발생하는 패널표본의 탈락률의 증가이다. 횡단면 조사와 같이 패널조사는 응답거절, 부재, 패널참여 부적절, 추적불가 표본 등의 이유로 무응답(또는 결측)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러한 무응답 형태는 초기웨이브 뿐만 아니라 여러 웨이브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무응답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웨이브에서 응답에 실패한 원 표본가구의 단순비율이 아닌, 조사모집단으로부터 탈락(사망, 이민 등)한 표본단위들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조사모집단으로부터 이탈한 표본단위들을 무응답자로 처리하는 것은 무응답률을 과대 계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패널 조사에서 전체적인 무응답률은 웨이브가 계속될수록 증가하며, 추정치의 편향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많은 패널조사로부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패널무응답의 주된 원인으로는 크게 응답 거절과 이동하는 표본의 추적조사 실패이다. 조사에 대한 거절률은 응답자 부담에 의해 증가되며, 응답거절은 웨이브의 간격이 짧을수록 증가하며, 응답자에 대한 응답수요는 매우 크게 된다. 응답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편지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본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본단위에 대한 추적의 문제는 패널웨이브간 시간간격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는 이사가구의 비율증가에 따라 추적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적조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화번호부, 이메일, 가능하다면 자동차 등록번호, 회사정보, 부모, 이웃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무응답 문제는 이전 웨이브에서 무응답한 가구나 가구원에 대해 응답을 얻어내야 하는데서 비롯된다. 어떤 패널조사에서는 한번 웨이브무응답이면, 다음 웨이브에서는 해당가구나 가구원을 표본단위로부터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장 조사 내용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 내용을 다룬다. 주로 조사표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제1절에서는 조사표의 구성, 제2절에서는 조사 문항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표의 구성

1. 조사단계

한국복지패널1차년도 조사는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로 부터 조사 완료된 24,712가구 중 공공부조 전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3,500가구를 추출하여 총 7,000가구를 패널조사 표본으로 하였다. 1차년도 패널조사는 추출된 7,0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 30일~2006년 12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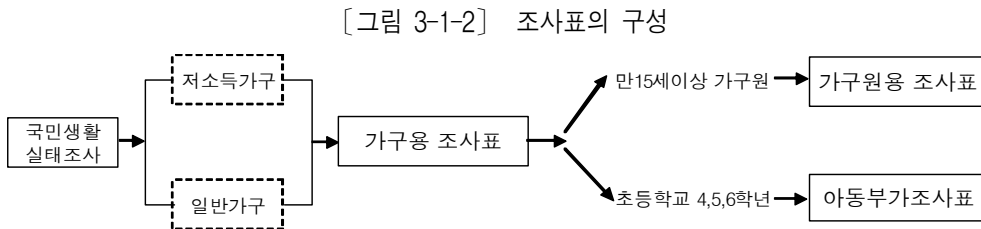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패널표본을 확정하기 위한 가계수지와 관련한 내용과 생활실태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1차년도 조사는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과 사회복지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건강 및 의료,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1] 조사의 단계

조사구분	목적	대상 및 내용
국 민 생 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표본추출 • 저소득층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87개 조사구 24,712가구 • 소득, 재산, 지출, 생활실태 등
1차년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 • 정책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중 7,000가구 (저소득층 3,500가구, 일반가구 3,500가구⁵⁾) • 건강 및 의료,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2.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패널대상 표본 추출을 실시했고, 1차년도 조사는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아동부가조사표 3종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는 매년 동일한 대상을 반복 조사하여 작성된다. 반면 부가조사표는 각 년도마다 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번씩 반복-으로 조사된다. 1차년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년도 패널조사표 각각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는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 기준 기간은 2005년 1년, 기준 시점은 2005년 12월 31일로 했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가구원용 조사표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조사표와 동일하다. 1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되는 아동용 조사표는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조사대상은 2006년을 기준시점으로 한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4,5,6학년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용 조사표의 조사 기준 기간 및 시점은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와 달리, 각각 조사일로부터 지난 1년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5)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나눔.

〈표 3-1-1〉 1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 · 조사방법 ·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아동용 부가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기간: 2005.1.1~2005.12.31 • 기준 응답시점: 200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기간: 2005.1.1~2005.12.31 • 기준 응답시점: 200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전체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대상 기간: 조사일로부터 지난 1년간 • 기준 응답시점: 조사일 현재

제2절 조사문항

가구용, 가구원용, 아동용 각 조사표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 조사표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 조사표는 아동 가구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 1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가구원용	A.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F. 개인사
아동용 부가조사	A. 나의 학교생활 B. 나의 생각과 행동 C. 우리 부모님 D. 나의 친구 E. 나와 나의 가족

이상 3개 조사표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에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관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 아동 부가조사표에 배치되었다.

〈표 3-2-2〉 조사 주제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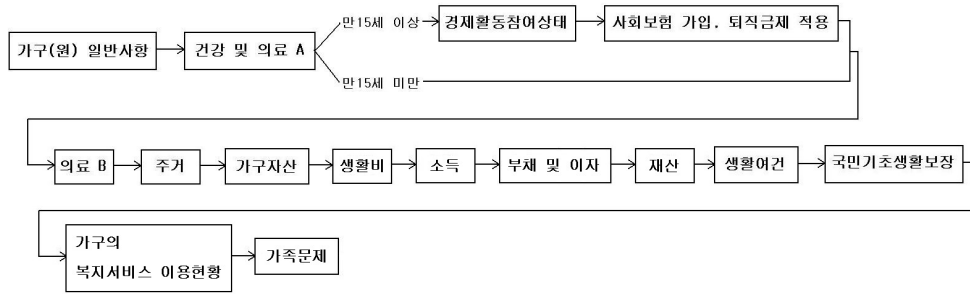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조사표 I. 가구일반사항
	2) 부모세대	가구원용조사표 F.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조사표 F.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조사표 XII.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조사표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조사표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조사표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조사표 V.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조사표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조사표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조사표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조사표 F.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조사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2) 아동 생활실태	아동용 부가 조사표

이상 주제별 각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각 조사표의 각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구조 및 문항의 논리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파악 후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으로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참여상태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제 관련 영역을 조사하고, 가구 전체의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의료급여), 주거, 가계수지 및 재산,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 및 수급,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가족 문제 관련 영역을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1] 가구용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가구용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일반사항 영역은 가구원수,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으로 세부 영역이 나누어진다. 가구원수는 2005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로 주거를 달리하였더라도 생계를 함께 했다면 가구원에 포함된다^{주6)}. 가구원 일반사항은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만성질환, 혼인상태, 종교, 동거 여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일반사항은 가구형태와 기초보장수급형태, 두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일반사항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6) 예를 들어, 기러기 아빠와 학업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는 학생은 가구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가와 주거를 달리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기러기 아빠 1인가구와 학생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3-2-3〉 가구용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
	2)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만성질환,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일반사항 - 가구형태(단독가구,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기타) - 기초보장수급형태(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 중 일부수급, 비해당)	2005. 12. 31 기준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상태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형태, 건강검진횟수, 주요병명	전체 가구원 대상, 2005년 1년간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 -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2005.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 경제활동참여상태 - 2005년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비취업자 - 비경제활동 사유	
IV.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미납기간·미납사유·미가입사유	2005.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건강보험 이용시 문제점, 건강보험 만족도	-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 의료급여 이용시 문제점	-
	3)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만족도	-

〈표 3-2-3〉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VI. 주거	1)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 주택유형, 주거 위치	2005.12.31 기준
	2) 주택 구입비(보증금) - 주택 구입비(보증금) 마련 방법, 주거관련 남은 부채·2005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
	3)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거주지역 생활환경 -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등 -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 문화·사회복지·교육시설·교통 등 거주지역 생활환경	2005.12.31 기준
	4) 주거복지사업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
VII. 생활비	1)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보건의료비,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월평균액	2005년 1년간 월평균액
	2)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3) 총생활비 - 월평균 생활비	
	4)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연간 총금액	2005년 1년간 총액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부업소득	2005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조금 총액, 민간보조금 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표 3-2-3〉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X. 부채 및 이자	1) 부채 -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 깃돈, 기타), 총부채액	2005.12.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	2005년 1년간 총액
X. 재산	1) 부동산 - 소유부동산 형태(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총액, 점유부동산 형태(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총액	2005.12.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자산 -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부은 계돈, 기타), 금융자산 총액	
	4) 기타 재산 -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기타 재산(회원권, 선박 등) 총액	
XI. 생활여건	1) 박탈지표 - 결식·집세 미납·공과금 미납·공교육비 미납·난방 못함·의료서비스 이용 못함·신용불량 경험 여부	2005년 1년간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급여 신청 및 탈락 -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 탈락사유, 신청탈락후 생계해결방법	2005년 1년간
	2) 2005년 1년간 수급이력 - 2005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5년 1년간
	3) 2005년 이전 수급이력 - 2005년 이전 수급 경험여부, 수급 기간, 수급 희망여부	2005년 이전
	4) 제도 탈피 -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5년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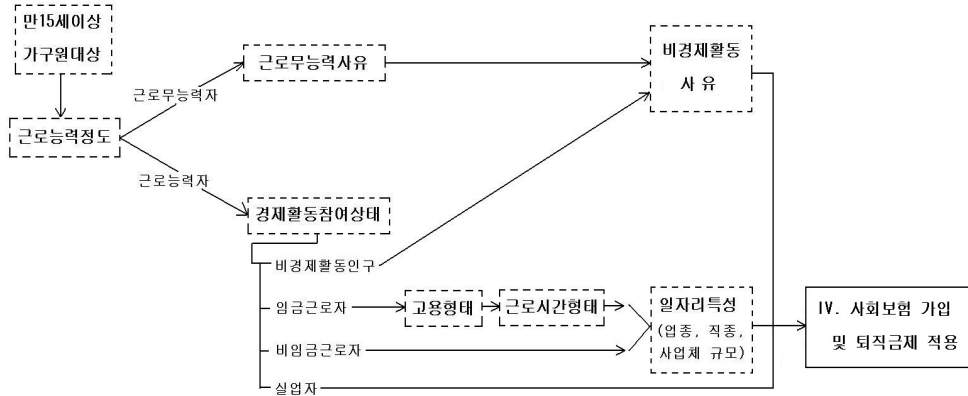
〈표 3-2-3〉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5년 1년간
XIV. 노인	1) 노인부양의 어려움과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노인부양의 어려움, 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5년 1년간
XV. 아동	1) 아동양육의 어려움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부양의 어려움,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5년 1년간
	2) 아동이 건강 - 출생시 체중,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3)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기관, 한달 평균 사교육비, 한달평균 보육비,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정도	
XVI. 장애인	1)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 장애인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5년 1년간
XVII. 가족	1) 가족의 갈등 -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가족갈등 대처 방법	2005년 1년간

한편, 건강 및 의료 영역은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 의료기관 외래 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주요병명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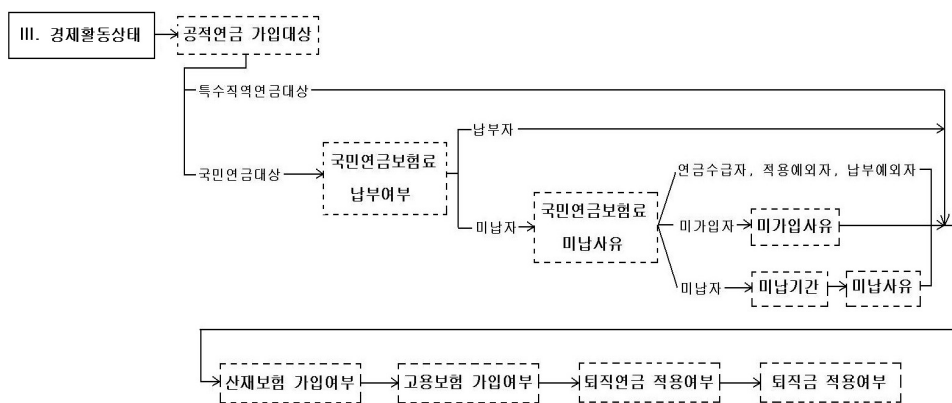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 참여상태, 취업자 일자리 특성, 비취업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상태 영역의 문항들은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흐름을 가진다.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참여상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제 적용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 가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 가입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가입대상 분류 관련 문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미납기간·미납사유·미가입사유 문항으로 구성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는 각 제도의 가입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제 적용 영역의 문항 논리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및 퇴직금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의료B 영역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세분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문은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문제점,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 부문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1종, 2종 여부), 이용시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부문은 이용 만족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주거 영역은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택 구입비,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거주지역 생활환경, 주거복지사업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로 세분될 수 있다.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부문은 주택 유형, 주거 위치 문항으로, 주택 구입비 부문은 주택 구입비(보증금) 마련 방법, 주거관련 남은 부채·2005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거주지역 생활환경 부문은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문화·사회복지·교육시설·교통 등 거주지역 생활환경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복지사업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부문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생활비 영역은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총생활비,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영역으로 세분된다. 문항은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보건의료비,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월평균액,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월평균 생활비,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연간 총금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소득 영역은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원천별 소득 영역으로 세분된다.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부문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으로 2005년 1년간 경제활동상태 및 변화상황 파악 문항, 이를 통해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 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부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천별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파악하는 부문으로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조금 총액, 민간보조금 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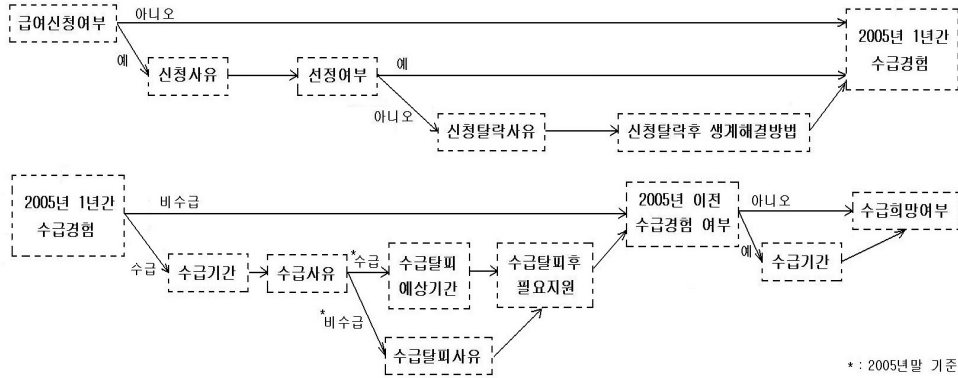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채 및 이자 영역은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 깃돈, 기타), 총부채액,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 영역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영역으로 세분된다. 부동산 부문은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산 부문은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부문은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부은 계돈, 기타)와 총액, 기타 재산은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회원권, 선박 등 기타 동산·부동산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여건 영역은 박탈지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결식 경험여부, 집세 미납 여부, 공과금 미납 여부, 공교육비 미납 여부, 난방 못한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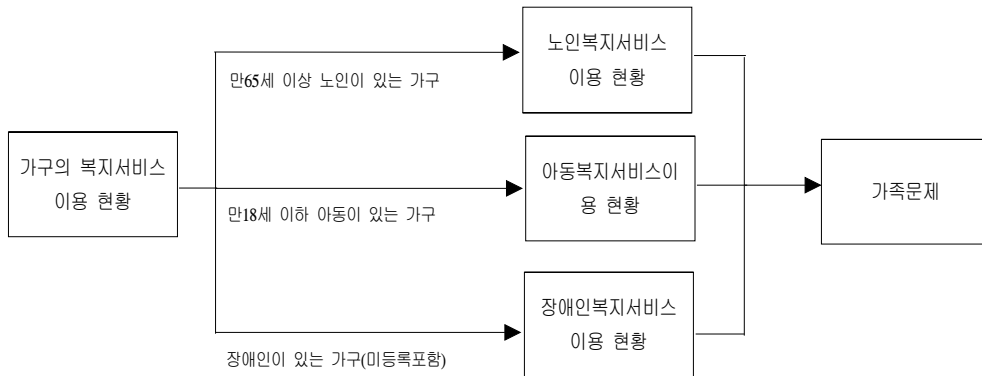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역은 급여 신청 및 탈락, 2005년 1년간 수급이력, 수급 탈피, 2005년 이전 수급이력으로 세분될 수 있다. 신청 및 탈락부문은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1년간 수급이력 부문은 2005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문항으로, 2005년 이전 수급이력은 2005년 이전 수급 경험여부, 수급 기간, 수급 희망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탈피 부문은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은 가구전체의 복지서비스(11개 항목), 노인복지서비스(10개 항목), 아동복지서비스(10개), 장애인복지서비스(17개 항목)로 구분하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영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각각 2개까지 파악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 부분에서는 가구의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현황과 지출규모 및 지출부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영역에서는 가족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2개까지 파악하였고,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2-5]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흐름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파악은 조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한 후, 만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응답하고,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응답하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에 응답한다. 그리고 가구 전체의 가족문제와 갈등해결에 대해 응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가구원용 조사표는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퇴직연금,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과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4> 가구원용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공적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2005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산재보험 일시금 총액, 산재보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 수급여부, 개인연금 일시금 총액, 개인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 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재직중인 직장의 퇴직금제 또는 종업원퇴직보험 실시(가입) 여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수급여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유형 - 근로유형	2005.12.31 기준
	2) 취업자 - 실직경험여부, 실직 기간, 실직사유, 현직장 근속년수, 근로 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2005년 1년간
	3) 미취업자 - 구직활동 여부,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취업의사, 희망임금, 자활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2) 생활만족 - 건강상태 만족도, 가구 소득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 복지의식 -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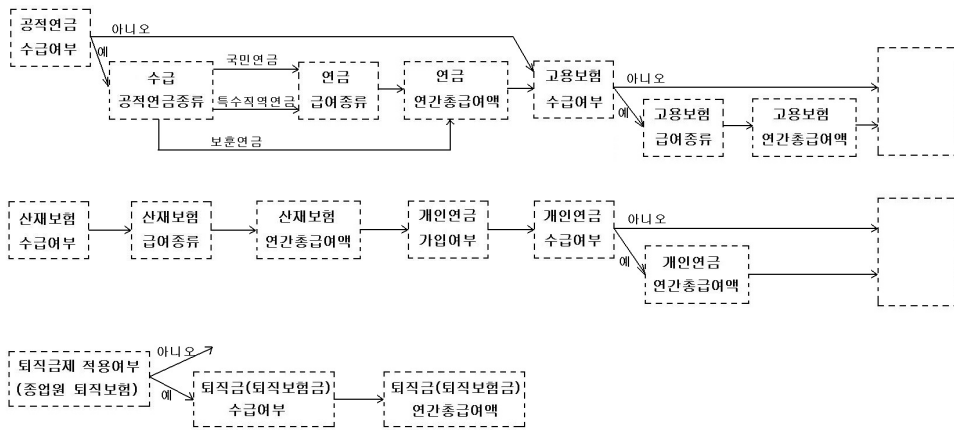
〈표3-2-4〉 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활동 -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이웃에 대한 도움 제공 의사,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05년 1년간
	2) 부모님과와의 접촉정도 -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의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	
	3) 사회적 지지체계 - 도움을 준 사람 수, 도움의 종류, 도움정도	
	4) 생활시간 - 하루 평균 근로활동·집안일·보육·간병·교육 및 훈련·여가활동 시간	
E.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1)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2005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존중감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또는 조사시점 기준
	3) 부부관계 -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2005년 1년간
F. 개인사	1) 아동기 -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 부모·부모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 여부	
	2) 부모님 -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이력 - 만15세 이후 첫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가장 최근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 기술 직종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영역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및 퇴직보험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공적연금 부문은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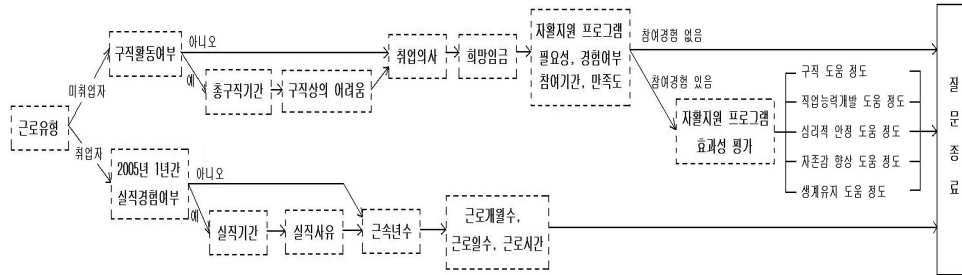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공적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부문은 각각 수급여부, 급여종류, 일시금 총액, 급여 수급 개월수 및 연간 총현금급여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6] 가구원용조사표 A.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퇴직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근로 영역은 근로유형, 취업자, 미취업자 관련 영역으로 세분된다. 먼저, 2005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유형을 묻는 문항을 통해 취업자 응답 부문과 미취업자 응답부문으로 구분된다. 취업자 응답 부문은 2005년 1년간 실직경험 여부, 실직기간 실직사유, 현 직장 근속년수, 연간 근로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업자 응답 부문은 구직활동 여부,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취업의사, 희망임금, 자활지원 프로그램 각각의 필요성·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구직 도움 정도, 직업능력개발 도움정도, 심리적 안정 도움 정도, 자존감 향상 도움 정도, 생계유지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7]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영역은 생활실태, 생활만족, 복지의식 부문으로 세분된다. 생활실태부문은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주관적 경제생활상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만족 부문은 건강상태, 가구 소득,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7개 부문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의식은 세금 부담 정도와 복지수준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영역은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활동, 부모님과의 접촉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생활시간 부문으로 세분된다.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활동 부문은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이웃에 대한 도움 제공 의사,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과의 접촉정도 부문은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의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의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 systems)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나 취업,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각 도움처의 도움을 준 사람 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의 도움의 종류와 만족도는 주된 도움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시간 부문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하루 평균 근로활동·집안일·보육·간병·교육 및 훈련·여가활동에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은 생활습관, 정신건강, 부부관계 부문으로 세분된

다. 가구원의 생활습관은 흡연여부 및 흡연량,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을 파악하였고, 또한 음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알코올 위험성은 NIAAA(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구정성(specification)이 높에 알코올 음용에 대한 선별도구로 사용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진단척도인 CAGE를 이용하였다. 가구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울감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우울감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부부관계는 가정폭력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정폭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응답자 자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은 본인이 배우자에게 한 행동과 배우자가 본인에게 한 행동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구원조사표 마지막 영역은 개인사 부문이다. 개인사 영역은 Special Issue 조사의 성격 을 띄고 있다. 본조사 개인표본에게 일회성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아동기 환경 및 중요 사건, 부모님 관련, 직업이력, 직업기술 영역으로 세분된다. 아동기 부문은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부모·부모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 관련 부문은 부모님의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를 응답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이력 부문은 첫 직장부터 최근 직장까지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기술 부문은 보유 직업기술 종류와 직종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아동부가조사표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 5, 6학년 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자신에 대한 생각과 행동, 아동학대와 방임, 또래관계, 아동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동부가조사표의 조사영역 및 세부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5〉 아동용 부가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학교생활	사회심리적 학교환경(9문항)	조사시점 기준
	학교성적(전과목 평균,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등 4문항)	
II. 생각과 행동	자아존중감(13문항)	조사시점 기준
	우울/불안(13문항)	조사시점 기준 지난 6개월 간
	주의집중(11문항)	
	위축(9문항)	
	공격성(19문항)	
	비행(24문항)	
	학교폭력 피해경험(6문항)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III. 아동학대	1) 신체적 학대(5문항)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2) 정서적 학대(3문항)	
	3) 방임(7문항)	
IV. 또래관계	1) 또래애착(4문항)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2) 친구의 비행경험(6문항)	
V. 아동 및 가족정보	1) 아동 개인 - 건강상태와 키, 몸무게, 의논상대, 하루 TV 시청 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복 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	조사시점 또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2) 가족 - 가족수, 방과후 보호자, 방과후 방치되는 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 등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의 경험

학교생활 영역은 아동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학교환경(혹은 학교적응)과 학교성적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은 9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고, 학교성적은 전과목 평균성적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세 과목의 과목별 성적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생각과 행동 영역은 7가지 영역(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공격성, 비행, 학교폭력피해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3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나타낸다. 우울/불안(13문항), 주의집중(11문항), 위축(9문항), 공격성(19문항), 비행(12문항) 등은 K-CBCL(Achenbach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등이 번안함 척도) 중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비행은 K-CBCL 외에 음주, 흡연, 무단가출, 훔치기, 패싸움 등 10가지 비행경험정도와 성추행 피해경험에 해당하는 2문항을 합하여 총 12문항에 비행관련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따돌림, 뺨뜯기, 폭행 피해 경험 등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영역은 총 15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5문항), 정서적 학대(3문항), 방임(7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영역은 10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또래애착(4문항)과 친구의 비행경험(6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친구의 비행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아동 및 가족정보 영역은 아동이 느끼는 건강상태와 키, 몸무게, 의논상대, 하루 TV 시청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생활과 관련된 문항에는 가족수, 의논상대, 방과후 보호자, 방과후 방치되는 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제1절 현지조사방법

1. 조사준비

가. 사전안내문의 발송

본 조사는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수집된 487개 조사구 2만5천 가구 중 7,000가구의 패널가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사대상 가구에 본 패널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기간의 근접성으로 인한 대상가구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사협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전안내문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대상가구 전체에 대하여 발송되었다.

나.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원은 한국갤럽이 보유한 면접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실사연구원 10명, 조사원 13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 18명 등 총 165명이었다.

조사원 교육은 1차 전체 조사원의 집합교육 - 2차 지방 실사단위별 방문교육 - 3차 실사 연구원에 의한 개별보수교육 - 4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지도원에 의한 현장교육 - 5차 집합 보수교육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전체 조사원 집합교육은 2006년 10월 28일(1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에 의해 교육내용별로 분담, 실시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① 조사의 취지와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에 따른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조건표, 사회복지

지제도 참고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명부 활용방법과 조사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방문시 인사말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차 지방 실사단위별 방문교육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묶인 한국갤럽의 지방실사실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한국갤럽 연구진이 방문하여 각 실사소속의 조사원과 실사연구원, 에디터들에게 주요 내용을 재교육하고, 1차교육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차 실사연구원에 의한 개별보수교육은 참고자료 활용방법 및 대상가구 방문시 주의사항, 조사구별 표본리스트, 조사표, 답례품 관리 방법 등 실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 및 조사표에 대한 추가지침사항을 조사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주안을 두고 진행되었다.

다음 4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지도원에 의한 현장방문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담당, 진행하였던 조사지도원을 각 조사구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초기 조사원의 조사구 및 대상가구 진입을 돕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조사표를 실사지침에 맞게 진행하는지를 관찰, 점검하여 보수교육이 필요한 조사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지침을 추가 전달하였다.

4차까지의 훈련교육 이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원들을 선별해, 다시 2006년 12월 6일(1일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합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가. 조사기간 및 현지조사의 운영

현지조사는 2006년 11월 1일~2006년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특히 조사의 초기단계에는 각 지방 실사단위별로 연구진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들이 방문해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애로사항이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협의를 거쳐 추가지침 사항을 정리, 교육하였다.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면접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면접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응답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지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자료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수퍼바이저와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오류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지도원과 전화검증원이 최종 점검작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다. 코딩/펀칭 작업은 20여명의 코딩요원 및 자료입력요원에 의해 약 30일간 실시되었다.

코딩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에리체킹 작업을 실시하였다. 에리체킹 작업은 4명의 연구원에 의해 약 1개월간 진행되었다.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들어갔으며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SAS 등이었다.

제 II 부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제5장 가구 특성주7)

제1절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1.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대상 가구들을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타가구(76.0%)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독가구(17.1%)도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는 5.3%, 부자가구는 1.4%이며,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균등화된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에서는 기타가구가 82.4%로 저소득가구의 57.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독가구와 모부자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각각 32.1%, 9.7%)가 일반가구(각각 12.0%, 5.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저소득가구에서만 나타났다.

<표 5-1-1> 가구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가구	17.1	32.1	12.0
모자가구	5.3	8.2	4.3
부자가구	1.4	1.5	1.3
소년소녀가장 가구	0.3	1.2	0.0
기타가구	76.0	57.1	82.4
계	100.0	100.0	100.0

주7) 이하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의 값이다.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5-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구원수가 4명 이하 가구가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4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2명(23.3%), 3명(21.3%), 1명(17.1%) 순이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비중이 34.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23.5%, 2인 가구 21.3%의 순인데 비해, 1인 단독가구(11.9%)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중이 35.3%, 1인 가구 32.2%로 1,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15.0%, 4인 가구 11.7%의 순이었다. 또한,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5명 이상 가구규모를 가진 가구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가구규모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가구규모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명	17.1	32.1	11.9
2명	23.3	35.3	19.1
3명	21.3	15.0	23.5
4명	28.6	11.7	34.4
5명	7.6	4.3	8.7
6명	1.8	1.4	2.0
7명 이상	0.4	0.2	0.4
계	100.0	100.0	100.0

2.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복지패널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1-3>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81.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61.9%, 여성가구주가 38.1%, 일반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88.6%, 여성가구주가 11.4%로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중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주가 25.3%, 30대 가구주가 24.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1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30대 가구주가 30.0%, 40대 가구주가 28.6%로 근로활동이 활발한 30, 40대 가장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정이 46.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고졸 이하(35.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졸(22.2%), 초졸(20.8), 중졸(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39.0%), 대졸(27.4%), 중졸(10.6%), 초졸(10.4%)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가 51.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3.6%), 중졸(14.6%), 대졸(7.0%)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일반가구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저학력임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장애를 가진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8.2%였으며, 이중 1, 2급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8%, 3급 이상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15.5%로 일반가구의 5.7%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3.9%로 일반가구의 1.0%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표 5-1-3〉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81.8	61.9	88.6
	여성		18.2	38.1	11.4
연령	20세 미만		0.1	0.2	0.1
	20~30세 미만		6.1	1.9	7.5
	30~40세 미만		24.5	9.8	30.0
	40~50세 미만		25.3	15.7	28.6
	50~60세 미만		16.5	13.6	17.4
	60~65세 미만		8.2	12.1	6.8
	65세 이상		19.3	46.7	10.0
학력	초등졸 이하		20.8	51.4	10.4
	중학교졸 이하		11.6	14.6	10.6
	고등학교졸 이하		35.1	23.6	39.0
	전문대졸 이하		6.3	2.4	7.6
	대학교졸 이하		22.2	7.0	27.4
	대학원졸 이상		4.0	1.0	5.1
장애	비장애인		91.8	84.5	94.3
	장애인		8.2	15.5	5.7
	중증장애인(1,2급)		1.8	3.9	1.0
	경증장애인(3급 이상)		5.4	9.7	4.0
	비등록장애인		1.0	2.0	0.7
만성질환	비해당		69.0	40.7	78.7
	있음		31.0	59.3	22.3
	3개월 미만 투병·투약		1.0	1.8	0.7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0.6	0.9	0.5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9.4	56.6	20.1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 15세 이하)		0.3	0.3	0.3
	유배우		72.8	52.9	79.6
	사별		11.4	28.9	5.5
	이혼		5.5	10.3	3.9
	별거		1.5	2.5	1.2
	미혼		8.4	5.1	9.5
종교	있음		49.4	52.9	48.2
	없음		50.3	47.0	51.5
	무응답		0.3	0.2	0.3
동거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9.0	98.9	99.0
	비동거		1.0	1.1	1.0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0.6	0.2	0.7
	해외 근무 중		0.1	0.0	0.1
	입원, 요양		0.1	0.2	0.0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1	0.1	0.1
	분가		0.0	0.1	0.0
	사망		0.1	0.1	0.1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0.0	0.0	0.0
	기타		0.1	0.3	0.0
	계		100.0	100.0	100.0

전체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31.0%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59.3%로 일반가구(22.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56.6%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72.8%가 2005년 현재 유배우 상태에 있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의 비중이 28.9%, 2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가구에서는 미혼의 비중이 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49.4%)과 없는 사람(50.3%)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으며, 저소득가구에서는 유종교자 비율이, 일반가구에서는 무종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들 비동거 가구주 절반 이상은 국내 다른 지방의 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입원과 요양으로 인한 비동거 가구주도 약간 있었다.

3. 가구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5-1-4>와 같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은 31.0%, 여성은 69.0%로 전체 가구주의 70% 이상이 남성이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를 포함할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미만인 경우가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30대(15.4%), 20대(14.6%), 60대 이상(11.6%)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6.8%로 일반가구의 8.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가구원에는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력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구원의 학력분포는 초졸 이하(재학포함)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재학 포함)가 25.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학력분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에서는 초졸 이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고졸이상 고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중 장애인의 비중은 3.5%였으며, 이 중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1.3%,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이 1.9%를 차지했다.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7.4%로 일반가구의 2.7%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중에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15.6%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저소득가구 31.9%, 일반가구 12.4%).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는 30.4%, 일반가구는 11.5%로 소득집단간에 약 세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유배우자 비율은 39.7%였으며, 혼인 비례당자(남자의 경우 17세 이하, 여자의 경우 15세 이하)가 36.0%, 미혼자가 19.3%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비중은 소득집단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가구원(50.4%)과 없는 가구원(49.2%)의 비중은 가구주의 종교유무 현황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은 2.3%였으며, 이 중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 가구원이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동거 가구원의 비율은 저소득가구(1.9%)에 비해 일반가구(2.4%)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4〉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31.0	29.2	31.3	
	여성		69.0	70.8	68.7	
연령	20세 미만		41.0	38.6	41.5	
	20~30세 미만		14.6	8.5	15.8	
	30~40세 미만		15.4	10.1	16.4	
	40~50세 미만		10.3	7.4	10.9	
	50~60세 미만		7.2	8.7	6.9	
	60~65세 미만		3.2	7.0	2.5	
	65세 이상		8.4	19.8	6.1	
학력	미취학		13.2	9.9	13.9	
	초졸이하		26.3	43.3	23.0	
	중학교졸 이하		12.8	13.8	12.6	
	고등학교졸 이하		25.5	22.5	26.1	
	전문대졸 이하		6.2	3.2	6.7	
	대학교졸 이하		14.9	6.9	16.4	
	대학원졸 이상		1.1	0.4	1.2	
장애	비장애인		96.5	92.6	97.3	
	장애인		3.5	7.4	2.7	
	중증장애인(1, 2급)		1.3	2.6	1.0	
	경증장애인(3급 이상)		1.9	3.7	1.6	
	비등록장애인		0.3	1.1	0.2	
만성질환	없음		84.4	68.1	87.6	
	있음		15.6	31.9	12.4	
	3개월 미만 투병·투약		0.4	0.5	0.4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0.6	1.0	0.6	
	6개월 이상 투병·투약		14.6	30.4	11.5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 15세 이하)		36.0	32.9	36.6	
	유배우		39.7	44.0	38.9	
	사별		4.3	6.0	4.0	
	이혼		0.5	1.0	0.4	
	별거		0.2	0.2	0.2	
	미혼		19.3	15.9	20.0	
종교	있음		50.4	51.4	50.2	
	없음		49.2	48.4	49.3	
	무응답		0.4	0.2	0.5	
동거여부	동거		97.7	98.0	97.6	
	비동거		2.3	2.0	2.4	
	다른 지방에 근무		0.5	0.4	0.5	
	해외 근무		0.0	0.0	0.0	
	학업		1.5	1.0	1.6	
	입원, 요양		0.1	0.2	0.1	
	가정분화로 인한 별거		0.0	0.0	0.0	
	가출		0.0	0.0	0.0	
	분가		0.1	0.2	0.0	
	사망		0.1	0.2	0.1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0.0	0.0	0.0	
	기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제2절 가구구성원의 개인사

1. 가구주의 개인사

가. 가구주 부모세대 특성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은 다음 <표 5-2-1>, <표 5-2-2>와 같다.

먼저 가구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초졸과 무학이 각각 28.5%와 2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졸(14.2%), 중졸(11.6%)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 아버지의 무학 비율이 46.8%로 일반가구의 2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초졸 이상 정규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일반가구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16.8%로 저소득가구의 6.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5-2-1>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 - 아버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육수준	무학	28.1	46.8	21.8
	서당졸	7.8	11.6	6.5
	초등학교졸	28.5	18.1	32.0
	중학교졸	11.6	7.4	13.0
	고등학교졸	14.2	6.4	16.8
	대학(전문대)졸	1.2	0.5	1.4
	대학교졸	4.5	1.9	5.4
	대학원졸	0.4	0.2	0.5
	모름/무응답	3.7	7.2	2.6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가구주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43.1%, 초졸이 32.8%로 전체적으로 가구주 아버지의 교육이수 수준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이수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주 어머니의 무학 비율은 64.6%로 일반가구 가구주 어머니의 무학 비율 35.8%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반대로 가구주 어머니의 고졸 비율은 일반가구 8.7%, 저소득가구 3.0%로 일반가구가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 정도와 자녀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2-2>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 - 어머니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육수준	무학		43.1	64.6	35.8
	서당졸		2.5	3.3	2.3
	초등학교졸		32.8	18.1	37.9
	중학교졸		9.4	4.4	11.1
	고등학교졸		7.3	3.0	8.7
	대학(전문대)졸		0.4	0.1	0.6
	대학교졸		0.9	0.4	1.1
	대학원졸		0.0	0.0	0.0
	모름		3.5	6.2	2.6
계			100.0	100.0	100.0

가구주 부모의 주된 직업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3>과 <표 5-2-4>와 같다. 먼저 가구주 아버지의 과반수 이상인 56.0%가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직(8.7%), 기능직(5.5%), 단순 노무직(5.2%)의 순이었다. 소득 집단별로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것은 일반가구 가구주 아버지의 경우 화이트칼라 종사자(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저소득가구 가구주 아버지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표 5-2-3〉 가구주 부모의 주된 직업 - 아버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0
	전문가	1.9	1.2	2.2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7	1.5	3.1
	사무종사자	8.7	4.4	10.1
	서비스 종사자	4.1	2.3	4.8
	판매 종사자	8.7	6.4	9.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56.0	66.5	5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5	3.7	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1.5	1.3
	단순 노무 종사자	5.2	5.1	5.2
	직업군인	1.0	0.2	1.2
	무직	0.9	1.2	0.8
	기타	1.9	2.7	1.7
	모름/무응답	1.2	2.6	0.7
	비해당	0.1	0.0	0.1
	계	100.0	100.0	100.0

가구주 어머니의 경우에도 54.3%가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주부였던 경우가 3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볼 때 저소득가구 가구주 어머니가 주부였던 비율이 21.2%인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33.5%였다는 점이다. 가구주 어머니의 경우 가구주 아버지에 비해 직업분포가 비교적 단순해서 주부를 제외하고는 농림어업, 판매 및 서비스 직종, 단순노무직종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가구주 부모의 주된 직업 - 어머니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	0.0	0.1
	전문가		0.3	0.3	0.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2	0.2	0.2
	사무종사자		0.3	0.2	0.3
	서비스 종사자		2.6	1.4	3.0
	판매 종사자		6.1	4.0	6.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54.3	65.8	5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5	0.3	0.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1	0.0	0.1
	단순 노무 종사자		2.9	2.5	3.0
	직업군인		0.1	0.1	0.1
	주부		30.4	21.2	33.5
	무직		0.2	0.1	0.2
	기타		1.0	1.4	0.8
	모름/무응답		1.2	2.6	0.7
	비해당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나. 가구주 개인사

가구주가 만0세~17세 사이 아동기에 주로 성장한 지역의 특징은 <표 5-2-5>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농어촌(읍면지역)에서 성장한 경우가 55.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서 성장한 경우가 24.6%, 중소도시(기타 시도)에서 성장한 경우는 18.7%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아동기를 농어촌에서 보낸 사람의 비율 66.4%로 일반가구 가구주의 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일반가구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5〉 가구주 아동기(만 0~17세) 주로 성장한 곳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로 성장한 곳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4.6	19.1	26.5
	중소도시(기타 도시)		18.7	12.0	20.9
	농어촌(읍면지역)		55.5	66.4	51.9
	모름/무응답		1.2	2.5	0.7
		계	100.0	100.0	100.0

가구주의 아동기(만0세~17세)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5-2-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구주의 아동기 생활수준은 보통(44.4%), 가난(33.0%), 부유(11.0%)의 순이었으며, 매우 가난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9.3%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가구 가구주 중 아동기에 매우 가난했다고 회상한 비율은 16.3%로 일반가구 가구주의 6.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유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일반가구 가구주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응답분포는 분산되어 있는 반면 일반가구의 응답분포는 중간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구주의 아동기 생활수준은 중간이거나 중하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가구주 아동기(만 0~17세)의 경제적 생활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 생활상태	매우 가난		9.3	16.3	6.9
	가난		33.0	34.0	32.7
	보통		44.4	33.4	48.1
	부유		11.0	12.5	10.6
	매우 부유		1.1	1.3	1.0
	모름/무응답		1.2	2.5	0.8
		계	100.0	100.0	100.0

가구주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5-2-7>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 15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는 가구주가

9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는 93.1%, 일반가구 가구주는 98.6%가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가구주의 직장(사업) 경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7> 가구주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장(사업) 경험여부	있다		97.2	93.1	98.6
	없다		1.7	4.4	0.8
	모름/무응답		1.1	2.6	0.6
계			100.0	100.0	100.0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 경험이 있는 가구주 응답자들의 첫 직장 고용형태 다음 <표 5-2-8>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1.5%), 무급가족종사자(15.9%), 자영업자(7.4%)의 순이었다.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우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이 59.5%로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27.1%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22.9%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31.1%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첫 일자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가구주에 비해 첫 일자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5-2-8> 가구주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 고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1.5	22.9	21.0
	정규직임금근로자		51.3	27.1	59.5
	고용주		0.7	0.4	0.8
	자영업자		7.4	11.3	6.0
	무급가족종사자		15.9	31.1	10.8
	모름/무응답		3.3	7.3	2.0
계			100.0	100.0	100.0

한편 가구주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는 다음 <표 5-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40.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25.8%), 자영업자(24.8%), 고용주(3.2%)의 순이었다.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비해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6.8%와 35.1%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우 여전히 정규직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9.7%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첫 고용형태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표 5-2-9> 가구주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5.8	36.8	22.1
	정규직임금근로자		40.7	14.3	49.7
	고용주		3.2	1.6	3.7
	자영업자		24.8	35.1	21.3
	무급가족종사자		2.1	4.6	1.3
	모름/무응답		3.4	7.7	1.9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가구주가 보유한 주된 직업기술 현황은 다음 <표 5-2-10>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가구주가 어떠한 직업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업기술을 자격증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공인면허(9.1%), 기능사(7.2%), 기사(4.7%)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자격증이 없는 기능자도 4.3%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없는 경우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의 직업기술이라도 보유한 가구주가 33.6%에 이르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주의 경우 그 비율이 10.4%에 불과했다.

<표 5-2-10> 가구주의 주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의 1순위 직업기술	없다		71.0	87.0	65.6
	기술사		0.8	0.1	1.0
	기능장		0.2	0.1	0.2
	기사		4.7	0.8	6.0
	산업기사		1.4	0.4	1.8
	기능사		7.2	2.4	8.8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9.1	3.4	11.0
	자격증 없는 기능자		4.3	3.2	4.6
	모름/무응답		1.4	2.6	0.8
	계		100.0	100.0	100.0

가구주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5-2-11>과 같다. 아동기(만 17세 이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돌아가신 경험을 한 가구주는 19.5%였으며, 일반가구(17.7%)보다는 저소득가구(24.7%) 가구주의 조실부모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당시 나이는 평균적으로 9.6세 무렵으로 파악되었다.

아동기에 부모님의 이혼경험에 대해서는 97.5%의 가구주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 부모님 이혼을 경험한 경우는 저소득가구가 0.8%, 일반가구가 1.6%로 나타나,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평균 나이는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7.4세로 일반가구 가구주의 9.7세에 비해 좀 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2-11〉 가구주의 아동기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모님 사망	그렇지 않다		79.4	72.8	81.6
	그렇다		19.5	24.7	17.7
	모름/무응답		1.1	2.6	0.6
	경험 당시 평균연령		9.6	9.1	9.9
부모님 이혼	그렇지 않다		97.5	96.6	97.8
	그렇다		1.4	0.8	1.6
	모름/무응답		1.1	2.6	0.6
	경험 당시 평균연령		9.4	7.4	9.7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그렇지 않다		84.6	70.9	89.3
	그렇다		14.3	26.5	10.1
	모름/무응답		1.1	2.5	0.6
	경험 당시 평균연령		12.7	11.5	13.8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	그렇지 않다		95.4	91.7	96.7
	그렇다		3.5	5.7	2.7
	모름/무응답		1.1	2.5	0.6
	경험 당시 평균연령		9.9	9.4	10.3
계			100.0	100.0	100.0

생계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4.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26.5%, 일반가구 가구주가 10.1%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두 배 이상 학업중단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당시의 평균연령도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11.5세로 일반가구 가구주의 13.8세에 비해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아동기에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험률(5.7%)이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험률(2.7%)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경험 시기 또한 저소득가구 가구주(9.4세)가 일반가구 가구주(10.3세)보다 약간 더 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은 경험 및 그것이 이후 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12>와 같다. 먼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주는 24.5%, 없는 가구주는 74.4%였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속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일반가구 26.2%, 저소득가구 19.6%).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혹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도움의 정도 역시 소득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2> 가구주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 여부 및 도움된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여부	있다	24.5	19.6
	없다	74.4	78.0	73.2	
	모름/무응답	1.1	2.5	0.6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도움된 정도	전혀 도움 안됨	3.2	4.6	2.8	
	별로 도움 안됨	8.8	9.2	8.7	
	보통	6.4	6.7	6.3	
	약간 도움이 됨	45.8	44.5	46.1	
	매우 큰 도움이 됨	35.0	33.9	35.3	
	모름/무응답	0.9	1.0	0.9	
계			100.0	100.0	100.0

2. 가구원의 개인사

가. 가구원의 부모세대 특성

가구원 부모세대의 특성을 교육수준과 직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원 부모의 교육수준은 다음 <표 5-2-13>, <표 5-2-14>와 같다. 가구원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25.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졸(20.9%), 무학(19.7%), 중졸(15.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아버지의 무학 비율이 36.2%로 일반가구의 16.3%

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고졸이상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일반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원 아버지 중 고졸자 비율은 일반가구 23.0%, 저소득 가구 10.4%였으며, 대졸자 비율은 일반가구 7.1%, 저소득가구 2.2%로 일반가구 가구원 아버지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13〉 가구원 부모의 교육수준 - 아버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육수준	무학	19.7	36.2	16.3
	서당졸	5.6	8.4	5.1
	초등학교졸	25.3	23.2	25.7
	중학교졸	15.5	10.5	16.5
	고등학교졸	20.9	10.4	23.0
	대학(전문대)졸	1.9	0.9	2.1
	대학교졸	6.3	2.2	7.1
	대학원졸	1.1	0.4	1.3
	모름/무응답	3.8	8.0	3.0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가구원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31.7%, 무학이 30.4% 등으로 높게 나타나 가구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이수 수준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이수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원 아버지 분석에서와 같이 저소득가구 가구원 어머니의 학력이 일반가구 가구원 어머니의 학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저소득가구 가구원 어머니 중 50.9%가 무학으로 일반가구 가구원 어머니의 26.1%에 비해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고졸 어머니의 비율은 일반가구 16.1%로 저소득가구 6.6%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 정도와 자녀의 소득수준이 상관성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14> 가구원 부모의 교육수준 - 어머니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교육수준	무학		30.4	50.9	26.1
	서당졸		2.0	2.5	1.9
	초등학교졸		31.7	22.6	33.5
	중학교졸		15.0	8.8	16.2
	고등학교졸		14.5	6.6	16.1
	대학(전문대)졸		0.4	0.3	0.5
	대학교졸		2.2	0.6	2.5
	대학원졸		0.2	0.0	0.3
	모름/무응답		3.7	7.6	2.9
	계		100.0	100.0	100.0

가구원 부모의 주된 직업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15> 및 <표 5-2-16>과 같다. 먼저 가구원 아버지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10.9%), 판매종사자(10.1%), 기능 종사자(8.7%)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아버지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인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1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가구 57.1%, 일반가구 40.8%). 한편 가구주 세대 아버지의 직업분석에서보다 가구원 세대 아버지의 직업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15〉 가구원 부모의 주된 직업 - 아버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2	1.2	1.2
	전문가	2.5	1.1	2.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3.7	2.3	4.0
	사무종사자	10.9	5.4	12.0
	서비스 종사자	5.3	3.1	5.8
	판매 종사자	10.1	7.2	10.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43.6	57.1	4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7	6.1	9.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6	1.4	2.8
	단순 노무 종사자	6.4	6.9	6.3
	직업군인	1.0	0.6	1.1
	무직	0.7	1.4	0.6
	기타	1.6	2.1	1.5
	모름/무응답	1.7	4.1	1.2
	비해당	0.0	0.1	0.0
계		100.0	100.0	100.0

다음 가구원 어머니의 경우에도 39.3%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부인 경우는 37.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주부 비율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5-2-16> 가구원 부모의 주된 직업 - 어머니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	0.0	0.0
	전문가		0.8	0.2	0.8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4	0.3	0.5
	사무종사자		0.8	0.2	0.8
	서비스 종사자		5.2	3.5	5.2
	판매 종사자		7.7	6.2	7.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39.3	55.7	3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	1.1	1.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	0.2	0.4
	단순 노무 종사자		5.0	5.2	5.0
	직업군인		0.1	0.0	0.1
	주부		37.3	21.7	37.1
	무직		0.0	0.2	0.0
	기타		0.8	1.5	0.9
	모름/무응답		1.2	4.1	1.2
	비해당		0.1	0.1	0.1
	계			100.0	100.0

나. 가구원 개인사

가구원들이 만 0~17세 사이 아동기에 주로 성장한 지역의 특징은 <표 5-2-17>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농어촌(읍면지역)에서 성장한 경우가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서 성장한 경우가 32.6%, 중소도시(기타 시도)인 경우는 20.8%로 나타나 가구주 세대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원의 연령분포가 가구주에 비해 아래쪽으로(아동과 청년)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들이 농어촌에서 성장한 비율이 58.2%로 일반가구(42.2%)보다 높은 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

역에서 성장한 경우는 일반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2-17〉 가구원의 아동기(만 0~17세) 주로 성장한 곳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로성장한 곳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2.6	22.2	34.8
	중소도시(기타 도시)		20.8	15.6	21.8
	농어촌(읍면지역)		44.9	58.2	42.2
	모름/무응답		3.5	4.1	1.2
계			100.0	100.0	100.0

가구원의 아동기(만0~17세)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5-2-18>과 같다. 아동기에 경제적 생활상태가 가난했다는 응답자는 30.6%(매우 가난 4.9%, 가난 25.7%)으로 나타나 가구주 세대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보통 수준이었다는 응답자가 55.8%로 가구원 2명중 1명은 아동기 경제적 생활상태를 보통수준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아동기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한 회상내용은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했다고 회상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저소득가구 매우 가난+가난 41.5%, 일반가구 매우 가난+가난 28.4%), 보통이었다고 회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더 낮았다(저소득가구 보통 40.5%, 일반가구 보통 58.9%).

〈표 5-2-18〉 가구원의 아동기(만 0~17세)의 경제적 생활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 생활상태	매우 가난		4.9	11.2	3.6
	가난		25.7	30.3	24.8
	보통		55.8	40.5	58.9
	부유		11.0	12.6	10.7
	매우 부유		0.9	1.3	0.8
	모름/무응답		1.7	4.0	1.3
계			100.0	100.0	100.0

가구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5-2-19>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 15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는 가구는 82.0%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80.3%, 일반가구 82.3%로 나타나 일반가구 가구의 직장(사업) 경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19> 가구의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경험 여부(최소 한번이상)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장(사업) 경험여부	있다		82.0	80.3	82.3
	없다		16.4	15.7	16.5
	모름/무응답		1.6	4.0	1.1
계			100.0	100.0	100.0

만 15세 이후 직장(사업) 경험이 있는 가구원 응답자들의 첫 직장 고용형태 현황은 다음 <표 5-2-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19.8%), 무급가족종사자(14.4%) 형태로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도 많은 편으로 나타나 가구주 세대와 큰 차이는 없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첫 직장 고용형태로 무급가족 종사자(29.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48.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20> 가구의 첫 직장 고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9.8	19.7	19.8
	정규직임금근로자		44.4	25.4	48.3
	고용주		0.3	0.2	0.3
	자영업자		3.0	5.0	2.6
	무급가족종사자		14.4	29.8	11.3
	모름/무응답		18.2	19.8	17.8
계			100.0	100.0	100.0

한편 가구원 세대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는 다음 <표 5-2-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25.7%, 무급가족 종사자가 12.3%로 나타나 첫 직장 고용형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21> 가구원의 가장 최근 직장 고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5.7	28.3	25.1
	정규직임금근로자		33.2	15.4	36.9
	고용주		0.7	0.5	0.7
	자영업자		9.0	11.1	8.5
	무급가족종사자		12.3	23.7	9.9
	모름/무응답		19.2	21.1	18.8
계			100.0	100.0	100.0

가구원이 보유한 주된 직업기술 현황은 다음 <표 5-2-22>와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77.3%의 가구원 응답자가 직업과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직업기술을 자격증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공인면허(12.3%), 기능사(4.5%)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가구주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소득가구의 직업기술 비보유율이 일반가구보다 9.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가구 없다 85.5%, 일반가구 없다 75.6%).

<표 5-2-22> 가구원의 주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의 1순위 직업기술	없다		77.3	85.5	75.6
	기술사		0.2	0.1	0.2
	기능장		0.1	0.0	0.1
	기사		1.5	0.6	1.7
	산업기사		1.1	0.4	1.3
	기능사		4.5	2.7	4.8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12.3	5.2	13.8
	자격증 없는 기능자		1.2	1.4	1.2
	모름/무응답		1.9	4.3	1.4
계			100.0	100.0	100.0

가구원의 아동기 경험실태는 다음 <표 5-2-23>과 같다.

아동기(만 17세 이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돌아가신 경험을 한 가구원은 14.0%였으며, 일반가구(12.8%)보다는 저소득가구(19.8%) 가구원의 경험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당시 나이는 평균적으로 10세 무렵으로 파악되었다.

아동기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가에 대해서는 96.5%의 가구원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 부모님 이혼을 경험한 경우는 저소득가구가 2.2%, 일반가구가 1.7%로 나타났다. 경험 당시 평균연령은 소득집단 구분에 관계없이 10세 무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계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20.1%(평균 경험연령 11.3세), 일반가구 가구원이 6.5%(평균 경험연령 13.1세)로,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 중단 경험률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어린 연령에 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이유로 아동기에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집단별 경험률은 저소득가구 4.2%, 일반가구가 1.8%로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험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3〉 가구원의 아동기 경험

(단위: %, 세)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모님 사망	그렇지 않다		84.3	76.0	86.0
	그렇다		14.0	19.8	12.8
	모름/무응답		1.7	4.2	1.2
	경험 당시 평균연령		9.9	9.6	10.0
부모님 이혼	그렇지 않다		96.5	93.7	97.1
	그렇다		1.8	2.2	1.7
	모름/무응답		1.7	4.2	1.2
	경험 당시 평균연령		10.3	9.9	10.4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그렇지 않다		89.5	75.8	92.3
	그렇다		8.8	20.1	6.5
	모름/무응답		1.7	4.2	1.2
	경험 당시 평균연령		12.4	11.3	13.1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성장	그렇지 않다		96.1	91.6	97.0
	그렇다		2.2	4.2	1.8
	모름/무응답		1.7	4.2	1.2
	경험 당시 평균연령		9.9	9.2	10.3
계			100.0	100.0	100.0

가구원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24>와 같다. 먼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가구원은 12.9%, 없다는 가구원은 85.4%였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81.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매우 도움이 됨 30.7%, 약간 도움이 됨 50.4%). 소득집단별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9.9%, 일반가구는 13.6%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2-24〉 가구원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여부 및 도움된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경험여부	있다	12.9	9.9	13.6
	없다	85.4	86.1	85.3
	모름/무응답	1.7	4.1	1.1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도움된 정도	전혀 도움 안됨	3.0	3.0	3.0
	별로 도움 안됨	9.4	8.7	9.5
	보통	5.9	6.6	5.8
	약간 도움이 됨	50.4	54.9	49.7
	매우 큰 도움이 됨	30.7	25.9	31.5
	모름/무응답	0.5	1.0	0.4
계		100.0	100.0	100.0

제6장 경제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1. 가구주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2.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59.7%이고, 단순 근로 미약자가 11.1%, 근로능력 없음이 7.1%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90% 이상 대부분이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37.7%), 중증장애(37.1%)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1>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및 근로무능력사유

(단위: %, 명)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가능	83.3	59.7	91.9
단순근로가능	5.1	11.1	2.9
단순근로미약자	8.7	22.1	3.8
근로능력없음	2.9	7.1	1.4
계	100.0	100.0	100.0
중증장애	37.1	35.5	40.0
질병 또는 부상	37.7	37.0	38.8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22.0	24.3	17.8
기타	0.6	0.0	1.8
모름/무응답	2.6	3.2	1.6
계	100.0	100.0	100.0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취업자가 76.5%, 미취업자가 23.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 보면, 가구주의 취업비율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48.7%, 일반가구에서는 86.4%로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 가구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저소득 가구보다는 일반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1-2〉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취업자	임금근로자		53.9	27.2	63.4
	비임금근로자		22.6	21.5	23.0
미취업자	실업자		3.3	5.7	2.5
	비경제활동인구		20.2	45.6	11.1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2. 가구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상태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3>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3.7%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3.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70.0%, 근로능력 없음이 6.7%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87.8%, 근로능력 없음이 2.7%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로는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4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노령(34.0%) 및 중증장애(32.2%)를, 일반 가구는 노령(51.1%)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6-1-3〉 가구원의 근로능력정도 및 근로무능력사유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가능	83.7	70.0	87.8
단순근로가능	4.8	8.4	3.7
단순근로미약자	7.9	14.9	5.8
근로능력없음	3.6	6.7	2.7
계	100.0	100.0	100.0
중증장애	23.6	32.2	17.2
질병 또는 부상	27.4	27.4	27.4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43.8	34.0	51.1
기타	0.8	0.7	0.8
모름/무응답	4.4	5.7	3.5
계	100.0	100.0	100.0

주) 만15세 미만인 가구원 case는 제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반수 이상(5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나 일반 가구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소득가구는 13.7%, 일반 가구는 30.0%로 일반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4〉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취업자			
임금근로자	26.2	13.7	30.0
비임금근로자	10.7	12.4	10.2
미취업자			
실업자	4.9	7.0	4.3
비경제활동인구	58.2	66.9	55.5
모름/무응답	-	-	-
계	100.0	100.0	100.0

주) 만15세 미만인 가구원 case는 제외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1. 가구주의 취업실태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시적 근로자(26.3%), 비전형 근로자(1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일반 가구의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65.6%가 정규직인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22.7%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형태

(단위: %, 명)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한시적	26.3	44.9	23.5
비전형	13.2	31.0	10.4
정규직	59.9	22.7	65.6
모름/무응답	0.6	1.4	0.5
계	100.0	100.0	100.0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은 다음 <표 6-2-2>와 같다. 가구주의 업종은 제조업(20.8%), 건설업(12.0%), 도매 및 소매업(10.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28.0%)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22.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종은 사무종사자(16.4%) 및 단순노무종사자(16.1%)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는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26.3%)와 단순노무종사자(26.0%)가, 일반 가구는 사무종사자(18.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¹⁾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및 임업	9.7	28.0	6.0
	어업	0.4	0.7	0.3
	광업	0.2	0.1	0.3
	제조업	20.8	11.8	22.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	0.7	2.1
	건설업	12.0	12.2	12.0
	도매 및 소매업	10.2	10.1	10.2
	숙박 및 음식점업	4.8	6.5	4.4
	운수업	7.6	7.0	7.7
	통신업	1.1	0.2	1.3
	금융 및 보험업	2.7	0.8	3.1
	부동산 및 임대업	1.3	1.3	1.3
	사업서비스업	5.7	3.3	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0	1.8	6.8
	교육서비스업	4.5	1.1	5.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	1.0	1.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8	1.8	1.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2	10.3	6.6
	가사서비스업	0.4	0.9	0.3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모름/무응답	0.2	0.4	0.2	
직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	0.8	2.4
	전문가	5.8	1.8	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7.2	2.4	8.2
	사무종사자	16.4	4.2	18.9
	서비스 종사자	8.3	8.7	8.2
	판매종사자	8.7	9.4	8.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9.3	26.3	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4	10.8	11.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	9.3	14.7
	단순노무종사자	16.1	26.0	14.1
	군인	0.6	0.1	0.7
	모름/무응답	0.2	0.2	0.2
	계	100.0	100.0	100.0

주: 1) 업종 및 직종의 분석범주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함.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4명 이하의 사업장이 39.9%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4명 이하가 6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도 4명 이하가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그 다음으로 1,000명 이상 비율이 16.4%로 높게 나타나,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9.9	64.6	34.9
	5~9명	9.8	9.0	9.9
	10~29명	10.9	9.7	11.2
	30~49명	4.3	3.2	4.5
	50~69명	3.6	1.8	4.0
	70~99명	2.9	0.9	3.3
	100~299명	6.3	3.2	6.9
	300~499명	2.3	0.9	2.6
	500~999명	2.2	0.4	2.5
	1000명 이상	13.9	1.6	16.4
	모름/무응답	3.9	4.7	3.8
	계	100.0	100.0	100.0

취업자 중에서 1년간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1개월 정도 직장을 그만 두고 쉬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가구주(6.9%)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7.6%)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을 그만 둔 기간은 저소득가구가 2.8개월, 일반 가구가 2.0개월로 나타났다.

〈표 6-2-4〉 가구주의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둔 경험여부 및 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0	7.6
없다		93.0	92.4	93.1
계		100.0	100.0	100.0
평균 개월 수		2.1	2.8	2.0

직장을 그만 둔 가구주의 퇴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2-5>와 같다. 먼저, 퇴직의 자발성 여부는 자발적(54.1%) 이유와 비자발적(42.5%) 이유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는 비자발적 이유가 53.2%,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자발적 이유가 40.4%로 소득집단별로 퇴직 이유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퇴직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17.6%),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21.2%)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20.9%),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23.1%)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5〉 가구주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및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비자발적		42.5	53.2	40.4
	자발적		54.1	42.5	56.4
	모름/무응답		3.4	4.3	3.2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10.5	9.5	10.7
	정리해고		2.0	2.1	1.9
	권고사직/명예퇴직		2.4	4.1	2.0
	정년퇴직		0.4	0.0	0.5
	계약기간 만료		2.8	3.7	2.6
	소득/보수 적음		12.7	12.7	12.7
	일거리 부족		17.6	20.9	16.9
	일의 장래성 없음		1.6	0.0	1.9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3.5	3.1	3.5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5.1	4.3	5.2
	자기 사업 시작		3.4	0.0	4.1
	가사 문제		1.5	1.0	1.6
	건강/고령 등		7.4	15.4	5.7
	거리가 멀어서		0.9	0.0	1.1
	학업/군입대 등		0.7	2.2	0.5
	좀 더 좋은 일자리		21.2	11.9	23.1
	출산/육아		0.8	5.0	0.0
	기타		3.7	2.2	4.0
	모름/무응답		1.9	2.0	1.9
	계			100.0	100.0

가구주의 현재 직장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3년 사이(20.1%)와 5~10년 사이(20.0%)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 10~20년 사이가 19.0%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근속기간이 약 10.5년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30년 이상(20.5%)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5~10년 사이가 2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근속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4.8년,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약 9.7년 정도로 나타났다.

〈표 6-2-6〉 가구주의 근속년수¹⁾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13.5	17.2	12.9
1년 ~ 3년 미만		20.1	19.9	20.2
3년 ~ 5년 미만		12.0	9.4	12.5
5년 ~ 10년 미만		20.0	14.9	21.0
10년 ~ 20년 미만		19.0	11.6	20.3
20년 ~ 30년 미만		8.7	6.5	9.1
30년 이상		6.6	20.5	4.0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평균 년수		10.5	14.8	9.7

주: 1) 근속년수 =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기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년간 근로 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1.1개월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7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1년간 평균 9.8개월, 주당 평균 39.8시간 정도 일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1년간 평균 11.3개월, 주당 평균 49.2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근로시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났다.

〈표 6-2-7〉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위: 월,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수		11.1	9.8	11.3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7.7	39.8	49.2

2. 가구원의 취업실태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8>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47.4%, 한시적 근로자가 38.8%로 나타났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13.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한시적 근로자(51.6%)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51.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8>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형태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한시적		38.8	51.6	37.1
비전형		13.0	31.4	10.5
정규직		47.4	16.3	51.7
모름/무응답		0.8	0.7	0.7
계		100.0	100.0	100.0

주: 1) 만15세 이상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 가구원 case만을 분석함.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은 아래 <표 6-2-9>와 같다. 가구원의 업종은 제조업17.7%, 도매 및 소매업 14.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36.0%)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19.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17.4%), 단순노무종사자(15.7%)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가구는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32.4%)가, 일반가구는 사무종사자(19.6%)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6-2-9〉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및 임업	13.4	36.0	9.0
	어업	0.3	0.4	0.3
	광업	0.1	0.0	0.1
	제조업	17.7	11.7	19.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8	0.0	1.0
	건설업	3.7	2.7	4.0
	도매 및 소매업	14.7	13.2	15.0
	숙박 및 음식점업	9.0	10.3	8.7
	운수업	1.9	1.5	1.9
	통신업	1.0	0.3	1.1
	금융 및 보험업	3.3	1.2	3.7
	부동산 및 임대업	0.7	0.5	0.7
	사업서비스업	4.4	2.4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	1.0	3.5
	교육서비스업	10.4	4.3	1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7	2.2	5.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1	1.4	2.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7	8.0	6.4
	가사서비스업	1.2	2.7	0.9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0.1
모름/무응답	0.7	0.2	0.8	
직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3	0.1	0.3
	전문가	9.8	2.6	1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7.6	3.3	8.4
	사무종사자	17.4	6.0	19.6
	서비스 종사자	13.2	13.5	13.1
	판매종사자	12.6	11.4	12.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12.3	32.4	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7	5.1	4.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	2.2	6.1
	단순노무종사자	15.7	22.6	14.4
	군인	-	-	-
	모름/무응답	1.0	0.8	1.0
	계	100.0	100.0	100.0

주 1) 업종 및 직종의 분석범주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함.

2)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취업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41.8%가 4명 이하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4명 이하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0명 이상 사업장 규모는 저소득 가구 7.4%, 일반가구 20.3%로 나타났다.

〈표 6-2-10〉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41.8	65.7	37.1
5~9명		11.8	9.6	12.3
10~29명		11.8	7.8	12.6
30~49명		5.6	3.5	6.0
50~69명		3.5	1.1	3.9
70~99명		2.9	1.1	3.3
100~299명		5.5	2.2	6.2
300~499명		2.2	0.7	2.4
500~999명		1.7	1.3	1.8
1000명 이상		8.8	3.2	9.9
모름/무응답		4.4	3.8	4.5
계		100.0	100.0	100.0

주: 1)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취업자 중에서 1년간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1% 정도로 가구의 경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을 그만 두고 쉬었던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7.2%)보다는 저소득 가구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6.7%)이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직장을 그만 둔 기간은 저소득가구가 2.9개월, 일반 가구가 2.2개월로 저소득가구에서 다소 길게 나타났다.

〈표 6-2-11〉 가구원의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둔 경험여부 및 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1	6.7	7.2
없다		92.9	93.3	92.8
계		100.0	100.0	100.0
평균 개월수		2.3	2.9	2.2

직장을 그만 둔 가구원의 퇴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2-12>와 같다. 먼저, 퇴직의 자발성 여부는 자발적 이유가 64.3%로 높았으며, 가구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자발적 이유(41.1%)가 비자발적 이유(57.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 가구에서는 자발적 이유(67.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퇴직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20.5%), 파산, 폐업, 휴업(16.4%)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 가구에서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저소득 가구는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21.6%), 일반 가구는 파산, 폐업, 휴업(16.7%)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12> 가구원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및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퇴직의 자발성 여부	비자발적	34.3	57.0	31.0
	자발적	64.3	41.1	67.6
	모름/무응답	1.5	2.0	1.4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16.4	14.3	16.7
	정리해고	0.3	2.1	0.0
	권고사직/명예퇴직	0.0	0.0	0.0
	정년퇴직	0.0	0.0	0.0
	계약기간 만료	3.7	6.2	3.4
	소득/보수 적음	10.9	6.4	11.6
	일거리 부족	8.7	21.6	6.8
	일의 장래성 없음	2.5	1.3	2.7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6.9	0.0	8.0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6.6	9.8	6.1
	자기 사업 시작	2.7	0.0	3.1
	가사 문제	4.5	6.3	4.2
	건강/고령 등	7.8	14.8	6.8
	거리가 멀어서	1.2	1.4	1.2
	학업/군입대 등	2.2	0.0	2.5
	좀 더 좋은 일자리	20.5	12.2	21.7
	출산/육아	1.2	0.0	1.3
	기타	2.3	1.6	2.4
	모름/무응답	1.8	2.0	1.8
	계		100.0	100.0

가구원의 현재 직장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3년(27.9%), 1년 미만(2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근속기간이 약 8.2년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30년 이상(24.6%)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 가구도 1~3년이 2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6.2년, 일반 가구가 약 7.0년 정도로 가구주의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2-13〉 가구원의 근속년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22.4	19.3	22.9
1년 ~ 3년 미만		27.9	18.8	29.3
3년 ~ 5년 미만		12.0	8.7	12.5
5년 ~ 10년 미만		15.8	11.8	16.4
10년 ~ 20년 미만		11.0	10.5	11.1
20년 ~ 30년 미만		3.9	6.4	3.5
30년 이상		7.1	24.6	4.3
모름/무응답		0.1	0.0	0.2
계		100.0	100.0	100.0
평균 년수		8.2	16.2	7.0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년간 근로 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0.6개월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0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1년간 평균 9.6개월, 주당 평균 39.9시간 정도 일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1년간 평균 10.8개월, 주당 평균 46.9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와 비슷하게 일반 가구의 근로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났다.

〈표 6-2-14〉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월,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수		10.6	9.6	10.8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0	39.9	46.9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1. 가구주의 미취업실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3-1>과 같다.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70.2%이고, 미취업자는 29.7%이며, 미취업자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25.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취업자가 53.5%, 비경제활동 인구가 41.0%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80% 이상 대부분(86.0%)이 취업 상태에 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1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경제활동 이유는 근로무능력(44.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근로의사 없음(27.2%)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근로무능력(48.7%)을,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근로의사 없음(36.4%)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6-3-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40.1	47.0	47.0
근복무		-	-	-
학업		0.7	0.6	0.6
가사		11.1	10.1	10.1
양육		0.7	0.8	0.8
간병		1.5	1.5	1.5
구직활동포기		9.8	8.4	8.4
근로의사 없음		30.9	28.1	28.1
기타		2.9	2.4	2.4
모름/무응답		2.3	1.2	1.2
계		100.0	100.0	100.0

주)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case만 분석

미취업 가구주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약 14.8% 정도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11.6%,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19.0%로 일반 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3-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4.8	11.6
아니다		85.2	88.3	81.0
모름/무응답		0.1	0.1	0.0
계		100.0	100.0	100.0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약 14.0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의 구직 기간이 약 14.6개월,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약 13.5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59.1	58.3
1년 ~ 3년 미만		28.1	27.4	28.7
3년 ~ 5년 미만		3.8	4.6	3.1
5년 ~ 10년		8.7	9.2	8.3
모름/무응답		0.4	0.6	0.2
계		100.0	100.0	100.0
평균 개월수		14.0	14.6	13.5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6-3-4>와 같다. 먼저 개인 특성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2.67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나이(3.99점)와 건강(2.96)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나이(3.91점)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기능 부족(2.53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 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

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나 일반 가구에서도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85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2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3.94	3.99	3.91
	성차별 때문에	1.71	1.73	1.69
	학력이 낮기 때문에	2.18	2.28	2.11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67	2.82	2.53
	경력이 부족해서	2.45	2.63	2.29
	건강문제로	2.55	2.96	2.20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11	1.96	2.23
	신용불량자라서	1.53	1.58	1.49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1.22	1.24	1.20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17	1.17	1.17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21	1.23	1.19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12	1.10	1.15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85	3.80	3.88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32	3.33	3.32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55	2.36	2.71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2.61	2.33	2.84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40	2.29	2.49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 점수를 내서 기입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직장이 있었을 경우 근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약 33.9% 정도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25.5%)보다는 일반 가구(45.2%)의 가구주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5〉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33.9	25.5
아니다		66.0	74.4	54.6
모름/무응답		0.2	0.0	0.2
계		100.0	100.0	100.0

일을 할 경우, 가구주의 희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약 95.9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평균 76.4만원, 일반 가구가 122.2만원으로 일반 가구에서 희망소득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가구주의 희망소득

(단위: 만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80.0	95.9
저소득		60.0	76.4	48.1
일반		100.0	122.2	107.4

2. 가구원의 미취업실태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3-7>과 같다.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이 31.1%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가사, 학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7〉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11.3	18.0	8.9
군복무		0.5	0.8	0.5
학업		31.1	27.8	32.3
가사		35.9	32.1	37.2
양육		9.3	5.8	10.6
간병		1.1	2.0	0.7
구직활동포기		1.6	3.2	1.0
근로의사 없음		5.2	6.6	4.6
기타		1.8	1.6	1.9
모름/무응답		2.2	2.1	2.3
계		100.0	100.0	100.0

주)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인 case만 분석

미취업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약 10.4% 정도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13.9%, 일반가구는 9.6%로 저소득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3-8〉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0.4	13.9	9.6
아니다		89.5	85.9	90.3
모름/무응답		0.1	0.2	0.1
계		100.0	100.0	100.0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약 12.0개월 정도로 가구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약 13.7개월, 일반 가구가 약 11.4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9〉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61.6	56.8	63.3
	1년 ~ 3년 미만	30.2	30.5	30.0
	3년 ~ 5년 미만	2.4	5.1	1.6
	5년 ~ 10년	5.5	6.5	5.2
	모름/무응답	0.3	1.1	0.0
	계	100.0	100.0	100.0
	평균 개월수	12.0	13.7	11.4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6-3-10>과 같다. 먼저 개인 특성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력이 부족해서(2.95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나이(3.18점)와 경력부족(2.95)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일반 가구는 나이(2.90점)와 경력 부족(2.95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으로는 모든 항목의 점수가 1점 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64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7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구직 활동의 어려움은 가구주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3-10〉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2.97	3.18	2.90
	성차별 때문에		1.74	1.80	1.72
	학력이 낮기 때문에		2.20	2.35	2.15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82	2.93	2.78
	경력이 부족해서		2.95	2.95	2.95
	건강문제로		1.84	2.09	1.76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39	2.29	2.43
	신용불량자라서		1.25	1.31	1.23
가구 특성	가사일 때문에		1.86	1.61	1.95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82	1.52	1.91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23	1.36	1.19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29	1.24	1.30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64	3.68	3.62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37	3.43	3.35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92	2.82	2.96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3.00	2.98	3.00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75	2.70	2.76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 점수를 내서 기입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직장이 있었을 경우 근로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29.5%)와 일반 가구(29.8%)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3-11〉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29.8	29.5	29.8
아니다			70.1	70.3	70.1
모름/무응답			0.1	0.3	0.1
계			100.0	100.0	100.0

일을 할 경우, 가구원의 희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약 114.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전체와 일반 가구가 100만원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가구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2〉 가구원의 희망소득

(단위: 만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	114.8	73.7
	저소득	80.0	88.3	49.6
	일반	100.0	121.0	82.6

제4절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 수급실태 및 욕구

1. 자활지원프로그램 필요성, 이용경험, 참여기간 및 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용경험, 참여기간,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6-4-1>과 같다. 전반적으로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6%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평균 4.0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4-1〉 구직알선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67.7
다소 필요하지 않다		7.3
그저 그렇다		3.8
다소 필요하다		10.4
이주 필요하다		9.8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2〉 구직알선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6
없다		98.4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4.0

〈표 6-4-3〉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1.6
대체로 만족		7.1
그저 그렇다		31.3
대체로 불만족		37.9
매우 불만족		18.0
모름/무응답		4.2
계		100.0

주)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10% 수준이었으며,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6.2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7.7%로 불만족 응답(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4-4〉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75.3
다소 필요하지 않다		9.1
그저 그렇다		4.4
다소 필요하다		6.5
아주 필요하다		3.8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5〉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9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6.2

〈표 6-4-6〉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0.0
대체로 만족		47.7
그저 그렇다		41.0
대체로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11.3
모름/무응답		0.0
계		100.0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10% 수준으로 직업적응훈련 프로

그램의 필요성 응답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3%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5.5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54.5%)으로 나타났다.

〈표 6-4-7〉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76.4
다소 필요하지 않다		8.5
그저 그렇다		4.2
다소 필요하다		6.3
아주 필요하다		3.7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8〉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3
없다		98.7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5.5

〈표 6-4-9〉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15.5
대체로 만족		39.0
그저 그렇다		31.2
대체로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7.0
모름/무응답		7.3
계		100.0

구직세일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5.8% 정도로 나타났다.
 구직세일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4.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9.8%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10〉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79.7
다소 필요하지 않다		8.6
그저 그렇다		4.9
다소 필요하다		4.0
아주 필요하다		1.8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표 6-4-11〉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9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4.3

〈표 6-4-12〉 구직 세일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0.0
대체로 불만족		0.0
그저 그렇다		49.8
대체로 불만족		7.0
매우 불만족		0.0
모름/무응답		43.1
계		100.0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3〉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1.1
다소 필요하지 않다		7.8
그저 그렇다		3.2
다소 필요하다		4.4
아주 필요하다		2.7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14〉 창업지원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0
없다		99.0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0.0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3.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5〉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2.9
다소 필요하지 않다		8.7
그저 그렇다		3.7
다소 필요하다		3.0
아주 필요하다		0.8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16〉 자활공동체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0
없다		99.0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0.0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5.1% 정도로 나타났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4.5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17〉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2.0
다소 필요하지 않다		8.3
그저 그렇다		3.6
다소 필요하다		3.4
아주 필요하다		1.7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표 6-4-18〉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9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4.5

〈표 6-4-1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23.4
	대체로 만족	51.7
	그저 그렇다	17.1
	대체로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0.0
	대체로 불만족	7.8
	계	100.0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4.7%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1.7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이 66.9%, 불만족이 33.1%로 나타났다.

〈표 6-4-20〉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2.4
	다소 필요하지 않다	8.2
	그저 그렇다	3.8
	다소 필요하다	3.3
	아주 필요하다	1.4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2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9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1.7

〈표 6-4-22〉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66.9
대체로 만족		0.0
그저 그렇다		0.0
대체로 불만족		33.1
매우 불만족		0.0
모름/무응답		0.0
계		100.0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3.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23〉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3.1
다소 필요하지 않다		8.3
그저 그렇다		4.0
다소 필요하다		2.7
아주 필요하다		1.0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24〉 인턴형 자활근로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0
없다		98.9
모름/무응답		1.1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0.0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3.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25〉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4.1
다소 필요하지 않다		7.8
그저 그렇다		3.8
다소 필요하다		2.6
아주 필요하다		0.8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26〉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0
없다		98.9
모름/무응답		1.1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0.0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3.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7.0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다.

〈표 6-4-27〉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4.4
다소 필요하지 않다		8.0
그저 그렇다		3.5
다소 필요하다		2.4
아주 필요하다		0.8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표 6-4-28〉 재활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9
모름/무응답		1.0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7.0

〈표 6-4-29〉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0.0
대체로 만족		66.7
그저 그렇다		0.0
대체로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0.0
모름/무응답		33.3
계		100.0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4.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0.1%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은 약 6.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9.8% 정도로 나타났다.

〈표 6-4-30〉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81.4
다소 필요하지 않다		8.2
그저 그렇다		4.7
다소 필요하다		3.5
아주 필요하다		1.2
모름/무응답		0.9
계		100.0

〈표 6-4-31〉 지역봉사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참여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있다		0.1
없다		98.8
모름/무응답		1.1
계		100.0
평균 참여개월 수		6.3

〈표 6-4-32〉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매우 만족		35.5
대체로 만족		34.3
그저 그렇다		5.5
대체로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18.0
모름/무응답		6.7
계		100.0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효과성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6-4-3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정이나 자존감 향상 등 심리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구직, 직업능력 개발, 생계유지 등 실질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구직(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16.7%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0.5%로 그렇지 않다(35.3%)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24.1%로 나타났다.

〈표 6-4-33〉 참여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단위: %)

특성	구분	자활프로그램의 효과성	
		구분	효과성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2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2
	그저 그렇다		19.8
	대체로 그런 편이다		14.3
	매우 그렇다		3.4
	모름/무응답		18.0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2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5
	그저 그렇다		16.5
	대체로 그런 편이다		15.7
	매우 그렇다		1.0
	모름/무응답		18.0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1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2
	그저 그렇다		16.1
	대체로 그런 편이다		26.5
	매우 그렇다		4.0
	모름/무응답		18.0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1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0
	그저 그렇다		17.4
	대체로 그런 편이다		24.9
	매우 그렇다		3.6
	모름/무응답		18.0
생계유지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2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1
	그저 그렇다		12.1
	대체로 그런 편이다		20.5
	매우 그렇다		3.6
	모름/무응답		18.0
계			100.0

제7장 가구경제

제1절 소득

1. 경상소득

이번 제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들을 소득집단별 2개의 소득층(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일반 가구와 그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준소득인 경상소득은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소득의 통계량들은 다음의 표들로 설명되고 있다.

<표 7-1-1>에서 전체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31,689천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26,40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8,547천원,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은 39,569천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7-1-2>에서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에, 저소득층은 20,000천원 미만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7-1-1> 가구의 경상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400	31,689	2478.2
저소득	8,040	8,547	410.4
일반	33,600	39,569	2813.3

〈표 7-1-2〉 가구의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0 미만	16.8	64.6	0.5
10,000~20,000 미만	19.7	33.7	14.9
20,000~30,000 미만	19.3	1.6	25.3
30,000~40,000 미만	15.7	0.1	21.0
40,000~50,000 미만	10.6	0.0	14.2
50,000 이상	17.9	0.0	24.0
계	100.0	100.0	100.0

주)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모름/무응답이 있으면 분석가구에서 제외

2. 근로소득

<표 7-1-3>에서 소득 집단별 근로소득의 유무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78.8%인 반면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36.1%로 일반가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그리고 부업소득의 경우에는 일반가구나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7-1-3〉 가구의 근로소득 유무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없다	32.0	63.9	21.2
	있다	68.0	36.1	78.8
사업소득	없다	83.3	92.2	80.2
	있다	16.7	7.8	19.8
농림축어업소득	없다	92.4	84.7	95.0
	있다	7.6	15.3	5.0
부업소득	없다	90.7	86.8	92.0
	있다	9.3	13.2	8.0
계		100.0	100.0	100.0

<표 7-1-4>는 각각의 소득들이 있는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8,275천원, 사업소득은 4,484천원, 농림축어업소득은 3,047천원, 부업소득은 1,858천원으로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7-1-4> 가구의 근로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임금소득	전체	25,680	30,332	2441.2
	저소득	7,880	8,275	396.0
	일반	30,000	33,770	2580.9
사업소득	전체	24,000	30,035	3013.1
	저소득	6,000	4,484	913.3
	일반	27,600	33,452	3225.2
농림축어업 소득	전체	4,050	8,076	929.6
	저소득	2,938	3,047	249.0
	일반	7,890	13,280	1543.6
부업소득	전체	2,400	3,251	348.1
	저소득	1,000	1,858	147.4
	일반	2,700	4,033	502.7

<표 7-1-5> 또한 각각의 소득들이 있는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에 소득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들이 하위 카테고리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5〉 가구의 근로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5,000 미만	6.5	27.6	3.2
	5,000~10,000 미만	8.4	38.4	3.8
	10,000~15,000 미만	10.4	22.9	8.5
	15,000~20,000 미만	12.1	10.4	12.3
	20,000~25,000 미만	10.3	0.6	11.8
	25,000~30,000 미만	8.5	0.0	9.8
	30,000 이상	43.8	0.0	50.6
	계	100.0	100.0	1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0 미만	11.3	45.7	6.7
	5,000~10,000 미만	8.1	25.6	5.7
	10,000~15,000 미만	11.1	18.0	10.2
	15,000~20,000 미만	9.9	9.8	10.0
	20,000~25,000 미만	12.6	0.9	14.2
	25,000~30,000 미만	5.1	0.0	5.8
	30,000 이상	41.9	0.0	47.5
	계	100.0	100.0	100.0
농림축어업소득	5,000 미만	56.5	75.9	36.5
	5,000~10,000 미만	18.9	19.4	18.3
	10,000~15,000 미만	7.6	3.6	11.8
	15,000~20,000 미만	6.6	1.2	12.3
	20,000~25,000 미만	2.6	0.0	5.3
	25,000~30,000 미만	3.1	0.0	6.3
	30,000 이상	4.7	0.0	9.6
	계	100.0	100.0	100.0
부업소득	5,000 미만	81.1	91.4	75.3
	5,000~10,000 미만	13.1	7.5	16.3
	10,000~15,000 미만	3.2	0.9	4.5
	15,000~20,000 미만	1.5	0.2	2.2
	20,000~25,000 미만	0.3	0.0	0.4
	25,000~30,000 미만	0.7	0.0	1.1
	30,000 이상	0.2	0.0	0.3
	계	100.0	100.0	100.0

3. 근로소득 외 소득

<표 7-1-6>에서 근로소득 외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와 일반가구에서는 각각 소득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서는 현금민간보조금(58.6%)과 기타 정부보조금(71.7%)이 있는 가구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67.7	80.5	63.3
	있다	32.3	19.5	36.7
사회보험	없다	84.7	81.6	85.8
	있다	15.3	18.4	14.2
민간보험	없다	99.7	99.8	99.7
	있다	0.3	0.2	0.3
현금민간보조금	없다	65.0	41.4	73.0
	있다	35.0	58.6	27.0
현물민간보조금	없다	62.5	55.5	64.9
	있다	37.5	44.5	35.1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없다	94.1	79.7	99.0
	있다	5.9	20.3	1.0
기타정부보조금	없다	60.5	28.3	71.4
	있다	39.5	71.7	28.6
계		100.0	100.0	100.0

<표 7-1-7>은 각각의 소득들이 있는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이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득이 3,533천원으로 일반가구의 2,778천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7-1-7〉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재산소득	전체	960	3,445	767.6
	저소득	850	1,975	184.9
	일반	960	3,711	930.0
사회보험	전체	2,640	7,305	856.5
	저소득	1,560	2,574	183.8
	일반	4,200	9,392	1131.5
민간보험	전체	1,000	2,765	399.1
	저소득	1,300	2,988	249.5
	일반	1,000	2,706	472.8
민간보조금 (현금)	전체	2,000	3,627	581.1
	저소득	2,400	3,120	185.5
	일반	1,600	4,001	943.9
민간보조금 (현물)	전체	600	1,018	147.8
	저소득	500	798	71.3
	일반	600	1,113	200.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체	3,310	3,440	173.2
	저소득	3,400	3,533	164.8
	일반	2,400	2,778	256.6
기타정부 보조금	전체	300	818	103.0
	저소득	330	800	84.4
	일반	290	834	133.3

<표 7-1-8>에서 각각의 소득들이 있는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근로소득 외 소득의 카테고리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재산소득은 500천원 미만(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은 3,000천원 이상(47.0%), 민간보험소득은 1,000에서 1,500천원 미만(29.4%), 현금민간보조금소득은 3000천원 이상(40.4%), 현물민간보조금소득은 500천원 미만(4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은 1,500에서 2,000천원 미만(19.8%), 기타정부보조금은 500천원 미만(5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1-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0 미만	36.9	37.9	36.7
	500~1,000 미만	14.2	14.9	14.1
	1,000~1,500 미만	7.0	7.7	6.9
	1,500~2,000 미만	6.8	7.7	6.6
	2,000~2,500 미만	4.7	5.3	4.6
	2,500~3,000 미만	1.9	3.1	1.7
	3,000 이상	28.5	23.4	29.5
	계	100.0	100.0	100.0
사회보험소득	500 미만	2.0	1.5	2.3
	500~1,000 미만	4.7	7.6	3.5
	1,000~1,500 미만	23.1	39.0	16.1
	1,500~2,000 미만	9.7	14.6	7.5
	2,000~2,500 미만	8.8	10.0	8.3
	2,500~3,000 미만	4.6	3.3	5.2
	3,000 이상	47.0	24.1	57.1
	계	100.0	100.0	100.0
민간보험소득	500 미만	10.8	18.9	8.7
	500~1,000 미만	23.2	0.0	29.3
	1,000~1,500 미만	29.4	34.4	28.1
	1,500~2,000 미만	0.0	0.0	0.0
	2,000~2,500 미만	11.7	15.4	10.7
	2,500~3,000 미만	0.0	0.0	0.0
	3,000 이상	25.0	31.3	23.3
	계	100.0	100.0	100.0
민간보조급 (현금)소득	500 미만	15.0	11.2	17.8
	500~1,000 미만	14.1	10.6	16.7
	1,000~1,500 미만	12.9	5.5	12.9
	1,500~2,000 미만	6.2	5.4	6.8
	2,000~2,500 미만	9.1	11.5	7.3
	2,500~3,000 미만	2.4	3.2	1.8
	3,000 이상	40.4	45.3	36.7
	계	100.0	100.0	100.0

〈표 7-1-8〉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보조금 (현물)소득	500 미만	42.2	48.6	39.5
	500~1,000 미만	26.3	26.1	26.4
	1,000~1,500 미만	14.6	11.4	15.9
	1,500~2,000 미만	4.5	5.5	4.0
	2,000~2,500 미만	4.5	4.1	4.7
	2,500~3,000 미만	1.4	0.8	1.7
	3,000 이상	6.5	3.5	7.8
	계	100.0	100.0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소득	500 미만	16.0	13.1
500~1,000 미만		11.2	11.9	6.6
1,000~1,500 미만		16.8	17.3	13.1
1,500~2,000 미만		19.8	20.7	13.5
2,000~2,500 미만		15.6	16.0	12.6
2,500~3,000 미만		6.5	7.1	1.6
3,000 이상		14.1	13.9	16.0
계		100.0	100.0	100.0
기타 정부 보조금 소득		500 미만	58.9	56.8
	500~1,000 미만	15.8	18.9	13.0
	1,000~1,500 미만	7.8	7.9	7.7
	1,500~2,000 미만	6.5	6.0	7.0
	2,000~2,500 미만	3.6	3.3	3.8
	2,500~3,000 미만	1.7	2.2	1.4
	3,000 이상	5.7	4.9	6.4
	계	100.0	100.0	100.0

제2절 지출

1. 총가계지출

지출부문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세금,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하는 총생활비와 농림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 이가지출, 월세를 별도로 설문하였다. 이 모든 항목을 포괄해서 총가계지출이라 칭하기로 한다. 지출액은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지출로 조

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은 12로 나누어 월단위로 통일하였다.

총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의 중위값은 1,990천원, 평균은 2,248천원, 표준편차는 1,456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중위값이 800천원이고 평균이 969천원, 표준편차가 474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중위값 2,403천원, 평균 2,783천원, 표준편차 1,651천원으로 저소득가부와 일반가부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총가계지출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90	2,248	1,456
저소득	800	969	474
일반	2,403	2,682	1,651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2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24.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5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지출규모별로 상이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지출가부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출가부가 각각 21.4%와 21.2%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부에서는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3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가부 중에서 5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가부도 4.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만원 미만	5.5	21.4	0.1
50만원~100만원 미만	13.3	40.8	4.0
100만원~150만원 미만	14.6	21.2	12.4
150만원~200만원 미만	16.7	9.5	19.1
200만원~300만원 미만	24.3	5.5	30.7
300만원 이상	25.6	1.5	33.8
전체	100.0	99.9.0	100.0

2. 총생활비

동거가구원의 현금생활비, 비동거가구원의 현금생활비, 그리고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의 합이 총생활비가 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가구의 총생활비 구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총생활비의 중위값은 1,860천원, 평균은 2,12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41.8로 나타났다. 총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의 중위값은 1,750천원, 평균은 2,010천원, 표준편차는 1,355천원으로 나타났다.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는 중위값이 0원, 평균이 34천원, 표준편차가 22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받는 현물의 환산액도 중위값 50천원, 평균 80천원, 표준편차 10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에 따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먼저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의 중위값은 저소득가구 700천원, 일반가구 2,150천원으로 일반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구원 평균생활비도 각각 817천원과 2,414천원으로 일반가구의 지출이 저소득가구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가구원 생활비는 저소득가구의 평균이 6천원인데 비해 일반가구는 44천원으로 절대적인 액수는 크지 않은 반면에 그 격차는 동거가구원 생활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반가구에서 비동거가구원에 대한 이전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원받는 현물의 환산액은 저소득가구가 평균 59천원, 일반가구가 평균 87천원으로 다른 항목들과 달

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활비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저소득가구의 중위값 730천원, 평균 882천원인 반면, 일반가구는 중위값 2,260천원, 평균 2,544천원으로 각각 3배 정도의 다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3〉 총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A)	1,750	2,010	1,355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B)	0	34	223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C)	50	80	109
	총생활비(A+B+C)	1,860	2,124	1,418
저소득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A)	700	817	417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B)	0	6	49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C)	30	59	65
	총생활비(A+B+C)	730	882	438
일반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A)	2,150	2,414	1,540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B)	0	44	300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C)	60	87	135
	총생활비(A+B+C)	2,260	2,544	1,613

소득수준별로 총생활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에 대한 총생활비 구성은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가 94.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생활비를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이 3.8%를 차지하고 있고,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가 1.6%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구성비는 전체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거가구원 현금총생활비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92.6%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반가구는 94.9%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은 저소득가구는 59천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87천원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원받는 현물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금액에 있어서는 낮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종 공공부조성 현물급여가 저소득가구에게 집중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비동거가구원의 현금생활비는 일반가구에서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6천원으로 0.7%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는 44천원으로 1.7%로 그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총생활비 구성

(단위: 천원, %)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A)	2,010	94.6	817	92.6	2,414	94.9
비동거가구원 현금생활비(B)	34	1.6	6	0.7	44	1.7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C)	80	3.8	59	6.7	87	3.4
총생활비(A+B+C)	2,124	100.0	882	100.0	2,544	100.0

3. 항목별 총생활비

지출항목별 생활비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가구의 식료품비는 중위값 510천원, 평균 543천원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는 중위값이 40천원, 평균이 98천원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분포형태를 띄고 있다. 세금은 중위값이 30천원, 평균이 105천원이고 사회보장분담금은 중위값 100천원, 평균 130천원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평균 12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어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평균 0원으로 나타났다. 이자로 평균 77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월세를 지출하는 가계에서는 평균 3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먼저 식료품비의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평균 303천원을, 일반가구에서 평균 62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식료품비 지출에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에서 평균 82천원을, 일반가구에서 평균 103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저소득가구에서 13천원을, 일반가구에서 평균 136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소득수준별로 세금부담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분담금 또한 저소득가구가 평균 2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가구는 평균 166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득수준별로 일정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축산업 종사가정의 자가소비액은 다른 항목들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즉, 일반가구에서 평균 9천원을 자가소비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평균 20천원을 소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서 자가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업부문에서의 자가소비액은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소득계층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지출은 일반가구에서 평균 92천원을 지출하고, 저소득가구에서는 평균 31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월세는 일반가구에서 평균 37천원을 지출하고 저소득가구에서는 평균 35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이 부문에 있어서도 소득계층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지출항목별 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식료품비	510	543	282
	보건의료비	40	98	210
	세금	30	105	274
	사회보장분담금	100	130	132
	자가소비액(농축산)	0	12	52
	자가소비액(어업)	0	0	3
	이자지출	0	77	190
	주택월세 ¹⁾	0	36	95
저소득	식료품비	260	303	128
	보건의료비	30	82	206
	세금	2	13	88
	사회보장분담금	0	24	34
	자가소비액(농축산)	0	20	46
	자가소비액(어업)	0	0	1
	이자지출	0	31	78
	주택월세	0	35	57
일반	식료품비	600	624	314
	보건의료비	50	104	212
	세금	50	136	358
	사회보장분담금	145	166	156
	자가소비액(농축산)	0	9	56
	자가소비액(어업)	0	0	4
	이자지출	0	92	246
	주택월세	0	37	119

주) 보증부 월세 포함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의 비중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평균 총가계지출 2,249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543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5.8%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분담금으로 130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금 4.7%, 보건의료비 4.4%, 이자지출 3.4%, 주택월세 1.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거의 비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식료품 지출의 부담은 저소득가구에서 31.3%, 일반가구에서 23.3%로 저소득가구에서 식료품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출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에서 3.2%를, 일반가구에서는 3.4%를 차지하여 소득수준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저소득가구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일반가구에서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다소 비중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이 눈에 띈다. 먼저 사회보장분담금의 경우 저소득가구에서는 2.5%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반가구에서는 6.2%를, 세금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에서 1.3%에 불과한데 비해 일반가구에서는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6〉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지출구성

(단위: 천원, %)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543	24.1	303	31.3	624	23.3
보건의료비	98	4.4	82	8.5	104	3.9
세금	105	4.7	13	1.3	136	5.1
사회보장분담금	130	5.8	24	2.5	166	6.2
자가소비액(농축산)	12	0.5	20	2.1	9	0.3
자가소비액(어업)	0	0.0	0	0.0	0	0.0
이자지출	77	3.4	31	3.2	92	3.4
주택월세	36	1.6	35	3.6	37	1.4
총가계지출	2,249	100.0	969	100.0	2,682	100.0

주) 주요한 지출항목만을 설문하였으므로 항목별 지출액의 총합이 총가계지출과 일치하지 않음.

제3절 재산 및 부채

1. 가구의 재산

2006년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가구의 재산을 알아보았다. 가구의 재산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이며, 총재산액과 순재산액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총재산액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을 합산한 값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순재산액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전체 조사가구가 2005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명의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 총재산액과 순재산액

총재산액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타의 경우 가격이 포함된다.

총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약 181,84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85,011천원, 일반가구가 약 214,821천원이다.

〈표 7-3-1〉 총재산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0,000	181,843	344,120
일반	113,050	214,821	407,282
저소득	33,000	85,011	238,311

총재산액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체 가구의 39.0%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인 21.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9.5% 순으로 많다. 총재산액을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31.6%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에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45.0%로 가장 높다.

〈표 7-3-2〉 총재산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원 미만	11.7	27.6	6.3
1,000만원~ 5,000만원 미만	21.8	31.6	18.5
5,000만원~ 1억원 미만	19.5	17.5	20.2
1억~ 5억원 미만	39.0	21.2	45.0
5억~ 10억원 미만	5.5	1.7	6.8
10억~ 20억원 미만	2.0	0.3	2.6
20억원 이상	0.4	0.2	0.5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순재산액은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총재산액에서 금융기관대출 등의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이다. 총부채액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미리탄 계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약 156,89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71,791천원, 일반가구가 약 185,833천원이다.

〈표 7-3-3〉 순재산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000	156,891	328,890
일반	97,000	185,833	384,165
저소득	27,000	71,791	239,533

순재산액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전체 가구의 35.1%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인 22.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9.0% 순으로 많다. 순재산액을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1,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34.0%로 가장 높고, 일반 가구에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40.8%로 가장 높다.

〈표 7-3-4〉 순재산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원 미만	16.6	34.0	10.7
1,000만~ 5,000만원 미만	22.7	29.2	20.5
5,000만~ 1억원 미만	19.0	16.4	19.9
1억~ 5억원 미만	35.1	18.5	40.8
5억~ 10억원 미만	4.6	1.6	5.7
10억~ 20억원 미만	1.6	0.2	2.0
20억원 이상	0.4	0.1	0.4
계	100.0	100.0	100.0

나. 소유부동산

소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나 주택외 건물, 토지, 양식장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0%이다. 부동산 소유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19.9%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24.0%이다.

〈표 7-3-5〉 소유부동산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소유 부동산 없음	77.0	80.1	76.0
소유 부동산 있음	23.0	19.9	24.0
계	100.0	100.0	100.0

소유부동산의 형태를 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57.1%로 가장 많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부동산 소유가구 중 40.1%이다. 소유부동산의 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의 형태로 소유하는 비중이 85.0%로 가장 높다. 한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가 49.3%로 가장 많다.

〈표 7-3-6〉 소유부동산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40.1 (100.0)	15.0 (8.2)	47.2 (91.8)
주택 외 건물 (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계)·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12.3 (100.0)	2.6 (4.7)	15.0 (95.3)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57.1 (100.0)	85.0 (32.8)	49.3 (67.3)

주)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전체 가구 중 23.0%)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는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소유부동산 시가총액은 소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23.0%)에서 평균은 약 229,20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58,368천원, 일반가구가 약 249,284천원이다.

〈표 7-3-7〉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100,000	229,201	481,720
일반	100,000	249,284	513,985
저소득	64,000	158,368	439,285

주)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23.0%)를 대상으로 함.

소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소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23.0%)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40.7%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22.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1.7% 순으로 많다. 소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각각 30.0%, 43.8%로 가장 높다.

〈표 7-3-8〉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1,000만원 미만	3.4	8.5	2.0
1,000만~ 5,000만원 미만	22.0	32.1	19.1
5,000만~ 1억원 미만	21.7	23.8	21.1
1억~ 5억원 미만	40.7	30.0	43.8
5억~ 10억원 미만	8.5	4.6	9.6
10억~ 20억원 미만	2.6	0.2	3.2
20억원 이상	1.1	0.8	1.2
계	100.0	100.0	100.0

주: 1)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23.0%)를 대상으로 함.

다. 점유부동산

점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기타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전세보증금, 기타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5%이다. 부동산 점유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점유부동산이 있는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4.6%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점유부동산이 있는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16.5%이다.

〈표 7-3-9〉 점유부동산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점유 부동산 없음	86.5	95.4	83.5
점유 부동산 있음	13.5	4.6	16.5
계	100.0	100.0	100.0

점유부동산의 형태를 보면, 점유부동산이 있는 전체 가구 중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의 형태로 점유한 가구가 90.6%로 가장 많고, 가계, 사업장 등에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점유부동산이 있는 가구는 63.5%이다. 점유부동산의 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점유부동산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권리금, 사업설비 등의 형

대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93.4%, 9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7-3-10〉 점유부동산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전세보증금 준 것(가계, 사업장 등)	63.5 (100.0)	52.4 (7.2)	64.5 (92.9)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	90.6 (100.0)	93.4 (8.9)	90.3 (91.1)

주: 1) 점유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3.5%)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점유부동산 시가총액은 점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13.5%)에서 평균은 약 60,16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27,004천원, 일반가구가 약 63,315천원이다.

〈표 7-3-11〉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30,000	60,161	151,184
일반	30,000	63,315	166,433
저소득	11,000	27,004	39,863

주: 1) 점유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3.5%)를 대상으로 함.

점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점유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13.5%)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3.8%로 가장 많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1.2%, 1,000만원 미만이 20.4% 순으로 많다. 점유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각각 47.3%, 43.5%로 가장 높다.

〈표 7-3-12〉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1,000만원 미만	20.4	38.0	18.7
1,000만~ 5,000만원 미만	43.8	47.3	43.5
5,000만~ 1억원 미만	21.2	9.3	22.3
1억~ 5억원 미만	13.4	5.5	14.1
5억~ 10억원 미만	0.7	0.0	0.8
10억~ 20억원 미만	0.4	0.0	0.4
20억원 이상	0.2	0.0	0.2
계	100.0	100.0	100.0

주: 1) 점유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3.5%)를 대상으로 함.

라. 금융자산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8%이다. 금융자산 소유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금융자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58.7%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금융자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88.3%이다.

〈표 7-3-13〉 금융자산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금융자산 없음	19.2	41.3	11.7
금융자산 있음	80.8	58.7	88.3
계	100.0	100.0	100.0

금융자산의 형태를 보면,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 예금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소유한 가구가 83.9%로 가장 많고, 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적금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소유한 가구는 59.6%이다. 금융자산의 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예금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93.4%, 81.8%로 가장 높다.

〈표 7-3-14〉 금융자산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예금	83.9 (100.0)	93.4 (20.6)	81.8 (79.4)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중신보험, 청약부금 등)	59.6 (100.0)	15.9 (4.9)	69.5 (95.1)
주식·채권	3.5 (100.0)	0.5 (2.3)	4.2 (97.7)
타기 전 부은 계돈	1.1 (100.0)	0.4 (6.2)	1.3 (93.8)
기타(사채 등)	0.7 (100.0)	0.9 (23.0)	0.7 (77.1)

주: 1)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80.8%)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금융자산 시가총액은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80.8%)에서 평균은 약 27,385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9,876천원, 일반가구가 약 31,351천원이다.

〈표 7-3-15〉 총 금융자산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12,000	27,385	53,192
일반	15,000	31,351	64,870
저소득	3,000	9,876	18,219

주: 1)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80.8%)를 대상으로 함.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은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80.8%)에서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고, 250만원 미만이 17.7%,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5.8% 순으로 많다.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25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46.4%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의 비중이 28.8%로 가장 높다.

〈표 7-3-16〉 총 금융자산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250만원 미만	17.7	46.4	11.2
250만~ 500만원 미만	10.2	14.7	9.2
500만원~1,000만원 미만	15.8	15.2	16.0
1,000만~ 2,500만원 미만	26.1	14.2	28.8
2,500만원~ 5,000만원 미만	15.1	5.0	17.4
5,000만~ 1억원 미만	9.9	3.0	11.4
1억원 이상	5.3	1.5	6.1
계	100.0	100.0	100.0

주: 1)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80.8%)를 대상으로 함.

마. 농기계

농기계에는 동력 탈곡기, 경운기, 콤바인 등이 포함된다.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5%이다. 농기계 소유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농기계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9.6%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농기계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4.1%이다(주8).

〈표 7-3-17〉 농기계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농기계 없음	94.5	90.4	95.9
농기계 있음	5.5	9.6	4.1
계	100.0	100.0	100.0

농기계의 소유형태를 보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 경운기를 소유한 가

주8) 농기계의 소유유무와 농기계의 가격을 소득집단별로 비교할 때,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지만, 총 농기계의 가격은 일반가구의 평균농기계가격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기계 소유비율과 농기계 가격이 역전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소득가구가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 때문이다. 즉, 농촌지역에 사는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농기계 소유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의 농기계를 소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동.

구가 83.4%로 가장 많고, 경운기, 콤팩트, 트랙터를 제외한 기타 농기계를 소유한 가구는 61.5%이다. 농기계의 소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경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84.2%, 82.8%로 가장 높다.

〈표 7-3-18〉 농기계의 소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동력탈곡기	4.23 (100.0)	3.1 (32.0)	5.2 (68.0)
경운기	83.4 (100.0)	84.2 (44.7)	82.8 (55.3)
콤팩트	12.1 (100.0)	5.8 (21.0)	17.2 (79.0)
트랙터	22.1 (100.0)	13.4 (26.8)	29.1 (73.2)
기타	61.5 (100.0)	54.9 (39.5)	66.7 (60.5)

주: 1)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5%)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총 농기계의 가격은 농기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5%)에서 평균은 약 4,72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2,171천원, 일반가구가 약 6,741천원이다.

〈표 7-3-19〉 총 농기계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1,000	4,720	7,676
일반	1,300	6,741	12,374
저소득	600	2,171	3,163

주: 1)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5%)를 대상으로 함.

총 농기계의 가격은 농기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5%)에서 250만원 미만이 69.5%로 가장 많고,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0.5%,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8.3% 순으로 많다. 총 농기계의 가격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25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각각 82.6%, 59.1%로 가장 높다.

〈표 7-3-20〉 총 농기계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250만원 미만	69.5	82.6	59.1
250만원~ 500만원 미만	10.5	6.8	13.4
500만원~1,000만원 미만	6.2	5.5	6.8
1,000만원~ 2,500만원 미만	8.3	4.1	11.7
2,500만원~ 5,000만원 미만	4.0	1.1	6.2
5,000만원~ 1억원 미만	1.6	0.0	2.9
1억원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주: 1)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5%)를 대상으로 함.

바. 농축산물

농축산물에는 소, 돼지, 닭, 재고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이다. 농축산물 소유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농축산물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6.3%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농축산물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2.3%이다.

〈표 7-3-21〉 농축산물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농축산물 없음	96.7	93.7	97.7
농축산물 있음	3.3	6.3	2.3
계	100.0	100.0	100.0

농축산물의 소유형태를 보면,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 소, 돼지, 닭, 재고농산물을 제외한 기타 농축산물을 소유한 가구가 53.3%로 가장 많고, 소를 소유한 가구는 39.4%이다. 농축산물의 소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소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44.9%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도 기타를 제외하면 소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34.2%로 가장 높다.

〈표 7-3-22〉 소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소	39.4 (100.0)	44.9 (55.5)	34.2 (44.5)
돼지	1.3 (100.0)	0.6 (23.9)	1.9 (76.1)
닭	8.3 (100.0)	7.5 (44.2)	9.1 (55.9)
재고농산물	19.0 (100.0)	18.6 (47.8)	19.4 (52.2)
기타	53.3 (100.0)	45.1 (41.4)	61.0 (58.6)

주: 1)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3.3%)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총 농축산물의 가격은 농축산물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3.3%)에서 평균은 약 24,926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1,373천원, 일반가구가 약 37,745천원이다.

〈표 7-3-23〉 총 농축산물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7,000	24,926	45,504
일반	9,000	37,745	80,447
저소득	4,500	11,373	12,680

주: 1)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3.3%)를 대상으로 함.

총 농축산물의 가격은 농축산물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3.3%)에서 250만원 미만인 30.0%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19.7%,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7.1% 순으로 많다. 총 농축산물의 가격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25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각각 34.6%, 25.8%로 가장 높다.

〈표 7-3-24〉 총 농축산물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250만원 미만	30.0	34.6	25.8
250만~ 500만원 미만	13.6	16.7	10.6
500만원~1,000만원 미만	17.1	20.3	14.1
1,000만~ 2,500만원 미만	19.7	17.2	22.1
2,500만원~ 5,000만원 미만	7.9	5.7	10.0
5,000만~ 1억원 미만	5.0	3.9	6.1
1억원 이상	6.7	1.6	11.5
계	100.0	100.0	100.0

주: 1) 농축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3.3%)를 대상으로 함.

사.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기타 동산·부동산에는 위의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을 제외한 자동차, 회원권이나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이 포함된다.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1%이다.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28.0%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75.1%이다.

〈표 7-3-25〉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위의 재산 이외)동산·부동산 없음	36.9	72.0	24.9
기타(위의 재산 이외)동산·부동산 있음	63.1	28.0	75.1
계	100.0	100.0	100.0

기타 동산·부동산의 소유형태를 보면,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중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가 91.3%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을 소유

한 가구는 30.9%이다. 기타 동산·부동산의 소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기타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72.6%, 93.7%로 가장 높다.

〈표 7-3-26〉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자동차	91.3 (100.0)	72.6 (9.0)	93.7 (91.1)
회원권(운동클럽 등)	0.5 (100.0)	0.2 (4.6)	0.5 (95.4)
기타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	30.9 (100.0)	38.2 (13.9)	30.0 (86.1)

주: 1)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63.1%)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기타 동산·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63.1%)에서 평균은 약 8,144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3,798천원, 일반가구가 약 8,695천원이다.

〈표 7-3-27〉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가격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4,500	8,144	18,225
일반	5,000	8,695	20,602
저소득	2,000	3,798	5,857

주: 1)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63.1%)를 대상으로 함.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기타 동산·부동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63.1%)에서 250만원 미만인 31.1%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25.5%,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9.9% 순으로 많다.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25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각각 56.9%, 27.8%로 가장 높다.

〈표 7-3-28〉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250만원 미만	31.1	56.9	27.8
250만~500만원 미만	19.9	17.6	20.1
500만원~1,000만원 미만	25.5	17.1	26.5
1,000만~2,500만원 미만	19.8	7.7	21.3
2,500만원~5,000만원 미만	2.2	0.2	2.4
5,000만~1억원 미만	0.8	0.3	0.9
1억원 이상	0.9	0.1	0.9
계	100.0	100.0	100.0

주: 1)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63.1%)를 대상으로 함.

2. 가구의 부채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된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1.8%이다. 부채가 있는 가구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저소득가구의 41.0%이다. 한편 일반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55.5%이다.

〈표 7-3-29〉 부채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채 없음	48.2	59.0	44.6
부채 있음	51.8	41.0	55.5
계	100.0	100.0	100.0

가구부채의 형태를 보면,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채가 있는 가구가 68.7%로 가장 많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형태의 부채가 있는 가구는 27.4%이다. 가구부채의 소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62.7%, 70.2%로 가장 높다.

〈표 7-3-30〉 부채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금융기관대출	68.7 (100.0)	62.7 (18.4)	70.2 (81.6)
일반사채	12.1 (100.0)	26.7 (44.4)	8.4 (55.6)
카드빚	8.3 (100.0)	12.0 (29.2)	7.4 (70.8)
전세보증금(받은돈)	27.4 (100.0)	16.8 (12.4)	30.0 (87.6)
외상, 미리탄 계돈	0.9 (100.0)	0.6 (13.4)	1.0 (86.6)
기타부채	7.7 (100.0)	10.2 (26.6)	7.1 (73.4)

주: 1)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1.8%)를 대상으로 한 다중응답임. 단, ()안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임.

총 부채액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1.8%)에서 평균은 약 48,586천원 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32,512천원, 일반가구가 약 52,628천원이다.

〈표 7-3-31〉 총 부채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30,000	48,586	75,985
일반	30,000	52,628	85,836
저소득	16,000	32,512	54,156

주: 1)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1.8%)를 대상으로 함.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연평균 이자상환금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7.2%로 가장 많고, 상환금이 없는 가구가 30.2%, 100만원 미만이 24.3% 순으로 많다. 연평균 이자상환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상환금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에서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40.2%로 가장 높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총 부채액은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26.8%로 가장 많고, 2,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21.9% 순으로 많다. 총 부채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중이 각각 29.9%, 26.0%로 가장 높다.

〈표 7-3-32〉 총 부채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500만원 미만	9.5	17.1	7.6
500만~1,000만원 미만	9.6	15.5	8.2
1,000만~2,500만원 미만	26.8	29.9	26.0
2,500만~5,000만원 미만	21.9	19.4	22.5
5,000만~1억원 미만	19.7	12.6	21.4
1억원 이상	12.6	5.5	14.4
계	100.0	100.0	100.0

주: 1)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1.8%)를 대상으로 함.

〈표 7-3-33〉 연평균 이자상환금

(단위: %)

구분	전체 ¹⁾	저소득	일반
상환금 없음	30.2	43.1	26.9
100만원 미만	24.3	28.7	23.3
100만~500만원 미만	37.2	25.2	40.2
500만~1000만원 미만	6.3	2.4	7.3
1000만원 이상	2.1	0.6	2.4
계	100.0	100.0	100.0

주: 1)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1.8%)를 대상으로 함.

연평균 이자상환금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 가구 중 51.8%)에서 평균이 약 1,78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929천원, 일반가구가 약 1,992천원이다.

〈표 7-3-34〉 연평균 이자상환금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¹⁾	800	1,780	3,049
일반	960	1,992	3,648
저소득	240	929	1,432

주: 1)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51.8%)를 대상으로 함.

제8장 주거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1. 주택시설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택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아파트가 35.9%, 일반단독주택이 21.7%,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0.2%였다. 소득 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일반단독주택이 3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4.5%, 일반아파트가 15.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가 4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8.7%, 일반단독주택이 16.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일반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1> 주택의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단독주택		21.7	38.3	16.1
다가구용 단독주택		20.2	24.5	18.7
다세대주택		3.5	2.4	3.8
연립주택(빌라)		12.0	9.8	12.8
일반아파트		35.9	15.7	42.8
영구임대아파트		2.8	6.0	1.8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4	2.2	2.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6	0.6	0.6
오피스텔		0.7	0.1	0.9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0	0.1	0.0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1	0.4	0.1
기타		0.0	0.0	0.0
모름/무응답		0.0	0.1	0.0
계		100.0	100.0	100.0

주거의 위치는 아래의 <표 8-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지상이 93.6%, 반지하층이 2.8%, 지하층이 1.8%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지상이 91.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반지하층 4.5%, 지하층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지상이 94.3%, 반지하층이 2.2%, 지하층이 1.5%로 나타났다.

<표 8-1-2> 주거 위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1.8	2.7	1.5
반지하층		2.8	4.5	2.2
지상		93.6	91.3	94.3
옥탑		0.3	0.5	0.2
모름/무응답		1.6	1.0	1.8
계		100.0	100.0	100.0

주거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6.4%로 가장 많고,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는 19.1%이다. 주거의 점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자가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50.7%, 58.3%로 가장 높다.

<표 8-1-3> 주거 점유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6.4	50.7	58.3
전세		19.1	16.9	19.8
보증부 월세		15.7	18.9	14.7
월세		2.8	5.2	1.9
기타		6.1	8.3	5.3
모름/무응답		0.0	0.1	0.0
계		100.0	100.0	100.0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방의 개수가 3개인 가구가 51.2%로 가장 많고, 2개인

경우가 33.5%, 1개인 경우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방의 수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2개인 경우가 47.7%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3개인 경우가 55.7%로 가장 높다.

〈표 8-1-4〉 방의 수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8.3	11.4	7.2
2개	33.5	47.7	28.7
3개	51.2	37.7	55.7
4개	6.3	2.7	7.5
5개 이상	0.8	0.5	0.9
계	100.0	100.0	100.0

주택의 연건평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0평 이상 30평 미만에 살고 있는 가구가 36.8%로 가장 많고, 10평 이상 20평 미만인 경우가 31.6%, 30평 이상 40평 미만인 경우가 20.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연건평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0평 이상 20평 미만인 경우가 43.5%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20평 이상 30평 미만인 경우가 38.1%로 가장 높다.

〈표 8-1-5〉 주택의 연건평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평 미만	6.5	12.1	4.6
10~ 20평 미만	31.6	43.5	27.6
20~ 30평 미만	36.8	33.1	38.1
30~ 40평 미만	20.6	9.8	24.3
40~ 50평 미만	3.4	1.0	4.2
50평 이상	1.1	0.4	1.4
계	100.0	100.0	100.0

상·하수도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이 98.2%, 공

동사용이 1.6%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이 97.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공동사용이 2.4%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이 98.6%로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이 1.3%로 나타났다.

〈표 8-1-6〉 상·하수도 사용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	98.2	97.0	98.6
공동사용	1.6	2.4	1.3
없음	0.2	0.5	0.1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부엌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입식이 97.9%, 단독사용-재래식이 1.8%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입식이 93.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이 단독사용-재래식으로 6.1%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입식이 9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7〉 부엌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입식	97.9	93.4	99.4
단독사용-재래식	1.8	6.1	0.3
공동사용-입식	0.1	0.2	0.1
공동사용-재래식	0.0	0.0	0.0
없음	0.1	0.3	0.1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화장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3.9%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단독사용-재래식이 4.2%, 공동사용-수세식이 1.3%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수세식이 82.9%, 단독사용-재래식이 12.7%, 공동사용-수세식이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7.7%, 단독사용-재래식이 1.3%, 공동사용-수세식이 0.7%였다.

<표 8-1-8> 화장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수세식		93.9	82.9	97.7
단독사용-재래식		4.2	12.7	1.3
공동사용-수세식		1.3	2.9	0.7
공동사용-재래식		0.4	1.2	0.1
없음		0.0	0.1	0.0
모름/무응답		0.2	0.3	0.1
계		100.0	100.0	100.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92.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5.2%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80.6%,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이 3.9%였으며, 없음이 14.9%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9>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92.4	80.6	96.5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1.6	3.9	0.8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0.5	0.5	0.5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0.0	0.1	0.0
없음		5.2	14.9	1.9
모름/무응답		0.3	0.1	0.3
계		100.0	100.0	100.0

난방시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10>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스보일러 58.1%, 기름보일러 21.9%, 중앙난방(지역난방) 13.1%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가스보일러 41.3%, 기름보일러 38.0%, 중앙난방(지역난방) 8.9% 순이었다. 일반가구는 가스보일러 63.8%, 기름보일러 16.4%, 중앙난방(지역난방) 14.5%로 나타났다.

<표 8-1-10>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뿔감) 아궁이		0.9	2.9	0.2
연탄보일러		0.8	1.9	0.4
나무·석탄보일러		0.4	0.9	0.2
기름보일러		21.9	38.0	16.4
가스보일러		58.1	41.3	63.8
전기보일러		4.4	5.0	4.2
중앙난방(지역난방)		13.1	8.9	14.5
전기장판		0.4	0.1	0.2
기타		0.1	0.1	0.1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2. 주택가격

자가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6.4%)에서 평균은 약 146,06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74,532천원, 일반가구가 약 167,245천원이다.

〈표 8-1-11〉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000	146,063	178,005
일반	100,000	167,245	226,354
저소득	50,000	74,532	65,135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6.4%)에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28.5%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27.8%,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5.4%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30.7%로 가장 높다.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3.9	13.0	1.2
1천만~ 5천만원 미만		17.8	35.4	12.5
5천만~ 1억원 미만		28.5	25.5	29.4
1억~ 2억원 미만		27.8	18.1	30.7
2억~ 3억원 미만		10.5	4.6	12.2
3억원 이상		11.6	3.4	14.0
계		100.0	100.0	100.0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전세, 보증부월세, 그리고 기타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내는 가구 중에서 전세, 보증부월세 외의 주택점유형태를 가진 가구는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무상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전세, 보증부월세의 경우로만 나누어 살펴본다.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9.1%)에서 평균은 약 48,957천원 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29,793천원, 일반가구가 약 54,517천원이다.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700	48,957	72,411
일반	37,000	54,517	91,253
저소득	25,000	29,793	16,789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9.1%)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는 가구가 37.0%로 가장 많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가 20.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전세금을 내는 경우가 각각 50.5%, 33.0%로 가장 높다.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2.3	7.3
1천만~ 3천만원 미만		37.0	50.5	33.0
3천만~ 5천만원 미만		30.5	27.1	31.5
5천만~ 1억원 미만		20.4	13.3	22.5
1억원 이상		9.8	1.8	12.1
계		100.0	100.0	100.0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7%)에서 평균은 약 11,738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7,735천원, 일반가구가 약 13,492천원이다.

〈표 8-1-15〉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00	11,738	15,070
일반	8,000	13,492	19,208
저소득	4,530	7,735	7,868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인 경우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살펴보면,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7%)에서 1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57.7%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30.8%이다.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72.0%, 51.4%로 가장 높다.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57.7	72.0	51.4
1천만~ 3천만원 미만	30.8	23.2	34.2
3천만~ 5천만원 미만	9.0	4.2	11.2
5천만~ 1억원 미만	2.2	0.6	2.8
1억원 이상	0.4	0.2	0.4
계	100.0	100.0	100.0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 및 월세인 경우 월평균 주택의 월세액을 살펴보면, 주택의 월세액은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5%)에서 평균은 약 199천원이고,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149천원, 일반가구가 약 224천원이다.

〈표 8-1-17〉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단위: 천원)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0	199	141
일반	200	224	172
저소득	130	149	91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8.5%)에서 30만원 미만인 가구가 77.7%로 가장 많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8.9%이다. 월평균 주택의 사글세 금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91.0%, 71.7%로 가장 높다.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원 미만		77.7	91.0
30만~ 50만원 미만		18.9	7.9	24.3
50만~ 100만원 미만		2.9	0.9	3.8
100만원 이상		0.6	0.1	0.8
계		100.0	100.0	100.0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1. 주택 구조·성능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료의 양호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2-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는 응답(예)이 74.7%,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이 25.3%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예 비율이 61.7%,

아니오 비율이 38.3%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그 비율이 각각 79.2%와 20.8%였다.

<표 8-2-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4.7	61.7	79.2
아니오	25.3	38.3	20.8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는 아래의 <표 8-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설비가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78.2%, 설비가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예 응답비율과 아니오 응답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각각 68.7%와 31.3%, 일반가구는 각각 81.5%와 18.5%였다.

<표 8-2-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8.2	68.7	81.5
아니오	21.7	31.3	18.5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는 아래의 <표 8-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22.0%,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77.9%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24.1%와 75.1%, 일반 가구에서는 각각 21.0%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22.0	24.9	21.0
아니오	77.9	75.1	78.9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92.1%,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은 7.9%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86.7%와 13.3%, 일반가구는 각각 93.9%와 6.0%로 나타났다.

〈표 8-2-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2.1	86.7	93.9
아니오	7.9	13.3	6.0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2. 생활환경

생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2-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47.3%와 52.7%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35.7%와 64.3%, 일반가구는 각각 51.3%와 48.7%로 나타나 일반가구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8-2-5〉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47.3	35.7	51.3
아니오	52.7	64.3	48.7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44.4%와 55.5%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37.1%와 62.8%, 일반가구는 각각 46.9%와 53.0%로 나타나 일반가구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8-2-6〉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44.4	37.1	46.9
아니오	55.5	62.8	53.0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의료 이용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71.1%와 28.9%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62.1%와 37.8%, 일반가구는 각각 74.1%와 25.8%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 8-2-7〉 의료기관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1.1	62.2	74.1
아니오	28.9	37.8	25.8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교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78.0%와 21.9%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66.0%와 33.9%, 일반가구는 각각 82.1%와 17.8%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 8-2-8〉 교육시설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8.0	66.0	82.1
아니오	21.9	33.9	17.8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83.8%와 16.1%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77.4%와 22.5%, 일반가구는 각각 85.9%와 14.0%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 8-2-9〉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3.8	77.4	85.9
아니오	16.1	22.5	14.0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자연환경 이용의 편리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예)의 비율과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의 비율이 각각 76.0%와 23.9%였다. 소득 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각각 71.5%와 28.5%, 일반가구는 각각 77.6%와 22.3%로 나타났다.

〈표 8-2-10〉 자연환경 이용의 편리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6.0	71.5	77.6
아니오	23.9	28.5	22.3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주거비 부담

소득집단별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은 아래의 <표 8-3-1>과 같다. 1순위에서는 자기돈이 77.7%,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이 10.1%로 높았고, 2순위에서는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립의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7.6%,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특성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돈		77.7	17.6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10.1	9.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2.3	8.7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9	61.2
사채		0.3	1.4
보증금 없다		3.6	1.3
모름/무응답		0.1	0.0
계		100.0	1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이 내용(1순위)은 아래의 <표 8-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기돈이 77.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10.1%,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5.9%의 순이었다. 월평균 지출규모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는 자기돈 70.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15.4%,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4.1%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는 자기돈 80.4%,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8.3%,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6.5%였다.

〈표 8-3-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77.7	70.0	80.4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10.1	15.4	8.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2.3	3.8	1.8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9	4.1	6.5
사채		0.3	0.5	0.2
보증금 없다		3.6	6.0	2.8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2순위)은 아래의 <표 8-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이 6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7.6%,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9.7%의 순으로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47.3%, 자기돈 19.1%,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14.5%이었고, 일반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64.3%, 자기돈 17.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8.7%였다.

<표 8-3-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17.6	19.1	17.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9.7	14.5	8.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8.7	11.6	8.1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61.2	47.3	64.3
사채		1.4	3.9	0.9
보증금 없다		1.3	3.6	0.8
계		100.0	100.0	100.0

다음에서 갖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 총 원금 상환액, 총 이자액,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의 경우 주택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갖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은 아래의 <표 8-3-4>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21,772천 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11,846천원, 일반 가구는 43,322천원이었다.

<표 8-3-4> 갖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000	21,772	36,000
저소득		3,000	9,852	11,846
일반		14,000	24,398	43,322

총 원금 상환액은 아래의 <표 8-3-5>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2,150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719천원, 일반 가구는 2,465천원이었다.

〈표 8-3-5〉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0	2,150	10,064
	저소득	0	719	2,465
	일반	0	2,465	12,361

소득집단별 총 이자액은 아래의 <표 8-3-6>과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1,440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631천원, 일반 가구는 1,617천원이었다.

〈표 8-3-6〉 총 이자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700	1,440	2,406
	저소득	0	631	919
	일반	870	1,617	2,871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는 아래의 <표 8-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84.1%로 가장 높았으며, 2~3회가 3.4%, 4회 이상이 2.4% 등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8.2%, 4회 이상이 5.2%, 2~3회가 3.6%였고, 일반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 85.5%, 2~3회가 3.3%, 4회 이상이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84.1	78.2	85.5
1회			1.2	1.1	1.2
2~3회			3.4	3.6	3.3
4회 이상			2.4	5.2	1.8
해당되지 않음			0.1	0.1	0.1
모름/무응답			8.9	11.8	8.2
계			100.0	100.0	100.0

2.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8-3-8>과 같다.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4.5%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일반가구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3%로 저소득 가구(50.4%)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8-3-8〉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성 정도	아주 필요하다		13.8	25.7	9.8
	다소 필요하다		8.2	9.3	7.8
	그저 그렇다		3.3	3.8	3.1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2	10.8	1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64.5	50.4	69.3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5.9%, 일반가구는 1.3%가 이용경험이 있다

고 응답해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9〉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2.5	5.9	1.3
	없다		96.7	93.6	97.8
	모름/무응답		0.8	0.6	0.9
계			100.0	100.0	100.0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22.5%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45.1%,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26.6%)가 일반 가구(16.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8-3-10〉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22.5	26.6	16.1
	대체로 만족		44.8	45.1	44.2
	그저 그렇다		21.3	16.5	28.7
	대체로 불만족		10.1	10.0	10.3
	매우 불만족		1.4	1.7	0.8
계			100.0	100.0	1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공공(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8-3-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5.9%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공공(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58.0%)와 일반가구(68.5%)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성 정도		아주 필요하다	9.8	13.9	8.4
		다소 필요하다	8.9	9.8	8.6
		그저 그렇다	3.9	5.1	3.5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5	13.1	11.0
		전혀 필요하지 않다	65.9	58.0	68.5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8.4%, 일반가구의 경우 98.2%로 소득집단 별로 이용경험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2〉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9	0.8	1.0
		없다	98.2	98.4	98.2
		모름/무응답	0.8	0.8	0.8
계			100.0	100.0	100.0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3〉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6.9	22.3	2.4
	대체로 만족		55.5	57.3	55.0
	그저 그렇다		19.1	0.0	24.5
	대체로 불만족		14.9	14.9	15.0
	매우 불만족		3.1	2.8	3.1
	모름/무응답		0.6	2.7	0.0
계			100.0	100.0	1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다음으로 전세자금(용자)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8-3-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세자금(용자)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전세자금(용자)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64.3%)와 일반가구(71.0%)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3-14〉 전세자금(용자)지원의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성 정도	아주 필요하다		9.4	11.7	8.6
	다소 필요하다		7.6	7.5	7.7
	그저 그렇다		3.2	4.5	2.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6	12.1	1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69.3	64.3	71.0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8.6%, 일반가구의 경우 98.5%로 소득집단

별로 이용경험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5>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6	0.6	0.6
	없다		98.5	98.6	98.5
	모름/무응답		0.8	0.8	0.9
계			100.0	100.0	100.0

전세자금(융자)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6>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7.5%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46.0%, 55.3%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16>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17.5	25.9	14.7
	대체로 만족		53.0	46.0	55.3
	그저 그렇다		20.1	12.4	22.7
	대체로 불만족		3.3	6.0	2.4
	매우 불만족		6.2	9.8	5.0
계			100.0	100.0	1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8-3-17>과 같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월세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3.4%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가구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6.7%로 저소득 가구(63.6%)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8-3-17〉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성 정도	아주 필요하다		7.4	13.9	5.2
	다소 필요하다		4.6	6.6	3.9
	그저 그렇다		3.2	4.0	2.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4	11.8	1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73.4	63.6	76.7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0%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가구(98.9%)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99.1%) 모두 저소득층 월세지원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18〉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1	0.2	0.0
	없다		99.0	98.8	99.1
	모름/무응답		1.0	1.0	0.9
계			100.0	100.0	100.0

저소득층 월세지원 이용경험자의 경우 <표 8-3-19>와 같이 모두 저소득가구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9〉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0.0	0.0	-
	대체로 만족		58.7	58.7	-
	그저 그렇다		26.8	26.8	-
	대체로 불만족		14.5	14.5	-
	매우 불만족		0.0	0.0	-
계			100.0	100.0	-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다음으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8-3-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0.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70.4%)와 일반가구(70.1%)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3-2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필요성 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필요성 정도	아주 필요하다		7.3	6.6	7.6
	다소 필요하다		7.5	5.6	8.2
	그저 그렇다		3.9	4.9	3.6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1	12.6	10.5
	전혀 필요하지 않다		70.2	70.4	70.1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3%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가구(98.6%)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98.2%) 모두 주택구

입자금(용자)지원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1〉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9	0.4	1.0
	없다		98.3	98.6	98.2
	모름/무응답		0.9	1.0	0.8
계			100.0	100.0	100.0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22>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응답도 23.7%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46.3%,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22〉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14.0	13.4	14.1
	대체로 만족		46.9	46.3	47.0
	그저 그렇다		23.7	40.4	21.4
	대체로 불만족		15.4	0.0	17.6
	매우 불만족		-	-	-
계			100.0	100.0	1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3. 주거관련 생활여건

주거관련 생활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3-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3.4%,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각각 6.3%와 31.3%, 일반 가구는 각각 2.4%와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3〉 (돈이 없어서)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3.4	6.3	2.4
	아니오	30.6	31.3	30.4
	비해당	66.0	62.3	67.2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는 아래의 <표 8-3-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6.8%,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93.2%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18.0%와 81.9%였고, 일반 가구는 각각 2.9%와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4〉 (돈이 없어서)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6.8	18.0	2.9
	아니오	93.2	81.9	97.1
	모름/무응답	0.0	0.1	0.0
	계	100.0	100.0	100.0

제9장 건강 및 의료

제1절 건강상태

건강 및 의료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건강상태를 물어본 결과는 <표 9-1-1>과 같다. 전체 가구원 중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는 가구원은 72.7%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는 가구원은 16.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10.6%인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39.9%로 나타나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일반 가구의 가구원보다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26.4	13.8	29.5
건강한 편이다		46.3	33.2	49.5
보통이다		10.9	13.1	10.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2.7	28.0	9.0
건강이 아주 안 좋다		3.7	11.9	1.6
계		100.0	100.0	100.0

소득집단별 주요병명은 <표 9-1-2>와 같다. 전체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구의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16.8%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45.7%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일반 가구에 비해 약 2.7배 이상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 가구원의 주요병명으로는 고혈압, 저혈압(6.5%),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3.7%), 당뇨병(2.7%)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과 일반 가구의 가구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표 9-1-2〉 주요병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77.6	54.3	83.2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0.5	1.2	0.4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3.7	9.0	2.4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0.9	1.8	0.7
	만성간염, 간경변	0.3	0.5	0.3
	당뇨병	2.7	5.6	2.0
	갑상선질환	0.5	0.8	0.5
	고혈압, 저혈압	6.5	13.0	5.0
	중풍, 뇌혈관질환	0.8	1.9	0.5
	심근경색증, 협심증	0.9	1.7	0.7
	폐결핵, 결핵	0.1	0.2	0.1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0.2	0.3	0.1
	천식	0.3	1.0	0.2
	백내장, 녹내장	0.1	0.3	0.1
	만성중이염	0.1	0.1	0.1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0.4	0.8	0.3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3	0.7	0.2
	골다공증	0.5	1.4	0.3
	기타질환	3.7	5.6	3.2
	계	100.0	100.0	100.0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횟수를 물어본 결과는 <표 9-2-1>과 같다. 전체 가구의 2005년 1년간 건강검진횟수는 5,132회였으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3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건강검진횟수는 830회,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2회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 가구원의 건강검진횟수는 4302회,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3회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가구원 1인당 1년간 평균 건강검진횟수는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1〉 건강검진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총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830	0.2	0.3
	일반	4,302	0.3	0.6
	계	5,132	0.3	0.5

다음으로 외래진료횟수는 <표 9-2-2>와 같다. 전체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외래진료횟수는 203,867회였으며, 가구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9.83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외래진료횟수는 72,241회, 가구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17.9회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 가구원의 외래진료횟수는 131,626회,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7.9회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외래진료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평균 약 2.3배 정도 많이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외래진료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총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72,241	17.9	26.4
	일반	131,626	7.9	20.6
	계	203,867	9.8	23.3

다음으로 입원횟수는 <표 9-2-3>과 같다. 전체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입원횟수는 2204회였으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입원횟수는 770회,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2회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 가구원의 입원횟수는 1434회,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회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입원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3〉 입원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총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770	0.2	0.7
	일반	1,434	0.1	0.5
	계	2,204	0.1	0.6

다음으로 입원일수는 <표 9-2-4>와 같다. 전체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입원일수는 40,623일이었으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입원일수는 16,589일,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4.1일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 가구원의 입원일수는 24,034일,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4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약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4〉 입원일 수

(단위: 일)

특성	구분	총빈도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16,589	4.1	14.6
	일반	24,034	1.4	16.9
	계	40,623	2.0	15.5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표 9-2-5>와 같다. 전체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병/질병(4.9%)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1.7%), 출산(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도 지병/질병(9.0%)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2%), 출산(0.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도 지병/질병(3.9%), 사고(1.6%), 출산(0.9%)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표 9-2-5〉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92.5	88.3	93.5
지병/질병		4.9	9.0	3.9
사고		1.7	2.2	1.6
출산		0.8	0.3	0.9
건강검진		0.0	0.1	0.0
요양/휴식		0.0	0.0	0.0
성·정형/교정		0.1	0.0	0.1
기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소득집단별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표 9-2-6>과 같다. 전체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63.1%), 종합, 대학병원(8.5%), 한방 병·의원(1.2%)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지역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 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 내 병·의원(62.9%), 종합, 대학병원(13.0%), 보건소(2.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 내 병·의원(63.1%), 종합, 대학병원(7.4%), 한방 병·의원(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6.1	19.5	27.7
종합, 대학병원		8.5	13.0	7.4
지역 내 병·의원		63.1	62.9	63.1
한방 병·의원		1.2	1.6	1.1
보건소		1.1	2.9	0.6
기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표 9-2-7>과 같다. 전체 가구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원 중 47.8%가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하는 비율은 13.9%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의료기관 이용 가구원 중 60.8%가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반면, 일반 가구의 의료기관 이용 가구원 중 43.4%만이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7〉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그렇지 않다		1.4	0.9	1.6
별로 그렇지 않다		12.5	9.8	13.5
보통이다		38.0	28.5	41.2
대체로 그렇다		44.1	54.4	40.6
매우 그렇다		3.7	6.4	2.8
모름/무응답		0.2	0.0	0.3
계		100.0	100.0	100.0

제10장 가족

제1절 가족관계 및 가족지원체계

가족관계 및 가족지원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0-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7.8%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25.5%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는 53.7%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7.8	25.5	53.7
	없다	50.7	71.2	45.3
	모름/무응답	1.5	3.3	1.0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34.8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평균 35.6회, 일반 가구의 경우는 평균 34.7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왕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0	34.8	73.1
	저소득	5.0	35.6	58.7
	일반	12.0	34.7	76.9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93.0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평균 76.1회, 일반 가구의 경우는 평균 95.1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자주 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0	93.0	109.4
	저소득	48.0	76.1	72.9
	일반	52.0	95.1	117.9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1-4>와 같다. 먼저 지원 유무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을 통한 지원이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이웃(동네사람),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공자 수는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가 평균 4.7명,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가 평균 4.4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종류를 보면, 물질적 지원은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보적 지원은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서적 지원은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와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도움 정도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전체)

(단위: %, 명)

특성	지원 유무 ^{주9)} (%)			지원 제공자 수 (평균 주10)	지원종류 (%)					지원의 도움 정도 (평균)
	없다	있다	계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모름/ 무응답	계	
가. 가족(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모두)	40.7	59.3	100.0	2.9	46.4	1.6	51.9	0.2	100.0	3.9
나. 친척	86.9	13.2	100.0	2.7	12.9	9.3	77.6	0.2	100.0	3.7
다.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51.9	48.2	100.0	4.4	2.5	14.4	82.6	0.5	100.0	3.7
라. 이웃(동네사람)	81.3	18.7	100.0	3.7	2.6	14.2	82.2	0.9	100.0	3.6
마.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	88.6	11.4	100.0	4.7	5.5	6.6	87.0	0.8	100.0	3.7
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98.9	1.1	100.0	1.7	56.9	17.2	25.7	0.2	100.0	3.9
사.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95.9	4.1	100.0	1.2	77.5	12.8	9.3	0.4	100.0	4.1
아.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99.1	0.9	100.0	3.7	28.1	22.8	47.0	2.2	100.0	3.9
자.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98.5	1.5	100.0	1.2	94.8	4.1	0.5	0.6	100.0	4.3
차. 기타	99.7	0.3	100.0	2.7	48.1	10.9	41.1	0.0	100.0	4.3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1-5>와 같다. 먼저 지원 유무를 보면, 가족(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모두)의 65.9%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이웃(동네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공자 수는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가 평균 4.6명,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가 평균 4.0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종류를 보면, 물질적 지원은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보적 지원은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서적 지원은 이웃(동네사람)과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도움 정도는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9) 0명 : '없다', 1명 이상 : '있다'

주10) 지원 제공자수 : 지원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표 10-1-5>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저소득가구)

(단위: %, 명)

특성	지원 유무 (%)			지원 제공자 수 (평균)	지원종류 (%)					지원의 도움 정도 (평균)
	없다	있다	계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모름/무응답	계	
가. 가족(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모두)	34.1	65.9	100.0	2.8	64.9	0.7	34.2	0.1	100.0	4.0
나. 친척	89.0	11.0	100.0	2.5	22.0	4.9	72.6	0.5	100.0	3.7
다.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71.0	29.1	100.0	4.0	4.9	14.0	80.3	0.8	100.0	3.6
라. 이웃(동네사람)	77.8	22.2	100.0	3.7	5.9	11.1	82.7	0.2	100.0	3.6
마.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	88.1	11.9	100.0	4.6	19.2	4.9	75.0	0.9	100.0	3.8
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96.6	3.4	100.0	1.6	70.0	12.8	16.8	0.4	100.0	4.1
사.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86.9	13.1	100.0	1.1	82.1	10.5	6.9	0.6	100.0	4.2
아.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98.6	1.4	100.0	2.0	68.6	4.4	27.0	0.0	100.0	4.0
자.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96.0	4.0	100.0	1.2	95.2	3.7	0.0	1.1	100.0	4.3
차. 기타	99.3	0.7	100.0	2.2	64.2	9.4	26.5	0.0	100.0	4.0

일반 가구의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1-6>과 같다. 먼저 지원 유무를 보면, 가족(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모두)의 57.6%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이웃(동네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공자 수는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가 평균 4.7명,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와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이 각각 평균 4.5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종류를 보면, 물질적 지원은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보적 지원은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서적 지원은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와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도움 정도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가 5점 만점에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6〉 경제적·정보적·정서적 지원(일반가구)

(단위: %, 명)

특성	구분	지원 유무 (%)			지원 제공자 수 (평균)	지원종류 (%)				지원의 도움 정도 (평균)	
		없다	있다	계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모름/ 무응답		계
가. 가족(생계를 달랠하는 가족 모두)		42.4	57.6	100.0	2.9	40.9	1.9	57.1	0.2	100.0	3.9
나. 친척		86.3	13.7	100.0	2.7	11.0	10.2	78.6	0.2	100.0	3.7
다. 친지(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46.9	53.1	100.0	4.5	2.2	14.5	83.0	0.4	100.0	3.7
라. 이웃(동네사람)		82.2	17.8	100.0	3.7	1.6	15.2	82.1	1.1	100.0	3.5
마.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		88.7	11.3	100.0	4.7	1.8	7.1	90.3	0.8	100.0	3.7
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99.5	0.5	100.0	1.9	34.9	24.6	40.5	0.0	100.0	3.6
사.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98.3	1.7	100.0	1.3	68.5	17.3	14.1	0.0	100.0	3.9
아.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99.2	0.8	100.0	4.5	9.1	31.4	56.4	3.2	100.0	3.8
자.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99.2	0.8	100.0	1.2	94.3	4.5	1.2	0.0	100.0	4.2
차. 기타		99.8	0.2	100.0	3.1	36.1	12.0	51.9	0.0	100.0	4.7

제2절 가족문제

1. 가족 문제

가구구성원의 소득집단별로 가족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족 갈등 1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34.3%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35.2%), 가구원의 건강(19.9%)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12.8%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50.1%)과 가구원의 건강(31.3%)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가 41.6%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으로는 저소득 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30.2%), 가구원의 건강(16.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갈등 2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가구원의 건강(38.5%),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26.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1순위			2순위		
		거주지역			거주지역		
		전체 (7,702)	저소득 (1,871)	일반 (5,201)	전체 (2,488)	저소득 (1,088)	일반 (1,400)
특별한 어려움 없다		34.3	12.8	41.6	-	-	-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및 문제)		35.2	50.1	30.2	26.2	31.4	22.3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3.3	2.8	3.4	11.8	10.2	12.9
자녀교육 혹은 행동		3.5	0.8	4.5	10.2	5.6	13.8
가구원의 건강		19.9	31.3	16.0	38.5	44.2	34.1
가구원의 알코올		0.4	0.3	0.4	1.3	0.7	1.7
가족 내 폭력		0.0	0.1	0.0	0.1	0.1	0.1
가구원간 관계		0.8	0.6	0.8	2.3	1.3	3.1
가구원의 가출		0.1	0.2	0.0	0.2	0.2	0.1
주거관련 문제		1.6	0.6	1.9	7.7	5.1	9.7
기타		0.9	0.3	1.2	1.8	1.2	2.3
모름/무응답		0.0	0.0	0.1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가족갈등 대처방법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2>와 같다.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0.6%를, 가족 구성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76.2%를 차지했다. 한편,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렇다(15.7%)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5.2%)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와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70.0%, 8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가족갈등 대처방법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40.6	37.0	41.6	33.5	33.1	33.7	14.9	13.9	15.2	9.3	12.3	8.5	1.6	3.6	1.1
가족구성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76.2	73.3	77.0	18.5	20.1	18.0	2.6	2.5	2.6	2.4	3.4	2.2	0.3	0.7	0.1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5.2	6.0	5.0	8.8	10.0	8.5	26.6	31.5	25.3	43.7	40.9	44.5	15.7	11.6	16.8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70.0	65.6	71.1	22.1	24.6	21.4	5.0	6.2	4.7	2.7	3.1	2.6	0.2	0.5	0.1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84.1	80.0	85.2	13.6	16.4	12.8	1.4	2.1	1.3	0.7	1.2	0.6	0.1	0.2	0.1

가족갈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10-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저소득 가구는 3.4점, 일반 가구는 3.6점으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다소 가족갈등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가족갈등(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3.5	3.4	3.6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이 없는 것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편이다 5. 매우그렇다). (㉠, ㉡, ㉢, ㉣)는 code를 reverse 시킨 후 연산하였음.

3. 가족의 생활 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가. 흡연량

가구의 흡연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2-4>와 같다. 전체 가구의 74.6%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루 흡연량은 한 갑 이내(13.3%), 반 갑 이내(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흡연량은 각각 76.5%, 74.1%로 일반가구의 흡연량이 높았으며, 하루에 한갑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8%와 14.0%로 가장 높아 소득집단별로는 흡연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4> 흡연량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하루에 반갑 이내		9.7	10.8	9.4
하루에 한갑 이내		13.3	10.8	14.0
하루에 두갑 이내		2.1	1.7	2.2
하루에 두갑 이상		0.3	0.2	0.3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다		74.6	76.5	74.1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14,270)	100.0(2,926)	100.0(11,344)

나. 음주에 관한 생활습관

1) 평균음주 회수

가구의 평균음주 회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2-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46.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 1회 이하(30.8%), 주 2~3회(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60.4%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주 1회 이하(22.3%), 주 2~3회(9.5%)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의 경우는 43.0%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주 1회 이하는 33.0%, 주 2~3회는 16.8%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평균음주 회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5〉 평균음주 회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 1회 이하		30.8	22.3	33.0
주 2-3회		15.3	9.5	16.8
주 4회 이상		7.1	7.7	7.1
전혀 마시지 않는다		46.6	60.4	43.0
모름/무응답		0.1	0.1	0.0
계		100.0(14,270)	100.0(2,926)	100.0(11,344)

2) 평균 음주량

가구의 평균 음주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2-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4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2잔 정도(21.4%), 7~9잔 정도(20.6%)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평균 1~2잔 정도(28.5%), 3~4잔 정도(24.7%), 7~9잔 정도(1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는 평균 3~4잔 정도(23.8%), 7~9잔 정도(21.0%), 1~2잔 정도(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6〉 평균 음주량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1.4	28.5	20.2
3-4잔 정도		23.9	24.7	23.8
5-6잔 정도		15.7	13.8	16.1
7-9잔 정도		20.6	18.5	21.0
10잔 이상		17.9	14.2	18.6
모름/무응답		0.4	0.3	0.4
계		100.0(7,614)	100.0(1,156)	100.0(6,458)

3)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여부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2-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86.1%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년 1~2회(8.5%), 월 1~2회(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2-7>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여부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6.1	88.8	85.6
	년 1-2회	8.5	5.8	9.0
	월 1-2회	3.7	2.9	3.8
	주 1-2회	0.7	1.3	0.6
	모름/무응답	1.0	1.2	1.0
	계	100.0(8,089)	100.0(1,556)	100.0(6,533)

4) 음주에 대한 인식

음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9%, 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응답이 10.1%, 음주가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6%, 숙취를 제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1.9%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2-8〉 음주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적이 있다		27.9	72.1	26.8	73.2	28.1	71.9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10.1	89.9	11.5	88.5	9.9	90.1
술을 계속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11.6	88.4	13.8	86.2	11.3	88.7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적이 있다.		1.9	98.1	3.4	96.6	1.7	98.3

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울에 대한 인식

가구구성원의 소득집단별 우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9>와 같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8점, 저소득 가구는 2.0점, 일반 가구는 1.8점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이 좀 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9〉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8	2.0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 극히 드물다 ~ 4 : 대부분 그랬다)하고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 하위문항 ㉠, ㉡는 역점수 처리함.

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가족구성원의 소득집단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0>과 같

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2점, 저소득 가구는 2.9점, 일반 가구는 3.2점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0-2-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3.2	2.9	3.2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 항상 그렇다)하고 총합의 평균을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 하위문항 ㉔, ㉕, ㉖, ㉗, ㉘는 역점수 처리함

마. 가정폭력 경험

1) 남성 배우자의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10-2-11>과 같다. 대부분의 폭력유형에서 전혀 없음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와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2-11〉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혀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73.2	71.3	73.6	15.0	13.1	15.4	5.5	5.6	5.5	1.3	2.1	1.1	1.6	3.2	1.2	3.5	4.6	3.2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81.1	77.5	81.9	10.0	9.9	10.1	3.6	3.9	3.5	0.8	1.9	0.6	1.0	2.2	0.8	3.5	4.6	3.2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3.2	91.5	93.6	2.4	2.1	2.5	0.5	0.8	0.5	0.1	0.3	0.1	0.2	0.6	0.2	3.5	4.7	3.2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93.0	91.8	93.3	2.5	1.9	2.6	0.6	0.6	0.6	0.2	0.6	0.1	0.2	0.4	0.1	3.5	4.7	3.2
나를 세게 밀쳤다		93.7	92.7	93.9	2.2	1.6	2.3	0.3	0.4	0.3	0.1	0.2	0.1	0.1	0.3	0.1	3.5	4.7	3.3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95.6	94.6	95.8	0.6	0.3	0.6	0.1	0.1	0.1	0.1	0.0	0.1	0.1	0.2	0.1	3.5	4.7	3.3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5.6	94.4	95.9	0.6	0.6	0.6	0.1	0.1	0.1	0.1	0.0	0.1	0.1	0.2	0.1	3.5	4.7	3.3
나를 물건으로 때렸다		96.2	94.9	96.5	0.2	0.2	0.2	0.0	0.0	0.0	0.0	0.1	0.0	0.1	0.1	0.1	3.5	4.7	3.3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6.3	95.1	96.5	0.1	0.1	0.1	0.0	0.0	0.1	0.0	0.0	0.0	0.1	0.1	0.1	3.5	4.7	3.3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였다		96.2	95.1	96.5	0.2	0.1	0.2	0.0	0.0	0.0	0.0	0.0	0.0	0.1	0.1	0.1	3.5	4.7	3.3
나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았다		95.6	94.4	95.8	0.7	0.3	0.7	0.1	0.2	0.1	0.0	0.1	0.0	0.1	0.2	0.1	3.5	4.7	3.3
내가 빠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95.5	94.3	95.8	0.8	0.4	0.9	0.1	0.3	0.0	0.0	0.0	0.0	0.1	0.2	0.1	3.5	4.7	3.3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96.3	95.0	96.6	0.1	0.1	0.1	0.0	0.0	0.0	0.0	0.0	0.0	0.2	0.0	0.0	3.5	4.7	3.3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는 1.34번, 저소득 가구는 1.45번, 일반 가구는 1.32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2〉 소득별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34	1.45	1.32

주) 0회 : 전혀 없음, 1.5회 : 1~2번, 4회 : 3~5번, 8회 : 6~10번, 11회 : 11번 이상으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값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살펴보면 앞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과 유사하게 모욕적인

이야기와 악의적인 이야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험 빈도는 대체로 1~2번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3>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혀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73.2	71.1	73.7	15.6	13.1	16.2	5.0	6.0	4.8	1.1	1.6	1.0	1.6	3.6	1.1	3.5	4.6	3.2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81.0	77.0	81.9	10.3	10.2	10.3	3.2	3.8	3.1	1.1	1.7	0.9	0.9	2.7	0.6	3.5	4.7	3.2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2.8	91.2	93.2	2.7	2.5	2.8	0.6	1.0	0.5	0.2	0.1	0.2	0.2	0.6	0.2	3.5	4.7	3.2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93.6	92.6	93.8	2.3	1.5	2.5	0.4	0.8	0.3	0.1	0.1	0.2	0.1	0.3	0.1	3.5	4.7	3.2
나를 세계 밀쳤다		94.0	93.7	94.0	2.0	0.9	2.3	0.2	0.2	0.2	0.1	0.1	0.2	0.1	0.3	0.1	3.5	4.7	3.2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95.8	94.5	96.1	0.5	0.6	0.5	0.1	0.0	0.1	0.0	0.0	0.1	0.0	0.2	0.0	3.5	4.7	3.3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5.6	94.6	95.8	0.6	0.3	0.7	0.2	0.1	0.2	0.0	0.0	0.0	0.1	0.2	0.1	3.5	4.7	3.3
나를 물건으로 때렸다		96.3	94.8	96.7	0.1	0.3	0.1	0.0	0.0	0.0	0.0	0.0	0.0	0.1	0.0	0.0	3.5	4.7	3.3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6.2	94.9	96.5	0.2	0.3	0.2	0.1	0.0	0.1	0.0	0.0	0.1	0.0	0.1	0.0	3.5	4.7	3.3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였다		96.4	95.1	96.6	0.1	0.1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3.5	4.7	3.3
나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았다		95.9	94.5	96.2	0.5	0.4	0.5	0.1	0.0	0.1	0.0	0.1	0.0	0.2	0.0	0.0	3.5	4.7	3.3
내가 빠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95.9	94.4	96.2	0.5	0.7	0.5	0.1	0.1	0.1	0.0	0.0	0.0	0.1	0.0	0.0	3.5	4.7	3.3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96.4	95.0	96.7	0.1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5	4.7	3.3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는 1.33번, 저소득 가구는 1.45번, 일반 가구는 1.3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4〉 소득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33			1.45			1.31		

주) 0회 : 전혀 없음, 1.5회 : 1~2번, 4회 : 3~5번, 8회 : 6~10번, 11회 : 11번 이상으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값

2) 여성 배우자의 가정폭력 경험

여성 배우자의 경우 또한 남성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폭력유형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와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상대적으로 경험비율이 다른 폭력유형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표 10-2-15〉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혀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72.6	68.6	73.5	15.8	14.1	16.2	4.9	4.5	5.0	1.6	2.9	1.3	1.8	4.5	1.2	3.3	5.4	2.8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80.8	75.6	81.9	10.7	10.2	10.8	3.1	3.3	3.0	1.1	2.2	0.8	1.1	3.3	0.7	3.3	5.4	2.8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3.0	89.8	93.7	2.7	3.0	2.6	0.7	0.8	0.7	0.1	0.2	0.1	0.2	0.8	0.1	3.3	5.4	2.8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93.5	90.1	94.3	2.4	2.7	2.3	0.5	0.5	0.4	0.2	0.5	0.1	0.2	0.7	0.1	3.3	5.4	2.8
나를 세게 밀쳤다		93.5	91.5	93.9	2.7	1.7	2.9	0.3	0.5	0.3	0.1	0.2	0.0	0.2	0.5	0.1	3.3	5.4	2.8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96.0	93.4	96.6	0.5	0.4	0.5	0.1	0.3	0.1	0.0	0.1	0.0	0.1	0.3	0.0	3.3	5.4	2.8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6.0	93.0	96.6	0.6	1.0	0.5	0.2	0.1	0.2	0.0	0.0	0.0	0.1	0.4	0.0	3.3	5.4	2.8
나를 물건으로 때렸다		96.5	93.8	97.1	0.2	0.3	0.1	0.0	0.1	0.0	0.0	0.0	0.0	0.1	0.3	0.0	3.3	5.4	2.8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6.4	93.9	97.0	0.2	0.2	0.2	0.0	0.1	0.0	0.0	0.1	0.0	0.0	0.2	0.0	3.3	5.4	2.8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였다		96.5	94.1	97.0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0.2	0.0	3.3	5.4	2.8
나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았다		95.8	93.2	96.4	0.8	0.7	0.8	0.1	0.2	0.0	0.0	0.1	0.0	0.1	0.4	0.0	3.3	5.4	2.8
내가 뼈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96.0	93.4	96.5	0.5	0.5	0.6	0.2	0.4	0.1	0.0	0.0	0.0	0.0	0.2	0.0	3.3	5.4	2.8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96.5	94.2	97.0	0.3	0.2	0.3	0.0	0.0	0.0	0.0	0.0	0.0	0.1	0.0	0.0	3.3	5.4	2.8

소득별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는 1.3번, 저소득 가구는 1.5번, 일반 가구는 1.3번으로 저소득가구에서 다소 많았다.

<표 10-2-16> 소득별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3			1.5			1.3		

주) 0회 : 전혀 없음, 1.5회 : 1~2번, 4회 : 3~5번, 8회 : 6~10번, 11회 : 11번 이상으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값

앞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과 유사하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빈도는 1~2번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7>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혀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73.1	70.1	73.7	16.6	13.7	17.3	4.3	5.5	4.1	1.2	2.0	1.1	1.5	3.3	1.1	3.3	5.4	2.8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80.2	76.4	81.1	11.6	10.7	11.8	2.9	3.7	2.8	1.0	1.6	0.8	1.0	2.2	0.7	3.3	5.4	2.8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93.6	92.0	94.0	2.3	1.7	2.4	0.5	0.4	0.5	0.2	0.1	0.2	0.2	0.2	0.1	3.3	5.4	2.8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93.7	92.3	94.1	2.3	1.4	2.4	0.4	0.5	0.4	0.2	0.2	0.2	0.1	0.1	0.1	3.3	5.4	2.8
나를 세게 밀쳤다		94.6	92.4	95.1	1.5	1.7	1.5	0.5	0.3	0.5	0.0	0.0	0.0	0.1	0.1	0.1	3.3	5.4	2.8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96.2	94.0	96.7	0.4	0.4	0.3	0.1	0.1	0.1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6.1	93.8	96.6	0.4	0.7	0.4	0.1	0.1	0.1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나를 물건으로 때렸다		96.7	94.5	97.2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6.6	94.3	97.1	0.2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였다		96.7	94.6	97.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나의 어깨나 목 등을 짊어 움켜잡았다		96.3	94.0	96.8	0.4	0.4	0.4	0.0	0.1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내가 빠져나 명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96.2	93.9	96.7	0.5	0.5	0.5	0.0	0.1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96.6	94.5	97.1	0.2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	5.4	2.8

소득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는 1.3번, 저소득 가구는 1.5번, 일반 가구는 1.3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8> 소득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31	1.50

주) 0회 : 전혀 없음, 1.5회 : 1~2번, 4회 : 3~5번, 8회 : 6~10번, 11회 : 11번 이상으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값

제11장 생활시간·만족 및 복지의식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시간

가구구성원의 평일 평균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주된 취업활동 및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에 가장 많은 6.0시간을 보내고, 다음으로는 집안 일(요리, 세탁, 청소 등)(1.6시간),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0.6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에 비해 집안일이나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1> 평일(평균) 활동시간

(단위: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취업활동,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		6.0	3.9	6.5
집안일(요리, 세탁, 청소 등)		1.6	1.7	1.6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		0.6	0.3	0.6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		0.2	0.3	0.1
교육과 훈련(학업, 대학, 학원 등)		0.5	0.3	0.6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		0.5	0.4	0.5

가구구성원의 토요일 평균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주된 취업활동 및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에 가장 많은 4.2시간을 보내고, 다음으로는 집안 일(요리, 세탁, 청소 등)(1.7시간),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0.7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2〉 토요일 활동시간

(단위: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취업활동,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		4.2	3.2	4.5
집안일(요리, 세탁, 청소 등)		1.7	1.7	1.7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		0.7	0.3	0.8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		0.1	0.2	0.1
교육과 훈련(학업, 대학, 학원 등)		0.3	0.1	0.3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		0.6	0.4	0.6

가구구성원의 일요일 평균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주된 취업활동 및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에 가장 많은 1.8시간을 보내지만,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활동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된 취업활동 및 부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집안일이나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3〉 일요일 활동시간

(단위: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된 취업활동,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		1.8	2.0	1.7
집안일(요리, 세탁, 청소 등)		1.7	1.8	1.7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		0.7	0.4	0.8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		0.1	0.2	0.1
교육과 훈련(학업, 대학, 학원 등)		0.2	0.1	0.2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		0.7	0.4	0.8

제2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1.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가구구성원의 인터넷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56.8%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 41.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는 65.5%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24.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1> 인터넷 사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56.8	24.0	65.5
	아니다	41.8	72.8	33.6
	모름/무응답	1.4	3.2	0.9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노동환경 유해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다(46.0%)라는 응답이 그렇다(6.5%)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 11-2-2> 노동환경 유해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45.6	63.1	40.9
	그렇다	6.5	4.9	6.9
	아니다	46.0	28.3	50.7
	모름/무응답	1.9	3.8	1.4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1-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60.9%, 가난하다는 응답이 28.1%, 부유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가난하다는 응답이 43.6%, 보통이라는 응답이 32.6%, 부유하다는 응답이 0.7%를 차지했으며, 일반 가구는 가난하다는 응답이 24.0%, 보통이라는 응답이 68.4%, 부유하다는 응답이 2.9%로 소득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3> 경제적 생활수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가난	6.9	19.8	3.5
	가난	28.1	43.6	24.0
	보통	60.9	32.6	68.4
	부유	2.4	0.7	2.9
	매우 부유	0.1	0.0	0.1
	모름/무응답	1.6	3.4	1.1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5년 후 예상되는 경제적 생활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1-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보통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58.5%, 가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9.4%, 부유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가난할 것이다는 36.3%, 보통일 것이다는 36.8%, 부유할 것이다는 4.7%를 차지했으며, 일반 가구는 가난할 것이다는 15.4%, 보통일 것이다는 64.3%, 부유할 것이다는 16.0%로 나타났다.

<표 11-2-4> 5년 후 예상되는 경제적 생활수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가난	5.7	18.6	2.3
	가난	19.4	36.3	15.4
	보통	58.5	36.8	64.3
	부유	13.7	4.7	16.0
	매우 부유	0.7	0.2	0.9
	모름/무응답	1.6	3.4	1.2
	계	100.0	100.0	100.0

2.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

가구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51.1%)이 불만족 비율(2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48.8%)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57.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5>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7.0	19.9	3.6
	대체로 불만족	16.7	28.9	13.5
	그저 그렇다	21.1	17.2	22.1
	대체로 만족	43.3	25.1	48.1
	매우 만족	7.8	3.5	9.0
	모름/무응답	4.0	5.4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족 비율(37.8%)이 만족 비율(1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나 일반가구 모두 불만족 비율이 만족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2-6〉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8.7	23.8	4.8
대체로 불만족		29.1	41.9	25.7
그저 그렇다		38.3	24.3	42.0
대체로 만족		19.0	4.4	22.9
매우 만족		0.8	0.2	1.0
모름/무응답		4.0	5.4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48.6%)이 불만족 비율(1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불만족 비율이 저소득 가구가 25.3%, 일반 가구가 12.5%로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1-2-7〉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5	6.2	1.5
대체로 불만족		12.7	19.1	11.0
그저 그렇다		32.1	34.4	31.5
대체로 만족		46.2	33.0	49.7
매우 만족		2.4	1.9	2.6
모름/무응답		4.0	5.5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74.7%)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56.7%, 일반 가구의 79.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에서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8>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9	2.8	0.3
대체로 불만족		3.2	7.9	1.9
그저 그렇다		17.3	27.2	14.7
대체로 만족		61.3	48.8	64.6
매우 만족		13.4	7.9	14.8
모름/무응답		4.1	5.6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비율(36.1%)이 불만족 비율(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42.6%)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41.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9>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8	13.9	3.7
대체로 불만족		18.5	28.7	15.8
그저 그렇다		35.5	36.1	35.3
대체로 만족		32.9	14.7	37.7
매우 만족		3.2	1.0	3.8
모름/무응답		4.2	5.6	3.8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9.5%였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44.9%, 일반 가구에서는 6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0〉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9	2.6	0.4
	대체로 불만족	5.7	11.7	4.1
	그저 그렇다	29.9	35.3	28.5
	대체로 만족	53.4	40.6	56.7
	매우 만족	6.1	4.3	6.6
	모름/무응답	4.1	5.5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36.1%), 불만족한다(32.2%), 만족한다(27.7%)의 순으로 응답했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44.7%)이 만족 비율(15.1%)보다 월등히 높고,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31.1%)이 불만족 비율(28.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11-2-1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7.8	12.8	6.5
	대체로 불만족	24.4	31.9	22.4
	그저 그렇다	36.1	34.8	36.5
	대체로 만족	25.7	14.3	28.8
	매우 만족	2.0	0.8	2.3
	모름/무응답	4.1	5.5	3.7
	계	100.0	100.0	100.0

가구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많았고, 만족 비율(37.5%)이 불만족 비율(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30.7%)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43.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12〉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5	4.8	0.6
대체로 불만족		11.7	25.9	7.9
그저 그렇다		45.0	48.2	44.1
대체로 만족		36.2	15.1	41.8
매우 만족		1.3	0.3	1.5
모름/무응답		4.4	5.7	4.1
계		100.0	100.0	100.0

제3절 가구구성원의 복지의식

가구구성원의 복지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미래 사회상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1-3-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세금부담이 보통이고, 복지수준이 보통인 사회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세금부담이 대체로 높고, 복지수준이 대체로 높은 사회(28.9%),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 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3-1〉 미래 사회상에 대한 의식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		20.6	20.6	20.6
세금부담이 대체로 높고, 복지수준이 대체로 높은 사회		28.9	25.8	30.0
세금부담이 보통이고, 복지수준이 보통인 사회		35.6	36.3	35.4
세금부담이 대체로 낮고, 복지수준이 대체로 낮은 사회		8.2	8.8	8.0
세금부담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		2.8	3.3	2.6
모름/무응답		4.0	5.4	3.6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비율(44.0%)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는 비율(41.5%)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3-2> 사람에 대한 신뢰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41.5	38.4	42.4
매우 조심해야 한다		44.0	47.6	43.1
잘 모르겠다		14.5	14.1	14.6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타인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줄 의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55.7%, 일반 가구의 67.6%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3> 타인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줄 의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그렇지 않다		1.9	4.4	1.3
별로 그렇지 않다		9.3	15.0	7.8
보통이다		19.5	19.4	19.5
대체로 그렇다		50.0	43.5	51.6
매우 그렇다		15.2	12.2	16.0
모름/무응답		4.2	5.5	3.9
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비선호시설을 받아들일겠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6.0%,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다.

<표 11-3-4> 지역사회 내의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그렇지 않다		3.8	5.0	3.5
별로 그렇지 않다		16.3	16.9	16.1
보통이다		26.0	26.8	25.8
대체로 그렇다		40.1	35.9	41.2
매우 그렇다		9.3	9.7	9.3
모름/무응답		4.5	5.7	4.2
계		100.0	100.0	100.0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87.2%, 하고 있다는 비율을 11.3%를 차지했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일반 가구(12.9%)가 저소득 가구(4.8%)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5>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1.3	4.8	12.9
아니다		87.2	91.9	86.0
모름/무응답		1.5	3.2	1.1
계		100.0	100.0	100.0

연간 기부액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99천원을 기부했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221천원, 일반 가구에서 416천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6〉 연간 기부액수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	399	1,132
	저소득	50	221	391
	일반	120	416	1,249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13.5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평균 21.6회, 일반 가구에서는 평균 12.7회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가 평균 자원봉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7〉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	13.5	31.2
	저소득	5.0	21.6	33.8
	일반	3.0	12.7	30.3

제 Ⅲ 부

복지욕구 및 수급실태

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1. 공적연금 가입실태^{주11)}

15세 미만의 비해당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 실태는 다음 <표 1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5.1%), 공무원연금(4.0%), 사학연금(0.6%), 군인연금(0.3%), 별정직우체국 직원연금(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미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국민연금 제도적 용자의 수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가구(99.7%)가 일반가구(93.9%)보다 다소 높았던 반면, 공무원연금을 있어서는 저소득가구(0.2%)가 일반가구(5.0%)보다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가구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또 국민연금보다 후한 급여를 제공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일반가구의 가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11) 전체 표본에서 15세 미만의 공적연금 가입 비해당자(전체의 21.1%)를 제외한 나머지 78.9%에 대한 실태임.

〈표 12-1-1〉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¹⁾		95.1	99.7	93.9
공무원연금		4.0	0.2	5.0
사학연금		0.6	0.1	0.7
군인연금		0.3	0.0	0.4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	0.0	0.1
계		100.0	100.0	100.0

주 1) 가구용조사표 p.5 문1) 가입대상에서 비해당, 특수지역연금 이외의 응답자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미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에 대한 세부 비율은 〈표 12-1-3〉을 참조

주 2)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에는 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음.

국민연금 종별 가입실태는 다음 〈표 12-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71.4%)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역가입자(27.6%)가 그 뒤를 이으며, 두 부문에서의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0.3%)과 임의계속가입(0.1%)도 소수이지만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이 46.5%, 지역가입이 49.3%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와 비슷하게 사업장가입이 73.1%, 지역가입이 2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 임의가입(1.6%)이 일반가구의 임의가입(0.2%)보다 비중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2-1-2〉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 가입		71.4	46.5	73.1
지역 가입		27.6	49.3	26.1
임의 가입		0.3	1.6	0.2
임의계속 가입		0.1	0.5	0.1
모름/무응답		0.7	2.1	0.6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 가입종별을 묻는 질문에서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세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2-1-3> 과 같다. 즉, 조사표 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가구에서는 적용제외자가 7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납부예외자 7.3%, 수급자 6.8%, 보험료 미납자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적용제외자가 73.9%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고 수급자가 9.9%, 납부예외자가 6.9%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와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금수급권이 있는 노인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적용제외자가 73.1%, 납부예외자가 7.4%, 그리고 수급자가 5.6%로 나타났다.

<표 12-1-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자	6.8	9.9	5.6
적용제외자	73.3	73.9	73.1
미가입자	4.4	3.4	4.7
납부예외자	7.3	6.9	7.4
보험료 미납자	5.2	4.9	5.4
기타	0.4	0.3	0.5
모름/무응답	2.6	0.7	3.4
계	100.0	100.0	100.0

위 <표 12-1-3>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의 미납 개월 수는 다음 <표 12-1-4> 와 같다. 전체가구에서는 10~12개월이 93.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7~9개월(3.4%), 4~6개월(2.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역시 10~12개월이 9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7~9개월(4.0%), 4~6개월(1.4%)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일반가구 역시 10~12개월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7~9개월(3.2%), 4~6개월(2.6%)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험료 미납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4〉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1.2	0.9	1.3
	4~6개월	2.3	1.4	2.6
	7~9개월	3.4	4.0	3.2
	10~12개월	93.1	93.7	92.9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사유를 살펴보면, 〈표 1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81.9%),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90.4%로 일반가구의 78.8%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가구에서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는 저소득가구(5.6%)보다 일반가구(15.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1-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1.9	90.4	78.8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13.1	5.6	15.8
국민연금 없어도 생활걱정 없어서		1.3	0.8	1.5
기타		1.2	0.8	1.3
모름/무응답		2.6	2.4	2.6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 〈표 12-1-6〉과 같다. 여기서 국민연금 미가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가입신고를 권유받았으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가구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자가 58.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가입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응답자도 17.2%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72.3%로 일반가구의 54.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일반가구(19.5%)에서의 비중이 저소득가구(9.2%)에서의 비중보다 높았다.

〈표 12-1-6〉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8.1	72.3	54.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9.4	3.4	11.1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2	9.2	19.5
기타		1.4	0.0	1.8
모름/무응답		13.9	15.2	13.6
계		100.0	100.0	100.0

2. 공적연금 수급실태

공적연금 수급실태는 다음 〈표 1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급이 92.1%, 수급이 6.5%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자 비중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수급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비수급이 86.9%, 수급이 9.9%로 분포하였으며, 일반가구는 비수급이 93.4%, 수급이 5.6%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수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인가구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표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1-7〉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6.5	9.9	5.6
비수급		92.1	86.9	93.5
모름/무응답		1.4	3.2	0.9
계		100.0	100.0	100.0

공적연금 종류별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1-8〉과 같다. 국민연금이 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연금(17.7%), 보훈연금 (7.1%), 군인 연금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보훈연금, 공무원연금과 보훈연금을 같이 수급하는 경우도 극히 낮은 비중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국민연금 87.8%, 공무원 연금 1.8%, 군인 연금 0.7%, 보훈연금 8.0%로 나타났고 사학연금 수급자는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는 국민연금 61.0%, 공무원연금 25.1%, 사학연금 2.2%, 군인연금 4.6%, 보훈연금 6.7%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1-8〉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69.5	87.8	61.0
공무원연금		17.7	1.8	25.1
사학연금		1.5	0.0	2.2
군인연금		3.4	0.7	4.6
보훈연금		7.1	8.0	6.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2	0.4	0.2
국민연금, 보훈연금		0.4	1.1	0.1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2	0.0	0.2
기타(잡전유공자)		0.1	0.2	0.0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령연금(82.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족연금(10.7%), 장애연금(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도 0.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도 0.8%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노령연금이 85.3%, 유족연금 9.8%, 장애연금 1.7%, 분할연금 0.3%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노령연금 81.1%, 유족연금 11.2%, 장애연금 1.9%, 반환일시금 1.4%, 분할연금 0.2%로 나타나 급여종류에 있어서는 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반환일시금은 일반가구가 1.4%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9>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2.8	85.3	81.1
장애연금		1.9	1.7	1.9
유족연금		10.7	9.8	11.2
분할연금		0.3	0.3	0.2
반환일시금		0.8	0.0	1.4
모름/무응답		3.6	2.8	3.6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의 연간 수급 개월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1-10> 과 같다. 10-12개월이 93.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3개월이 2.8%, 4-6개월이 2.3%, 7-9개월이 1.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10-12개월이 96.3%, 7-9개월이 1.7%, 1-3개월이 1.1%, 4-6개월이 1.0%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10-12개월이 91.3%, 1-3개월이 4.0%, 4-6개월이 3.1%, 7-9개월이 1.7%로 각각 나타났다.

〈표 12-1-10〉 국민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2.8	1.1	4.0
4-6개월	2.2	1.0	3.1
7-9개월	1.7	1.7	1.7
10-12개월	93.3	96.3	91.3
계	100.0	100.0	100.0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은 〈표 12-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금이 3,379천원, 연금이 2,03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이 80천원, 연금이 1,84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이 3,478천원, 연금은 2,176천원으로 일시금은 일반가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1-11〉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3,379	80	3,478
연금	2,039	1,840	2,176

보훈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에 대해서는 〈표 12-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0-12개월로 나타나 보훈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 지속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2〉 보훈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12개월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연간 보훈연금 수급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1-13> 과 같다. 일시금은 2,400천원이며 연금은 8,70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일시금 2,400만원, 연금은 6,205천원으로 응답되었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 응답자는 없었으며, 연금만 10,149천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연금 수급액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13>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2,400	2,400	0.00
	연금	8,700	6,205	10,149

특수지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1-14> 와 같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급여는 역시 퇴직급여가 8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족급여가 10.4%, 퇴직수당이 0.7%로 나타났다. 2순위는 모두 퇴직수당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1순위로 응답한 급여종류는 저소득가구는 퇴직급여가 86.8%, 유족급여가 13.2%의 분포를 보였으며, 일반가구는 퇴직급여가 89.0%, 유족급여가 10.3%, 퇴직수당이 0.7%로 나타났다. 한편, 2순위로는 저소득가구에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일반가구에서는 모두 퇴직수당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4> 특수지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퇴직급여	89.0	86.8	89.0
	유족급여	10.4	13.2	10.3
	퇴직수당	0.7	0.0	0.7
	계	100.0	100.0	100.0
2순위	퇴직수당	100.0	-	100.0
	계	100.0	100.0	100.0

특수지역연금의 연간 수급 개월수를 살펴보면, <표 12-1-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응답자(100.0%)가 10-12개월로 응답하여, 보훈연금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기 전인 국민연금에 비해 장기간 수급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15〉 특수직역연금 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12개월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1-16〉과 같다. 일시금은 844천원, 연금은 19,596천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일시금 응답자는 없었고, 연금은 10,712천원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일시금 844천원과 연금 19,92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2-1-16〉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844	-	844
	연금	19,596	10,712	19,923

제2절 건강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건강보험 가입실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1〉과 같다. 가입자는 93.7%, 미가입자는 6.3%로 나타났다. 이 중 미가입자는 의료급여(1,2종) 수급자, 보훈병원 무료진료 대상자, 그 외 미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51.3%)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30.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무료진료 대상자도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80.0%이고 건강보험 미가

입자는 20.0%로 나타났으며, 미가입자 중에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60.5%, 2종 수급자가 31.4%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1〉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3.7	80.0	98.4
			6.3	20.0	1.6
미가입	의료급여 1종		51.3	60.5	11.3
	의료급여 2종		30.6	31.4	27.1
	미가입자 ¹⁾		3.1	0.9	12.5
	보훈병원 무료진료		4.3	2.6	11.7
	모름/무응답		10.7	4.5	37.4
소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주: 1) 가구용 조사표 p.6 문1-1)에서 '3.미가입자'로 응답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실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2〉와 같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5%로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은 미납경험 있음이 10.0%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미납경험 있음이 5.5%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이 저소득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2〉 건강보험료 납부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경험 있음			6.5	10.0	5.5
미납경험 없음			93.5	90.0	94.5
계			100.0	100.0	100.0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게 미납사유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가 77.0%로 가장 높았으며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가 11.8%,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는 2.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에 대해 저소득가구는 82.5%, 일반가구는 74.3%가 응답해 저소득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10.3%, 일반가구 12.5%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료 대비 혜택에 대한 불만족은 저소득가구에서 0.2%인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1.8%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다소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3>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 이용할 일이 없어서		2.5	1.3	3.1
보험료 납부할 돈이 없어서		77.0	82.5	74.3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1.2	0.2	1.8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1.2	1.0	1.4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11.8	10.3	12.5
기타		1.7	1.1	2.1
모름/무응답		4.6	3.8	5.0
계		100.0	100.0	100.0

건강보험료 미납기간을 살펴보면 <표 1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개월이 28.8%, 1~3개월이 27.3%, 10~12개월이 31.8%, 7~9개월이 12.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1~3개월이 22.1%, 10~12개월이 35.5%, 4~6개월이 27.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1~3개월이 27.4%, 10~12개월이 31.8%, 4~6개월이 28.8%로 나타났다.

〈표 12-2-4〉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27.3	22.1	27.4
	4~6개월	28.8	27.5	28.8
	7~9개월	12.1	13.8	12.1
	10~12개월	31.8	36.5	31.8
	계	100.0	100.0	100.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표 1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특별한 문제 없음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월보험료 부담이 32.9%,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4.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특별한 문제 없음이 55.7%, 월보험료 부담이 31.4%,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2.41%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특별한 문제 없음이 51.3%, 월보험료 부담이 33.4%,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4.5%로 나타났다.

〈표 12-2-5〉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 없음	52.2	55.7	51.3
	월보험료 부담	32.9	31.4	33.4
	보험 적용범위 협소	14.3	12.4	14.8
	소득 노출	0.2	0.1	0.3
	기타	0.1	0.1	0.1
	모름/무응답	0.2	0.3	0.2
	계	100.0	100.0	100.0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6〉과 같다.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32.6%, 보통이 26.8%,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0.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43.9%, 보

통이 28.9%,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26.8%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29.4%, 보통이 26.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4.2%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6〉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불만족	5.7	2.8	6.5
	불만족	34.7	24.0	37.7
	보통	26.8	28.9	26.2
	만족	30.8	40.5	28.1
	매우만족	1.8	3.4	1.3
	모름/무응답	0.2	0.4	0.2
	계	100.0	100.0	100.0

대체로 저소득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자가 응답한 서비스 이용시 문제점은 아래 〈표 12-2-7〉과 같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였으며, 혜택의 범위가 좁다(15.1%), 차별대우를 한다(10.9%), 적용기간이 짧다(4.9%)의 순으로 문제점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시 문제점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특별한 문제점 없음	68.0
	혜택의 범위가 좁음	15.1
	적용기간이 제한적	4.9
	차별대우	10.9
	기타	0.4
	모름/무응답	0.7
	계	100.0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1. 고용보험 가입실태

고용보험 비해당자^{주12)}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전체의 32.8%)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표 1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63.0%, 미가입이 36.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에서는 가입이 29.2%, 미가입이 69.9%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가입이 66.9%, 미가입이 32.6%로 나타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3-1>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3.0	29.2	66.9
	미가입	36.4	69.9	32.6
	모름/무응답	0.6	1.0	0.6
	계	100.0	100.0	100.0

2. 고용보험 수급실태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 수급경험이 없는 경우가 99.3%, 있는 경우는 0.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급여 수급경험이 없다가 99.4%, 있다는 0.6%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없다가 99.2%, 있다는 0.8%로 나타났다.

주12)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자, 농어민, 비경활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등을 포괄하고 있음. 고용보험 비해당자는 전체의 67.2%임.

〈표 12-3-2〉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	0.6	0.8
	없다	99.3	99.4	99.2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은 다음 〈표 12-3-3〉 과 같다. 먼저 1순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실업급여 (91.4%)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모성보호급여(7.1%)를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모두 현물급여를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모든 응답자가 실업급여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는 모두 현물급여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실업급여가 89.8%, 모성보호급여가 8.4%로 나타났고 2순위로 응답한 급여는 없었다.

〈표 12-3-3〉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실업급여	91.4	100.0	89.8
	모성보호급여	7.1	0.0	8.4
	모름/무응답	1.5	0.0	1.8
	계	100.0	100.0	100.0
2순위	현물급여	100.0	100.0	0.0
	계	100.0	100.0	0.0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3-4〉 와 같다. 4~6개월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3개월이 33.3%, 7~9개월 21.6%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4~6개월이 45.4%, 7~9개월이 36.5%, 1~3개월이 18.1%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도 4~6개월이 41.5%로 가장 높았으나 저소득가구와 달리 1~3개월의 단기간 수급이 3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4〉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33.3	18.1	36.1
	4-6개월	42.1	45.4	41.5
	7-9개월	21.6	36.5	18.9
	10-12개월	2.9	0.0	3.5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수급액은 평균 2,61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3,086천원, 일반가구가 2,527천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수급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일반가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길다는 위 〈표 12-3-4〉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3-5〉 2005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현금급여액	2,615	3,086	2,527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1. 산재보험 가입실태

산재보험 비해당자^{주13)}를 제외한 가입대상자(전체의 339%)의 실태는 다음 〈표 1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이 63.1%, 미가입이 36.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가입이 29.3%, 미가입이 69.7%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가입이 67.0%, 미

주13)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자, 농어민, 비경활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포괄하고 있음. 산재보험 비해당자는 전체의 66.1%임.

가입이 32.6%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일반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2-4-1〉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3.1	29.3	67.0
	미가입	36.4	69.7	32.6
	모름/무응답	0.5	1.0	0.5
	계	100.0	100.0	100.0

2. 산재보험 수급실태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4-2〉와 같다. 수급한 경험이 없다는 99.7%, 있다는 0.3%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수급경험 없다가 99.8%, 있다는 0.2%였으며 일반가구는 수급경험 없다가 99.7%, 있다는 0.3%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산재보험 수급여부에는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2〉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	0.2	0.3
	없다	99.7	99.8	99.7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은 다음 〈표 12-4-3〉과 같다. 먼저 1순위는 요양급여가 31.4%, 장애급여-연금이 28.9%, 휴업급여가 20.2%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장애급여-일시금이 47.5%, 휴업급여 35.7%, 요양급여 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1순위로 장애급여-연금이 82.7%, 휴업급여가 17.3%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 응답한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는 1순위로 요양급여 36.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휴업급여가 20.6%, 장해급여-연금이 20.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장해급여-일시금(47.5%), 휴업급여(35.7%), 요양급여(16.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2-4-3〉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요양급여		31.4	0.0	36.5
	휴업급여		20.2	17.3	20.6
	장해급여-연금		28.9	82.7	20.2
	장해급여-일시금		5.4	0.0	6.3
	유족급여-연금		9.5	0.0	11.0
	기타 현금급여		4.6	0.0	5.4
	계		100.0	100.0	100.0
2순위	요양급여		16.8	0.0	16.8
	휴업급여		35.7	0.0	35.7
	장해급여-일시금		47.5	0.0	47.5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12개월이 59.2%, 1~3개월이 23.3%, 4~6개월이 15.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10~12개월이 82.7%, 4~6개월이 12.6%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10~12개월이 55.4%, 1~3개월이 26.3%로 나타나, 소득집단별 수급개월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4〉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23.3	4.7	26.3
	4~6개월	15.3	12.6	15.8
	7~9개월	2.2	0.0	2.6
	10~12개월	59.2	82.7	55.4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산재보험급여 연간 수급액은 다음 〈표 1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금은 10,100천원, 연금은 11,63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수급 응답이 없었고 연금은 8,24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 10,100천원, 연금은 12,371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2-4-5〉 2005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0,100	-	10,100
	연금	11,630	8,249	12,371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1. 적용 및 가입실태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현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1〉와 같다.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에 해당되지 않는 66.8%를 제외한 33.2%의 해당자 중에서 적용자가 56.3%, 미적용자가 43.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적용 20.6%, 미적용 79.1%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 중에서는 적용이 60.4%, 미적용은 39.5%

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퇴직금 적용현황에 있어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6.8	83.0
적용		18.6	3.6	22.5
미적용		14.6	13.4	14.9
모름/무응답		0.0	0.1	0.1
계		100.0	100.0	100.0

개인연금 가입 현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83.2%, 가입자는 16.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미가입이 96.6%, 가입이 3.4%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미가입이 83.1%, 가입이 16.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반가구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2〉 개인연금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16.8	3.4
미가입		83.2	96.6	83.1
계		100.0	100.0	100.0

2. 수급실태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99.7%) 응답자가 수급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수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0.3%에 그쳤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없다가 99.9%, 있다가 0.1%에 불과했으며 일반가구는 없다가 99.7%, 있다가 0.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비중이지만 개인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일반가구에서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3〉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	0.1	0.4
	없다	99.7	99.9	99.7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4〉와 같다. 10~12개월의 장기 수급자가 48.6%, 1~3개월의 단기 수급자가 51.0%로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는 1~3개월이 60.2%, 10~12개월이 33.3%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1~3개월이 50.3%, 10~12개월이 49.7%로 나타났다.

〈표 12-5-4〉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51.0	60.2	50.3
	4~6개월	0.5	6.5	0.0
	7~9개월	-	-	-
	10~12개월	48.6	33.3	49.7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개인연금의 연간 수급액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금 7,217천원, 연금 1,74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1,169천원, 연금 1,125천원이었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 7,779천원, 연금 1,78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2-5-5〉 2005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종류별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7,217	1,169	7,779
	연금	1,742	1,125	1,780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수급경험 없다가 97.4%로 응답하여, 수급을 경험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없다가 99.2%, 있다는 0.8%로 나타나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없다가 97.0%, 있다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6〉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6	0.8	3.0
	없다	97.4	99.2	97.0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월이 9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12개월이 2.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1~3개월이 96.4%였으며 일반가구는 1~3개월이 96.7%로 나타났다.

〈표 12-5-7〉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96.7	96.4	96.7
	4-6개월	0.4	0.0	0.4
	7-9개월	-	-	-
	10-12개월	2.9	3.6	2.9
	계	100.0	100.0	100.0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수령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5-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시금은 7,097천원이었으며 연금형태의 퇴직보험금은 1,438천원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일시금은 5,542천원, 연금은 1,684천원이었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 7,204천원, 연금은 1,42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2-5-8〉 2005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금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7,097	5,542	7,204
	보험금	1,438	1,684	1,424

제13장 공공부조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net)이다. 2005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표 13-1-1> 과 같이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2.9%, 없는 가구가 전체의 97.1%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자(n=202) 중 약 2.9%에 해당되는 가구가 생계상의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있다		2.9
	없다		97.1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 13-1-2> 와 같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하여(7.8%)라는 응답과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7.3%)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3.4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7.8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3.1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7.3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0.4
	기타	0.9
	모름/무응답	7.1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여부는 〈표 13-1-3〉과 같다. 급여 신청 가구 중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가구는 전체의 38.4%, 선정되지 않았다는 가구는 전체의 56.2%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신청을 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14.3%),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12.1%)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1-3〉 수급 선정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 선정 여부	그렇다	38.4
	그렇지 않다	56.2
	모름/무응답	5.4
	계	100.0
신청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12.1
	자동차가 있어서	8.3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14.3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4.0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38.2
	기타	13.5
	잘 모르겠다	9.6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1순위는 다음 <표 13-1-4> 와 같다. 이전보다 더 절약해서 생활했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13.8%),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생활했다는 응답(12.5%)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1-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8.6
	빚을 내어서 생활	5.6
	민간단체의 도움	0.5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4.0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2.5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3.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3.8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7
	기타	0.0
	모름/무응답	1.3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2순위는 다음 <표 13-1-5> 와 같다.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더 절약해서 생활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23.7%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1-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3.7
	빛을 내어서 생활	5.8
	민간단체의 도움	1.3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44.2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1.1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0.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3.9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
	기타	0.0
	모름/무응답	0.0
계		100.0

제2절 수급 및 탈피

200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n=430)의 수급기간을 살펴보면, 〈표 13-2-1〉과 같이 대부분(79.5%)의 가구가 12개월 동안 수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2-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비율
3개월 미만	1.6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4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79.5
모름/무응답	1.9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받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2〉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들어서라는 이유도 17.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3-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7.0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34.7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시 도움이 끊겨서)	8.1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1.1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8.4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8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3.1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1
기타	4.6
모름/무응답	2.1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3-2-3〉 과 같이 2005년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 중 75.3%가 앞으로도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1년 이내에 수급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

〈표 1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단위: %)

구분	비율
6개월 이내	0.8
6개월 후 ~ 1년 이내	0.8
1년 후 ~ 3년 이내	0.8
3년 후	4.0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75.3
잘 모르겠다	18.3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항목으로, <표 13-2-4> 와 같이 절반가량(47.5%)이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0.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47.5
교육비 지원	13.9
주거비 지원	30.7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공공근로 포함)	4.8
기타	0.1
모름/무응답	3.0
계	100.0

2005년 말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가구의 탈피 사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5> 와 같이 주로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거나(30.3%)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2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가장 주된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7.4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30.3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4.3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4.5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1.3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0.0
가독의 병이 나아서	11.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21.4
기타	0.0
모름/무응답	19.2
계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으로 <표 13-2-6> 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43.7%로 가장 아쉬운 지원항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거비 지원(24.2%) 또한 많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제 탈피한 가구가 아쉬워하는 항목과 앞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탈피 후에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원항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13-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43.7
교육비 지원	0.0
주거비 지원	24.2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	0.0
없다	10.5
기타	2.4
모름/무응답	19.2
계	100.0

제3절 2005년 이전 기초보장 실태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5년이 첫 조사 기간이므로 2005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력을 조사하였다. 전체 가구의 5.8%가 2005년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제도 포함)제도 수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18.7%로 일반가구(1.4%)보다 수급받은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1〉 2005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급여수급 경험여부 및 총 수급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경험 여부	있다	5.8	18.7
1년 미만		14.4	14.5	14.1
1년 이상 ~ 3년 미만		29.8	26.5	44.7
3년 이상 ~ 5년 미만		22.4	22.9	19.7
5년 이상		32.8	35.7	19.1
모름/무응답		0.6	0.3	2.4
계		100.0	100.0	100.0
없다		94.0	81.1	98.4
모름/무응답		0.2	0.2	0.2
계	100.0	100.0	100.0	

2005년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급기간은 전체적으로 5년 이상 수급받고 있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5년 이상 수급받고 있는 경우(35.7%)가 가장 많은 반면에 일반 가구의 경우 절반 정도(44.7%)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동안 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희망여부를 소득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의 경우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받기를 희망한다(44.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35.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현재 수급자가 아니며 받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응답이 82.3%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전체적으로는 현재 수급자가 아니며 받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7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희망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현재 수급자가 아니며,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70.3	35.2	82.3
현재 수급자가 아니나, 받기를 희망한다	23.6	44.2	16.6
현재 수급자이나, 여건이 개선되면 벗어나고 싶다	1.4	5.0	0.1
현재 수급자이며, 여건이 개선되어도 준다면 받고 싶다	4.5	15.3	0.8
모름/무응답	0.2	0.3	0.2
계	100.0	100.0	100.0

제4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를 받고 있는 가구(n=443) 중 51.3%가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30.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4.3%로 나타났다.

〈표 13-4-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수급여부(200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의료급여 수급형태	의료급여(1종)	51.3
	의료급여(2종)	30.6
	미가입자	3.1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4.3
	모름/무응답	10.7
계		100.0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생계비 지원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 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각 복지서비스 중에서 생계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55.1%, 별로 11.7%)는 의견이 66.8%로 과반수가 넘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다소 12.0%, 아주 17.0%)는 응답은 29.0%로 나타나, 생계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주 필요하다는 의견이 44.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반가구 응답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저소득가구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표 14-1-1〉 생계비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1	22.0	66.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7	8.5	12.8
그저 그렇다		4.2	4.6	4.0
다소 필요하다		12.0	19.7	9.4
아주 필요하다		17.0	44.2	7.4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 생계비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가구 중 6.9%만이 생계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1.3%로 극히 낮았으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가구의 이용경험자 역시 23.6%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

반적으로 생계비 지급에 대한 요건, 절차 단순화, 홍보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2〉 생계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9	23.6	1.3
없다		93.0	76.4	98.7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 동안 생계비나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아 보았다는 가구응답자(N=491)를 대상으로 파악한 이용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다. 생계비 지원에 따른 만족도는 47.1%(매우 만족 14.5%, 대체로 만족 32.6%)로 과반수가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47.9%로 전체의 만족도와 비슷하였으나,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3.6%나 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향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14-1-3〉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4.5	15.1	10.4
대체로 만족		32.6	32.8	31.3
그저 그렇다		20.8	21.7	14.9
대체로 불만족		19.1	18.2	25.4
매우 불만족		5.3	5.4	4.5
모름/무응답		7.7	6.8	13.4
계		100.0(491)	100.0(424)	100.(67)

2005년 1년간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을 통해 받고 있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 보건소, 병원, 학교 등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제공루트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기관들 역시 공공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와 연계하여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국민 홍보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4〉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4.1	94.8	89.4
	사회복지관련기관	0.2	6.2	0.0
	모름/무응답	5.7	5.0	10.6
	계	100.0(491)	100.0(424)	100.(67)

2. 의료비 지원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복지서비스 중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다소 12.3%, 아주 16.9%)는 의견은 39.1%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3.5%에 달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7.9%에 이르러, 2005년 1년 동안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낮은 편이었다. 의료비 지원서비스 역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필요성 차이가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5〉 의료비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1	23.0	66.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0	8.4	11.9
그저 그렇다		4.7	5.1	4.6
다소 필요하다		12.3	20.1	9.6
아주 필요하다		16.9	43.4	7.9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 의료비 지원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본 응답자는 7.2%에 불과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2%로 필요성에 비해 지원제공 받은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는 단지 1.8%만이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1-6〉 의료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2	23.2	1.8
없다		92.7	76.8	98.1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본 응답자(N=512)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료비 제공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25.1%, 대체로 47.8%)는 의견이 72.9%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73.8%, 일반 가구는 69.2%로 나타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서비스 혜택 대상 확대 및 홍보가 잘 된다면 전체적인 효용이나 만족도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1-7〉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1	26.7	18.1
	대체로 만족	47.8	47.1	51.1
	그저 그렇다	14.5	13.5	19.1
	대체로 불만족	8.2	7.9	9.6
	매우 불만족	1.6	1.7	1.1
	모름/무응답	2.7	3.1	1.1
	계	100.0(512)	100.0(417)	100.0(95)

의료비 지원을 제공한 기관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93.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병원 3.3%, 보건소 0.8% 순으로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95.2%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가구도 마찬가지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 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원이 다소 나타났으므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건소나 병원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8〉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3.8	95.2	87.4
	사회복지관련기관	0.4	0.5	0.0
	보건소	0.8	0.7	1.1
	병원	3.3	2.6	6.3
	학교	0.2	0.0	1.1
	기타	0.6	0.0	3.2
	모름/무응답	1.0	1.0	1.1
	계	100.0(512)	100.0(417)	100.0(95)

3.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료품, 의류, 가구 등의 직접적인 물품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전혀 69.2%, 별로 13.6%)는 의견이 82.8%로 물품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4.1%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5.7%로 나타나 차이가 다소 보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물품지원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1-9> 물품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9.2	42.0	78.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3.6	16.5	12.7
그저 그렇다		4.2	7.4	3.1
다소 필요하다		6.9	16.3	3.7
아주 필요하다		6.0	17.8	2.0
모름/무응답		0.1	0.0	0.2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 간을 기준으로 실제로 물품지원 서비스를 받아 본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4.2%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14.1%였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경험은 0.8%밖에 되지 않았다.

<표 14-1-10> 물품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2	14.1	0.8
없다		95.8	85.9	99.2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물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297)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9.6%(매우 13.8%, 대체로 45.8%)로 나타나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나 일반 가구의 만족도 모두 전체와 비슷하게 나타나(저소득 가구 60.1%, 일반 가구 56.8%) 향후 물품지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11〉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3.8	14.6
대체로 만족		45.8	45.5	47.7
그저 그렇다		26.6	26.1	29.5
대체로 불만족		8.8	8.3	11.4
매우 불만족		1.0	1.2	0.0
모름/무응답		4.0	4.3	2.3
계		100.0(297)	100.0(253)	100.0(44)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물품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준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90.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관련기관과 종교/사회단체가 각각 3.4%, 5.1%로 응답되었다. 물품지원 서비스를 받는 기관의 분포는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에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품지원 서비스 분야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관련 기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공유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12〉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0.5	90.5	90.7
	사회복지관련기관	3.4	3.6	2.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5.1	4.7	7.0
	기타	0.0	0.0	0.0
	모름/무응답	1.0	1.2	0.0
	계	100.0(297)	100.0(253)	100.0(44)

4. 가정봉사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의 가정봉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의견은 4.7%(다소 2.9%, 아주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11.3%로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그다지 필요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일반 가구의 경우는 2.3%의 응답자만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정봉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표 14-1-13〉 가정봉사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9.1	63.5	84.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3.3	19.3	11.2
	그저 그렇다	2.9	5.8	2.0
	다소 필요하다	2.9	6.4	1.6
	아주 필요하다	1.8	4.9	0.7
	모름/무응답	0.1	0.1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가정봉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0.3%로 저소득가구 1.2%에 해

당하는 비율이다.

〈표 14-1-14〉 가정봉사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	1.2	0.0
없다		99.6	98.8	99.9
모름/무응답		0.1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살펴 본 가정봉사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응답자(N=22)의 54.6%(매우 18.2%, 대체로 3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저소득가구만이 가정봉사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만족도는 전체와 동일하다. 가정봉사서비스는 각 가구의 생활현장 및 사생활이 직접 노출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단독가구 등 특수한 계층이나 가구를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15〉 가정봉사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8.2	18.2	-
대체로 만족		36.4	36.4	-
그저 그렇다		4.5	4.5	-
대체로 불만족		9.1	9.1	-
매우 불만족		4.5	4.5	-
모름/무응답		27.3	27.3	-
계		100.0(22)	100.0(22)	100.0(0)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가구의 40.9%가 공공기관을 통해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았고, 27.3%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6〉 가정봉사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0.9	40.9	-
	사회복지관련기관	27.3	27.3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9.1	9.1	-
	보건소	0.	0.	-
	모름/무응답	22.7	22.7	-
	계	100.0(22)	100.0(22)	100.0(0)

5. 식사배달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 혹은 밑반찬을 배달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사배달 서비스가 필요하다(다소 3.5%, 아주 2.4%)는 의견은 5.9%에 불과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1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낮은 비율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오직 2.2%만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7〉 식사배달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9.2	60.6	85.6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2.0	17.0	10.3
	그저 그렇다	2.8	5.6	1.8
	다소 필요하다	3.5	8.7	1.7
	아주 필요하다	2.4	8.0	0.5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0.9%의 응답자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저소득 가구는 3.6%에 불과

해 그 이용률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4-1-18〉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	3.6	0.0
	없다	99.1	94.6	99.9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N=67)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71.3%가 만족한다(매우 25.8%, 대체로 45.5%)는 의견을 보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70.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일반가구는 이용자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1-19〉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8	26.6	0.0
	대체로 만족	45.5	43.8	100.0
	그저 그렇다	12.1	12.5	0.0
	대체로 불만족	7.6	7.8	0.0
	매우 불만족	1.5	1.6	0.0
	모름/무응답	7.6	7.8	0.0
	계	100.0(67)	100.0(65)	100.0(2)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기관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25.4%,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25.4%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사회복지관련기관, 공공기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는 반면, 일반가구는 2가구 모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0〉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5.4	26.2	0.0
	사회복지관련기관	44.8	43.1	1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5.4	26.2	0.0
	기타	3.0	3.1	0.0
	모름/무응답	1.5	1.5	0.0
	계	100.0(67)	100.0(65)	100.0(2)

6. 주택관련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집수리, 도배 등의 주택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9.8%(다소 5.8%, 아주 4.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2.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5.4%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4-1-21〉 주택관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4.7	55.6	81.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7	15.6	10.4
	그저 그렇다	3.7	6.0	2.9
	다소 필요하다	5.8	12.0	3.7
	아주 필요하다	4.0	10.7	1.7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경험해 본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0.5%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1.7%, 일반 가구는 0.1%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표 14-1-22〉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	1.7	0.1
없다		99.5	98.3	98.8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N=34)를 대상으로 그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75.8%가 만족한다(매우 39.4%, 대체로 36.4%)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80.0%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는 33.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택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3〉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9.4	40.0	33.3
대체로 만족		36.4	40.0	0.0
그저 그렇다		9.1	10.0	0.0
대체로 불만족		6.1	6.7	0.0
매우 불만족		9.1	3.3	66.7
모름/무응답		0.0	0.0	0.
계		100.0(34)	100.0(31)	100.0(3)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82.4%, 사회복지관련기관이 5.9%로 응답되었다. 주택관련 서비스를 받은 저소득 가구 대부분은 공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고, 일반가구는 사회복지관련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받은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택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4〉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2.4	83.9	66.7
사회복지관련기관		5.9	3.2	3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9	3.2	0.0
모름/무응답		8.8	9.7	0.0
계		100.0(34)	100.0(31)	100.0(3)

7.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2.4%의 응답자만이 필요하다(다소 6.2%, 아주 6.2%)고 하여 그 필요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17.2%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10.7%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4-1-25〉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3.4	65.1	76.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8	13.0	10.0
그저 그렇다		3.4	4.5	3.0
다소 필요하다		6.2	8.0	5.6
아주 필요하다		6.2	9.2	5.1
모름/무응답		0.1	0.2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0.5%의 응답자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경험자는 1.2%, 일반 가구는 0.3%로 각각 나타나 해당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1-26〉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	1.2	0.3
	없다	99.5	98.8	99.7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관련 복지서비스를 경험해 본 응답자(N=34)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32.4%(매우 11.8%, 대체로 20.6%)로 나타나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36.4%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25.0%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8	9.1	16.7
	대체로 만족	20.6	27.3	8.3
	그저 그렇다	26.5	36.4	8.3
	대체로 불만족	29.4	22.7	41.7
	매우 불만족	2.9	4.5	0.0
	모름/무응답	8.8	0.0	25.0
	계	100.0(34)	100.0(22)	100.0(12)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73.5%, 사회복지관련기관이 11.8%로 제공기관의 다양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77.3%, 사회복지관련기관 13.6%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일반 가구는 공공기관이 6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8〉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3.5	77.3	66.7
사회복지관련기관		11.8	13.6	8.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9	4.5	0.0
기타		2.9	4.5	0.0
모름/무응답		8.8	0.0	24.0
계		100.0(34)	100.0(22)	100.0(12)

8.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5.6%만 필요하다(다소 3.8%, 아주 1.8%)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8.9%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4-1-29〉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0.2	71.9	83.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5	14.6	10.5
그저 그렇다		2.6	4.5	2.0
다소 필요하다		3.8	5.2	3.3
아주 필요하다		1.8	3.7	1.1
모름/무응답		0.1	0.1	0.2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0.3%만 이용하였다고 응답해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이용 경험은 각각 0.5%, 0.1%로 나타났다.

〈표 14-1-30〉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	0.5	0.1
없다		99.7	99.5	99.8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N=15)들의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40.0%가 만족한다(매우 6.7%, 대체로 33.3%)고 응답하여 만족도 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만족도한다는 응답은 44.4%였으며, 일반 가구는 33.3%가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해 상담관련 복지서비스의 질적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률,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인 대책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31〉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6.7	11.1	0.0
대체로 만족		33.3	33.3	33.3
대체로 불만족		6.7	11.1	0.0
모름/무응답		53.3	44.5	66.7
계		100.0(15)	100.0(9)	100.0(6)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 보건소, 병원 등이 다양하게 응답되었으나 사례수가 지극히 적어서 분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표 14-1-32〉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1	12.5	0.0
사회복지관련기관		7.1	12.5	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7.1	12.5	0.0
보건소		7.1	12.5	0.0
병원		14.3	0.0	33.3
기타		7.1	12.5	0.0
모름/무응답		50.0	37.5	66.7
계		100.0(15)	100.0(9)	100.0(6)

9.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0.9%의 응답자만이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1.2%,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0.7%로 각각 응답되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점점 대두되는 만큼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나 집단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므로,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전반적인 서비스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1-33〉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9.0	86.3	90.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9.0	10.9	8.3
그저 그렇다		1.0	1.6	0.9
다소 필요하다		0.6	0.7	0.5
아주 필요하다		0.3	0.5	0.2
모름/무응답		0.1	0.1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약물(알코올) 상담에 대한 이용경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0.1%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0.1%가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4-1-34〉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	0.1
없다		99.9	99.9	99.9
모름/무응답		0.0	0.0	0.1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약물(알코올)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N=2)가 적어 생략하였다.

10.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0.5%의 응답자만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저소득 가구 및 일반 가구 모두 0.6%의 응답자만이 그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대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관련한 내용은 상담 의뢰자의 비밀 유지, 보호 서비스 등의 다른 정책이나 행정서비스와의 연계 및 범국민적 계몽/교육이 확립되어야 그 필요성 결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1-35〉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90.2	88.5	90.7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8.3	9.7	7.8
그저 그렇다		0.9	1.2	0.8
다소 필요하다		0.5	0.4	0.5
아주 필요하다		0.0	0.2	0.4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학대 혹은 가정폭력에 관련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저소득 가구 중 1가구만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기관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11.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6.8%만이 부모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다소 4.4%, 아주 2.4%)고 응답하여서 필요성에 대한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경우가 4.4%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도 7.7%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4-1-36〉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3.3	84.4	82.9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8.1	9.3	7.7
그저 그렇다		1.7	1.9	1.7
다소 필요하다		4.4	2.7	5.0
아주 필요하다		2.4	1.7	2.7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0.2%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14-1-3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	0.1	0.2
없다		99.7	99.9	99.8
모름/무응답		0.1	0.0	0.0
계		100.0(7,072)	100.0(1,797)	100.0(5,275)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아 본 응답자(N=15)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의 66.7%의 응답자가 만족한다(매우 46.7%, 대체로 20.0%)고 하여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66.7%가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나 집단의 구분 없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은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3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6.7	66.7	41.7
대체로 만족		20.0	0.0	25.0
그저 그렇다		33.3	33.3	33.3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15)	100.0(3)	100.0(12)

2005년 1년간을 기준으로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결과는 공공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 학교 등이 다양하게 응답되었으나 각각의 사례가 매우 적어서 역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 14-1-3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3.3	66.7	0.0
	사회복지관련기관	26.7	33.3	25.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6.7	0.0	33.3
	학교	33.3	0.0	41.7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15)	100.0(3)	100.0(12)

제2절 노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

전체 가구 중 27.6%인 1,948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조사한 결과 <표14-2-1>과 같이 나타났다. 1순위로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문제(40.4%), 생활비 문제(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순위로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문제(31.4%)와 생활비 문제(27.2%), 경제적인 문제(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건강문제(32.9%), 생활비문제(30.3%), 경제적인 문제(20.3%), 일반가구의 경우 생활비 문제(31.2%), 건강문제(28.9%), 경제적인 문제(22.7%) 순으로 나타나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전체가구의 18.0%가 노인의 부양과 관련되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는 9.2%, 일반가구는 27.0%로 나타났다.

〈표 14-2-1〉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어려움

(단위: %, 가구)

	거주지역	특별한 어려움 없다	생활비 문제	돌봄의 문제	수발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인 문제	외로움 의 문제	가족간 의 갈등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가구수
1 순 위	전체	18.0	23.0	4.1	3.0	40.4	6.1	2.1	1.6	1.2	0.6	1948
	저소득	9.2	30.5	2.5	2.4	44.9	7.3	1.5	0.6	0.7	0.5	981
	일반	27.0	33.3	5.7	3.5	36.4	4.7	3.0	2.4	1.4	0.7	967
2 순 위	전체	0.9	27.2	5.1	3.7	31.4	21.2	6.5	2.7	1.4	-	1048
	저소득	1.0	30.3	4.9	2.2	32.9	20.3	5.4	1.3	1.5	-	669
	일반	0.7	31.2	5.3	6.0	28.9	22.7	8.2	4.8	1.2	-	415

2. 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가. 경로연금

경로연금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2>와 같이 전체가구(N=1,948)의 34.9%가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 57%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51.0%로 일반가구(18.6%)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4-2-2〉 경로연금 급여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6	13.8	39.7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3	6.8	13.8
그저 그렇다		5.0	4.9	5.2
다소 필요하다		22.7	23.3	22.0
아주 필요하다		34.9	51.0	18.6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경로연금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3>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

가 8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1.3%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20.4%로 일반가구(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3> 경로연금 급여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3	20.4	2.2
없다		88.2	79.5	97.1
모름/무응답		0.4	0.1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경로연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222)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4>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45.5%, 매우 만족이 15.8%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61%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소득집단별로는 대체로 만족의 응답 비율은 저소득가구(44.0%)와 일반가구(59.1%)로 일반가구가 높게 나왔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매우 만족이 17.0%로 일반가족(4.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4> 경로연금 급여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8	17.0	4.5
대체로 만족		45.5	44.0	59.1
그저 그렇다		21.6	21.5	22.7
대체로 불만족		12.6	12.5	13.6
매우 불만족		2.3	2.5	0.0
모름/무응답		2.3	2.5	0.0
계		100.0(222)	100.0(200)	100.0(22)

서비스 제공기관(N=222)을 살펴본 결과 <표 14-2-5>와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98.6%)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도 응답자 대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응답했다.

〈표 14-2-5〉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8.6	98.5	100.0
	기타	0.5	0.5	0.0
	모름/무응답	0.9	1.0	0.0
	계	100.0(222)	100.0(200)	100.0(22)

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6>과 같이 전체가구의 32.6%가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3.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 55.7%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경우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47.4%로 일반가구(17.5%)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1	15.9	40.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9.7	6.8	12.5
	그저 그렇다	6.1	5.8	6.4
	다소 필요하다	23.1	23.8	22.4
	아주 필요하다	32.6	47.4	17.5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7>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88.0%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11.6%가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19.5%로 일반가구(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7>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6	19.5	3.5
	없다	88.0	80.3	95.8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227)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8>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4.5%, 매우 만족이 39.9%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84%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대체로 만족의 응답비율이 54.3%로 높았다.

<표 14-2-8>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9.9	35.4	25.7
	대체로 만족	44.5	42.7	54.3
	그저 그렇다	14.5	14.1	17.1
	대체로 불만족	4.4	4.7	2.9
	매우 불만족	0.4	0.5	0.0
	모름/무응답	2.2	2.6	0.0
	계	100.0(227)	100.0(192)	100.0(35)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14-2-9>와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95.5%)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병원(3.1%), 사회복지 관련기관, 보건소 등이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9〉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5.5	95.3	97.1
사회복지관련기관		0.4	0.5	0.0
보건소		0.4	0.5	0.0
병원		3.1	3.7	0.0
기타		0.0	0.0	0.0
모름/무응답		0.4	0.0	2.9
계		100.0(224)	100.0(190)	100.0(34)

다. 노인무료급식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10>과 같이 전체가구의 59.9%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9.2%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79%가 필요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0.1%로 저소득가구(49.7%)보다 높아 노인무료급식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1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9.9	49.7	70.1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2	21.0	17.4
그저 그렇다		6.9	8.8	5.0
다소 필요하다		7.4	10.6	4.2
아주 필요하다		5.9	9.4	2.4
모름/무응답		0.7	0.5	0.9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11>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96.8%로 대부분이었으며, 전체가구의 2.7%가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4.8%로 일반가구(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11>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7	4.8	0.6
없다		96.8	95.0	98.7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54)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2>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46.3%, 매우 만족이 31.5%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8%는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2-12>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1.5	29.8	42.9
대체로 만족		46.3	48.9	28.6
그저 그렇다		14.8	12.8	28.6
대체로 불만족		3.7	4.3	0.0
모름/무응답		3.7	4.3	0.0
계		100.0(54)	100.0(47)	100.0(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용 가구는 5가구 미만에 불과하여 분석을 생략하였다.

라. 물품지원

물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13>과 같이 전체가구의 55.9%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6.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83%가 물품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69.2%로 저소득가구(42.8%)보다 높아 물품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13〉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9	42.8	69.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6.6	16.8	16.4
그저 그렇다		5.7	7.0	4.4
다소 필요하다		11.2	16.5	5.8
아주 필요하다		9.9	16.4	16.1
모름/무응답		0.7	0.4	0.9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물품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14>와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6.1%가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11.2%로 일반가구(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2-14〉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1	11.2	0.9
없다		93.4	88.6	98.3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119)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5>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54.6%, 매우 만족이 15.1%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0%는 물품지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대체로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11.1%로 다소 높아 저소득가구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15>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1	16.4	0.0
대체로 만족		54.6	51.8	88.9
그저 그렇다		20.2	21.8	0.0
대체로 불만족		5.9	5.5	11.1
매우 불만족		0.8	0.9	0.0
모름/무응답		3.4	3.6	0.0
계		100.0(119)	100.0(110)	100.0(9)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16>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8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5.9%), 사회복지 관련기관(4.2%) 등이 있었다.

<표 14-2-16>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9.9	89.1	100.0
사회복지관련기관		4.2	4.5	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5.9	6.4	0.0
기타		0.0	0.0	0.0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119)	100.0(110)	100.0(9)

마. 가정봉사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17>과 같이 전체가구의 65.0%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8.6%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84%가 가정봉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3.5%로 저소득가구(56.7%)보다 높아 가정봉사 서비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17〉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5.0	56.7	73.5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8.6	20.6	16.6
그저 그렇다		5.0	6.7	3.2
다소 필요하다		6.6	9.5	3.7
아주 필요하다		4.2	6.3	2.1
모름/무응답		0.6	0.2	0.9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가정봉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18>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9.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0.5%만이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0.9%였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었다.

〈표 14-2-18〉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	0.9	0.0
없다		99.1	98.9	99.3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10)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19>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40.0%, 매우 만족이 30.0%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0%는 가정봉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총 사례수가 10가구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4-2-19>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0.0	30.0	0.0
	대체로 만족	40.0	40.0	40.0
	매우 불만족	10.0	10.0	10.0
	모름/무응답	20.0	20.0	20.0
	계	100.0(10)	100.0(1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20>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40.0%,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5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0.0%를 차지했다.

<표 14-2-20>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0.0	40.0	0.0
	사회복지관련기관	50.0	50.0	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0.0	10.0	0.0
	보건소	0.0	0.0	0.0
	계	100.0(10)	100.0(10)	100.0(0)

바. 식사 배달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21>과 같이 전체가구의 64.3%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6.9%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80%가 식사배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3.6%로 저소득가구(55.1%)보다 높아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21〉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4.3	55.1	73.6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6.9	16.9	16.8
그저 그렇다		4.9	6.7	3.0
다소 필요하다		7.7	11.7	3.5
아주 필요하다		5.7	9.3	2.1
모름/무응답		0.6	0.2	1.0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식사배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22>와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2.2%가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4.3%로 일반가구(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22〉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2	4.3	0.1
없다		97.3	95.5	99.2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43)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23>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6.5%, 매우 만족이 32.6%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9%는 식사배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2-23>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2.6	33.3	0.0
대체로 만족		46.5	45.2	100.0
그저 그렇다		9.3	9.5	0.0
대체로 불만족		2.3	2.4	0.0
매우 불만족		2.3	2.4	0.0
모름/무응답		7.0	7.1	0.0
계		100.0(43)	100.0(42)	100.0(1)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24>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공공기관(30.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3.3%)등이 있었다.

<표 14-2-24>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0.2	31.0	0.0
사회복지관련기관		44.2	42.9	1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3.3	23.8	0.0
기타		2.3	2.4	0.0
계		100.0(43)	100.0(42)	100.0(1)

사.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25>와 같이 전체가구의 64.2%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7.7%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81%가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 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69.2%로 저소득가구(59.2%)보다 높아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25〉 노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4.2	59.2	69.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7.7	18.7	16.6
그저 그렇다		4.2	5.6	2.7
다소 필요하다		7.3	8.5	6.1
아주 필요하다		6.0	7.6	4.3
모름/무응답		0.7	0.4	1.0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26>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9.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0.5%만이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0.9%로 일반가구(0.0%)로 나타났다.

〈표 14-2-26〉 노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	0.9	0.0
없다		99.1	98.9	99.3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노인에 대한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한 가구의 수가 5가구에 불과하여 만족도와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다만 이용자들의 약 2/3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 교통수단 지원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27>과 같이 전체가구의

58.5%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5.6%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74%가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65.1%로 저소득가구(52.1%)보다 높아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표 14-2-27> 노인 교통수단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8.5	52.1	65.1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5.6	15.7	15.6
그저 그렇다		4.9	7.0	2.8
다소 필요하다		10.2	11.7	8.6
아주 필요하다		9.9	13.1	6.6
모름/무응답		0.8	0.3	1.3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28>과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1.6%가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1.7%로 일반가구(1.4%)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28>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	1.7	1.4
없다		97.9	98.1	97.8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N=32)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2-29>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37.5%, 매우 만족이 21.9%로, 이용경험 가구의 약 59%가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2-29〉 노인 교통수단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9	29.4	13.3
대체로 만족		37.5	41.2	33.3
그저 그렇다		15.6	5.9	26.7
대체로 불만족		15.6	17.6	13.3
매우 불만족		9.4	5.9	13.3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32)	100.0(17)	100.0(15)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2-30>과 같이 공공기관(37.5%)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37.5%)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 병원(12.5%)등이 있었다.

〈표 14-2-30〉 노인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7.5	41.2	33.3
사회복지관련기관		37.5	35.3	40.0
보건소		6.3	0.0	13.3
병원		12.5	11.8	13.3
기타		3.1	5.9	0.0
모름/무응답		3.1	5.9	0.0
계		100.0(32)	100.0(17)	100.0(15)

자. 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31>과 같이 전체가구의 76.3%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5.2%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가구가 대부분이었다(약 91%).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7.7%로 저소득가구(74.9%)보다 다소 높았다.

<표 14-2-31>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6.3	74.9	77.7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5.2	16.3	14.2
그저 그렇다		3.4	4.8	2.1
다소 필요하다		2.6	2.6	2.6
아주 필요하다		1.9	1.2	2.6
모름/무응답		0.6	0.2	0.9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2-32>와 같이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가 9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가구의 0.2%만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0.1%이며 일반가구는 0.2%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4-2-32>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	0.1	0.2
없다		99.4	99.7	99.1
모름/무응답		0.5	0.2	0.7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한 가구의 수가 2가구에 불과하여 만족도와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차. 단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표 14-2-33>과 같이 전체가구의 78.0%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5.2%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단기보호 서

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가구가 대부분이었다(약 93%). 소득집단별로 일반가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8.8%로 저소득가구(77.3%)보다 다소 높았다.

〈표 14-2-33〉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8.0	77.3	78.8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5.2	16.1	14.2
그저 그렇다		3.0	3.9	2.2
다소 필요하다		1.6	1.4	1.8
아주 필요하다		1.6	1.1	2.2
모름/무응답		0.6	0.2	0.9
계		100.0(1,948)	100.0(981)	100.0(967)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한 가구의 수가 5가구미만이어서 경험여부, 만족도,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제3절 장애인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1.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와 어려움

전체 가구 중 13.9%인 971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년간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1>과 같다.

1순위 응답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가구원 중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가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22.5%, 장애가구원 보호로 인한 소득활동의 지장 15.4% 순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장애가구원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29.1%)으로 꼽았으나, 일반가구의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31.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가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가구원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의 어려움(16.8%), 장애 가구원의 취업 및 직업 활동의 어려움(16.8%) 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모두 장애가구원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각각 22.0%와 23.4%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1>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보호와 어려움

(단위: %, 가구)

	거주지역	특별 어려움 없다	장애 가구원 보호 보로 인한 소득 활동 의 지장	장애 가구원 의료 비, 교육 비 등 추가 비용 으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	장애 동(녀) (자 보) 육 의 어려움	장애 동(녀) 의 교 활 및 학 적 문 제 (교육 문제)	대 중 수 단 이 용 및 이 동 의 어려움	장애 가 구 원 의 취 업 및 직 업 활 동 의 어려움	사 회 적 편 견 으로 인 한 사 회 적 관 계 의 어려움	주택 구조 불편	가족 간의 갈등	기타	모 름/ 무 응 답	전체 가 구 수
1 순 위	전체	22.9	15.4	22.5	1.8	0.3	11.3	13.1	3.6	2.1	1.1	1.1	4.8	971
	저소득	10.3	18.6	29.1	1.8	0.0	11.1	14.3	3.5	3.5	1.3	2.0	4.5	398
	일반	31.6	13.3	17.8	1.7	0.5	11.5	12.2	3.7	1.0	1.0	0.5	5.1	573
2 순 위	전체	-	13.4	22.7	1.5	1.3	16.8	16.8	15.8	7.6	3.2	0.9	-	463
	저소득	-	16.6	22.0	0.8	0.8	20.7	16.6	12.0	6.6	3.3	0.4	-	241
	일반	-	9.9	23.4	2.3	1.8	12.6	17.1	19.8	8.6	3.2	1.4	-	222

2. 장애인복지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가. 장애수당

장애수당 서비스의 필요성정도(N=971)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2>와 같다. 전체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는 비율이 42.0%로 가장 많았고, 다소 필요하다는 비율이 23.6%로 전체의 약 65%가 장애수당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가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84%로 일반가구(53%)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4-3-2> 장애수당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2	5.3	22.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9.1	4.5	12.2
그저 그렇다		5.5	2.0	7.9
다소 필요하다		23.6	20.8	25.5
아주 필요하다		42.0	63.4	27.1
모름/무응답		4.6	4.0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3>에서는 장애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 중 장애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이 30.9%인 것에 비해 일반가구 이용률은 불과 3.8%로 매우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당 서비스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3> 장애수당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9	30.9	3.8
없다		80.5	65.3	91.1
모름/무응답		4.5	3.8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수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144)를 <표 14-3-4>와 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1.9%로 분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불만족 한다는 의견도 25.0%로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가구의 경우는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약 41%로 높게 나타나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3-4>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5.6	6.6	0.0
대체로 만족		31.9	33.6	22.7
그저 그렇다		25.7	24.6	31.8
대체로 불만족		25.0	23.8	31.8
매우 불만족		9.7	9.8	9.1
모름/무응답		2.1	1.6	4.5
계		100.0(144)	100.0(122)	100.0(22)

<표 14-3-5>에서는 장애수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89.6%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기관(0.7%)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았을 때도 저소득가구와 일

반가구 모두에서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5> 장애수당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9.6	98.4	100.0
	사회복지관련기관	0.7	0.8	0.0
	모름/무응답	0.7	0.8	0.0
	계	100.0(144)	100.0(122)	100.0(22)

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표 14-3-6>과 같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보았을 때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각각 84.7%와 75.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6> 장애아동부양수당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9.2	84.7	75.3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5	5.3	9.1
	그저 그렇다	1.5	1.0	1.9
	다소 필요하다	3.2	2.0	4.0
	아주 필요하다	3.7	3.0	4.2
	모름/무응답	4.8	4.0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다음 <표 14-3-7>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집단별로 보았을 때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모두 0.5%의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7>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	0.5	0.5
없다		94.6	95.5	94.0
모름/무응답		4.9	4.0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율이 10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3-8>과 같다. 전체적으로 55.2%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51.1%와 일반가구의 58.0% 역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2	51.1	58.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3.7	12.0	14.9
그저 그렇다		5.6	7.0	4.6
다소 필요하다		9.8	12.3	8.1
아주 필요하다		10.9	13.3	9.3
모름/무응답		4.8	4.3	5.3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표 1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	0.3	0.0
없다		95.2	96.0	94.6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율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라. 공공시설 내 자판기, 생활편의용품 지원

공공시설 내 자판기, 생활편의용품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표 14-3-10>과 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52.9%와 6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0> 장애인 공공시설 내 자판기, 생활편의용품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7.6	52.9	60.8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5	12.6	10.7
그저 그렇다		5.4	7.1	4.2
다소 필요하다		9.9	11.6	8.7
아주 필요하다		11.0	12.1	10.3
모름/무응답		4.6	3.8	5.2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매 자판기, 생활편의용품 지원 서비스의 경우 경험여부와 이용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마.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56%와 7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1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4.0	44.9	60.3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8	12.0	10.0
그저 그렇다		5.4	4.8	5.8
다소 필요하다		12.4	16.5	9.4
아주 필요하다		13.0	18.0	9.4
모름/무응답		4.5	3.8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12>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1.3%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1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3	2.3	0.7
없다		94.0	94.0	94.1
모름/무응답		4.6	3.8	5.2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12)를 <표 14-3-13>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1.7%로 분포되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62%와 75%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0	25.0	25.0
대체로 만족		41.7	37.5	50.0
그저 그렇다		25.0	25.0	25.0
대체로 불만족		8.3	12.5	0.0
모름/무응답		0.0	0.0	0.0
계		100.0(12)	100.0(8)	100.0(4)

<표 14-3-14>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76.9%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기관(23.1%)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도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6.9	77.8	75.0
사회복지관련기관		23.1	22.2	25.0
보건소		0.0	0.0	0.0
계		100.0(13)	100.0(9)	100.0(4)

바. 의료재활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은 18.0%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45%와 6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의료재활 서비스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15>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45.4	34.9	52.6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9	10.3	11.4
그저 그렇다		6.0	6.3	5.8
다소 필요하다		14.9	17.6	13.1
아주 필요하다		18.0	27.1	11.7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16>에서는 의료재활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 중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4.6%로 나타났으며 소득집

단별로 보면 일반가구(2.1%)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이 8.3%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16>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6	8.3	2.1
없다		90.7	87.9	92.7
모름/무응답		4.6	3.8	5.2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45)를 <표 14-3-17>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6.7%로 분포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78%와 67%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의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3-17>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9	24.2	41.7
대체로 만족		46.7	54.5	25.0
그저 그렇다		17.8	12.1	33.3
대체로 불만족		4.4	6.1	0.0
모름/무응답		2.2	3.0	0.0
계		100.0(45)	100.0(33)	100.0(12)

<표 14-3-18>에서는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89.1%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병원(4.3%), 사회복지 관련기관(2.2%)과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90.9%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응답사례가 적은 관계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3-18〉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9.1	90.9	84.6
사회복지관련기관		2.2	3.0	0.0
병원		4.3	0.0	15.4
모름/무응답		4.3	6.1	0.0
계		100.0(45)	100.0(33)	100.0(12)

사. 가사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19>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4.6%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72%와 7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19〉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1.0	54.3	65.7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4.6	17.1	12.9
그저 그렇다		5.3	5.8	4.9
다소 필요하다		7.0	8.8	5.8
아주 필요하다		7.4	10.3	5.4
모름/무응답		4.6	3.8	5.2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20>에서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 중 가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8%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2.0%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0%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0>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8	2.0
없다		94.4	94.2	94.6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아. 이동편의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62%와 7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21>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8.9	51.8	63.9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2.5	10.3	14.0
그저 그렇다		3.9	4.0	3.9
다소 필요하다		9.0	13.1	6.1
아주 필요하다		10.8	16.8	6.7
모름/무응답		4.9	4.0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22>에서는 이동편의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 중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6%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1.5%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0%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2>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	1.5	0.0
없다		94.6	94.7	94.6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율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자.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60.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4.5%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66%와 82%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가구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3〉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0.9	51.6	67.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4.5	14.8	14.3
그저 그렇다		4.1	5.3	3.3
다소 필요하다		8.0	11.0	5.9
아주 필요하다		7.5	13.3	3.5
모름/무응답		4.9	4.0	5.6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24>에서는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6%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1.5%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0%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4〉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	1.5	0.0
없다		94.6	94.7	94.6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차.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2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9%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78%와 8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가구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5>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8.4	63.9	71.5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2.9	14.0	12.1
그저 그렇다		4.5	6.5	3.1
다소 필요하다		6.4	7.3	5.8
아주 필요하다		3.2	4.3	2.4
모름/무응답		4.6	4.0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26>에서는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3%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0.7%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0%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26〉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	0.7	0.0
없다		94.9	95.5	94.6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카.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27>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81%와 8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가구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3.2	72.1	74.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8	9.3	11.9
그저 그렇다		3.7	5.5	2.4
다소 필요하다		3.8	5.5	2.6
아주 필요하다		3.4	3.5	3.3
모름/무응답		5.1	4.0	5.8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경험여부,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28>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2%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71%와 77%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가구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28>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3.6	60.8	65.6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1.2	10.8	11.5
그저 그렇다		4.1	5.5	3.1
다소 필요하다		7.5	9.0	6.5
아주 필요하다		9.0	10.1	8.2
모름/무응답		4.5	3.8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29>에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8%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0.8%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3-29〉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8	0.8	0.9
	없다	94.4	95.5	93.7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파.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30>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82%와 8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30〉 장애인 사회복귀훈련·사회적응훈련·자립생활훈련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2.2	72.6	72.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8	9.5	11.7
	그저 그렇다	3.6	4.5	3.0
	다소 필요하다	4.3	5.3	3.7
	아주 필요하다	4.4	4.3	4.6
	모름/무응답	4.5	3.8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31>에서는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3-31> 장애인 사회복지훈련 · 사회적응훈련 · 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	0.3
없다		95.0	96.0	94.4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하.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32>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4.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93%와 89%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32〉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4.1	87.2	82.0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6.3	5.8	6.6
그저 그렇다		0.7	0.3	1.0
다소 필요하다		1.5	1.3	1.7
아주 필요하다		2.4	1.5	3.0
모름/무응답		4.9	4.0	5.6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33>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1.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0.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1.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33〉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	0.3	1.6
없다		94.2	96.0	93.0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10)를 <표 14-3-34>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 서도 역시 대체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상 나타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14-3-34>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0	0.0	22.2
대체로 만족		50.0	0.0	55.6
그저 그렇다		10.0	100.0	0.0
대체로 불만족		20.0	0.0	22.2
계		100.0(10)	100.0(1)	100.0(9)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거.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3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뒤를 이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91%와 87%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35>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2.7	85.2	80.9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6.3	6.0	6.5
그저 그렇다		0.9	0.3	1.4
다소 필요하다		1.4	1.5	1.4
아주 필요하다		3.8	3.0	4.4
모름/무응답		4.8	4.0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36>에서는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과 0.7%로 나타났으며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역시 0.3%와 1.1%의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3-36>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	0.3
없다		94.5	96.0	93.5
모름/무응답		4.7	3.8	5.4
계		100.0(971)	100.0(399)	100.0(572)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응답률이 5가구 미만이어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너.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3-37>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69%와 4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3-37>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46.2	58.9	37.3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7	9.3	6.7
그저 그렇다		3.5	3.5	3.5
다소 필요하다		12.7	6.0	17.3
아주 필요하다		25.3	18.3	30.1
모름/무응답		4.6	4.0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다음으로 <표 14-3-38>에서는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가구 중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0%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구분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에서는 13.5%, 일반가구에서는 29.5%의 비율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3-38>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3.0	13.5	29.5
없다		72.4	82.5	65.4
모름/무응답		4.6	4.0	5.1
계		100.0(971)	100.0(399)	100.0(572)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N=223)를 <표 14-3-39>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1.9%와 59.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만족도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39〉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7.1	29.6	13.1
대체로 만족		57.7	51.9	59.5
그저 그렇다		20.3	9.3	23.8
대체로 불만족		3.2	5.6	2.4
모름/무응답		1.8	3.7	1.2
계		100.0(223)	100.0(79)	100.0(144)

<표 14-3-40>에서는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95.5%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도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40〉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5.5	98.1	94.7
사회복지관련기관		1.3	0.0	1.8
모름/무응답		3.1	1.9	3.6
계		100.0(223)	100.0(79)	100.0(144)

제4절 아동 복지육구 및 서비스 실태

1.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전체 가구 중 42.5%인 3,005가구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4-1>과 같다. 먼저 가장 어렵다고 선택된 문항들을 보면(1순위),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16.1%), 아동(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육아의 어려움(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구 65.3%와 일반가구 56.1%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자녀)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일반가구 12.7%로 저소득가구 8.1%에 비해 약 5% 정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아동(자녀)양육의 어려움에 2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이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17.3%), 지역에 아동(자녀)을 맡길 보육시설의 양과 질의 문제(13.3%) 아동(자녀)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13.1%),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부족(방, 목욕시설 등)(11.0%) 순으로 나타나 1순위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표 14-4-1>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단위: %, 가구)

		특별한 어려움 없다	아동(자녀)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육아의 어려움	지역에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의 양과 질의 문제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	아동(자녀)의 건강 관리에 대한 어려움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가구수
1 순위	전체	16.1	12.0	4.2	2.1	57.5	2.2	2.6	0.7	1.2	0.3	1.0	3,005
	저소득	8.3	8.1	3.3	5.7	65.3	3.5	2.8	0.7	0.4	0.9	1.1	457
	일반	17.5	12.7	4.4	1.5	56.1	2.0	2.6	0.7	1.3	0.2	0.9	2,548
2 순위	전체	-	13.1	13.3	11.0	22.7	12.7	17.3	4.9	4.2	0.8	-	1,381
	저소득	-	12.3	8.8	18.8	23.4	9.6	17.6	4.6	4.2	0.8	-	261
	일반	-	13.3	14.3	9.2	22.6	13.4	17.2	5.0	4.2	0.8	-	1,120

2.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성과 이용경험 및 만족도

가. 어린이집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N=3,005)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주간 보호 및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은 저소득 가구 24.9%, 일반가구 23.6%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거의 비슷하였다.

〈표 14-4-2〉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5.4	64.4	65.6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2	7.2	7.2
그저 그렇다		2.5	2.2	2.5
다소 필요하다		8.0	5.2	8.5
아주 필요하다		15.8	19.7	15.1
모름/무응답		1.1	1.3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없다(92.8%)고 응답하였으나 가구별로 비교해 볼 때 저소득가구(11.6%)에서 이용하였다고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4-3〉 어린이집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3	11.6	5.3
없다		92.8	87.3	93.8
모름/무응답		0.9	1.1	0.9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어린이집 이용자들(N=188)의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73.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저소득가구 76.9%, 일반가구 70.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4-4-4〉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7.5	25.0	14.6
대체로 만족		54.5	51.9	55.5
그저 그렇다		20.1	17.3	21.2
대체로 불만족		4.2	3.8	4.4
매우 불만족		1.1	0.0	1.5
모름/무응답		2.6	1.9	2.9
계		100.0(188)	100.0(53)	100.0(135)

어린이집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당가구 중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94.1%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주14)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7%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4-5〉 어린이집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4.1	94.3	94.1
사회복지관련기관		2.7	3.8	2.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5	0.0	0.7
기타		1.6	1.9	1.5
모름/무응답		1.1	0.0	1.5
계		100.0(188)	100.0(53)	100.0(135)

주14) 응답자 대부분이 어린이 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미한다기보다 어린이 집 서비스 이용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해 공공기관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공기관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나.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8.7%(전혀 63.2%, 별로 5.5%)로 높게 나타났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8.5%(다소 10.3%, 아주 18.2%)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29.5%와 일반가구의 28.2%가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의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욕구가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3.2	64.4	62.9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5.5	4.1	5.8
그저 그렇다		1.7	0.9	1.8
다소 필요하다		10.3	5.5	11.1
아주 필요하다		18.2	24.0	17.1
모름/무응답		1.2	1.1	1.3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87.7%)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가구별로 비교해 볼 때,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가 19.9%로 일반가구에 비해 더 많은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7〉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3	19.9	9.8
없다		87.7	79.0	89.3
모름/무응답		1.0	1.1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만족도(N=340)에 대해서는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82.2%, 일반가구의 6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저소득가구의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4-4-8〉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3.3	30.0	20.9
대체로 만족		49.6	52.2	48.6
그저 그렇다		14.2	11.1	15.3
대체로 불만족		8.3	5.6	9.2
매우 불만족		2.1	0.0	2.8
모름/무응답		2.7	1.1	3.2
계		100.0(340)	100.0(91)	100.0(249)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당가구 중 공공기관 (97.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4-4-9〉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7.4	97.8	97.2
사회복지관련기관		0.9	1.1	0.8
학교		0.3	0.0	0.4
기타		0.3	0.0	0.4
모름/무응답		1.2	1.1	1.2
계		100.0(340)	100.0(91)	100.0(249)

다.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2.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10.6%로 전체 가구의 83.0%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14.0%와 일반가구의 12.2%가 아동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저소득층의 욕구가 약 2%p 높게 나타났다.

〈표 14-4-10〉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72.4	70.0	72.8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10.6	10.9	10.6
그저 그렇다		3.2	3.7	3.1
다소 필요하다		7.6	7.7	7.5
아주 필요하다		4.9	6.3	4.7
모름/무응답		1.3	1.3	1.3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의 전체가구의 98.8%로 대다수의 가구가 아동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에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12.5%인 것에 비해 실제 서비스 이용이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1〉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	0.4	0.1
없다		98.8	98.6	98.9
모름/무응답		1.0	1.0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가구는 6가구에 불과하여 만족도와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다만 이용자들의 약 2/3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라.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전체가구의 95.9%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가구의 1.9%, 일반가구의 2.0%가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성 정도의 수준이 낮았다.

〈표 14-4-12〉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91.4	91.3	91.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4.5	4.4	4.5
그저 그렇다		0.9	0.9	0.9
다소 필요하다		1.0	0.4	1.1
아주 필요하다		1.0	1.5	0.9
모름/무응답		1.2	1.5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없다(98.8%)고 응답하였고 저소득가구(98.7%), 일반가구(98.8%) 모두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3〉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	0.3	0.2
없다		98.8	98.7	98.8
모름/무응답		1.0	1.0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용자는 5가구로 이용 만족도와 제공기관은 생략하였다. 다만 이 프로그램 이용자의 약 2/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연기관으로 나타났다.

마. 방과후 지도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66.5%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45.8%와 일반가구의 25.3%가 방과후 지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특히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대한 방과후 지도 서비스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4〉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58.3	40.4	61.5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8.2	7.6	8.2
그저 그렇다		4.1	5.0	3.9
다소 필요하다		13.9	15.7	13.6
아주 필요하다		14.5	30.1	11.7
모름/무응답		1.1	1.1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방과후 지도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97.4%로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이러한 경향은 가구별 분석에서도 저소득가구 93.7%, 일반가구 98.1%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5.2%만이 방과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욕구가 있는 상당수 저소득가구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14-4-15〉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	5.2	0.9
없다		97.4	93.7	98.1
모름/무응답		1.0	1.1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방과후 지도 만족도(N=48)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69.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도는 일반가구(50.0%)에 비해 저소득가구(79.1%)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6〉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6.3	20.8	12.0
대체로 만족		53.1	58.3	48.0
그저 그렇다		18.4	8.3	28.0
대체로 불만족		4.1	4.2	4.0
매우 불만족		20.0	4.2	0.0
모름/무응답		6.1	4.2	8.0
계		100.0(48)	100.0(24)	100.0(24)

방과후 지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구 중 사회복지관련기관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6.5%, 학교 14.3%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44.0%와 일반가구의 33.3%가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방과후 지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28.0%는 공공기관을 통해, 25.0%는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표 14-4-17〉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6.5	28.0	25.0
	사회복지관련기관	38.8	44.0	3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0.2	8.0	12.5
	학교	14.3	20.0	8.3
	기타	6.1	0.0	12.5
	모름/무응답	4.1	0.0	8.3
	계	100.0(48)	100.0(24)	100.0(24)

바. 무료급식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89.8%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18.2%는 무료급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에 비해 무료급식 서비스의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8〉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81.0	65.3	83.8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8.8	9.5	8.7
	그저 그렇다	2.8	5.1	2.4
	다소 필요하다	2.7	7.0	1.9
	아주 필요하다	3.4	11.2	2.0
	모름/무응답	1.4	2.0	1.3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급식(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75.8%로 많았으나, 전체가구의 20.4%는 학교급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53.3%는 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가구(14.5%)에 비해 학교급식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9〉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학교급식)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8.6	38.6	73.9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2	4.6	7.6
그저 그렇다		2.8	2.0	2.9
다소 필요하다		7.7	12.7	6.8
아주 필요하다		12.7	40.6	7.7
모름/무응답		1.1	1.5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련기관, 학교 등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의 6.7%에 해당하였다. 일반가구의 경우 2.7%에 불과하였으나 저소득가구에서는 29.1%로 대략적으로 3가구 중 1가구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20〉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7	29.1	2.7
없다		92.3	69.8	96.3
모름/무응답		1.0	1.1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무료급식 이용에 이용만족도(N=201) 대해서는 85.7%가 만족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로도 저소득가구 87.4%, 일반가구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4-21〉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7.4	43.0	26.5
대체로 만족		48.3	44.4	55.9
그저 그렇다		5.9	7.4	2.9
대체로 불만족		3.9	3.0	5.9
매우 불만족		0.5	0.0	1.5
모름/무응답		3.9	2.2	7.4
계		100.0(201)	100.0(133)	100.0(68)

무료급식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당가구 중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43.8%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별로 저소득가구에서는 공공기관 64.2%, 학교 38.8%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학교 61.2%, 공공기관 38.8%로 나타났다.

〈표 14-4-22〉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55.7	64.2	38.8
사회복지관련기관		0.5	0.7	0.0
학교		43.8	35.1	61.2
계		100.0(201)	100.0(133)	100.0(68)

사. 학비지원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가구의 70.2%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24.7%는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앞에서 살펴본 다른 지원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구에서는 학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로 일반가구의 19.9%에 비해

약 2.5배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4-4-23〉 학비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63.0	38.9	67.3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2	5.9	7.5
그저 그렇다		4.0	3.3	4.2
다소 필요하다		10.2	11.6	9.9
아주 필요하다		14.5	39.1	10.0
모름/무응답		1.2	1.3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학비지원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4.8%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저소득 가구 중 19.0%가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학비지원이 필요하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욕구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수 되었다. 이는 일반가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14-4-24〉 학비지원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8	19.0	2.3
없다		94.2	79.9	96.7
모름/무응답		1.0	1.1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학비지원 만족도(N=145)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89.8%가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는 저소득가구 92.1%, 일반가구 90.2%로 학비지원을 받은 가구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4-25〉 학비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8.4	48.9	22.4
대체로 만족		51.4	43.2	63.8
그저 그렇다		6.8	4.5	10.3
대체로 불만족		1.4	1.1	1.7
모름/무응답		2.1	2.3	1.7
계		100.0(145)	100.0(87)	100.0(58)

학비지원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당가구들이 주로 공공기관(64.8%)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31.7%)를 통해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가구는 공공기관을 통한 학비지원이 훨씬 많았으며, 일반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의 지원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4-4-26〉 학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4.8	75.6	49.2
사회복지관련기관		0.7	0.0	1.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7	1.2	0.0
학교		31.7	23.3	44.1
기타		2.1	0.0	5.1
계		100.0(145)	100.0(87)	100.0(58)

아. 예체능 교실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예체능 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아주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이 46.8%로 필요하지 않

다는 응답 47.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예체능 교실에 대한 필요성은 저소득가구 62.5%, 일반가구 54.0%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예체능교실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27〉 예체능 교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8	26.3	43.4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6.6	5.9	6.7
그저 그렇다		4.6	3.7	4.8
다소 필요하다		20.9	22.1	20.7
아주 필요하다		25.9	40.4	23.3
모름/무응답		1.2	1.5	1.1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예체능 교실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1.6%만이 이용하여 전반적인 이용 비율은 적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2.6%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14-4-28〉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	2.6	1.4
없다		97.4	96.1	97.5
모름/무응답		1.0	1.3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N=47)에 대해서는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예체능교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14-4-29〉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8.6	38.5	25.0
대체로 만족		53.1	38.5	58.3
그저 그렇다		6.1	15.4	2.8
대체로 불만족		2.0	7.7	0.0
모름/무응답		10.2	0.0	13.9
계		100.0(47)	100.0(12)	100.0(35)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받은 기관으로는 학교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저소득가구는 학교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예체능 교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반면, 일반가구는 공공기관보다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표 14-4-30〉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7.0	16.7	17.1
사회복지관련기관		31.9	33.3	31.4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2.1	4.0	2.9
학교		48.9	50.0	48.6
계		100.0(47)	100.0(12)	100.0(35)

자. 문화활동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44.3%(다소 20.6%, 아주 2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문화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51.8%가 필요

하다고 응답해 일반가구(42.9%)에 비해 다소 높은 욕구 수준을 나타냈다.

〈표 14-4-31〉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필요성 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3	30.8	43.2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7.1	9.2	6.8
그저 그렇다		6.0	7.0	5.8
다소 필요하다		20.6	18.8	20.9
아주 필요하다		23.7	33.0	22.0
모름/무응답		1.3	1.3	1.3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문화활동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97.0%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압도적이었고 저소득가구에서는 95.2%, 일반가구는 97.4%로 나타나 이용 경험을 늘리기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4-32〉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9	3.5	1.6
없다		97.0	95.2	97.4
모름/무응답		1.1	1.3	1.0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만족도(N=57)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3.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저소득가구(81.3%)가 일반가구(70.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33〉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4.3	25.0	10.0
대체로 만족		58.9	56.3	60.0
그저 그렇다		8.9	6.3	10.0
대체로 불만족		1.8	6.3	0.0
매우 불만족		3.6	0.0	5.0
모름/무응답		12.5	6.3	15.0
계		100.0(57)	100.0(16)	100.0(41)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기관은 학교 36.2%, 사회복지관련기관 29.3%, 공공기관 25.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볼 때 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가구의 41.2%는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련기관과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구도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기관,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14-4-34〉 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5.9	29.4	24.4
사회복지관련기관		29.3	29.4	29.3
학교		36.2	41.2	34.1
기타		6.9	0.0	9.8
모름/무응답		1.7	0.0	2.4
계		100.0(57)	100.0(16)	100.0(41)

3. 아동의 건강

가. 출생 당시 체중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N=5,194)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인지 살펴본 결과 95.4%인 대다수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저소득가구(94.2%) 일반가구(95.6%)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4-4-35〉 출생당시 체중정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미만		3.8	4.0	3.7
2.5kg 이상		95.4	94.2	95.6
모름/무응답		0.9	1.6	0.7
계		100.0(5,194)	100.0(793)	100.0(4,401)

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아동(자녀)이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심장질환 등)에 관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2%에 불과하였고,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36〉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	2.0	1.0
없다		98.0	97.0	98.3
모름/무응답		1.2	1.0	0.7
계		100.0(5,194)	100.0(793)	100.0(4,401)

4. 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가.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2005년 1년간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78.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중 한명이라도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가구의 20.9%였으며, 저소득가구 38.5%가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의 17.7%에 비해 약 20%p 많은 비율이다.

〈표 14-4-37〉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지 않음		20.9	38.5
이용		78.7	60.4	82.1
모름/무응답		0.4	1.1	0.2
계		100.0(3,005)	100.0(457)	100.0(2,548)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4-4-38>과 같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라는 이유가 48.7%로 약 절반의 분포를 보였는데, 저소득가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82.5%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에서는 3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일반가구에서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44.8%로 저소득가구(9.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4-4-38〉 사교육·보육기관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 부담이 커서		48.7	82.5	35.5
남보다 내 가족 혹은 친자가 더 잘 보아줄 것 같아서		1.9	0.6	2.4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1.1	1.7	0.9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0.6	0.0	0.9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4.1	0.0	5.7
아동이 가기 싫어해서		7.3	3.4	8.8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34.8	9.0	44.8
기타		0.6	0.6	0.7
모름/무응답		0.8	2.3	0.2
계		100.0(630)	100.0(177)	100.0(453)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2,366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별로 최대 5개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외 사교육 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이용 기관수는 2.3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N=276)는 평균 1.7개, 일반가구(N=2,090)는 평균 2.4개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학원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21.4%)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 아동의 37.1%가 학원을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이보다 다소 많은 45.1%의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학습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저소득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더 많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도 17.2%나 되었다.

〈표 14-4-39〉 사교육·보육 이용기관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4.3	7.3	4.1
민간어린이집		9.1	17.2	8.3
사설놀이방		0.8	1.1	0.8
직장보육시설		0.2	0.0	0.2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1.5	1.2	1.5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3.7	2.5	3.9
학원		44.4	37.1	45.1
개인·그룹과의		7.2	3.3	7.6
학습지		21.4	14.7	22.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3.0	7.3	2.6
방과후 교실		2.5	6.2	2.1
친·인척		0.5	0.0	0.6
이웃이나 아이 돌보미		0.4	0.0	0.4
기타		0.7	0.8	0.9
모름/무응답		0.3	1.2	0.2
계		100.0(5,535)	100.0(482)	100.0(5,535)

나.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21.6%였으며, 저소득가구 40.0%, 일반가구 18.3%로 나타났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이 있는 가구의 16.5%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저소득가구는 29.5%가 사교육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28.9%, 저소득가구의 45.9%, 일반가구의 26.6%가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22.1%인데 저소득 가구 5.5%, 일반가구 24.3%가 해당되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N=2,356)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3.7만원으로 저소득층 14.7만원, 일반가구 36.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1만원으로, 저소득가구는 10.1만원, 일반가구는 21.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4-4-40〉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이용하지 않음		21.6	-	40.0	-	18.3	-
0원		12.9	16.5	17.7	29.5	12.1	14.8
1-5만원		3.8	4.8	6.1	10.2	3.3	4.1
6-10만원		6.5	8.3	8.5	14.2	6.2	7.5
11-20만원		12.4	15.8	12.9	21.5	12.3	15.0
21-30만원		11.1	14.2	6.8	11.3	11.9	14.5
31-40만원		7.5	9.5	2.8	4.7	8.3	10.2
41-50만원		7.0	8.9	2.0	3.3	7.8	9.6
51-100만원		14.1	18.0	3.1	5.1	16.1	19.7
101만원 이상		3.2	4.1	0.2	0.4	3.7	4.6
계		100.0(3,005)	100.0(2,356)	100.0(457)	100.0(274)	100.0(2,548)	100.0(2,082)
평균(만원)		33.7		14.7		36.2	
1인당 평균(만원)		20.1		10.0		21.4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2.7%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저소득 가구는 41.1%, 일반가구는 19.4%에 해당하였다.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이 있는 가구의 59.9%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저소득가구는 34.8%, 일반가구는 60.0%가 보육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21.5%, 저소득가구의 35.0%, 일반가구의 19.8%가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50만원 이상을 보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2.6%인데 저소득 가구 0.4%, 일반가구 4.7%에 해당되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N=2,322)의 월평균 보육비는 9.5만원으로 저소득층 4.6만원, 일반가구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비를 지출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은 6.6만원이고 저소득가구는 3.2만원, 일반가구는 7.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4-4-41〉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하지 않음		22.7	-	41.1	-	19.4	-
0원		46.3	59.9	34.8	59.1	48.3	60.0
1-5만원		3.6	4.6	8.1	13.8	2.7	3.4
6-10만원		3.5	4.5	7.4	12.6	2.8	3.5
11-20만원		9.6	12.4	5.0	8.6	10.4	12.9
21-30만원		8.0	10.3	2.2	3.7	9.0	11.2
31-40만원		2.8	3.6	1.1	1.9	3.1	3.8
41-50만원		1.6	2.1	0.0	0.0	1.9	2.3
51-100만원		1.9	2.4	0.2	0.4	2.2	2.7
101만원 이상		0.2	0.2	0.0	0.0	0.2	0.2
계		100.0(3,005)	100.0(2,322)	100.0(457)	100.0(269)	100.0(2,548)	100.0(2,053)
평균(만원)		9.5		4.6		10.2	
1인당 평균(만원)		6.6		3.2		7.0	

아동(자녀)이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및 보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이 77.8%로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및 보육비 지출에 대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나 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 75.8%, 일반가구 78.1%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소득집단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표 14-4-42〉 사교육비·보육비의 경제적 부담

(단위: %,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부담된다		43.3	44.0	43.2
약간 부담된다		34.5	31.8	34.9
보통이다		12.1	7.6	12.7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3	8.7	5.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3	4.7	0.9
모름/무응답		2.5	3.2	2.4
계		100.0(2,366)	100.0(276)	100.0(2,090)

제 IV 부

부가조사 결과

제15장 아동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가구에 포함된 초등학교 4, 5, 6학년(2006년 응답 시기 기준) 아동은 총 759명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아동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37.6%, 5학년이 29.2%, 6학년이 33.1%로 나타났고, 남자가 53.3%, 여자가 46.7%를 차지하였다. 전체조사대상 759명 중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학교 미재학 등의 사유로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할 수 없는 9명이 제외되어 실제로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총 75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15-1-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학년		
	초등 5	222	29.2
	초등 6	251	33.1
	모름/무응답	1	0.2
	계	759	100
성	남	405	53.3
	여	354	46.7
	계	759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5-1-2>와 같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47.3%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이 46.2%, 일반 가구에서는 47.6%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4.6%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 중 36.6%, 일반가구 아동 중 35.1%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해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의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아동은 스스로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1-2〉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좋음	47.3	46.2	47.6
	좋음	34.6	36.6	35.1
	보통	15.5	17.4	15.0
	나쁨	2.3	3.0	2.1
	아주 나쁨	0.3	0.8	0.2
	계	100(750)	100(132)	100(618)

응답자의 신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5-1-3>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147.0센티미터로 나타났으며, 4학년의 평균 신장은 141.5센티미터, 5학년의 경우 146.5센티미터, 6학년의 경우는 153.6센티미터로 나타나 학년별로 평균 신장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평균신장이 146.2센티미터, 일반가구의 경우는 147.2센티미터로 나타났다.

〈표 15-1-3〉 키

(단위: cm,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4학년	141.5(6.8)	140.7(6.7)	141.6(6.8)
	5학년	146.5(7.7)	145.8(8.6)	146.7(7.4)
	6학년	153.6(7.1)	152.3(7.3)	153.9(7.1)
	평균(표준편차)	147.0(8.8)	146.2(9.0)	147.2(8.8)

응답자의 체중을 알아본 결과, 아래의 <표 15-1-4>와 같이 전체 평균 체중은 41.1킬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37.0킬로그램, 5학년은 40.3킬로그램, 6학년은 46.3킬로그램으로 나타나 체중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가구의 전체 평균 체중은 40.4킬로그램이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41.2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표 15-1-4> 몸무게

(단위: kg,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4학년	37.0(7.5)	35.6(8.0)	37.3(7.4)
	5학년	40.3(8.2)	42.1(10.0)	40.0(7.7)
	6학년	46.3(9.2)	44.2(8.8)	46.7(9.3)
	평균(표준편차)	41.1(9.2)	40.4(9.6)	41.2(9.1)

응답자의 가구특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1-5>와 같다. 부모님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가구는 전체가구의 8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부모가구는 9.4%, 조손가구는 3.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에서는 양부모가구의 비중이 57.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93.3%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 26.7%, 일반가구 5.7%였으며, 조손가구의 경우는 저소득가구 15.3%, 일반가구 0.8%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부모가구 비율이 크게 낮은 반면,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가족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1-5> 가구특성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양부모가구	87.0	57.3	93.3
	한부모가구	9.4	26.7	5.7
	조손가구	3.3	15.3	0.8
	기타	0.3	0.7	0.2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제2절 학교생활

1. 1년간 전학 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간 전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아래의 <표 15-2-1>에서와 같이 전학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8.1%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경우는 91.2%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10.7%의 아동이 전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에서는 7.6%의 아동이 전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전학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1> 전학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음		8.1	10.7	7.6
없음		91.2	89.3	91.6
모름/무응답		0.7	0.0	0.8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지난 1년간 전학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2명에게 1년간 전학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15-2-2>와 같이 85.5%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3.3%, 일반가구의 경우 83.0%가 전학경험이 1회라고 응답하였다.

<표 15-2-2> 1년간 전학 횟수(전학 경험 있는 사람만)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회		85.5	93.3	83.0
2회		4.8	6.7	4.3
무응답		9.7	0.0	12.7
계		100.0(62)	100.0(15)	100.0(47)

2. 학교생활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의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2-3>과 같다. 9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3점 만점으로 하고 총 27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전체 평균은 20.3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아동과 일반가구 아동의 평균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 소득집단간 학교생활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5-2-3> 학교생활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20.3(3.5)	20.3(3.6)	20.3(3.5)

3. 학업성적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전체 학업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2-4>와 같다. 44.2%가 학업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저소득가구는 43.9%, 일반가구는 44.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학업성적인 비율은 일반가구가 47.9%, 저소득가구 44.7%로 나타나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5-2-4> 학업성적(전체)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잘함		15.2	9.1	16.5
보통 이상		32.2	35.6	31.4
보통		44.2	43.9	44.1
보통 이하		6.7	7.6	6.5
아주 못함		1.9	3.8	1.5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국어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아래 <표 15-2-5>와 같다. 국어 성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저소득가구(42.0%)와 일반가구(36.8%)에서도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일반가구 58.2%, 저소득가구 61.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5-2-5> 학업성적(국어)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잘함		21.0	19.1
보통 이상		37.7	42.0	36.8
보통		32.2	29.8	32.7
보통 이하		7.8	7.6	7.8
아주 못함		1.3	1.5	1.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수학 성적에 대해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5-2-6>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 성적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32.4%의 비율을 보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반가구의 아동도 31.1%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통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은 일반가구 51.9%, 저소득가구 40.9%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들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수학성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2-6> 학업성적(수학)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잘함		22.0	17.4
보통 이상		27.9	23.5	28.9
보통		32.4	38.6	31.1
보통 이하		14.6	15.2	14.4
아주 못함		3.1	5.3	2.6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영어 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 <표 15-2-7>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경우 27.7%가 영어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주 잘함 24.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보통이 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통 이하(19.7%)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아주 잘함 2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통(26.3%)으로 나타나 소득집단 간 영어성적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일반가구 50.7%, 저소득가구 34.1%로 나타나 일반가구에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2-7> 학업성적(영어)

(단위: %, 명)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성				
	아주 잘함	24.5	15.2	26.5
	보통 이상	23.3	18.9	24.2
	보통	27.7	34.1	26.3
	보통 이하	17.3	19.7	16.9
	아주 못함	6.8	11.4	5.8
		0.4	0.7	0.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4. 친구관계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의 친구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2-8>과 같다. 이는 10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3점 만점(0: 전혀 그렇지 않다 ~ 3: 항상 그렇다)으로 계산하고 총 3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이 환산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친구관계가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21.0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0.7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1.0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의 친구관계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5-2-8> 친구관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성				
	평균(표준편차)	21.0(3.0)	20.7(3.2)	21.0(3.0)

제3절 생각과 행동

1. 자아존중감

아동에게 지난 1년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3-1>과 같다. 13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3점 만점(0: 전혀 그렇지 않다 ~ 3: 항상 그렇다)으로 계산하고 총 39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25.7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5.5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5.7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1> 자아존중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25.7(5.4)	25.5(6.1)	25.7(5.3)

2. 아동의 우울/불안

아동에게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된 생각을 지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3-2>와 같다. 13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2점 만점(0: 전혀 아니다 ~ 2: 자주 그렇다)으로 계산하고 총 26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4.3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6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4.2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우울/불안점수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2> 아동의 우울/불안 경험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4.3(4.1)	4.6(4.3)	4.2(4.0)

3. 아동의 주의집중

아동에게 주의집중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3-3>과 같다. 11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2점 만점(0: 전혀 아니다 ~ 2: 자주 그렇다)으로 계산 하고 총 22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가 만점에 가까울 수록 주의집중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4.3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4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4.2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주의집중정도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약간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5-3-3> 아동의 주의집중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4.3(3.7)	4.4(3.9)	4.2(3.7)

4. 아동의 위축

아동에게 위축된 행동이나 생각을 지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3-4>와 같다. 이 결과는 9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2점 만점(0: 전혀 아니다 ~ 2: 자주 그렇다)으로 계산 하고 총 18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이며,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위축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2.9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3.0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9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위축 정도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3-4> 아동의 위축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2.9(3.1)	3.0(3.1)	2.9(3.2)

5. 아동의 비행

아동의 지난 6개월간의 비행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5-3-5>와 같다. 12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2점 만점(0: 전혀 아니다 ~ 2: 자주 그렇다)으로 계산 하고 총 2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아동의 비행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1.3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4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1.3점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아동의 비행정도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5> 아동의 비행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1.3(1.7)	1.4(1.9)	1.3(1.6)

6. 아동의 공격성

아동이 지난 6개월간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5-3-6>과 같다. 19개의 하위 문항을 각각 2점 만점(0: 전혀 아니다 ~ 2: 자주 그렇다)으로 계산 하고 총 38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공격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은 4.3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6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4.3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격성 정도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6> 아동의 공격성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4.3(4.4)	4.6(4.8)	4.3(4.3)

제4절 비행

1. 음주

아동의 음주 경험 여부와 그에 따른 년 평균 음주 횟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4-1>과 같다. 전체 750명의 아동 중 8.8%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8.3%, 일반가구의 8.9%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66명에게 음주 횟수를 물어본 결과 년 평균 0.2회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0.4회, 일반가구의 경우 0.1회로 각각 나타났다.

<표 15-4-1> 1년간 음주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8.8	8.3
없다		91.2	91.7	91.1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년 평균 횟수(표준편차)		0.2(1.3)	0.4(2.9)	0.1(0.5)

2. 흡연

아동의 흡연 경험 여부와 그에 따른 년 평균 흡연 횟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5-4-2>와 같다. 전체 750명의 아동 중 1.7%가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1.5%, 일반가구에서는 1.8%가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13명에게 흡연 횟수를 물어본 결과 연단위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 횟수는 0.0회로 나타나 흡연경험이 있는 아동들도 흡연횟수가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4-2〉 1년간 흡연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	1.5	1.8
	없다	98.3	98.5	98.2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년 평균 횟수(표준편차)	0.0(0.1)	0.0(0.0)	0.0(0.1)

3. 훔치기

아동에게 지난 1년 동안 남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5-4-3>과 같다. 그런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2.4%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이 훔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번 훔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1%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1.7%가 훔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훔쳐본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아동은 92.6%가 훔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2%의 아동이 1번 훔쳤다고 응답해 그 뒤를 이었다.

〈표 15-4-3〉 훔치기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2.4	91.7	92.6
	1번	5.1	4.5	5.2
	2번	1.9	2.3	1.8
	3번	0.3	0.8	0.2
	4번	0.1	0.0	0.2
	5번 이상	0.2	0.7	0.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함

응답아동에게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4-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90.1%가 구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88.6%, 일반가구의 경우는 90.5%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저소득가구 7.6%, 일반가구 6.0%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표 15-4-4> 구타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0.1	88.6	90.5
1번		6.3	7.6	6.0
2번		1.9	1.5	1.9
3번		0.7	0.8	0.6
4번		0.3	0.8	0.2
5번 이상		0.7	0.7	0.8
계		100.0(750)	100.0(132)	100.0(618)

5.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뺏뜨기)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4-5>와 같다. 전체 응답자중 98.0%가 그런 경험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는 1번 빼앗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7.0%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도 98.2%의 아동이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5-4-5〉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뺏뜯기)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8.0	97.0	98.2
	1번	1.5	3.0	1.1
	2번	0.5	0.0	0.7
	계	100.0(750)	100.0(132)	100.0(618)

6.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간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4-6>과 같다. 전체 아동의 97.4%가 성인사이트에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방문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99.2%가 방문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 아동의 96.9%가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5-4-6〉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7.4	99.2	96.9
	1번	1.7	0.0	2.1
	2번	0.9	0.8	1.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7. 가출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간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아래 <표 15-4-7>과 같다. 가출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97.7%에 달했으며, 1번 있다고 한 경우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분포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5-4-7〉 가출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7.7	97.7	97.7
1번		2.3	2.3	2.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8. 무단결석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4-8>과 같다. 전체 응답아동 중 98.3%가 무단결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 번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1.5%)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가구의 아동 중 96.9%가 무단결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5%의 아동이 한 번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무단결석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 번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표 15-4-8〉 무단결석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8.3	96.9	98.5
1번		1.5	1.5	1.5
2번		0.1	0.8	0.0
3번		0.1	0.8	0.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9. 폭력써클(집단) 가입

아동에게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5-4-9>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99.9%가 폭력써클에 가입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가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0.1%에 그쳤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그런 적 없다는 응답자가 100.0%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99.8%가 그런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5-4-9> 폭력써클(집단) 가입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9.9	100.0	99.8
1번		0.1	0.0	0.2
계		100.0(750)	100.0(132)	100.0(618)

10. 패싸움

아동에게 지난 1년간 패싸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4-10>과 같다. 전체의 97.2%가 패싸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는 한 번 패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그런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5.4%, 한 번 경험한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97.6%가 패싸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6%가 한 번 패싸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5-4-10〉 패싸움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7.2	95.4	97.6
	1번	1.8	3.0	1.6
	2번	0.3	0.8	0.2
	3번	0.3	0.0	0.3
	4번	0.4	0.8	0.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11. 성추행 피해 경험 I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짐)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 피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4-1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98.8%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0.7%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7.7%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5%가 1번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는 99.0%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0.5%가 1번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그 뒤를 이었다.

〈표 15-4-11〉 성추행 피해 경험 I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8.8	97.7	99.0
	1번	0.7	1.5	0.5
	3번	0.0	0.0	0.0
	5번 이상	0.5	0.8	0.5
	계	100.0(750)	100.0(132)	100.0(618)

12. 성추행 피해 경험Ⅱ(다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나의 몸을 보려고 함)

아동에게 다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본인의 몸을 보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4-12>와 같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99.2%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번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전체 응답자 중 0.4%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 중 98.4%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0.8%였다. 일반가구의 아동 중 99.4%가 성추행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0.3%의 아동이 1번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그 뒤를 이었다.

<표 15-4-12> 성추행 피해 경험Ⅱ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9.2	98.4
1번		0.4	0.8	0.3
2번		0.1	0.8	0.0
3번		0.3	0.0	0.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13.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 놀림이나 조롱당함

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 놀림이나 조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 <표 15-4-13>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55.3%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놀림이나 조롱을 당해봤다고 응답한 경우가 22.0%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본 결과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53.0%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 했다는 경우가 21.2%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경험 없다는 경우가 55.8%, 1번 경험한 경우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4-13> 놀림이나 조롱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55.3	53.0	55.8
1번		22.0	21.2	22.0
2~3번		10.3	11.4	10.2
4번 이상		12.4	14.4	12.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나. 따돌림이나 왕따 당함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따돌림이나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15-4-1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81.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은 75.8%가 따돌림이나 왕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83.0%가 왕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 아동들의 왕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4-14> 따돌림이나 왕따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81.8	75.8	83.0
1번		10.5	13.6	9.9
2~3번		4.8	6.8	4.4
4번 이상		2.9	3.8	2.7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다. 비방이나 헐뜯음 당함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다른 아이들이 본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거나 소문을 수군거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4-1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82.2%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1.9%가 1번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해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81.8%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1번 경험한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아동 또한 경험 없음(82.4%), 1번 경험한 적 있다(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4-15> 비방이나 헐뜯음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82.2	81.8
1번		11.9	12.2	11.8
2~3번		4.3	3.0	4.5
4번 이상		1.6	3.0	1.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라. 협박이나 위협 당함

아동에게 지난 1년간 협박이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4-16>과 같다. 전체 아동의 93.5%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한 경우는 4.8%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는 91.6%가 그런 경험 없다고 응답하였고 5.3%의 아동이 1번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가구의 아동 중 93.9%가 경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5%가 1번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표 15-4-16> 협박이나 위협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3.5	91.6	93.9
1번		4.8	5.3	4.5
2~3번		1.1	2.3	0.8
4번 이상		0.6	0.8	0.8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마. 돈을 빼앗긴 경험

지난 1년간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5-4-17>과 같다. 전체 아동의 95.1%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7%의 아동이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 중 93.1%가 돈을 빼앗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경우가 4.6%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일반가구의 아동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경험 없다(95.5%), 1번 경험한 적 있다(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4-17> 돈을 빼앗긴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95.1	93.1	95.5
1번		3.7	4.6	3.6
2~3번		0.8	1.5	0.6
4번 이상		0.4	0.8	0.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바. 폭행 당함

아동에게 지난 1년간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5-4-18>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86.5%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84.1%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6.1%의 아동이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가구의 아동 중 87.0%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4%의 아동이 1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험률이 높았다.

〈표 15-4-18〉 폭행 경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 없음		86.5	84.1
1번		8.8	6.1	9.4
2~3번		1.6	3.0	1.3
4번 이상		3.1	6.8	2.3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제5절 학대

1. 신체적 학대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서 신체적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5-1>과 같다. 이에 대한 문항은 총 5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만점(0:전혀 없었다 ~ 4:일주일에 1~2번 정도)으로 계산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의 평균은 0.3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0.2, 일반가구는 0.3이어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1> 신체적 학대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0.3(0.9)	0.2(0.8)	0.3(0.9)

2. 정서 학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5-5-2>와 같다. 정서적인 학대 경험은 3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만점(0: 전혀 없었다 ~ 4: 일주일에 1~2번 정도)으로 하여 총 12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 환산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가정 내 정서적 학대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0.6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4, 일반가구의 경우는 0.6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2> 정서 학대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0.6(1.4)	0.4(1.0)	0.6(1.5)

3. 방임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5-3>과 같다. 방임은 7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만점(0: 전혀 없었다 ~ 4: 일주일에 1~2번 정도)으로 하여 총 28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방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1.0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1.0, 일반가구의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방임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3〉 방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표준편차)	1.0(1.9)	1.0(1.7)	1.1(1.9)

제6절 생활 및 서비스 이용

1. TV 시청 및 인터넷사용

아동에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TV를 시청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1>과 같다. 전체 41.1%의 아동이 2시간 이하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4.2%의 아동이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역시 2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30.3%로 나타났으며, 3시간 이하(25.0%)와 4시간 초과(25.0%)가 같은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43.5%의 아동이 2시간 이하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4.1%의 아동이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응답경향을 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TV 시청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4시간 초과인 경우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가구 아동의 장시간 TV 시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6-1〉 1일 TV 시청시간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안 본다		2.0	0.8	2.2
1시간 이하		5.2	4.5	5.3
2시간 이하		41.1	30.3	43.5
3시간 이하		24.2	25.0	24.1
4시간 이하		11.6	14.4	11.0
4시간 초과		15.8	25.0	13.9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아동에게 하루 동안 평균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는 다음 <표 15-6-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53.7%가 2시간 이하 정도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9.3%가 1시간 이하라고 응답했다.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52.3%가 2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15.2%의 아동은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해 그 뒤를 이었다. 일반가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2시간 이하는 54.0%, 1시간 이하는 20.2%의 순이었다.

<표 15-6-2> 1일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안 본다		8.3	12.9	7.3
1시간 이하		19.3	15.2	20.2
2시간 이하		53.7	52.3	54.0
3시간 이하		12.1	10.6	12.4
4시간 이하		3.6	5.2	3.2
4시간 초과		2.9	3.0	2.9
모름/무응답		0.1	0.8	0.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2. 의논상대

아동에게 걱정거리에 대한 의논상대가 누구인지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5-6-3>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의논상대는 부모로서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하였고, 친구가 25.3%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45.8%, 일반가구 아동의 57.6%가 부모를 의논상대라고 응답하여 일반가구 아동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부모를 의논상대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6-3〉 의논상대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무에게도 말 안함		9.9	10.7	9.7
부모		55.5	45.8	57.6
형제 자매		4.9	7.6	4.4
친구		25.3	25.2	25.3
학교선생님		1.7	2.3	1.6
함께 사는 어른(할머니 등)		1.9	6.1	1.0
기타		0.1	0.8	0.0
모름/무응답		0.7	1.5	0.4
계		100.0(750)	100.0(132)	100.0(618)

3. 참여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 동안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을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4>와 같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개인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6.3%, 이용 경험이 없다는 경우는 93.7%로 나타나 대부분이 개인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2.1%가 상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가구의 아동은 5.0%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의 이용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4〉 고민이나 문제 상담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6.3	12.1	5.0
이용 경험 없음		93.7	87.9	95.0
계		100.0(750)	100.0(132)	100.0(618)

개인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46명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65.2%가 상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66.7%, 일반가구의 경우는 64.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26.1%, 저소득가구의 경우 33.3%, 일반가구의 경우는 22.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인 상담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6-5> 고민이나 문제 상담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불만족		8.7	0.0
만족		65.2	66.7	64.5
매우 만족		26.1	33.3	22.6
계		100.0(46)	100.0(15)	100.0(31)

지난 1년간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학습지도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6-6>과 같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3.9%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31.8%, 일반가구의 아동 22.2%가 학습지도 서비스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6.1%, 저소득가구의 68.2%, 일반가구의 77.8%를 차지하였다.

<표 15-6-6>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23.9	31.8
이용 경험 없음		76.1	68.2	77.8
계		100.0(750)	100.0(132)	100.0(618)

학습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79명에게 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7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61.9%, 일반가구의 경우 75.9%의 아동이 학습지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7.4%, 저소득 가구의 21.4%, 일반 가구의 16.1%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표 15-6-7〉 학습지도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0	4.8	5.1
	불만족	5.0	11.9	2.9
	만족	72.6	61.9	75.9
	매우 만족	17.4	21.4	16.1
	계	100.0(179)	100.0(42)	100.0(137)

지난 1년간 가사도우미 방문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8>과 같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4%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은 3.8%, 일반가구의 아동은 2.1%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7.6%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이 가사도우미 방문 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96.2%)와 일반가구(97.9%)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15-6-8〉 가사도우미 방문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2.4	3.8	2.1
	이용 경험 없음	97.6	96.2	97.9
	계	100.0(750)	100.0(132)	100.0(618)

가사도우미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명의 아동에게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9>와 같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저소득 가구(80.0%), 일반가구(76.9%)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15-6-9〉 가사도우미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불만족	16.6	0.0	23.1
	만족	77.8	80.0	76.9
	매우 만족	5.6	20.0	0.0
	계	100.0(18)	100.0(5)	100.0(13)

지난 1년간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6-10>에서 알 수 있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5%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 아동은 3.8%, 일반가구 아동은 3.4%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96.5%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6.2%, 일반가구의 아동은 96.6%가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5-6-10〉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3.5	3.8	3.4
	이용 경험 없음	96.5	96.2	96.6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를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에게 이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1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60.0%, 일반가구의 아동은 59.1%가 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5-6-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7.4	0.0	9.1
	불만족	3.7	20.0	0.0
	만족	59.3	60.0	59.1
	매우 만족	29.6	20.0	31.8
	계	100.0(27)	100.0(5)	100.0(22)

아동에게 지난 1년간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12>와 같다. 수련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3%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56.8%, 일반가구의 경우는 58.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아동이 1박 이상의 수련활동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5-6-12〉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58.3	56.8	58.6
	이용 경험 없음	41.7	43.2	41.4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을 지난 1년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439명에게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5-6-13>과 같다. 60.6%의 아동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는 57.3%, 일반 가구 아동은 61.3%가 수련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아동의 29.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33.3%, 일반가구 아동의 28.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수련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13>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3.7	2.7	3.8
	불만족	5.2	6.7	4.9
	만족	60.6	57.3	61.3
	매우 만족	29.6	33.3	28.8
	모름/무응답	0.9	0.0	1.1
	계	100.0(439)	100.0(75)	100.0(364)

견학이나 문화 체험 등의 당일활동을 지난 1년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65.5%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65.9%, 일반가구의 경우는 65.4%가 견학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소득집단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14> 견학, 문화체험 등(당일 활동)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65.5	65.9	65.4
	이용 경험 없음	34.5	34.1	34.6
	계	100.0(750)	100.0(132)	100.0(618)

견학이나 문화체험 방문 등의 활동을 지난 1년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489명에게 이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5-6-15>와 같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4.2%였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의 64.0%, 일반가구 아동이 64.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28.7%였으며, 저소득가구 26.7%, 일반가구 29.0%로 나타나 견학이나 문화체험을 경험한 아동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15〉 견학, 문화체험 등의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2	3.5	2.0
	불만족	4.3	5.8	4.0
	만족	64.2	64.0	64.3
	매우 만족	28.7	26.7	29.0
	모름/무응답	0.6	0.0	0.7
	계	100.0(489)	100.0(86)	100.0(403)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또래집단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16>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92.5%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은 90.9%, 일반가구 아동은 92.9%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아동이 집단 프로그램 경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 7.5%의 아동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1%, 일반가구의 아동은 7.1%만이 집단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16〉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음	7.5	9.1	7.1
	이용 경험 없음	92.5	90.9	92.9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또래집단 프로그램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54명에게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0%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44.4%로 나타나 대부분의 또래집단 프로그램 경험자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4.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아동의 집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41.9%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의 만족도가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6-1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만족도(경험 있는 경우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불만족	1.9	0.0	2.3
	만족	44.4	54.5	41.9
	매우 만족	50.0	36.4	53.5
	모름/무응답	3.7	9.1	2.3
	계	100.0(54)	100.0(11)	100.0(43)

4. 방과 후 생활

아동에게 평소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5-6-18>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9.4%가 보호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 중 71.8%가 방과 후 보호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반가구 아동 중 68.8%가 보호자가 있다고 답해 다수의 아동들이 방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보호자가 집에서 맞아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6.8%에 달하는데,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는 15.2%,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는 17.2%가 방과 후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형제만 있다는 경우도 전체의 13.6%, 저소득가구 아동 중 12.2%, 일반가구 아동 중 13.8%로 나타났다.

〈표 15-6-18〉 방과 후 보호자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무도 없음		16.8	15.2	17.2
형제만 있음		13.6	12.2	13.8
보호자 있음(부모나 할머니, 친척 등)		69.4	71.8	68.8
기타		0.1	0.8	0.0
모름/무응답		0.1	0.0	0.2
계		100.0(750)	100.0(132)	100.0(618)

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아무도 없음, 형제만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229명에게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6-19>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42.8%가 학원에 간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포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는 집에서 혼자 논다로 응답한 아동이 전체의 절반이상인 51.4%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학원에 간다고 응답한 아동이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일반가구의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6-19〉 방과 후 시간 활용(보호자 없는 아동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집에서 혼자 논다		41.9	51.4	40.2
집밖에서 친구와 논다		12.8	21.6	10.9
학원에 간다		42.8	16.2	47.9
방과후 교실에 간다		1.7	8.1	0.5
기타		0.4	2.7	0.0
모름/무응답		0.4	0.0	0.5
계		100.0(229)	100.0(37)	100.0(192)

방과 후 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아무도 없음, 형제만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229명에게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20>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8.0%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는 42.1%,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는 61.6%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동안 보호자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26.0%, 저소득가구 아동의 31.6%, 일반가구 아동의 23.9%가 3시간 이상에서 5시간 미만 정도 방과 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20>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보호자 없는 아동만 해당)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58.0	42.1	61.6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26.0	31.6	23.9
5시간 이상		10.0	18.4	8.7
기 타		2.2	2.6	2.3
모름/무응답		3.8	5.3	3.5
계		100.0(229)	100.0(37)	100.0(192)

5.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21>과 같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8.0%의 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의 96.2%, 일반가구 아동의 98.4%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1.5%에 그쳤으며, 이는 저소득가구 아동 중 3.0%, 일반가구 아동 중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모든 아동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2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음	1.5	3.0	1.1
	없음	98.0	96.2	98.4
	모름/무응답	0.5	0.8	0.5
	계	100.0(750)	100.0(132)	100.0(618)

아르바이트를 지난 1년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 11명에게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22>와 같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 중 가장 많은 아동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돌리기로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 중 90.0%를 차지했고, 그 나머지 10%의 아동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22〉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단지돌리기	90.0	100.0	85.7
	패스트푸드점	10.0	0.0	14.3
	계	100.0(11)	100.0(4)	100.0(7)

아르바이트를 지난 1년간 경험한 아동의 아르바이트 일수와 시간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5-6-23>과 같다.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의 연간 아르바이트 일수는 23.4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은 54.1일,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는 7.8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아르바이트 일수가 일반가구 아동의 아르바이트 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당 아르바이트 일수는 전체 평균 3.4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아동은 5.2일, 일반가구 아동은 2.5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이 2.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및 일

반 가구 아동 모두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5-6-23〉 주된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년간 아르바이트 일수		23.4	111.8	54.1	209.6	7.8	6.4
주당 아르바이트 일수		3.4	2.1	5.2	1.7	2.5	1.7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		2.5	1.1	2.5	1.3	2.6	1.1

참고문헌

- 강석훈,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 2002.
- 고철 외,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금재호, 『캐나다 고용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상균 외,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 남재량,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노대명 외,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노동부,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
- 박홍래,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1989.
- 박희봉 외, “한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의 산물인가?”, 한국행정 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백화중 외,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백화중 외, 『차상위·빈곤패널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2006.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년도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 이봉주 외,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 이인재, 『한국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정의와 비정규직의 개념』,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이태진 외,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최영출,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2.
- 홍종선 외,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박영사, 2000.
- SBS & Gallup Survey,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2006.
- Boarini, A. Johansson and M. Mira d'Ercole, "Alternative measures of well-being",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476 an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3, Paris, 2006.
- Cochran, W. G.(1977), Sampling Techniques, 3rd Eds, New York, John Wiley & Sons.
- Deville, J. C., Sarndal, C. E. (1992), Calibration Estimators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376~382.
- Deville, J. C., Sarndal, C. E., and Sautory, O. (1993), Generalized Raking Procedure in Survey Sampl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 1013~1020.
- Dufour, J. Gagnon, F., Morin, Y., Renaud, M., and Sarndal, C. E.(2001), A Better Understanding of Weight Transformation through a measure of Change, Survey Methodology, 27, 97~108.
- Durrant, G. B. (2005), Imputation Methods for Handling Item-nonresponse in the Social Sciences : A Methodological Review, ESRC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Methods and Southampton Statistic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NCRM Method Review Papers.

- Greg J. Duncan, 「Panel Studies of Poverty: prospects and Problems」,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1989.
- Joachim R. Frick, 「Introduct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Jürgen Schupp, 「20 Years of Household Panel Data for Germany : The SOEP survey and organization between continuity and innovation」, DIW-Berlin, 2004.
- John P. Haisken-DeNew and Joachim R. Frick (Eds.), 「Desktop Compan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SOEP)」, DIW Berlin, 2003.
- Kalton, G., and Flores-Cervantes, I. (2003). Weighting Methods, *Journal of The Official Statistics*, 19, 2, 81~97.
- Kalton, G. and Kasprzyk, D. (1986), The Treatment of Missing Data, *Survey Methodology*, 12, 1~16.
- Kish, L.(1979), Samples and Censu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47, 99~110.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1286.
- Lessler, J. T., and Kalsbeek, W. D.(1992),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New York, Chichester.
- Little, R. J. A. (1986). Survey Nonresponse Adjustment for Estimates of Mean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54, 2, 139~157.
- Little, R. J. A. and Rubin, D. B.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John Wiley & Sons.
- Lohr, S. L. (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 Lundstrom, S. (1997), *Calibration as a Standard Method for Treatment of Nonresponse*, Ph.D. thesis, Stockholm University.
- Martin Spieß. and Martin Kroh, 「DIW Materialien Research Notes : Documentation of Sample Sizes and Panel Attrition 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GSOEP) (1984 until

- 2003)』, 2004. 7.
- Peter Gottschalk, Patricia Ruggles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o Study Poverty and Welfare Dynamics」, Paper Commissioned by the PSID, 1994.
- Rizzo, L., Kalton, G., and Brick, M.(1996), A Comparison of some Weighting Adjustment Methods for Panel Survey, *Survey Methodology*, 22, 43~53.
-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 Samdal, C.E., Swesson, B., and Wreteman, J.H.(1992), *Model Assisted Survey Sampling*, New York, Springer-Verlag.
- Schiller, B. R.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4th ed. 1984.
- Schouten, B. (2003). Reduction of Nonresponse Bias using Auxiliary Variables. Report 1814-02-TMO. Statistics Netherlands, Methods and Informatics Department, Voorburg, The Netherlands.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 Wolter, K. M. (1985), *Introduction to Variance Estim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orld Bank.(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18.
- Yuan, Yang C. *Multiple Imputation for Missing Data: Concepts and New Development*, SAS Institute Inc.
- Yung, W. and Rao, J.N.K.(1996) Jackknife linearization variance estimators under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Survey methodology*, 22, 34~44.
- Zhang, P. (2003), Multiple Imputation: Theory and Method,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1, 581-592(with Discussions).

<http://www.atkinsonfoundation.ca/ciw> (캐나다 웰빙지수(CIW))
<http://www.diw.de/gsoep> (DIW-Berlin, 2004. 6)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psidonline.isr.unich.edu> (미국 PSID)
<http://www.bls.census.gov/cps/> (미국 인구조사국(CPS))
<http://www.gepco.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iser.essex.ac.uk/ulsc/bhps/> (영국 BHPS)
http://www.kli.re.kr/30_labp/01_labor_p/main.as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http://www.ktpf.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HILDA Website)
<http://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ps.go.kr>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sipp.census.gov/sipp/> (미국 SIPP)
<http://www.statcan.ca/>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캐나다 통계청: SLID)
<http://www.statistics.gov.uk> (영국 통계청)
<http://www.worldvaluessurvey.org/statistics/index.html> (International Network of Social Scientists
홈페이지)

[부 록]

부록 1. 가구용 조사표 / 447

부록 2. 가구원용 조사표 / 475

부록 3. 아동용 부가 조사표 / 491

I. 가구일반사항

문1) 귀택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면접원: 2005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60-61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문5) 교육수준		
					문5-1)	문5-2)	
(면접원: 2006 국민 생활실태 조사실문지와 동일순서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 지침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1. 남 2. 여	(면접원 : 주민등록상의 생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생년 (生年)	1. 미취학 (만 7세이하) 2. 무학 (만 8세이상)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전문대학 7. 대학교 8. 대학원 (석/박사)	0. 비해당 1. 재학 (휴학) 2. 중퇴 (수료) 3. 졸업	
1 B7-8			9-10	11	12-15	16	17
2 28-29			30-31	32	33-36	37	38
3 49-50			51-52	53	54-57	58	59
4 C7-8			9-10	11	12-15	16	17
5 28-29			30-31	32	33-36	37	38
6 49-50			51-52	53	54-57	58	59
7 D7-8			9-10	11	12-15	16	17
8 28-29			30-31	32	33-36	37	38
9 49-50			51-52	53	54-57	58	59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만성질환	문8) 혼인상태	문9) 종교	문10)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면접원: 2006 국민 생활실태 조사실문지와 동일순서로 기재하십시오)	0. 비해당(비장애인)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정신지체 7. 발달장애 15. 간질장애 16.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면접원: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해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8. 정신장애 9. 심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0. 비해당(비장애인)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7.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0. 비해당 1.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2. 3~6개월 투병·투약하고 있다 3.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면접원: 지속적으로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0.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1. 있음 2. 없음	1. 같이 살고 있다. 2. 다른 지방에 근무 (국내) 3. 해외 근무 중 4. 학업 (해외 유학 포함) 5. 입원, 요양 6.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7. 가출 8. 분가 9. 사망 10.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11. 기타
1 18-19		20-21	22	23	24	25	26-27
2 39-40		41-42	43	44	45	46	47-48
3 60-61		62-63	64	65	66	67	68-69
4 18-19		20-21	22	23	24	25	26-27
5 39-40		41-42	43	44	45	46	47-48
6 60-61		62-63	64	65	66	67	68-69
7 18-19		20-21	22	23	24	25	26-27
8 39-40		41-42	43	44	45	46	47-48
9 60-61		62-63	64	65	66	67	68-69

문11) 가구형태 1. 단독 2. 모자 3. 부자 4. 소년소녀가장 5. 기타 70

문12) 기초보장 수급형태 1. 일반수급가구 2. 조건부수급가구 3.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0. 비해당 71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II. 건강 및 의료 A

**면접원: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건강상태	문2) 2005년 1년간 의료기관 이용											
(면접원: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회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 수 (예) 20일 →020 없음 →000				
1 E7-8		9				10-12				13-14				15-17
2 28-29		30				31-33				34-35				36-38
3 49-50		51				52-54				55-56				57-59
4 F7-8		9				10-12				13-14				15-17
5 28-29		30				31-33				34-35				36-38
6 49-50		51				52-54				55-56				57-59
7 G7-8		9				10-12				13-14				15-17
8 28-29		30				31-33				34-35				36-38
9 49-50		51				52-54				55-56				57-59

가구원 번호	문3)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문5) 건강검진 횟수	문6) 주요 병명
(면접원: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0. 비해당 1. 지병/질병 2. 사고 3. 출산 4. 건강검진 5. 요양/휴식 6. 성·정형교정 7. 기타	0. 비해당 1. 종합,대학병원 2. 지역내 병·의원 3. 한방 병·의원 4. 보건소 5. 기타	2005년 1년간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 →0	(면접원 : 주요 병명은 아래 [질병 종류]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 질환자의 경우 주요한 것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예) 없음 → 00
1 21-22	23	24	25	26-27
2 42-43	44	45	46	47-48
3 63-64	65	66	67	68-69
4 21-22	23	24	25	26-27
5 42-43	44	45	46	47-48
6 63-64	65	66	67	68-69
7 21-22	23	24	25	26-27
8 42-43	44	45	46	47-48
9 63-64	65	66	67	68-69

[질병종류]			
1. 암(위,간,폐,기관지등)	6. 갑상선질환	11.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기침)	16. 골절, 탈골및 사고로인한 후유증
2.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7. 고혈압,저혈압	12. 천식	17. 골다공증
3.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등	8. 중풍,뇌혈관질환	13. 백내장, 녹내장	18. 기타 질병
4. 만성간염,간경변	9. 심근경색증, 협심증	14. 만성중이염	00. 없음
5. 당뇨병	10. 폐결핵,결핵	15.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III. 경제활동상태

면접원: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시 만15세 이상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당시 만15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2005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4) 고용형태
(면접원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0. 만15세 미만 → 다음페이지 1. 근로가능 2.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3.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4. 근로능력 없음 → 문2)로 갈 것	1. 중증장애 2. 질병 또는 부상 3.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4. 기타 → 문9)로 갈 것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5. 고용주 6. 자영업자 → 문6)으로 갈 것 7. 무급가족종사자 8.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 → 다음페이지 9. 비경제활동인구 → 문9)로 갈 것	1. 한시적 2. 비전형 3. 정규직 (면접원 : 아래 [고용 형태]를 참조해 기입하십시오)
1	H7-8		9	10	11
2	25-26		27	28	29
3	43-44		45	46	47
4	17-8		9	10	11
5	25-26		27	28	29
6	43-44		45	46	47
7	17-8		9	10	11
8	25-26		27	28	29
9	43-44		45	46	47

가구원 번호	문5) 근로시간 형태	문6) 업종	문7) 직종	문8) 사업장 규모	문9) 비경제활동 사유
(면접원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1. 시간제 2. 전일제 (면접원: 아래[근로 시간형태]를 참조해 기입하십시오)	(면접원: [지침서] 16~19쪽 산업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면접원: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하고, 우측 직업코드는 [지침서] 20~23쪽의 직업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 하시오) (예) 미취업자의 경우 직업명 → 없음 직업코드 → 0000	1. 1~4명 6. 70~99명 2. 5~9명 7. 100~299명 3. 10~29명 8. 300~499명 4. 30~49명 9. 500~999명 5. 50~69명 10. 1000명 이상 11. 잘 모르겠다	1. 근로무능력 6. 간병 2. 군복무 7. 구직활동포기 3. 학업 8. 근로의사 없음 4. 가사 9. 기타 5. 양육 (면접원: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	13-14	15		18-21	22-23
2	31-32	33		36-39	40-41
3	49-50	51		54-57	58-59
4	13-14	15		18-21	22-23
5	31-32	33		36-39	40-41
6	49-50	51		54-57	58-59
7	13-14	15		18-21	22-23
8	31-32	33		36-39	40-41
9	49-50	51		54-57	58-59

[고용형태]

1.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2. 비전형 근로자: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 종사자, 가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3. 정규직 근로자: ①, ②를 제외한 근로자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2.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자

IV.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

아래 모든 조사항목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문2-1-1)은 200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당시 만15세 미만이었다면 경우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V. 의료 B]로 넘어갑니다.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문1) 가입대상	문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문2-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	문2-1-1) 보험료 미납기간			
(면접원 : 2페이지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0. 만15세 미만 → 다음페이지 1. 공무원 → 문3)으로 갈 것 2. 사립학교 교원 → 문3)으로 갈 것 3. 부산광역시 상급인 → 문3)으로 갈 것 4. 별정직 우체국 직원 → 문2)로 갈 것 5. 그 외 → 문2)로 갈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까? 1.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음 → 문3)으로 갈 것 2.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음 → 문3)으로 갈 것 3.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내고 있음(임의가입) → 다음페이지 4. 60~65세인데 보험료를 내고 있음(임의계속가입) → 문3)으로 갈 것 5.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음 → 문2-1)로 갈 것 6. 모름 → 문3)으로 갈 것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연금수급자) → 문3)으로 갈 것 2. 전업주부,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님(적용제외자) → 문3)으로 갈 것 3. 가입하려고 연락이 왔지만 아직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미가입자) → 문2-3)으로 갈 것 4. 전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아직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음(납부예외자) → 문3)으로 갈 것 5.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오고는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음(보험료미납자) → 문2-1-1)로 갈 것 6. 모름 → 문3)으로 갈 것 7. 기타 → 문3)으로 갈 것	2005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 문2-2)로 갈 것			
1	K7-8		9	10	11		개월	12-13
2	22-23		24	25	26		개월	27-28
3	37-38		39	40	41		개월	42-43
4	L7-8		9	10	11		개월	12-13
5	22-23		24	25	26		개월	27-28
6	37-38		39	40	41		개월	42-43
7	M7-8		9	10	11		개월	12-13
8	22-23		24	25	26		개월	27-28
9	37-38		39	40	41		개월	42-43

가구원 번호	공적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연금)		
	문2-2) 미납 이유	문2-3) 미가입 이유	문3) 산재보험	문4) 고용보험	문5-1) 퇴직연금	문5-2) 퇴직금	
(면접원 : 2페이지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3.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4. 모름 5. 기타 → 문3)으로 갈 것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3.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모름 5. 기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0. 비해당 1. 가입 2. 미가입 3. 모름 (면접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 0. 비해당으로 응답하며,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이므로 가입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까? 0. 비해당 1. 가입 2. 미가입 3. 모름 (면접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0.비해당으로 기록합니다)	귀하가 다니시는 직장인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귀하가 퇴직연금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0. 비해당 1. 적용 2. 미적용 3. 모름	귀하가 다니시는 직장인 퇴직금 제도(종업원퇴직 보험금제도 포함)가 있어 퇴직시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0. 비해당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름	
1	14-15	16	17	18	19	20	21
2	29-30	31	32	33	34	35	36
3	44-45	46	47	48	49	50	51
4	14-15	16	17	18	19	20	21
5	29-30	31	32	33	34	35	36
6	44-45	46	47	48	49	50	51
7	14-15	16	17	18	19	20	21
8	29-30	31	32	33	34	35	36
9	44-45	46	47	48	49	50	51

문 4) 귀택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만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5) 귀택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VI. 주거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2005년 동안 이사 등으로 주거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택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⑫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1)	귀택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면접원: 한 가구가 여러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문 2)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기타		
문 3)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준 경우 제외)		개	
문 3-1)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택의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 기준)		평	
문 4)	주 택 (가 격)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금액	만원
	주 택 (월세액)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부 월세 및 (삭)월세인 경우 지불하는 월세액은? (* 자가주택의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도 포함)	월평균	만원

문 5) 귀택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혹은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3	2순위	24
-----	----	-----	----

- 0. 비해당(보증금 없음) _____
- 1. 자기돈 _____ → **문3)으로 갈 것**
- 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_____
- 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_____ → **문2-1)로 갈 것**
- 4.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_____
- 5. 사채 _____

문 5-1) **2005년 1년간**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⁴⁹
- 1. 연체한 적이 없다
 - 2. 1회
 - 3. 2~3회
 - 4. 4회 이상

문 6) **(모든 응답자)** 2005년에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1	2	50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1	2	51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2	52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2	53

문 7) 귀택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물음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역 내 생활환경		예	아니오	
㉠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2	54
㉡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2	55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2	56
㉣	교육시설(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2	57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다.	1	2	58
㉥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	2	59

문 8) 귀택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종류		사용형태					
문 8-1)	상·하수도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3. 없음	60		
문 8-2)	부엌	1. 단독사용-입식	2. 단독사용-재래식	3. 공동사용-입식	4. 공동사용-재래식	5. 없음	61
문 8-3)	화장실	1. 단독사용-수세식	2. 단독사용-재래식	3. 공동사용-수세식	4. 공동사용-재래식	5. 없음	62
문 8-4)	목욕시설	1.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3.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63	
		2.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4.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5. 없음	
문 8-5)	난방시설	1. 연탄 또는 재래식(땀감) 아궁이	4. 기름보일러	7. 중앙난방(지역난방)	64-65		
		2. 연탄보일러	5. 가스보일러	8. 전기장판			
		3. 나무·석탄보일러	6. 전기보일러	9. 기타(적을 것 : _____)			

문 9) 지난 **2005년 1년간** 귀택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에 제시된 주거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으며,

귀택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면접원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	필요성 정도					이용경험		만족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필요 하다	아주 필요 하다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㉔ 영구임대주택	1	2	3	4	5 ⁶⁶	1	2 ⁶⁷	1	2	3	4	5	68
㉕ 공공(국민)임대주택	1	2	3	4	5 ⁶⁹	1	2 ⁷⁰	1	2	3	4	5	71
㉖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1	2	3	4	5 ⁷²	1	2 ⁷³	1	2	3	4	5	74
㉗ 저소득층 월세지원	1	2	3	4	5 ⁷⁵	1	2 ⁷⁶	1	2	3	4	5	77
㉘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근로자·서민)	1	2	3	4	5 ⁷⁸	1	2 ⁷⁹	1	2	3	4	5	80

VII. 생활비

(2005년 1년간의 월평균 생활비. 사업용도의 지출 및 자가소비액 제외)

지출금액

1	식료품비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식료품비는?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직장인의 중식비 및 외식비, 가족의 식비, 학교급식비 등)	월평균		만원	
2	보건의료비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등)	월평균		만원	
	2-1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신 경우, 월평균 얼마 정도 있었으면 치료가 가능하였습니까? ※ 연간 총부족액 ÷ 12, 예를 들면, 수술받지 못한 경우 수술비가 1200만원이었다면 월평균부족액은 100만원임	월평균		만원	
3	세금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세금은? ((종합)소득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월평균		만원	
4	사회보장부담금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만원	
5	총 생활비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는? (총생활비에는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의복 및 신발 구입수선비, 전기료, 수도료 등 연료비와 아파트(주택)관리비, 공·사교육비, 가족에게 주는 용돈, 자동차연료비 및 교통비, 핸드폰·전화·인터넷 등 통신비, 이미용품구입비, 취미활동비, 사보험료 불입금,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생활비를 의미함) ※ 가구일반사항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비동거 가구원 포함)의 총생활비 합산액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연탄, 기름)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출에 포함하여 주어야 함. ※ 월세는 제외 ※ 일회성 지출(결혼비용, 장례비, 수술비 등)은 제외	동거가구원 현금총생활비(A)			
			월평균			만원
			비동거가구원 현금총생활비(B)			
			월평균			만원
			지원받는 현물의 현금환산액(C)			
			월평균			만원
총생활비 합계(A+B+C)						
월평균			만원			

6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05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연간 총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만원
---	---------------------------	--	----	--	----

VIII. 소득

1 가구원의 경제 활동: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15세 이상(2005. 12. 31. 기준)이었던 모든 가구원
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⑦의 주된 활동 분류 중 해당 1, 비해당 0 으로 표시)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⑦ 부업활동여부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해당여부	변화된월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경제 활동은 응답자의 응답에 따르며 다른 하나는 부업활동으로 처리한다.
- ※ 2005년 1년 동안에 경제 활동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변화되기 전후의 경제 활동에 모두 “1” 표시를 한다. 이 때, **변화된 후의 경제 활동** 란에 변화시
점을 월로 표시해 준다. (예. 2005년 6월에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자로 전업한 경우 ①, ③의 해당여부에 모두 “1” 표시 해 주고 ③의 변화된 월에 “06” 표시해 준다)
- ※ 가구원 번호의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한다.
- ※ **같은 기간에 주된 활동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없다.** 주된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활동(아르바이트, 투잡, 부업 등)을 병행하여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부업
소득으로 분류하여 ⑦에 기재하도록 한다.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
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
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
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
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2005. 12. 31. 시점에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
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무직자, 연로자, 취업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했던 경우 등

2 상용근로자: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무료중식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 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05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한다.

가구원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무료중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4 고용주 및 자영자

[보조기입란 4-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가구원번호	연간 총매출액 (A)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보조기입란 4-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경비에는 재투자비용,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된다.

가구원번호	연간 총비용 (B)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4-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주된 활동이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귀 가구의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한다.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한다.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가구원번호	연간 순소득 (A - B)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5-2.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자가소비액과 판매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자가소비액 (A)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B)				합 계 (A + B)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 없음 0

5-3.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C)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된다. (* 없음 0)	연간							만원
--	----	--	--	--	--	--	--	----

[보조기입란 5-4].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총지출금액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영농잡지출	연간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만원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D)

	연간							만원
--	----	--	--	--	--	--	--	----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 (A+B+C-D)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연간							만원
--------------------------	----	--	--	--	--	--	--	----

6	어업 경영주
---	--------

[보조기입란 6-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으로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 및 판매 수입

분류	예시	종류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 (천원)	판매수입 (만원)	자가소비액 (만원)
어로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자가소비액 (A)		수산물 판매수입 (B)		합계 (A + B)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 없음 0

6-2.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C)

연간	만원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된다.

[보조기입란 6-3]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지출항목	예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만원

6-3.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D)

연간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A+B+C-D)

연간	만원

→ 부업활동이 있을 경우 문항 7로 가시오.

7 부업소득: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주된 활동으로 인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부업소득은 주된 활동 이외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주부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농한기의 농어가 소득활동 등이 포함됨.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B)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 근로나 사업소득 외의 가구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유현황 (있음1, 없음0)	금 액								
8	재 산 소 득	2005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총소득액은? ①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②임대료(월세, 토지 등) ③기타(자격증 대여 등)	①	②	③	연간				만원	
9	사 회 보 험	2005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 형태와 총급여액은? (단, 일시불 제외)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군인·교원연금 ③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④ 건강보험(요양비 등) ⑤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⑥ 보훈연금(국가유공상이자)	①	②	③	연간				만원	
	민 간 보 험	2005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 형태와 총급여액은? (단, 일시불 제외) ① 개인연금 ② 기업의 퇴직연금 ③기타()	①	②	③						
10	부모나 자녀로부터 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2005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현금환산액)의 총급여액은?				연간				만원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2005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 회사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급여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만원	
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005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의 총 (현금급여)금액은?				연간				만원	
12	기 정 부 보 조 금 타	2005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제외)의 형태와 총급여액은? 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② 경로연금 ③ 노인교통비 ④ 모부자가정수당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⑥ 영유아 보육료지원 ⑦ 학비지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⑩ 기타()	①	②	③	④	⑤	연간			만원
			⑥	⑦	⑧	⑨	⑩				
13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05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형태와 총급여액은? ① 퇴직금 ② 연금일시금(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③ 증여·상속 ④ 경조금 ⑤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⑥ 사고보험금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등)	①	②	③	④	연간				만원
			⑤	⑥	⑦	⑧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급식비 지원, 문구대, 수련회비, 정부할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비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로 표시함.
※ 없음 0

IX. 부채 및 이자

(2005.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보유현황 (있음1, 없음0)	금 액							
1	총부채액	2005.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와 총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① 금융기관대출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보증금(받은돈) ⑤ 외상, 미리탄 계돈 ⑥ 기타부채()	①	②	③	합계				만원
2	이 자	2005년 1년 동안 지불한 총이자자는 얼마입니까?	X			연간				만원

※ 없음 0

X. 재산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

(※ 2005.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족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보유현황 (있음1, 없음0)	금액						
1	소 부 동 산 유 산	2005.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형태와 가격(현시가기준)은? ①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②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게)·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③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①	②	③	합계	만원		
2	점 부 동 산 유 산	2005.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형태와 가격은? ①전세보증금 준 것(가게, 사업장 등) ②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①	②		합계	만원		
3	금 용 자 산	2005.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형태와 가격은? ①예금 ②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③주식·채권 ④타기전 부은 계돈 ⑤기타(사채 등)	①	②	③	④	⑤	합계	만원
4	농 기 계	2005.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와 가격은? ①동력탈곡기 ②경운기 ③콤바인 ④트랙터 ⑤기타()	①	②	③	④	⑤	합계	만원
5	농 축 산 물	2005.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과 가격은? ① 소 ② 돼지 ③ 닭 ④ 재고농산물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합계	만원
6	자 동 차	2005.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대		합계	만원		
6	기 타	2005.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동산, 부동산(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등 운송수단, 귀금속, 골동품 등) 가격은? ※ 자동차 제외				합계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05년 1년(2005.1.1~12.31) 동안에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1	2	/	27
㉡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1	2	3	28
㉢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	29
㉣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1	2	/	30
㉤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31
㉥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	32
㉦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	2	/	33
㉧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1	2	/	34

문 2-1) (문2)의 2~5번 응답자만) 2005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 2005년 이전부터 계속 받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말씀해 주시고, 2005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⁴⁶⁻⁴⁹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⁵⁰⁻⁵¹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⁵²⁻⁵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⁵⁶⁻⁵⁷
두 번째	2	0	0	5	년 ⁵⁸⁻⁶¹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⁶²⁻⁶³	~	2	0	0	5	년 ⁶⁴⁻⁶⁷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⁶⁸⁻⁶⁹
세 번째	2	0	0	5	년 ⁷⁰⁻⁷³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⁷⁴⁻⁷⁵	~	2	0	0	5	년 ⁷⁶⁻⁷⁹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⁸⁰⁻⁸¹

문 2-2) (문2)의 2~5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2-83 (면접원: 2005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2.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3.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4.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5.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6.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7.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9.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 (문2)의 2, 3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84

- | | |
|------------------|----------------|
| 1. 6개월 이내 | 4. 3년 후 |
| 2. 6개월 후 ~ 1년 이내 | 5.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 3. 1년 후 ~ 3년 이내 | 9. 잘 모르겠다 |

문 3-1) (문2)의 2, 3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85-86

- | | |
|-----------|--------------------------------|
| 1. 의료비 지원 | 4.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 (공공근로 포함) |
| 2. 교육비 지원 | 5. 기타(적을 것 : _____) |
| 3. 주거비 지원 | |

응답 후 문 5)로 갈 것

문 4) (문2)의 4, 5번 응답자만) 귀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87-88

1.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2.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3.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4.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5.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6.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7. 가족의 병이 나아서
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9.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문2)의 4, 5번 응답자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89-90

- | | |
|-----------|----------------------|
| 1. 의료비 지원 | 4.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관련 지원 |
| 2. 교육비 지원 | 5. 없다 |
| 3. 주거비 지원 | 6. 기타(적을 것 : _____) |

XIV. 노인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II.아동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다음은 노인의 부양(노후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다음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Q7-8	2순위	9-10
-----	------	-----	------

0.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1.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
2. 노인이 건강에 별 문제는 없으나 식사, 세탁, 청소 등 일반적으로 돌보아 드리는 것
3. 식사, 대소변 보기, 목욕, 옷 입기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보아 드리는 것(수발하는 것)
4. 만성질병이나 허약(노쇠)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5. 병원비나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6. 친구가 없거나 가실 때가 없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등, 할 일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
7.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2005년 1년간 귀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의 각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 다음 중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제공기관은 어디였는지요? 또, 이용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면접원: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0.비해당'으로 표시하고, 만족도는 응답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이용 만족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필요 하다	이주 필요 하다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경로연금 지원	1	2	3	4	5 ¹¹	1	2 ¹²	13-14	1	2	3	4	5 ¹⁵
㉡ 의료비 지원	1	2	3	4	5 ¹⁶	1	2 ¹⁷	18-19	1	2	3	4	5 ²⁰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1	2	3	4	5 ²¹	1	2 ²²	23-24	1	2	3	4	5 ²⁵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1	2	3	4	5 ²⁶	1	2 ²⁷	28-29	1	2	3	4	5 ³⁰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1	2	3	4	5 ³¹	1	2 ³²	33-34	1	2	3	4	5 ³⁵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1	2	3	4	5 ³⁶	1	2 ³⁷	38-39	1	2	3	4	5 ⁴⁰
㉦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1	2	3	4	5 ⁴¹	1	2 ⁴²	43-44	1	2	3	4	5 ⁴⁵
㉧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1	2	3	4	5 ⁴⁶	1	2 ⁴⁷	48-49	1	2	3	4	5 ⁵⁰
㉨ 주간보호 서비스 (낮 동안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1	2	3	4	5 ⁵¹	1	2 ⁵²	53-54	1	2	3	4	5 ⁵⁵
㉩ 단기보호 서비스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것)	1	2	3	4	5 ⁵⁶	1	2 ⁵⁷	58-59	1	2	3	4	5 ⁶⁰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0. 비해당 1.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2.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 보건소 5.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6. 학교 7.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XV. 아 동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를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III. 장애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는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다음은 아동(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R7-8	2순위	9-10
-----	------	-----	------

0.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1. 아동(자녀)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육아의 어려움
2. 지역에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의 양과 질의 문제
3.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방, 목욕시설 등)
4.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
5. 아동(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
6.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
7.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등교거부, 친구관계에서 사회성 부족, 왕따 등)
8.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공격성, 산만함, 거짓말, 도벽, 오락중독)
9.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2005년 1년간 귀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의 각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 다음 중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제공기관은 어디였는지요? 또, 이용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면접원: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0.비해당'으로 표시하고, 만족도는 응답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만족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1	2	3	4	5	1	2		1	2	3	4	5
㉡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1	2	3	4	5	1	2		1	2	3	4	5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치료)	1	2	3	4	5	1	2		1	2	3	4	5
㉤ 방과후 지도(공부방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무료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무료급식(학교)	1	2	3	4	5								
㉧ 학비 지원(장학금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1	2	3	4	5	1	2		1	2	3	4	5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0. 비해당 1.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2.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 보건소 5.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6. 학교 7.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 6) (문5)의 2번 응답자만 귀택의 각각의 아동(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 보 기 >	
보육시설	1.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3.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4.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7. 학원	8. 개인·그룹과외 9.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11. 방과후 교실 (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12. 친·인척 13. 이웃이나 아이 돌보미(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 보육사) 14. 기타(적을 것 : _____) (면접원: 친인척과 이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 7) 귀택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오른쪽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6)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없음= 0000, 비해당=9998로 표시합니다

문 8) 한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오른쪽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6)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없음= 0000, 비해당=9998로 표시합니다

문6)~문8) 응답지 (면접원: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나이가 어린 아동(자녀)부터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6) 이용기관	문7)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8)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10-11		A	12-13	월평균 [] 만원 22-25	월평균 [] 만원 26-29
		B	14-15		
		C	16-17		
		D	18-19		
		E	20-21		
30-31		A	32-33	월평균 [] 만원 42-45	월평균 [] 만원 46-49
		B	34-35		
		C	36-37		
		D	38-39		
		E	40-41		
50-51		A	52-53	월평균 [] 만원 62-65	월평균 [] 만원 66-69
		B	54-55		
		C	56-57		
		D	58-59		
		E	60-61		
70-71		A	72-73	월평균 [] 만원 82-85	월평균 [] 만원 86-89
		B	74-75		
		C	76-77		
		D	78-79		
		E	80-81		
90-91		A	92-93	월평균 [] 만원 102-105	월평균 [] 만원 106-109
		B	94-95		
		C	96-97		
		D	98-99		
		E	100-101		
110-111		A	112-113	월평균 [] 만원 122-125	월평균 [] 만원 126-129
		B	114-115		
		C	116-117		
		D	118-119		
		E	120-121		

문 9) (모든 응답자) 문7)과 문8)에서 응답해 주신 사교육비 및 보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귀택의 아동(자녀) 모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1. 매우 부담된다
2. 약간 부담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XVI. 장애인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IV.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다음은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7-8	2순위	9-10
-----	-----	-----	------

0.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1. 장애가구원 보호로 인한 소득활동의 지장
2. 장애가구원 의료비,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 장애아동(자녀) 보육의 어려움
4. 장애아동(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 적응문제(교육문제)
5.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의 어려움
6. 장애 가구원의 취업 및 직업활동의 어려움
7.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8. 주택구조 불편
9. 가족간의 갈등
-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2005년 1년간 귀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의 각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 다음 중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제공기관은 어디였는지요? 또, 이용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면접원: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0.비해당'으로 표시하고, 만족도는 응답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만족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필요 하다	아주 필요 하다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장애수당	1	2	3	4	5 ¹⁰	1	2 ¹¹	12-13	1	2	3	4	5 ¹⁴
㉡ 장애아동부양수당	1	2	3	4	5 ¹⁵	1	2 ¹⁶	17-18	1	2	3	4	5 ¹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2	3	4	5 ²⁰	1	2 ²¹	22-23	1	2	3	4	5 ²⁴
㉣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 복권판매대 등 사업권	1	2	3	4	5 ²⁵	1	2 ²⁶	27-28	1	2	3	4	5 ²⁹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1	2	3	4	5 ³⁰	1	2 ³¹	32-33	1	2	3	4	5 ³⁴
㉥ 의료 재활서비스	1	2	3	4	5 ³⁵	1	2 ³⁶	37-38	1	2	3	4	5 ³⁹
㉦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1	2	3	4	5 ⁴⁰	1	2 ⁴¹	42-43	1	2	3	4	5 ⁴⁴
㉧ 이동편의 서비스	1	2	3	4	5 ⁴⁵	1	2 ⁴⁶	47-48	1	2	3	4	5 ⁴⁹
㉨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1	2	3	4	5 ⁵⁰	1	2 ⁵¹	52-53	1	2	3	4	5 ⁵⁴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1	2	3	4	5 ⁵⁵	1	2 ⁵⁶	57-58	1	2	3	4	5 ⁵⁹
㉪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1	2	3	4	5 ⁶⁰	1	2 ⁶¹	62-63	1	2	3	4	5 ⁶⁴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1	2	3	4	5 ⁶⁵	1	2 ⁶⁶	67-68	1	2	3	4	5 ⁶⁹
㉬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1	2	3	4	5 ⁷⁰	1	2 ⁷¹	72-73	1	2	3	4	5 ⁷⁴
㉭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1	2	3	4	5 ⁷⁵	1	2 ⁷⁶	77-78	1	2	3	4	5 ⁷⁹
㉮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1	2	3	4	5 ⁸⁰	1	2 ⁸¹	82-83	1	2	3	4	5 ⁸⁴
㉯ LPG 차량 등 자동차 관련 지원	1	2	3	4	5 ⁸⁵	1	2 ⁸⁶	87-88	1	2	3	4	5 ⁸⁹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0. 비해당 1.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2.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 보건소 5.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6. 학교 7.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조사는 내년에도 계속 실시될 예정으로 귀댁은 매년 1번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서 귀댁에 대해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곳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여러분과 계속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연락처	가구원 번호	25-26	가구원 이름	직장전화	휴대폰	이메일
	가구원 번호	27-28	가구원 이름	직장전화	휴대폰	이메일
	가구원 번호	29-30	가구원 이름	직장전화	휴대폰	이메일
부재시/ 이사시 연락가능한 사람	1	이름	주소			
		관계	전화번호			
	2	이름	주소			
		관계	전화번호			
	3	이름	주소			
		관계	전화번호			

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이번 2006년 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한 감사표시로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31-32 약소하지만 귀댁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하시는 답례품을 준비코자 합니다.
 아래 보기 중 귀댁에서 원하시는 답례품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현금
2. 상품권(농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3. 생활용품(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_____)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 사 후 기 록	
방문 가구 상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가능 시간대 : 오전/오후 _____시 ▪ 방문가구의 전반적 상황 (면접원: 가족관계, 대소사 등 패널유지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중심으로 정리)
면접원의 평가	에디팅 지도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33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2.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3. 보통이다 4.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문) 최종 작성된 조사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34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2.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3. 보통이다 4.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B. 근로

문 1) 귀하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B8

- 1. 임금근로자 ┌───┐
- 2. 자영업, 고용주 └───┬───> **문2)로 갈 것**
- 3. 무급 가족 종사자 └───┐
- 4. 미취업자 → **문6)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근로유형은 가구용 조사표 4p. 경제활동 상태와 일치해야 함.
 1. 임금근로자: 고용되어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근로자 포함.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자로 취업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
 4. 미취업자: 실업자(2005.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

※ 다음 문2) ~ 문5)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1~3번 응답자만) 2005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면접원: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있다 → **문2-1)로 갈 것**
- 2.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1번 응답자만) 2005년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 두고 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면접원: 2005년 1년간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2004년 10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2005년 8월까지 쉰 경우 (2005년) 1월~8월로 기입합니다.)

10-11 월 ~ 12-13 월

문 2-2) 귀하가 직장(사업)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4

- 1. 계속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 2-3)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5-16

- 1.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10.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2. 정리해고로
- 11.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3.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12.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4. 정년퇴직
- 13.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5. 계약기간이 끝나서
- 14.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15.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7.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16.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17. 출산, 육아 때문에
- 9.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18. 기타(적을 것 : _____)

B

문 3)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17-20		월	21-22
--	---	-------	--	---	-------

문 4) 2005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면접원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9월 20일 씩 일한 경우 "5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77일 \div 5개월 = 15.4일$ 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5일"로 기입합니다.)

연간	총		개월	23-24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25-26
----	---	--	----	-------	--------------	--	---	-------

문 5) 2005년 1년간 일을 할 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면접원: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는 일한 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27-29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시간	30-31

응답 후 C.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질문으로 가십시오.

※ 다음은 문 6) ~ 문 8)까지는 미취업자용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질문입니다

문 6) 귀하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32

1. 그렇다 → **문6-1)로 갈 것** 2. 아니다 → **문6-3)으로 갈 것**

문 6-1) (문6)의 1번 응답자만)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33-34 개월 35-36

문 6-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직상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 나이 때문에	1	2	3	4	5	37
	㉡ 성차별 때문에	1	2	3	4	5	38
	㉢ 학력이 낮기 때문에	1	2	3	4	5	39
	㉣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1	2	3	4	5	40
	㉤ 경력이 부족해서	1	2	3	4	5	41
	㉬ 건강문제로	1	2	3	4	5	42
	㉭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1	2	3	4	5	43
	㉮ 신용불량자라서	1	2	3	4	5	44
가구 특성	㉠ 가사일 때문에	1	2	3	4	5	45
	㉡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	2	3	4	5	46
	㉢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	2	3	4	5	47
	㉣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	2	3	4	5	48
노동 시장 특성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1	2	3	4	5	49
	㉡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	2	3	4	5	50
	㉢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	2	3	4	5	51
	㉣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1	2	3	4	5	52
	㉤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어서)	1	2	3	4	5	53

문 6-3) (모든 응답자)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54

1. 그렇다 2. 아니다

문 7)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면접원: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55-59

문 8) 2005년 1년간 귀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 각각의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5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자활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면접원: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2. 없다'면 참여기간, 만족도는 표기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자활지원프로그램	필요성 정도					경험 여부		참여기간			만족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다소 필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필요 하다	아주 필요 하다	있다	없다	※ 2005년 1년간 참여 개월 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구직알선	1	2	3	4	5	1	2	개월 62-63	1	2	3	4	5	64	
㉡ 직업적응훈련	1	2	3	4	5	1	2	개월 67-68	1	2	3	4	5	69	
㉢ 직업훈련	1	2	3	4	5	1	2	개월 72-73	1	2	3	4	5	74	
㉣ 구직 세일즈	1	2	3	4	5	1	2	개월 77-78	1	2	3	4	5	79	
㉤ 창업지원	1	2	3	4	5	1	2	개월 82-83	1	2	3	4	5	84	
㉥ 자활공동체	1	2	3	4	5	1	2	개월 87-88	1	2	3	4	5	89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	2	3	4	5	1	2	개월 92-93	1	2	3	4	5	94	
㉧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1	2	3	4	5	1	2	개월 97-98	1	2	3	4	5	99	
㉨ 인턴형 자활근로	1	2	3	4	5	1	2	개월 102-103	1	2	3	4	5	104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2	3	4	5	1	2	개월 107-108	1	2	3	4	5	109	
㉪ 재활프로그램	1	2	3	4	5	1	2	개월 112-113	1	2	3	4	5	114	
㉫ 지역봉사	1	2	3	4	5	1	2	개월 117-118	1	2	3	4	5	119	

문 8)의 자활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1. 있다' 고 응답한 경우 → 문8-1)로 갈 것

㉠부터 ㉫까지 모두 '2. 없다'고 응답한 경우 → C.생활실태 민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문 8-1) (문 8)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1.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0
㉡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1
㉢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2
㉣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3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4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1
1.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2. 매우 조심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예: 헌혈 등)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22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3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24
1. 그렇다 → **문4-1)로 갈 것**
 2.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하는 연간 어느 정도 기부하십니까?

	일억	천	백	십	일	
연간 총액						만원 25-29

문 4-2)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연간		회	30-31
----	--	---	-------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32 (면접원: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친정, 시댁 구분 없이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1. 있다 → **문5-1)로 갈 것**
2. 없다 → **문6)으로 갈 것**

문 5-1) (문5)의 1번 응답자만) 2005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왕래를 하십니까?
(면접원: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주 _____ 회³³ 또는 · 월 _____ 회³⁴⁻³⁶ 또는 · 년 _____ 회³⁷⁻³⁹

< 유의사항 >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2005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전화통화를 하십니까?
(면접원: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주 _____ 회⁴⁰ 또는 · 월 _____ 회⁴¹⁻⁴³ 또는 · 년 _____ 회⁴⁴⁻⁴⁶

< 유의사항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6) 귀하께서 2005년 1년간 경제적 혹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취업, 가족문제 등에 있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출처별로 도움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도움의 종류와 도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을 받은 곳	도움을 준 사람 수	도움의 종류			도움정도						
		물질적 지원	정보 제공	정서적 지원	매우 도움	보통	도움 되는편	도움 되지 않는편	전혀 도움 안됨		
㉠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같이 사는 가구원 제외)	명 ⁴⁷⁻⁴⁸	1	2	3	49	1	2	3	4	5	50
㉡ 친척(3촌이상)	명 ⁵¹⁻⁵²	1	2	3	53	1	2	3	4	5	54
㉢ 친구 및 동료(동창·선후배·교우·동향사람 등)	명 ⁵⁵⁻⁵⁶	1	2	3	57	1	2	3	4	5	58
㉣ 이웃(동네사람)	명 ⁵⁹⁻⁶⁰	1	2	3	61	1	2	3	4	5	62
㉤ 교회, 성당, 절 등의 신자	명 ⁶³⁻⁶⁴	1	2	3	65	1	2	3	4	5	66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명 ⁶⁷⁻⁶⁸	1	2	3	69	1	2	3	4	5	70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명 ⁷¹⁻⁷²	1	2	3	73	1	2	3	4	5	74
㉧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의 직원	명 ⁷⁵⁻⁷⁶	1	2	3	77	1	2	3	4	5	78
㉨ 학교(무료급식, 학비지원 등)	명 ⁷⁹⁻⁸⁰	1	2	3	81	1	2	3	4	5	82
㉩ 기타 (적을 것:)	83-85 명 ⁸⁶⁻⁸⁷	1	2	3	88	1	2	3	4	5	89

< 유의사항 >

- *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0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도움을 준 경우에는 가장 주된 도움으로 응답합니다 ㉨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상담실 교사 교육복지실, 영양사 등이 가능합니다.

문 7) 귀하는 2005년 1년간 일상적으로 평일(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음 각각의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면접원 : 응답 내용이 1일 기준으로 24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며, 응답내용이 항목 간에 겹쳐서도 안 됩니다.)

활동내용	평일(평균)	토요일	일요일
㉠ 주된 취업활동, 부업(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 ⁹⁰⁻⁹¹	시간 ⁹²⁻⁹³	시간 ⁹⁴⁻⁹⁵
㉡ 집안일(요리, 세탁, 청소 등)	시간 ⁹⁶⁻⁹⁷	시간 ⁹⁸⁻⁹⁹	시간 ¹⁰⁰⁻¹⁰¹
㉢ 자녀 돌보기(양육, 씻기기 등)	시간 ¹⁰²⁻¹⁰³	시간 ¹⁰⁴⁻¹⁰⁵	시간 ¹⁰⁶⁻¹⁰⁷
㉣ 자녀 이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 돌보기	시간 ¹⁰⁸⁻¹⁰⁹	시간 ¹¹⁰⁻¹¹¹	시간 ¹¹²⁻¹¹³
㉤ 교육과 훈련(학업, 대학, 학원 등)	시간 ¹¹⁴⁻¹¹⁵	시간 ¹¹⁶⁻¹¹⁷	시간 ¹¹⁸⁻¹¹⁹
㉥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	시간 ¹²⁰⁻¹²¹	시간 ¹²²⁻¹²³	시간 ¹²⁴⁻¹²⁵

< 유의사항 >

- * ㉥ '취미나 다른 여가활동'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가생활로써 집에서의 TV시청, 독서, 잠자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2005년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흡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D8

- 하루에 반갑 이내
- 하루에 한갑 이내
- 하루에 두갑 이내
- 하루에 두갑 이상
- 전혀 흡연하지 않는다.

문 2) 2005년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9

- 주 1회 이하
 - 주 2~3회
 - 주 4회 이상
 -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3)으로 갈 것
- 문6)으로 갈 것

문 3) (문2)의 1~3번 응답자만) 그럼, 2005년에 귀하는 술을 마실 때 보통 몇 잔 정도 마셨습니까?

10

- | | |
|------------|------------|
| 1. 1~2잔 정도 | 4. 7~9잔 정도 |
| 2. 3~4잔 정도 | 5. 10잔 이상 |
| 3. 5~6잔 정도 | |

문 4) 2005년 1년간 귀하는 평소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1

- | | | | |
|----------|-----------|-----------|-----------|
| 1. 전혀 없다 | 2. 년 1~2회 | 3. 월 1~2회 | 4. 주 1~2회 |
|----------|-----------|-----------|-----------|

문 5) 2005년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1	2	12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1	2	13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1	2	14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15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면접원: 조사시점(2006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16
㉡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17
㉢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18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19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20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21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22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3
㉨ 마음이 슬펐다	1	2	3	4	24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5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26

문 7) 다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응답의 범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면접원: 조사 시점(2006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7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28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29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	2	3	4	30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31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32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33
㉧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34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35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6

문 8)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양식입니다. **2005년 1년간**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항 목	전혀 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 이상	비해당	
㉠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1	2	3	4	5	0	37
㉡ 나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1	2	3	4	5	0	38
㉢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	2	3	4	5	0	39
㉣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	2	3	4	5	0	40
㉤ 나를 세게 밀쳤다	1	2	3	4	5	0	41
㉥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1	2	3	4	5	0	42
㉦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0	43
㉧ 나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	2	3	4	5	0	44
㉨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0	45
㉩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였다	1	2	3	4	5	0	46
㉪ 나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았다	1	2	3	4	5	0	47
㉫ 내가 빠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1	2	3	4	5	0	48
㉬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1	2	3	4	5	0	49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9) 그럼, 이번에는 **2005년 1년간** 귀하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 이상	비해당	
㉠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1	2	3	4	5	0	50
㉡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1	2	3	4	5	0	51
㉢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	2	3	4	5	0	52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	2	3	4	5	0	53
㉤ 상대방을 세게 밀쳤다	1	2	3	4	5	0	54
㉥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	1	2	3	4	5	0	55
㉦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0	56
㉧ 상대방을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	2	3	4	5	0	57
㉨ 상대방을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0	58
㉩ 칼이나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다	1	2	3	4	5	0	59
㉪ 상대방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았다	1	2	3	4	5	0	60
㉫ 상대방이 빠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1	2	3	4	5	0	61
㉬ 상대방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1	2	3	4	5	0	62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개인사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63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기타 시도) 3. 농어촌(읍면지역)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64
1. 매우 가난 2. 가난 3. 보통 4. 부유 5. 매우 부유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65 (면접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종사자 등도 모두 '있다'로 봅니다)

1. 있다 → **문3-1)로 갈 것** 2.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1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면접원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3개월이상 일(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 학업기간 중 직업 (아르바이트 제외)을 가진 경우 포함)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⁶⁶⁻⁶⁹	~		년 ⁷⁰⁻⁷³	74

문 3-2)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3개월이상 일(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 학업기간 중 직업 (아르바이트 제외)을 가진 경우 포함)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05년 12월 31일 기준)				년	~		년	83
주된 일자리 A				년	~		년	92
주된 일자리 B				년	~		년	101
주된 일자리 C				년	~		년	110
주된 일자리 D				년	~		년	119
주된 일자리 E				년	~		년	128

〈 보기 〉 고 용 형 태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 종사자, 가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
3.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유급고용인 없이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 자료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E8	2순위	9
		3순위	10

- | | |
|---------|-----------------------------|
| 1. 기술사 | 6.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 2. 기능장 | 7.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3. 기사 | 8. 잘 모르겠다 → 문5)로 갈 것 |
| 4. 산업기사 | 9. 없다 |
| 5. 기능사 | |

문 4-1) (문 4)의 1 ~ 7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면접원: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11-12	2순위	13-14
		3순위	15-16

- | | | |
|-----------|-----------|------------------|
| 1. 기계·금속 | 11. 국토개발 | 20. 공예 |
| 2. 화공·세라믹 | 12. 농림 | 21. 사무관리 |
| 3. 전기·전자 | 13. 해양 | 22. 음료품·식료품 |
| 4. 통신 | 14. 산업디자인 | 23. 위생 |
| 5. 조선 | 15. 에너지 | 24. 보건·의료·사회 |
| 6. 항공 | 16. 환경 | 25. 금융·무역·유통 |
| 7. 섬유 | 17. 안전관리 | 26.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 8. 토목·건축 | 18. 산업응용 | 27. 외국어·관광 |
| 9. 광업자원 | 19. 교통 | 28. 기타 |
| 10. 정보처리 | | |

문 5)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경우, 그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 험 여 부		17	18-19	20	21-22	23	24-25	26	27-28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___세
㉠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1	2									___세
㉡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1	2									___세
㉢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1	2									___세
㉣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1	2									___세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면접원: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 중학교 중퇴(수료) → 초등학교 졸)

부	29	모	30
----------	----	----------	----

- | | |
|----------|-------------|
| 1. 무학 | 5. 고등학교졸 |
| 2. 서당졸 | 6. 대학(전문대)졸 |
| 3. 초등학교졸 | 7. 대학교졸 |
| 4. 중학교졸 | 8. 대학원졸 |



승인번호
제 33109 호

A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FAX(02)3702-2121/ E-mail info@gallup.co.kr/ 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Coding ID A 1-6

										-	2
--	--	--	--	--	--	--	--	--	--	---	---

Gallup 200616086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1월~12월

§ 문의 및 연락처

담당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인경 (☎ 02-3702-2612) / 이혜신 (☎ 02-3702-2115)

실사연구원: 서울본사 이아영 02-3702-2676 대전실사 이현주 042-224-9500
부산실사 박지연 051-816-5332 전주실사 윤익순 063-243-9207
대구실사 김영미 053-255-4605 강원실사 조소일 033-253-0332
광주실사 김영일 062-222-4997 제주실사 김수미 064-743-4410

패널관리번호						가구 구분	가구주 성명	응답자			
패널 ID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원번호			초등학교 학년	전화번호		
		7-10	11-12	13			14-15	_____학년 ¹⁶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24-26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27-28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29	☎ 사유(번호기재): 30-31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32	☎ 사유(번호기재): 33-34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35	☎ 사유(번호기재): 36-37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38	☎ 사유(번호기재): 39-40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41	☎ 사유(번호기재): 42-43

면접원 이름		면접원 ID	44-48	면접원연락처	
지도원 확인	1. 완료 2. 미완 49	☎ 사유(번호기재):	50-51	지도원	(인)
SV ID	52-53	에디터	(인)	검증원	(인)

A. 나의 학교생활

문 1)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터 ㉨까지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1부터 4중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학교 생활이 즐겁다	1	2	3	4	54
㉡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55
㉢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56
㉣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7
㉤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58
㉥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59
㉦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60
㉧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1	2	3	4	61
㉨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62

문 2)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떻습니까?

문항	아주 못함	중간 이하	중간	중간 이상	아주 잘함	
㉠ 전과목 평균	1	2	3	4	5	63
㉡ 국 어	1	2	3	4	5	64
㉢ 수 학	1	2	3	4	5	65
㉣ 영 어	1	2	3	4	5	66

B. 나의 생각과 행동

문 3)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터 ㉨까지 각각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1부터 4 중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67
㉡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68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뉘든지 할 수 있다	1	2	3	4	69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70
㉤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71
㉥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72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1	2	3	4	73
㉧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1	2	3	4	74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75
㉠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76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77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78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79

문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4-1)	㉠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80
	㉡ 잘 운다	1	2	3	81
	㉢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82
	㉣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83
	㉤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1	2	3	84
	㉥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85
	㉦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86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87
	㉨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88
	㉩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89
	㉪ 자의식이 지나치고(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쉽게 무안해 한다	1	2	3	90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91
㉬ 걱정이 많다	1	2	3	92	
문 4-2)	㉠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1	2	3	93
	㉡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1	2	3	94
	㉢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1	2	3	95
	㉣ 정신이 헛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1	2	3	96
	㉤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1	2	3	97
	㉥ 충동적이고 생각없이 행동한다	1	2	3	98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99
	㉧ 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움찔거리다 (눈 깜박임, 안면 싹룩거림 포함)	1	2	3	100
	㉨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다	1	2	3	101
	㉩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1	2	3	102
㉪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1	2	3	103	
문 4-3)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104
	㉡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105
	㉢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1	2	3	106
	㉣ 수줍거나 소심하다	1	2	3	107
	㉤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1	2	3	108
	㉥ 자주 뻘뻘해진다.	1	2	3	109
	㉦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1	2	3	110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111
㉨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112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4-4)	㉠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	2	3	113
	㉡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1	2	3	114
	㉢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	2	3	115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116
	㉤ 가출한다	1	2	3	117
	㉥ 불을 지른다	1	2	3	118
	㉦ 집 밖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1	2	3	119
	㉧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1	2	3	120
	㉨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1	2	3	121
	㉩ 학교를 빼먹는다(무단결석)	1	2	3	122
	㉪ 술을 마시거나 약물(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등)을 사용한다	1	2	3	123
	㉫ 물건이나 시설을 부순다	1	2	3	124
문 4-5)	㉠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125
	㉡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126
	㉢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1	2	3	127
	㉣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128
	㉤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129
	㉥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130
	㉦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131
	㉧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132
	㉨ 샘을 잘 낸다	1	2	3	133
	㉩ 자주 싸운다	1	2	3	134
	㉪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135
	㉫ 고함을 지른다	1	2	3	136
	㉬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137
	㉭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1	2	3	138
	㉮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39
	㉯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140
	㉺ 남을 잘 놀린다	1	2	3	141
㉻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1	2	3	142	
㉼ 남을 위협한다	1	2	3	143	

문 5) 다음 문항을 읽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은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5-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지난 1년간이나 한 달간 중 해당하는 하나에만 응답해 주세요**)

1.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셨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지난 1년간

--	--	--

 회 B7-9
2.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마시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한 달에

--	--

 회 10-11

문 5-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지난 1년간이나 한 달간 또는 하루 중 해당하는 하나에만 응답해주세요**)

1.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봤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지난 1년간

--	--	--

 회 12-14
2.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피우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한 달에

--	--

 회 15-16
3. **하루에 한번** 이상 피우면 **하루 평균**에 대해 기록: 하루 평균

--	--

 회 17-18

	응 답 예 시						
	그런적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
문 5-3)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5	6	19
문 5-4)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6	20
문 5-5) 지난 1년 동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뺨뜯은) 적이 있다.	1	2	3	4	5	6	21
문 5-6) 지난 1년 동안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	2	3	4	5	6	22
문 5-7)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23
문 5-8)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이유없이 빼먹은(무단 결석) 적이 있다	1	2	3	4	5	6	24
문 5-9) 지난 1년 동안 폭력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25
문 5-10) 지난 1년 동안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6	26
문 5-11) 지난 1년 동안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몸(성기)을 만진 적이 있다.	1	2	3	4	5	6	27
문 5-12) 지난 1년 동안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28

문 6)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1	2	3	4	29
㉡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1	2	3	4	30
㉢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1	2	3	4	31
㉣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32
㉤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1	2	3	4	33
㉥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	2	3	4	34

C. 우리 부모님은?

문 7)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35
㉡ 부모님이 주위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1	2	3	4	5	36
㉢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1	2	3	4	5	37
㉣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1	2	3	4	5	38
㉤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렀다	1	2	3	4	5	39
㉥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5	40
㉦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1	2	3	4	5	41
㉧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1	2	3	4	5	42
㉨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1	2	3	4	5	43
㉩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44
㉪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45
㉫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	2	3	4	5	46
㉬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1	2	3	4	5	47
㉭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1	2	3	4	5	48
㉮ 부모님은 내가 불량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1	2	3	4	5	49

D. 나의 친구는?

문 8)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1	2	3	4	50
㉡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1
㉢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1	2	3	4	52
㉣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1	2	3	4	53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54
㉥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5
㉦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56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뺨뜯은) 적이 있다	1	2	3	4	57
㉨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8
㉩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1	2	3	4	59

E. 나와 나의 가족

문 9) 현재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몇 명입니까 명 60-61

문 9-1) 그럼,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누구입니까?

구 분	동거여부		같이 사는 가족 수	구 분	동거여부		같이 사는 가족 수
	같이 살지 않는다	같이 산다			같이 살지 않는다	같이 산다	
㉠ 아버지	1	2 <small>62</small>	/	㉡ 어머니	1	2 <small>63</small>	/
㉢ 형, 누나, 언니, 오빠	1	2 <small>64</small>		㉣ 동생	1	2 <small>66</small>	
㉤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1	2 <small>68</small>	명 <small>65</small>	㉦ 기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1	2 <small>70</small>	명 <small>67</small>
			명 <small>69</small>				명 <small>71</small>

〈 유의사항 〉

-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직장관계로 따로 살고 있어 한달에 한두번이나 1년에 몇 번 오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버지(또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같이 사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그렇지만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따로 사는 경우와 행방불명이나 가출로 인해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는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0) 현재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72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아주 나쁘다

문 11)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와 주로 의논합니까? 가장 많이 의논하는 사람 한 사람만 골라 주세요. 73-74

1.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는다 5. 학교선생님
 2. 부모님 6. 함께 사는 어른(할머니, 삼촌 등)
 3. 형제자매 7. 복지관 선생님
 4. 친구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전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75

1. 있다 → **문12-1)로 갈 것** 2. 없다 → **문13)으로 갈 것**

문 12-1) (문12)의 1번 응답자만) 그럼, 지난 1년 동안 모두 몇 번 전학하였습니까? 번 76-77

문 13) 나의 키는 Cm이다 78-80

문 14) 나의 몸무게는 Kg이다 81-82

문 15) TV 시청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시간 분 83-86

문 16) 인터넷 사용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정도 합니까? 시간 분 87-90

〈 유의사항 〉

- 인터넷 사용시간에는 한글문서 작업이나 게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접속을 통한 게임은 인터넷 사용시간에 포함합니다.

문 17) 다음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나요? 91

1. 있다 → **문17-1)로 갈 것** 2. 없다 → **문18)로 갈 것**

〈 유의사항 〉

- 아르바이트는 집밖에서 용돈이나 기타 필요한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하여 용돈을 받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17-1) (문17)의 1번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여러분이 해보았던 아르바이트 종류와 일한 기간 및 일한 시간에 대해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3가지 이상일 경우 오래 한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가	아르바이트 종류	일한 기간 (한달은 30일로 표시)			일한 시간			
		일 ₉₄₋₉₆	일 ₁₀₂₋₁₀₄	일 ₁₁₀₋₁₁₂	일 ₉₇	일 ₁₀₅	일 ₁₁₃	시간 ₉₈₋₉₉
가	92-93				일주일에		하루에	시간 ₉₈₋₉₉
나	100-101				일주일에		하루에	시간 ₁₀₆₋₁₀₇
다	108-109				일주일에		하루에	시간 ₁₁₄₋₁₁₅
보기	1. 전단지 돌리기 2. 패스트푸드점 서빙/ 카운터/ 배달 3. 분식점, 중국집 서빙/ 카운터/ 배달 4. 편의점 점원 5. 주유소 주유원 6. 카페(커피숍) 서빙 7. 일반상점 판매원 8. 신문 및 우유배달 9.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 서빙/ 접객 10. PC방, 당구장, 만화방 카운터/ 서빙				11. 비디오방, 노래방 카운터/ 서빙 12. 비디오대여점 카운터 13. 건설현장 노동 14. 공장노동 15. 주차관리 16.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8.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19. 아기, 노인 돌보기 20. 기타			

문 18) (모든 응답자) 평소 방과 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누가 집에 있나요

116

- 아무도 없다
- 형제(동생, 18세 이하의 형, 오빠, 언니, 누나)만 있다. → 문18-1)로 갈 것
- 보호자(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19세 이상의 형, 오빠, 언니, 누나)가 계신다. → 문19)로 갈 것
- 기타 성인보호자(적을 것 : _____)

문 18-1) (문18)의 1, 2 번 응답자만) 여러분은 방과 후 시간을 대체로 어떻게 보냈을까?

117

-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거나 논다
- 집밖에서 친구들과 논다
- 학원에 간다
- 방과 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 간다
-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8-2) (문18)의 1, 2 번 응답자만) 그럼 여러분은 방과 후 몇 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지냈을까?

118

-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9) (모든 응답자)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도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문19-1) 서비스 경험		문19-2)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	1	2	119	1	2	3	4	120
나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의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1	2	121	1	2	3	4	122
다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청소, 빨래, 식사 등)	1	2	123	1	2	3	4	124
라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1	2	125	1	2	3	4	126
마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	2	127	1	2	3	4	128
바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활동	1	2	129	1	2	3	4	130
사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1	2	131	1	2	3	4	132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말하는 ‘도움’은 학교,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에서 받은 도움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구보고서 2006-23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Descriptive Report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12,000 원
저 자	김미곤·여유진·이봉주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425-4 93330